

建築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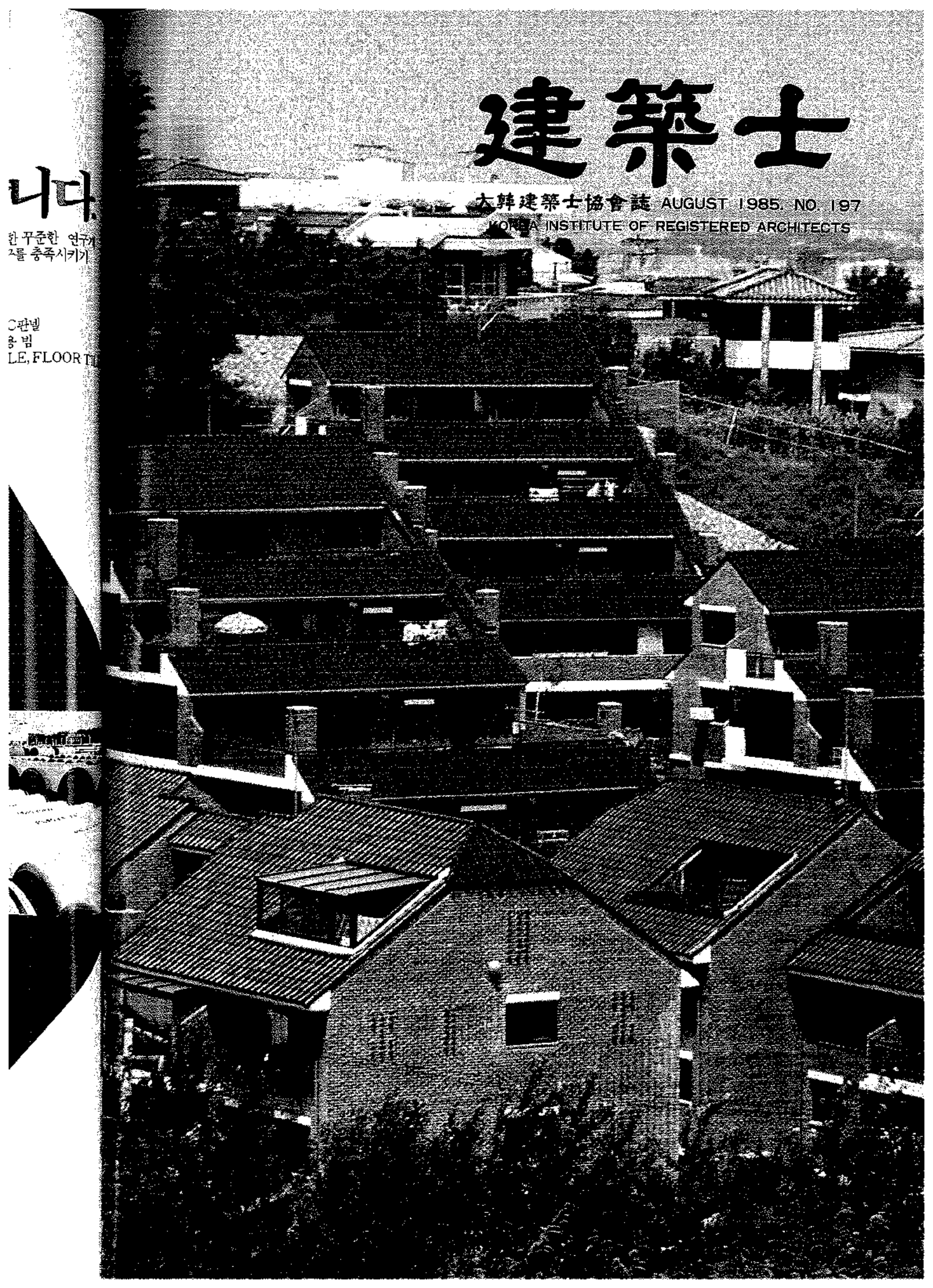
大韓建築士協會誌 AUGUST 1985. NO. 197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니다

한 꾸준한 연구가
를 충족시키기

C관별
용 빔
LE, FLOOR 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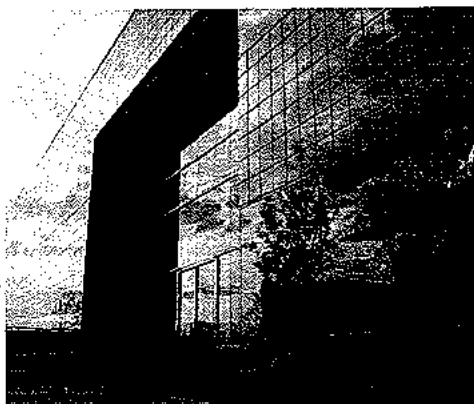
세계는 지금 대형타일의 시대!

“52주에 걸쳐 ‘심장전보라인’의 문턱이 연

삼영정보타일은 종전의 수입에만 의존해오던 대형 타일을 국내최초로 삼영요업에서 개발시판하여 우수한 대형타일의 새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 자기질 내한성 타일로서 혹한에도 동파현상이 없습니다.
- 방수, 방습효과가 뛰어나 비위생적인 곰팡이나 잡균, 벌레의 서식을 막아주므로 주거공간을 항상 쾌적하게 해줍니다.



(210mm×300mm 권물호|벽시|공의|벽)

- 규격이 균일하여 시공이 정확하며 시공기간이 단축됩니다. 또한 고층 건물의 P·C 공법이 용이합니다.
- 천연 화강석, 대리석의 대체효과가 높은 고급건축자재이며, 세계적인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되어진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은 미를 추구하는 당신에게 큰만족을드릴 것입니다.
- 수입대형타일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됩니다.

150×150mm, 144×194mm, 200×200mm
200×300mm, 300×300mm, 400×400mm
300×600mm, 기타 특수 규격은 주문에 의해 생산됩니다.



타일종합메이커

삼영요업주식회사 

서울사무소 ☎ (02) 757-2295~6

부산사무소 ☎ (051) 44-6390, 463-6390

장 : 경남 김해군 진영읍 하계리

☎ (0525) 5-2017・3792

● 전국교대리점 및 취급점 / 서울지역 ● 동우상사/266-2567 ● 동원타일상사/266-7011 ● 신력타일상사/266-3766 ● 영남타일상사/265-1455 ● 우원타일상사/266-5587 ● 유림나스온(주)/582-8965 ● 유의
타일상사/269-7242 ● 세제홍성/533-9899 부산지역 ● 국립도기/89-0229 ● 동아건설/23-0312 ● 한양건설/68-0604 ● 돌말건설/552-2112 ● 삼진건설/88-8116 ~ 7 ● 흥민건설/242-8949 ● 영남인조석/89-8327
● 이화타일/523-6621 ● 우산건설/463-7575 ● 봉신건설/22-3371 ● 대구지역 ● 대우타일/253-3667 ~ 8 ● 중앙도기/22-1148 ● 합동도기/252-5693 ● 하안(주) ● 마산건설/27-4729 ● 삼화건설/55-6038 ● 신국
건설/55-6039 ● 남부건설/22-3299 ● 동진건설/22-3439 ● 동진도기/22-4501 ● 평지건설 ● 대우타일/24-6696 ● 삼화타일/23-8713

建築士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月刊建築士 1985年 8月 15日 発行

1985.8 NO. 197

目次

發行人 - 吳雄鎬
編輯 - 出版事業部

編纂委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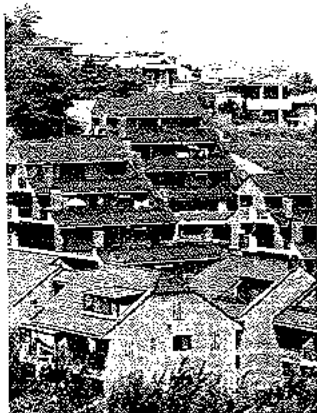
委員長 李永熙
副委員長 金 麟
委員 姜哲求
委員 全琪碩
委員 徐千植
委員 金基雄
委員 呂鴻九

發行 - 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江南區瑞草洞 山61-3
郵便番號 - 135
電話 - 서울 (02) 交 581-5711 (代)
5712, 5713, 5714
登錄番號 - 第24 - 1251
登錄日字 - 1967年 3月23日
U. D. C. 69/72 (054-2) : 0612 (519)
印刷人 = 全允球
(流文精版社 / 712-2329)

建築士憲章

1. 建築士는 建築技術을 藝術적으로 創造力을 發揮하여 建築設計, 監理에 參與한다.
2. 建築士는 國民의 快適한 生活空間과 環境의 改善을 위하여 建築設計를 實踐의 途徑으로 遂行한다.
3. 建築士는 技術開發과 建築物의 質의 向上을 위하여 專門人으로서의 使命을 遂行한다.
4. 建築士는 文化와 藝術을 바탕으로 舍의 相互間에 協同하여 藝術과 品質을 提擧한다.
5. 建築士는 科學의 發展을 促進하고 建築設計의 進歩에 對하여 國家와 社會에 獻身的으로 奉仕한다.

大韓建築士協會



표지설명: 강남원 빌라
● 설계: 우남웅 사진: 정정웅

회원작품

- 강남원 빌라
우남웅 / 가나건축사사무소
- 한국외국어대학 문리학과 (용인)
이규창 / 우일종합건축사사무소
- 대영빌딩
김무영 / 한국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
- 태화빌딩
정용찬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방지거병원 및 간호원 기숙사
공일곤 / 향건축사사무소

회원 PLAZA

- 4 ● 논단 / 송민구
- 21 ● 협회소식
- 25 ● 지부순례 회 / 충청남도편
- 28 ● 일하며 생각하며 / 정구은
- 63 ● 정화칼럼
- 89 ● 대화의 광장 / 조성룡
- 29 ● 특집: 국제방송센터 현상설계응모작

우수작 (2점)

김중업안, 김자호안

입선작 (3점)

김수근안, 장종률안, 이성수안

응모작 (7점)

유명하안, 전상백 · 김선양안, 이각표 · 김인철 · 정덕훈안,
이규창안, 윤승중 · 변용안, 정림건축안, 서울건축안

좌담회

- 58 ● 국제현상설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은?
- 64 ● 건축설계에 있어서의 실내디자인

연구논문

- 68 ● 외부환경설계 · 가로시설물 / 최기수
- ✓ 72 ● 타일집착강도 개선방안 (上) / 이재욱
- ✓ 78 ● 화염사 건조물 실측보고 (2) / 이웅목
- 84 ● 초·중학교 교육시설의 다목적 공용적 기능에 관한 연구 / 유향산

자료·기타

- 90 ● 건축법시행령중 개정령
- 96 ● 건축계 뉴스
- 98 ● 회원동정
- 99 ● 신입회원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 197 호
구입년월일	19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	

奉仕와 半額奉仕

宋 旼 求

종합건축사 사무소 가람건축

월드컵축구팀이 강적 인도네시아를 그것도 적지에서 4대 1로 대파해 온 국민을 기쁨에 들뜨게 하였던 것은 지난 7월 30일 불과 두시간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다. 단순한 스포츠이전만 그러한 귀중하고 감격에 찬 승리는 하루아침에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가 그러한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

오늘날 우리 建築界가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돌이켜 보면 해방후 결코 짧지 않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독자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8.15해방 직후 舊基督教聖書會館에 자리잡고 있었던 故姜 沈선생의 사무실에서 지금의 大韓建築學會의 전신이라고나 할 協會의 發起人會 모임이 있었다. 姜 沈선생은 지금은 철거되어 없어진 泰和女子會館이라든가 梨花女子大學校에 school gothic 양식의 훌륭한 작품들을 남기신 분이다. 필자는 工科大學에 근무하고 있었던 관계로 協會創立에 분주히 뛰었다.

당시 건축을 공부하신 분들이 몇분 되지도 않아 협회 성격이 지금과 같이 전문적으로 분화된 성격을 지니지 못하였을 뿐더러 좌우익 격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선배님들은 오직 사회에 봉사하여야 된다는 강한 의지에 불타 協會의 명칭조차 '朝鮮建築技術團'이라고 정하고 적극 사회에 참여하며 활동하였다. 월남하는 건축가 피난민의 직장을 주선한다든가 두드러진 한 예로는 지금의 漢陽大學校의 전신인 建國技術專門學校의 요청에 따라 建築科에 대부분의 임원들을 출강케 하였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徐潤福선수가 건축과에 편입해 들어

왔던 일이다. 여하간 당시의 실정으로 서 각자가 1인2역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또 하였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던가.

정부가 수립되어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자 명칭도 '朝鮮建築技術協會'로 바뀌었다. 이나라 건축계에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張起仁선생의 建築術語草案이 무렵에 제안되어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우리들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택개량에 중지를 모았던 것도 이 시기였었다. 없는 예산도 주머니를 털어서 꾸려 나갔던 협회는 뒤떨어진 사회에 봉사한다는 정신에 충만해 있었다. 특히 劉相夏선생은 상임이사로서 눈부신 활약을 하셨었다.

뜻하지 않았던 6.25사변은 건축계의 중진이신 李漢哲, 劉相夏, 金東洙 세분 선배님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수도 서울은 사수한다는 말에 미쳐 남하하지 못했던 건축계 중진들은 協會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공산치하에서 조직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9.28수복후 남하하였던 金九基선생에 의해 再編이 착수되고 서울역 구내식당에서 모임을 가져 '大韓建築學會'라는 명칭으로 개칭하는 동시에 단 하나이며 순수한 學術團體로서 재출발을 하였으나 1.4후퇴로 또다시 釜山으로 남하하여야 하였다. 그리하여 지금에 이른 것이 어언 40년이 된 것이다.

우리 '大韓建築士協會'도 금년 10월이면 20년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들 건축사의 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고 그에 따라 당연히 있어야 할 職能團體로서 장족지 발전을 한 協會를 돌이켜볼 때 創立發起人의 한사람으로서 만감이 가슴을 메운다.

建築士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協會運營過程에서도 문제

가 있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일들이 다 建築人이 아닌 사람들의 손에서 야기된 일들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6.25의 상처를 디디고 일어서서 고난 속에서 온갖 노력을 쏟아 오늘날의 도약의 밑거름이 된 우리들 건축사들은 모든 것을 잘 인내해 왔고 오직 건축 문화 창달에 전념하여 오늘날에 이른 것은 앞으로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들 마음 한 구석을 어둡게 하는 것은 建築主의 횡포와 建築士에 대한 불신이다. 한 예로 무자비한 설계비의 삭감과 무리한 납품기일의 난축이다. 建築士들은 대항할 방법이 없어 그나마도 참고 견디며 살을 찢고 뼈를 깎는다. 어떤 전설회사는 turn-key base로 설계는 무보수로 하며 공사를 수주하겠다고 나서기도 한다. 참을 수 없는 일들이 허다하나 그래도 용하게 참고를 왔다. 그러나 단 한가지 참을 수 없는 일이 있다.

建築士 스스로가 建築主 앞에서 서로를 헐뜯고 설계비의 덤핑을 일삼는 일이다. 고귀한 봉사와 회생을 바탕으로 하여 건축계가 오늘날과 같은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는데 그 공든 탑을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행위에서 반액 봉사라는 것은 재고를 정리하기 위함인데 設計費의 덤핑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우리나라 속담에 '생선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말이 있다. 그러한 요인들이 建築主의 횡포를 물러일으키는 것이며 우리들 마음 한구석을 어둡게 하는 것이다. 협회에서 고질화된 병폐를 막으려고 노력하나 더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법은 없을 것인가 생각해 본다.

회 원 작 품

강남원 빌라
KANGNAMWON VILLA

우 남 용
가나건축사사무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문리과대학
COLLA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이 규 창
우일건축사사무소

대영빌딩
DAE YOUNG BUILDING

김 무 영
한국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

태아빌딩
TAE-AH BUILDING

정 용 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방지거병원 · 간호원기숙사
ST. FRANCISCO GENERAL HOSPITAL
AND NURSE DOMITORY

공일곤 · 문병국
향종합건축사사무소

강남원 빌라

KANGNAMWON VILLA

우남용 / 가나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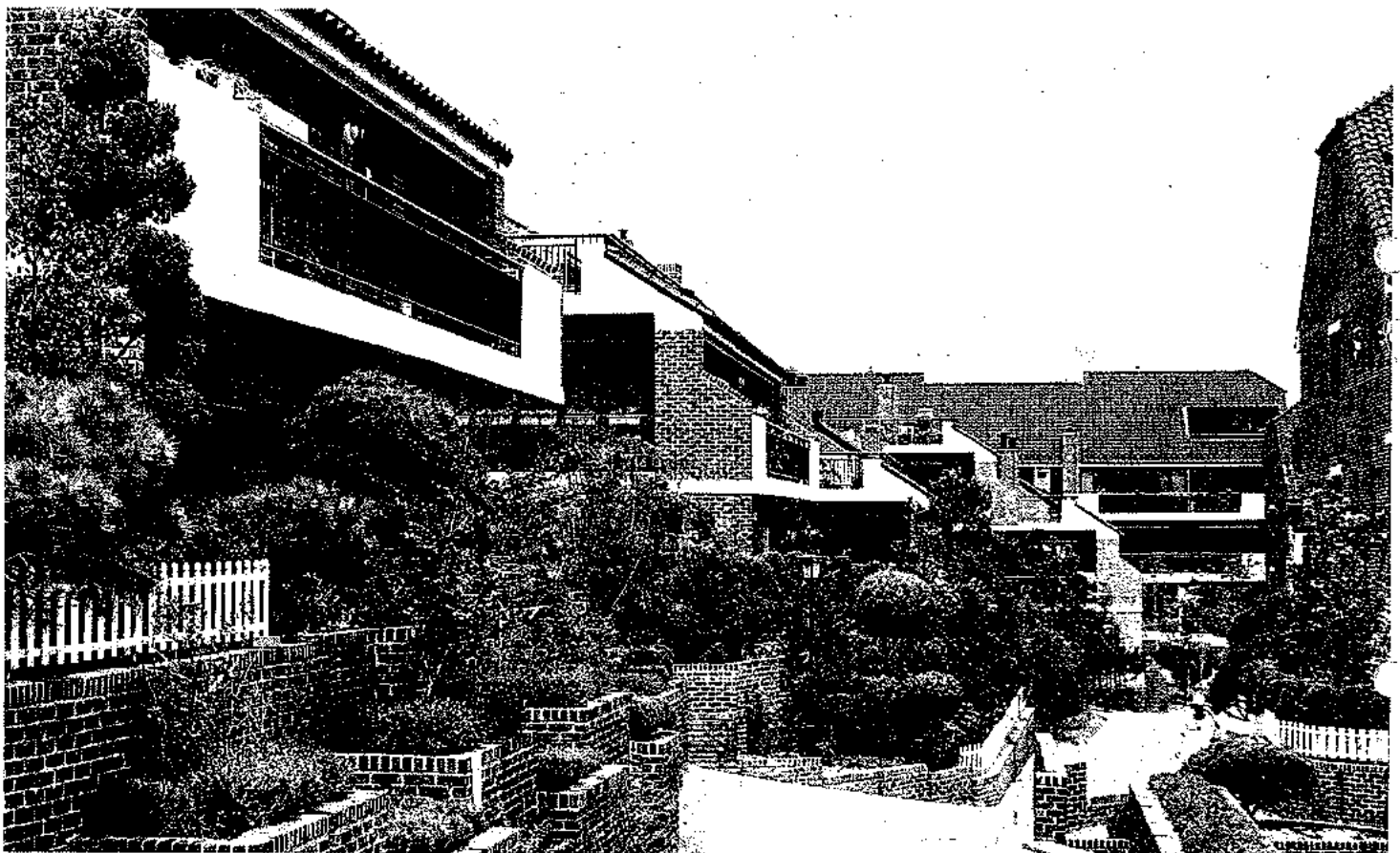
- 대지위치 : 서울 강남구 반포동
- 대지면적 : 19,866㎡
- 건축면적 : 5,464㎡
- 연 면 적 : 20,733㎡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세 대 수 : 88세대
- 주요외장재 : 붉은 벽돌치장쌓기, 스페니쉬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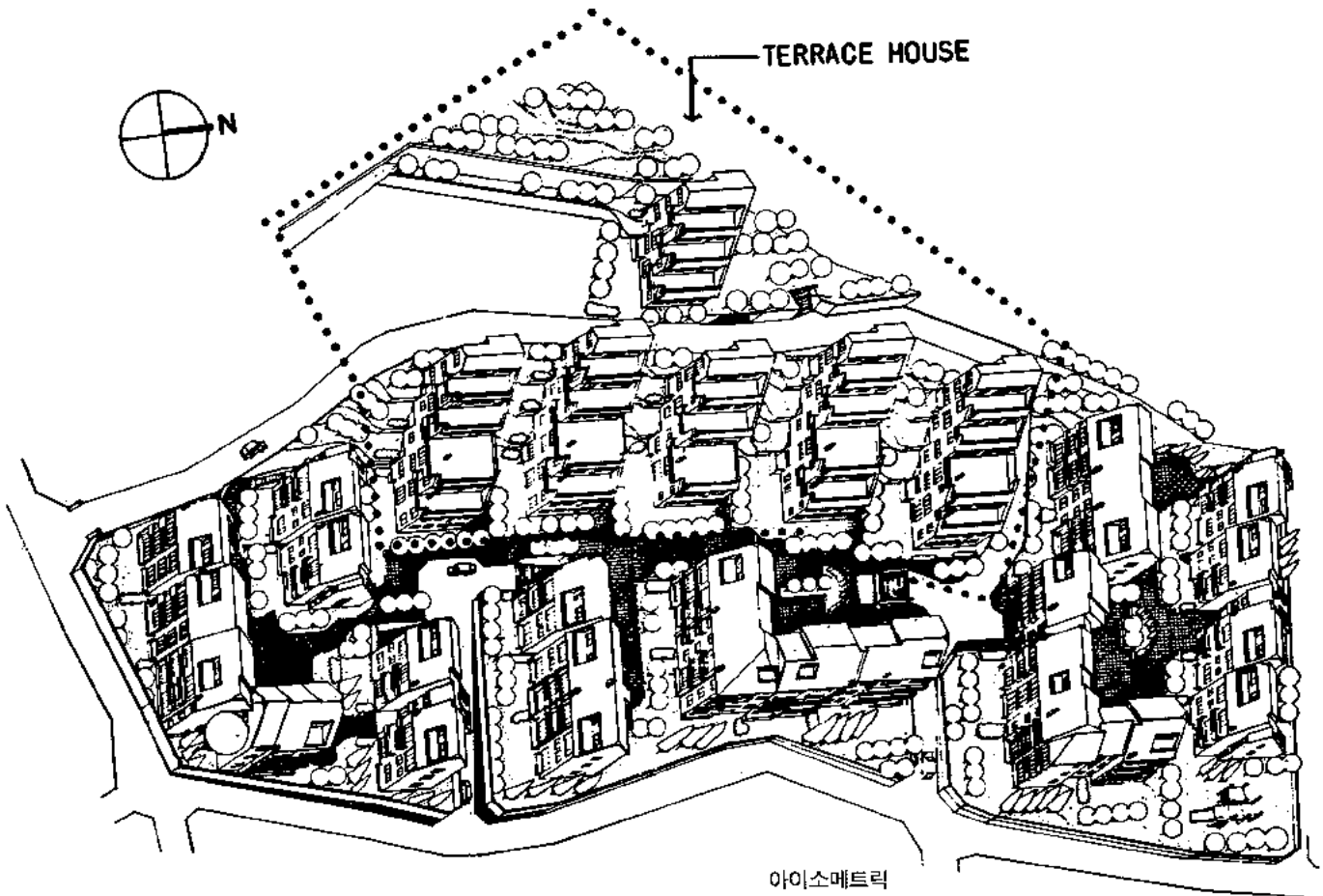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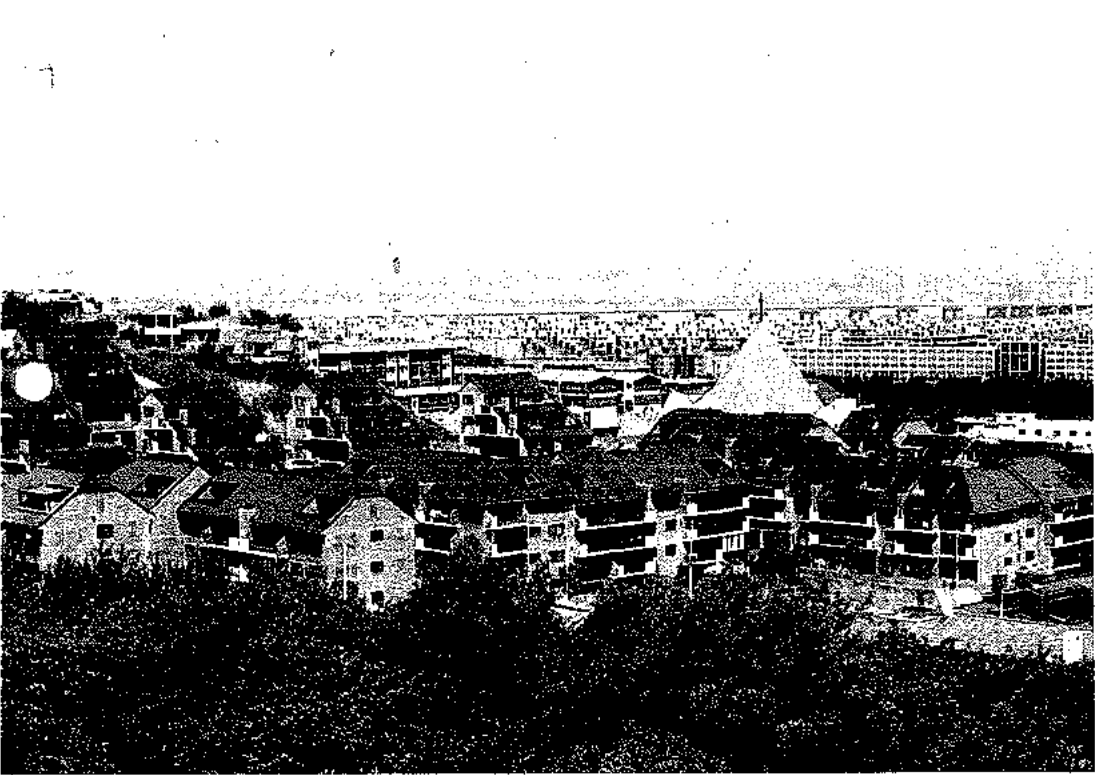
굴곡이 심한 급경사지, 정동향의 방위, 고도의 대지위치-설계자로선 이러한 조건이 해결키 어려운 고민거리였으나, 오히려 다양한 배치와 평면으로 공간의 변화와 융통성을 발휘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었다.

통풍조건이 좋은 급경사지에는 세대별 전용정원을 마련할 수 있는 테라스 하우스를 구상하였고, 평지에는 직선배치로 인한 획일성을 탈피하고, 자연스런 공간형성을 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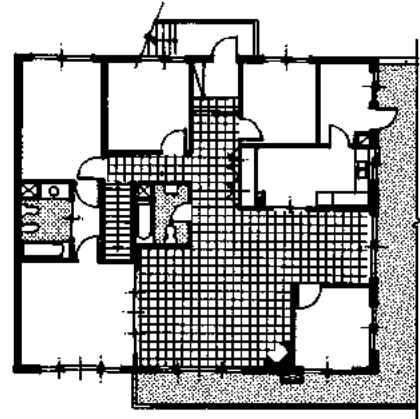
단지의 동선은 차량과 인간의 교차를 최소화함으로 하기 위하여 단지 외곽으로 흐르는 차량과 지하주차장으로 나누어 계획하였으며, 단지 내에서는 이웃간의 친숙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장소로서 정원과 휴식공간, 놀이공간 등을 충만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요즘 흔히 대할 수 있는 좁은 대지의 높은 효율성을 위하여 획일적인 구성, 배치로 설계된 연립주택과 비교하여, 설계자는 굳이 "강남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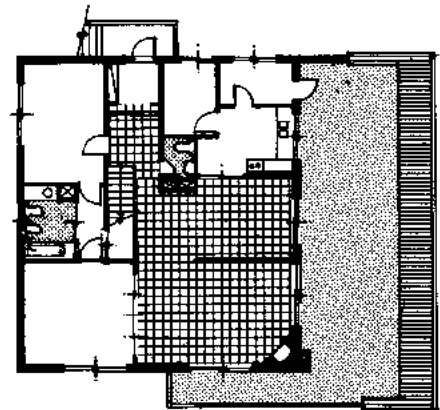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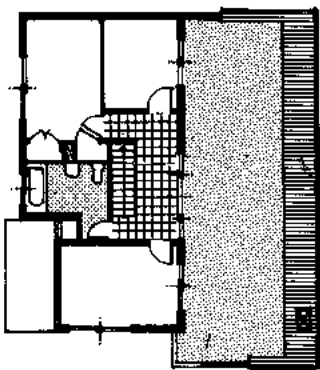
아이소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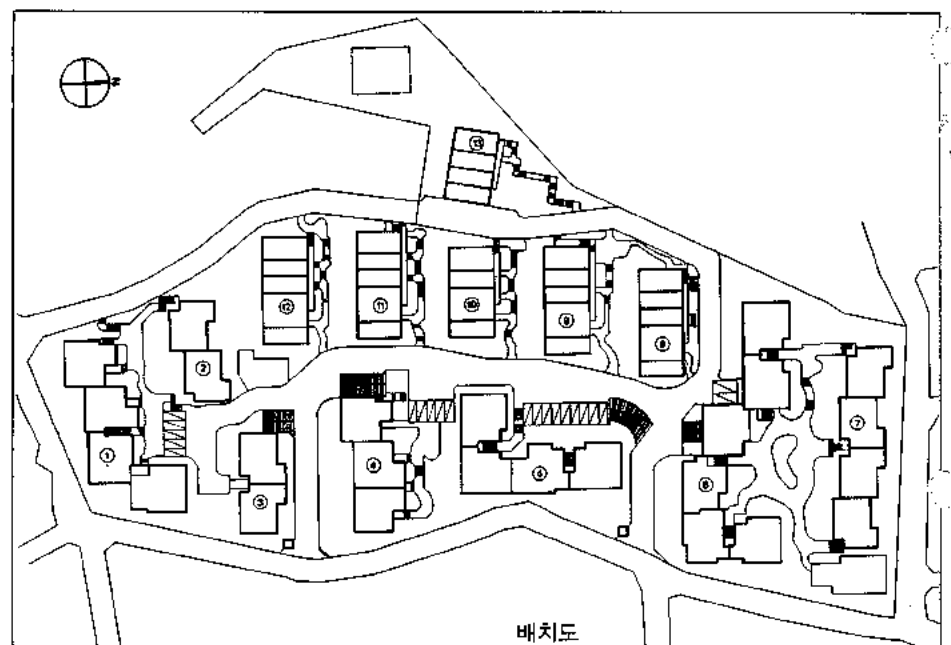
테라스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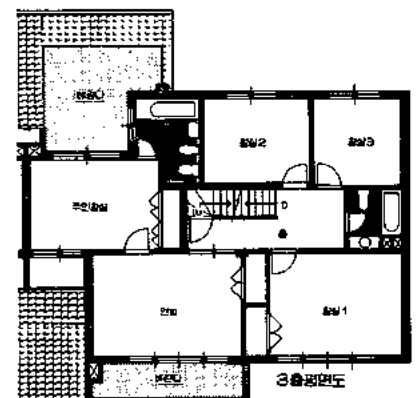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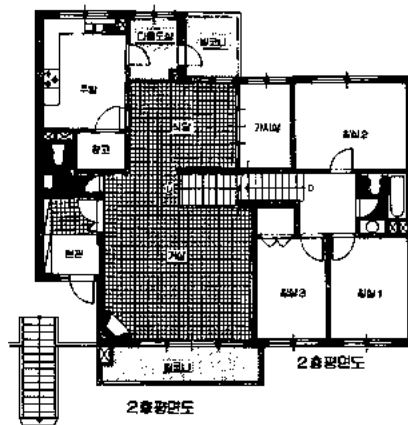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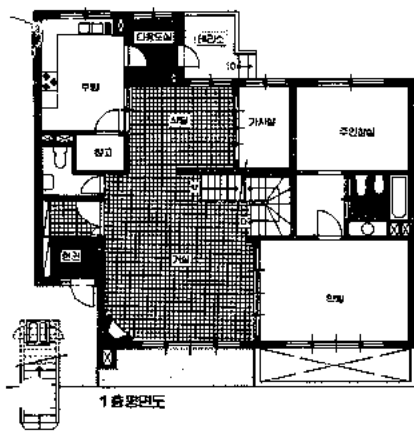
테라스 1층 평면도



테라스 2층 평면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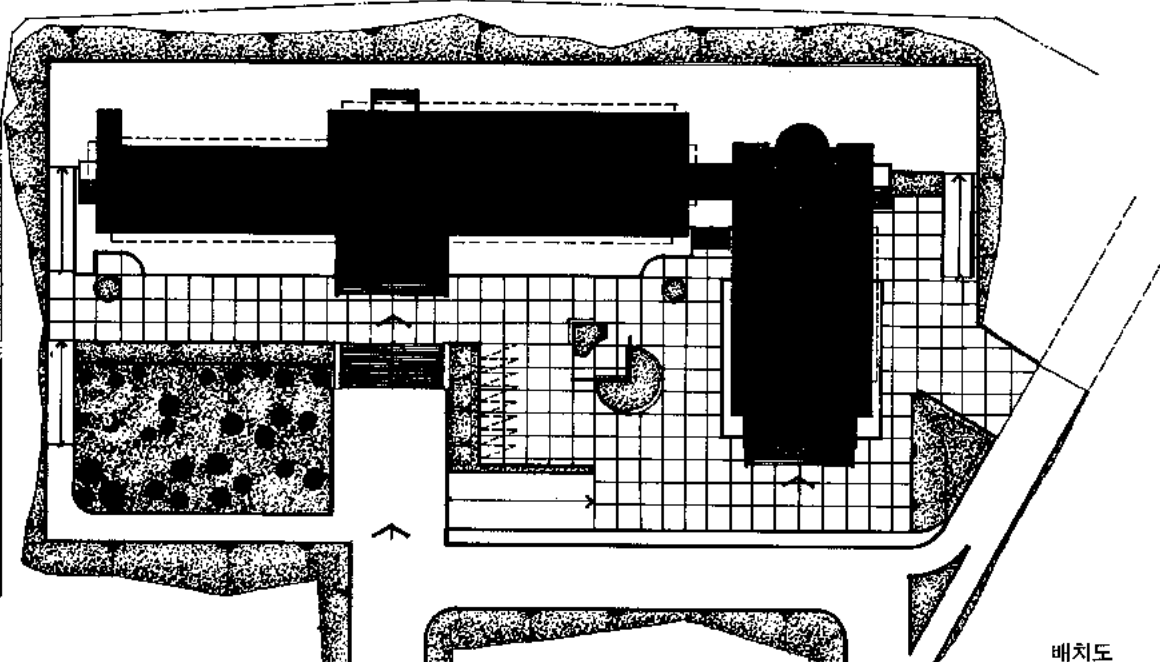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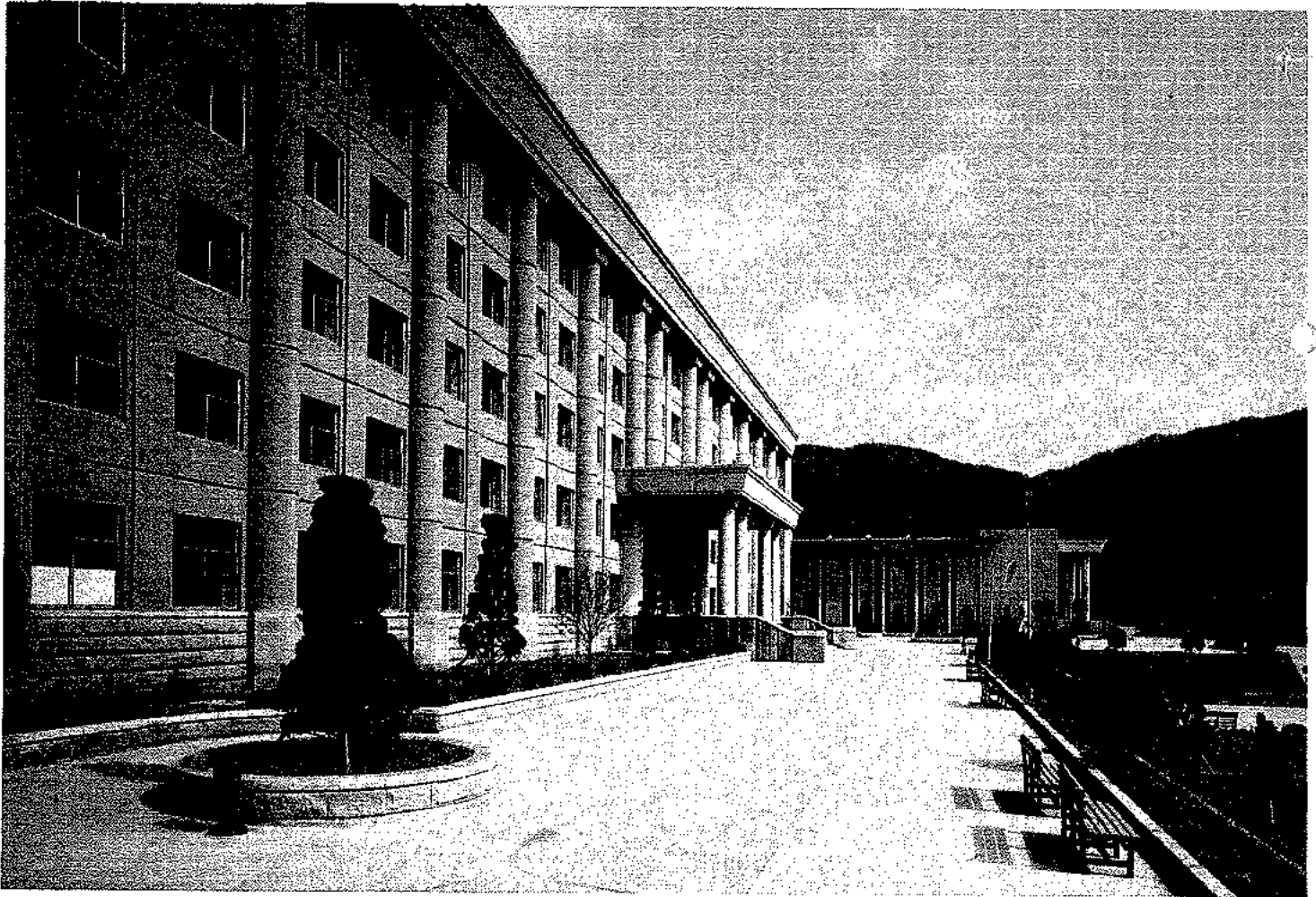
DUPLUXE형 평면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문리과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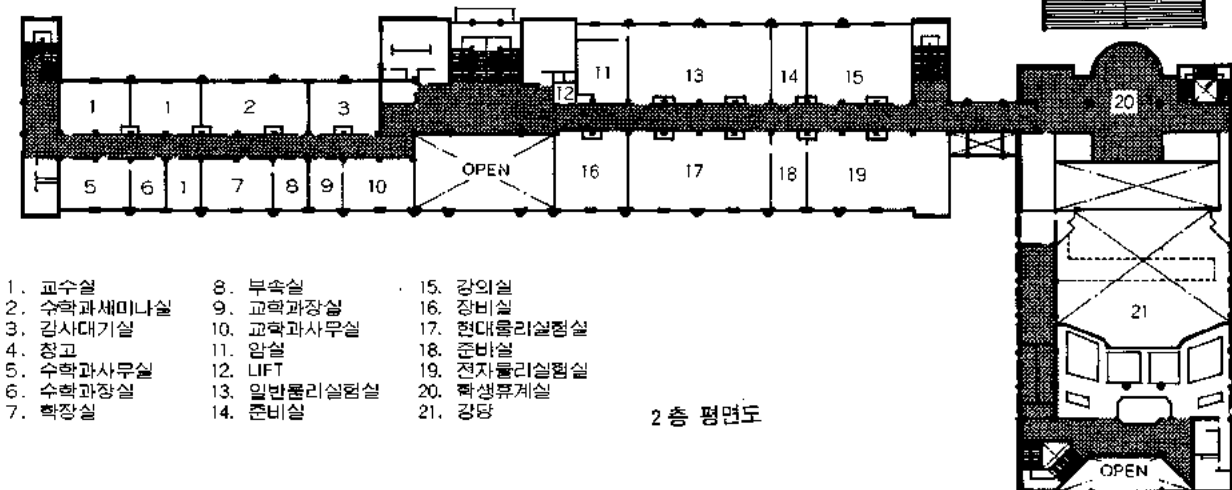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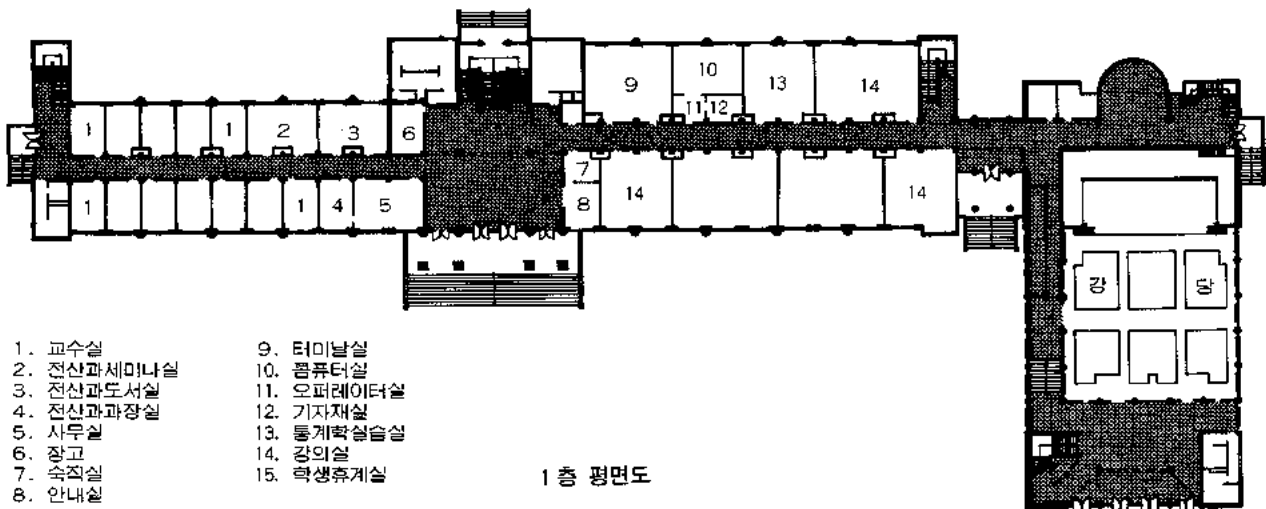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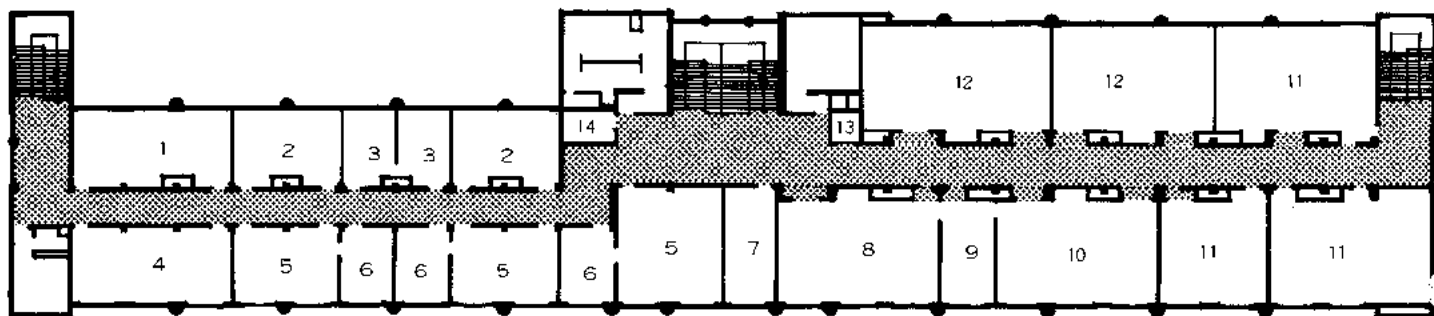
이규창 / 우일건축사사무소

-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 대지면적 : 27,308㎡
- 건축면적 : 3,751.72㎡
- 연 면 적 : 13,168.45㎡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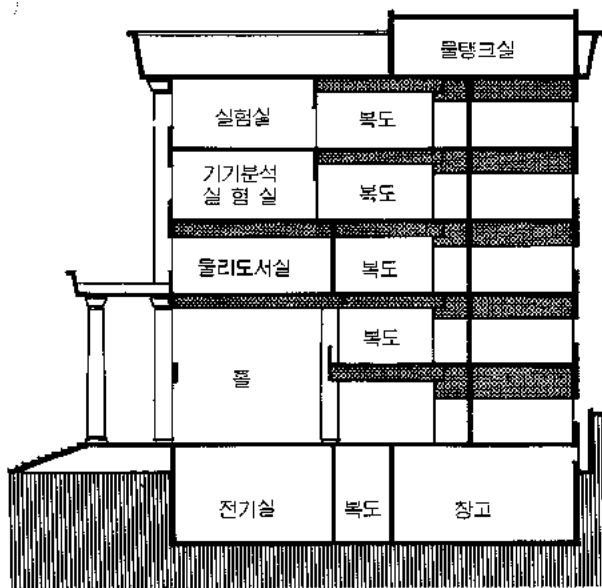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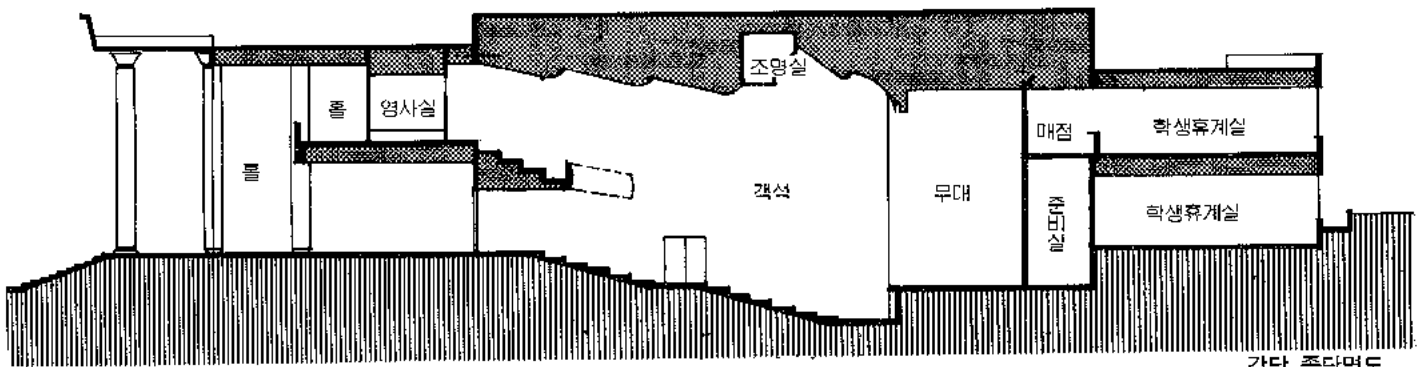




- | | | |
|-----------|-------------|---------|
| 1. 교수회의실 | 7. 인화물집 | 13. UFT |
| 2. 대학원실험실 | 8. 실험준비실 | 14. 창고 |
| 3. 대학원연구실 | 9. 전광실 | |
| 4. 교수휴게실 | 10. 유기화학실험실 | |
| 5. 교수실습실 | 11. 강의실 | |
| 6. 교수실 | 12. 일반화학실험실 | |



강의동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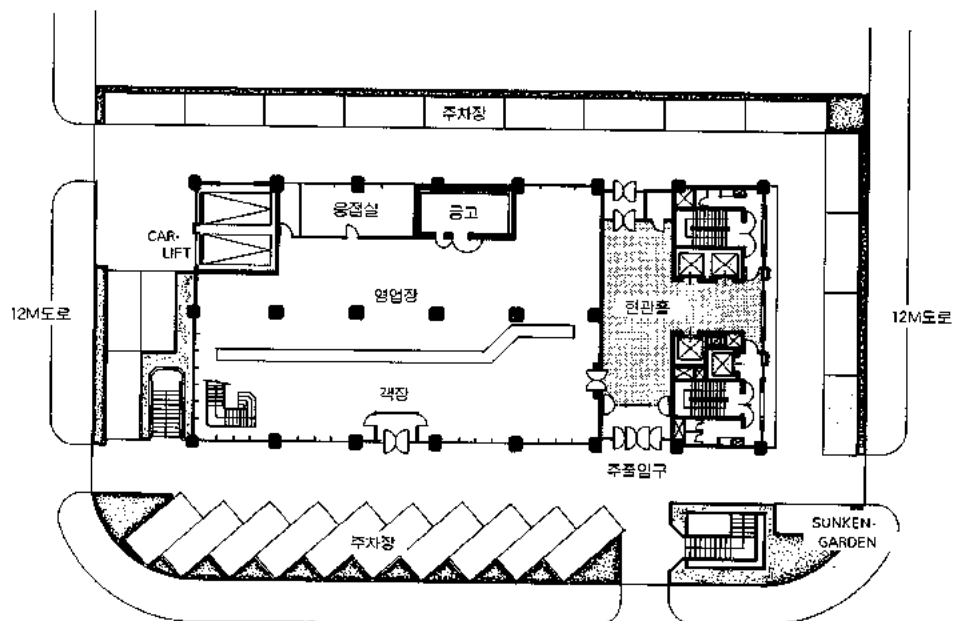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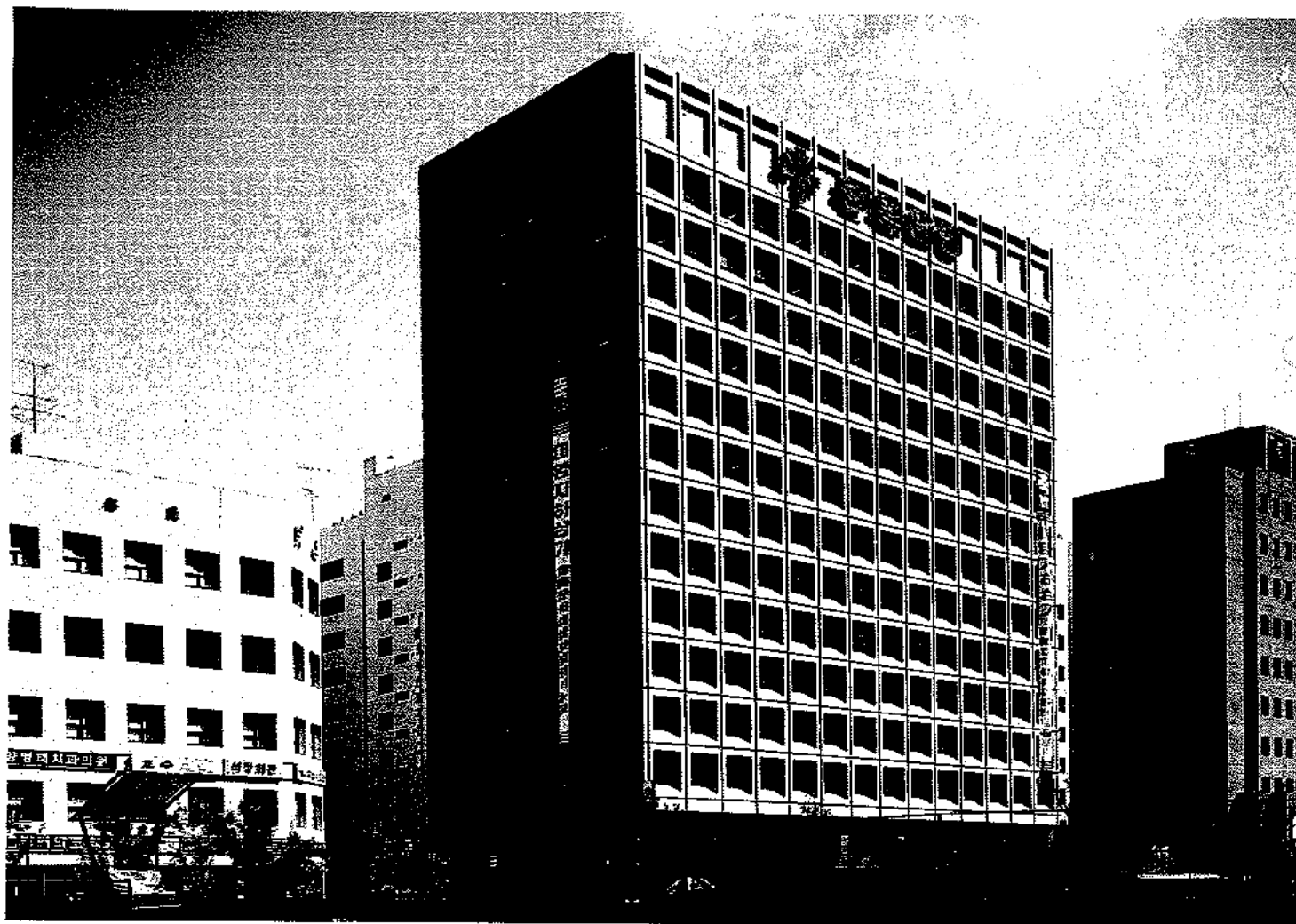
강당 종단면도

대영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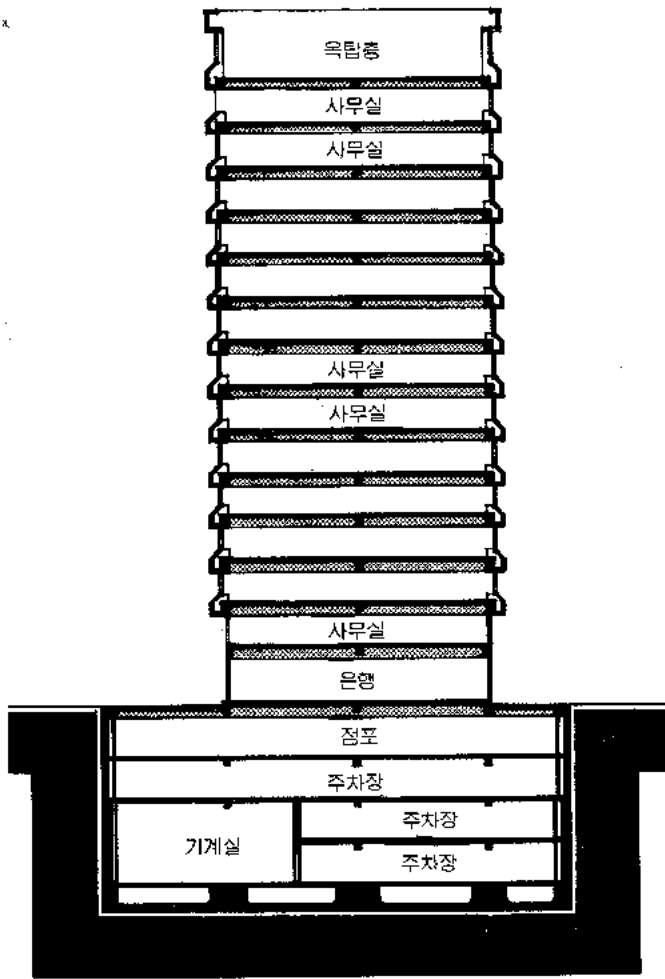
DAE YOUNG BUILDING

김무영 / 한국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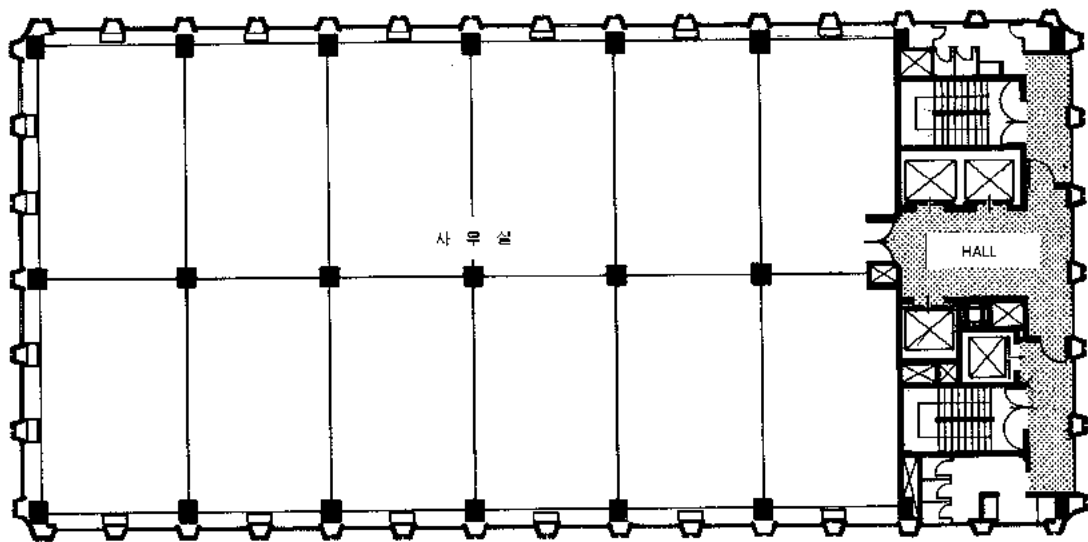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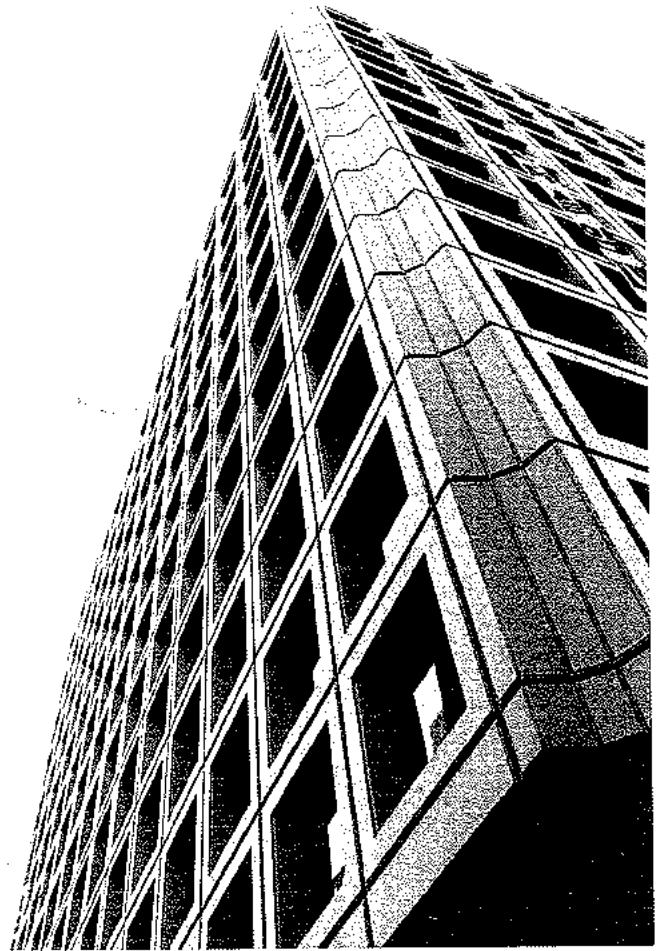
- 대지위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
- 대지면적 : 1,920.5㎡
- 건축면적 : 938.8㎡
- 연 면 적 : 19,637.86㎡
- 건물규모 : 지하4층, 지상15층
- 주차능력 : 옥외27대, 옥내81대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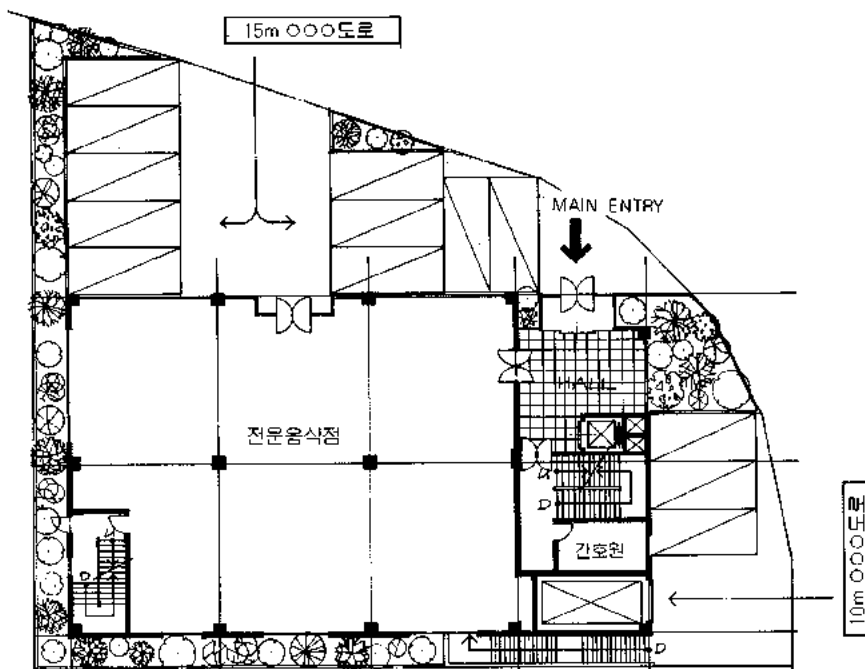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태아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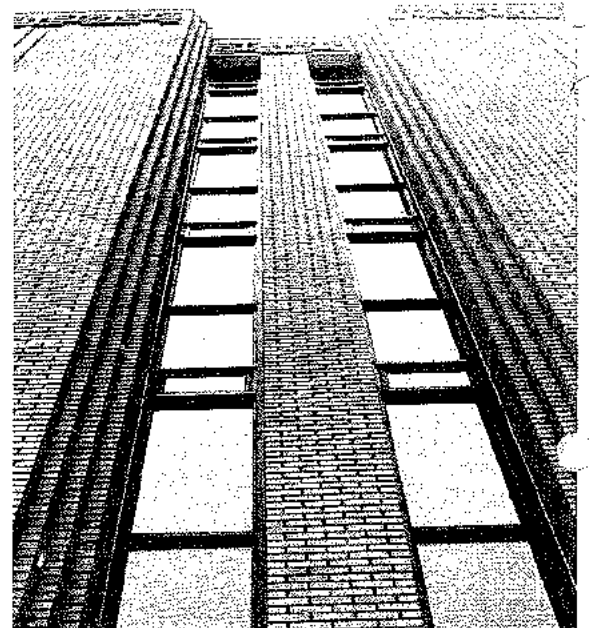
TAE-AH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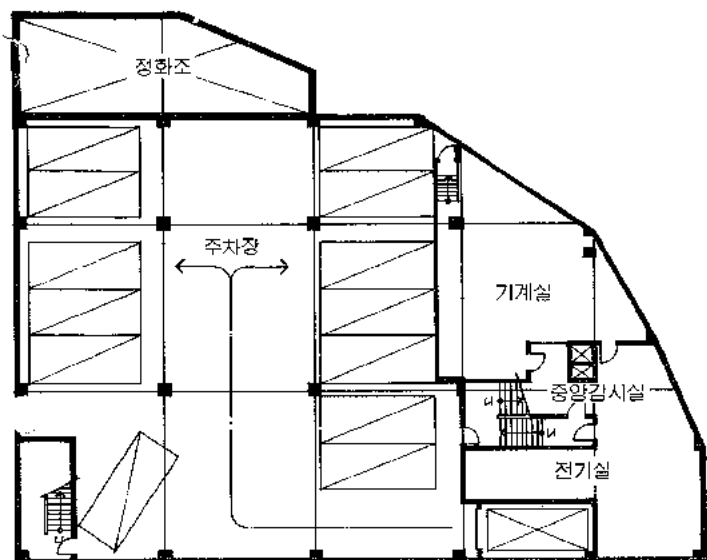
정용찬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대지위치 : 서울 강남구 서초동
- 대지면적 : 1,091.91㎡
- 건축면적 : 620.86㎡
- 연 면 적 : 4,993.82㎡
- 규 모 : 지하 2층, 지상 6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외부마감 : 적벽돌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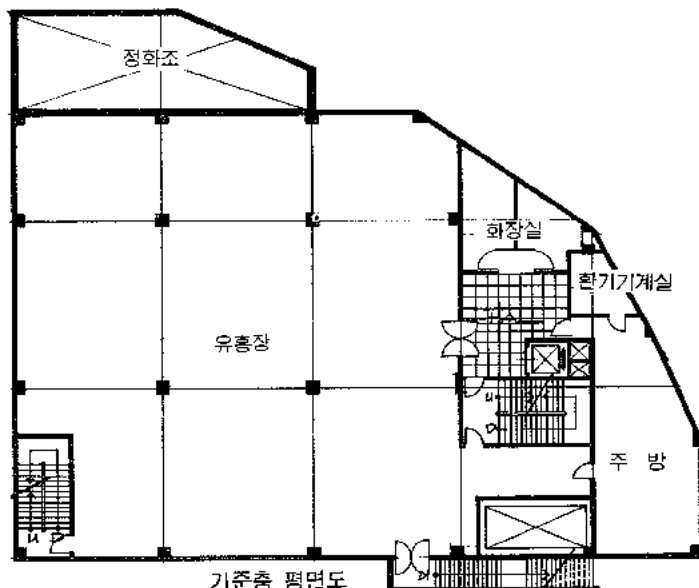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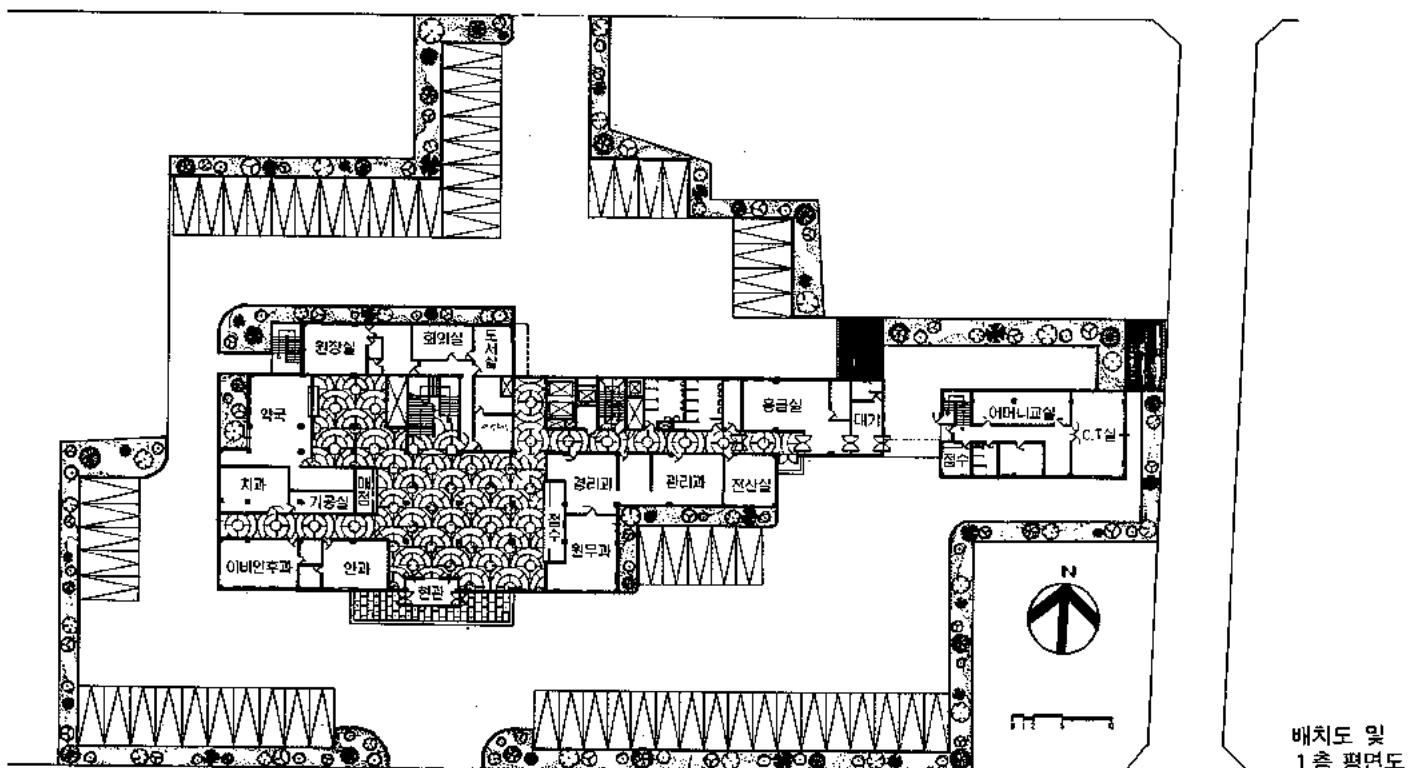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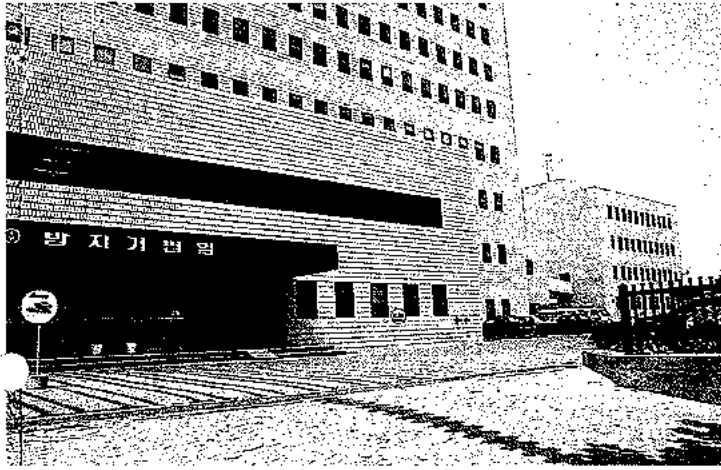
방지거병원 및 간호원기숙사

ST. FRANCISCO GENERAL HOSPITAL
AND NURSE DOMITORY

공일곤+문병국 / 향종합건축사사무소

- 대지위치 : 서울 성동구 구의동 244-5
- 대지면적 : 4,696㎡
- 건축면적 : 1,491㎡
- 연 면 적 : 10,654㎡
- 규 모 : 지하2층, 지상9층
- 외장재료 : 자기질 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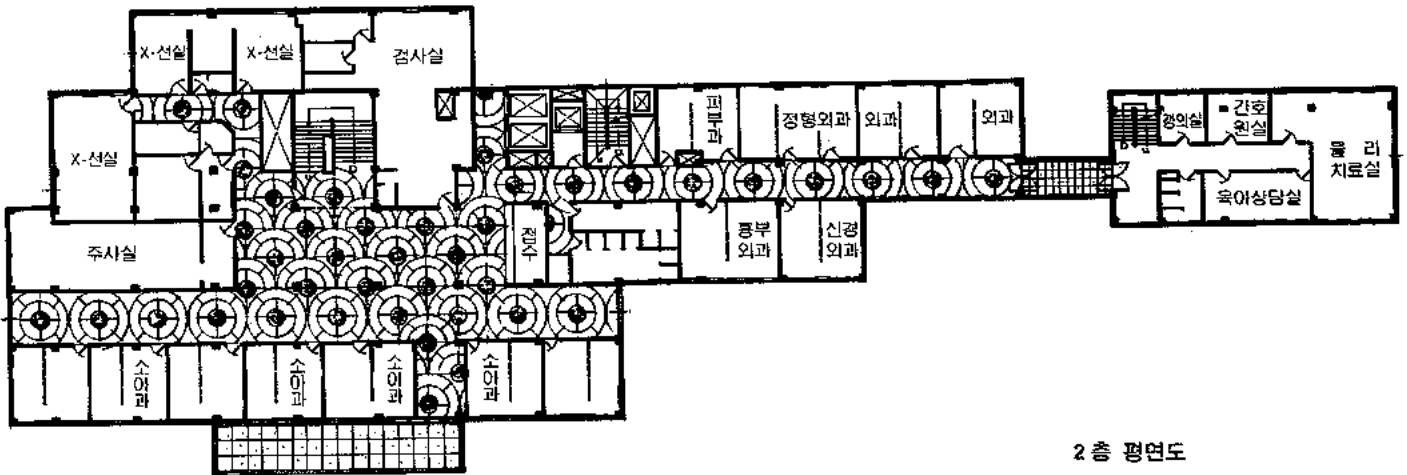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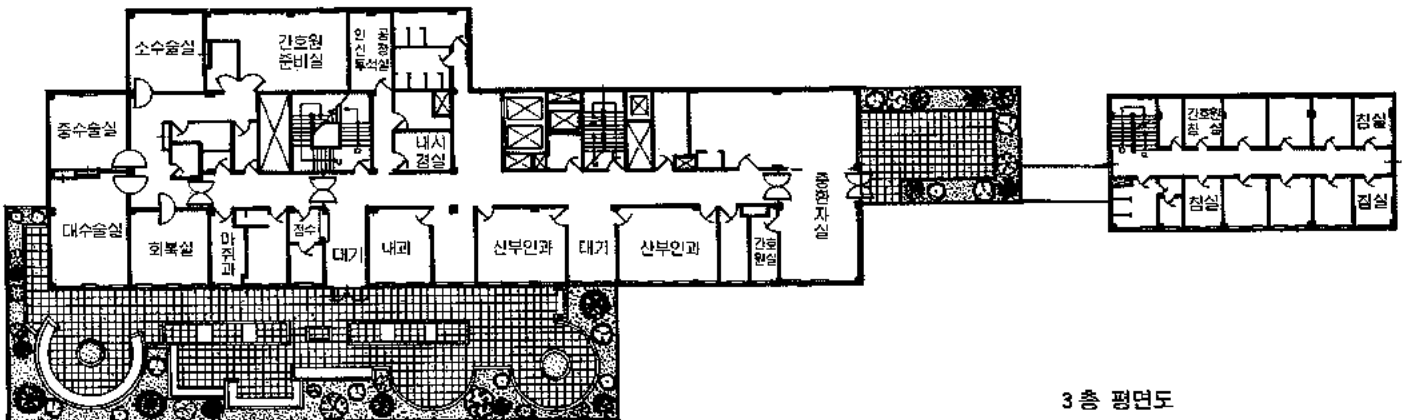
어린이들의 진료·치료 및 미숙아와 산모의 보건을 위주로 하는 어린이 전문병원이다. 1, 2층 저층부는 외래환자진료 및 관리시설, 3층은 수술부, 4층은 분만실 및 미숙아실, 5-9층은 병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 병원으로써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각층마다 바닥재, 문, 표지판 등의 색깔에 변화를 주었으며 유희실, 놀이터, 옥상 광장(2층) 등을 마련하였다.

간호원 기숙사는 4층으로 병원 건물과 over bridge로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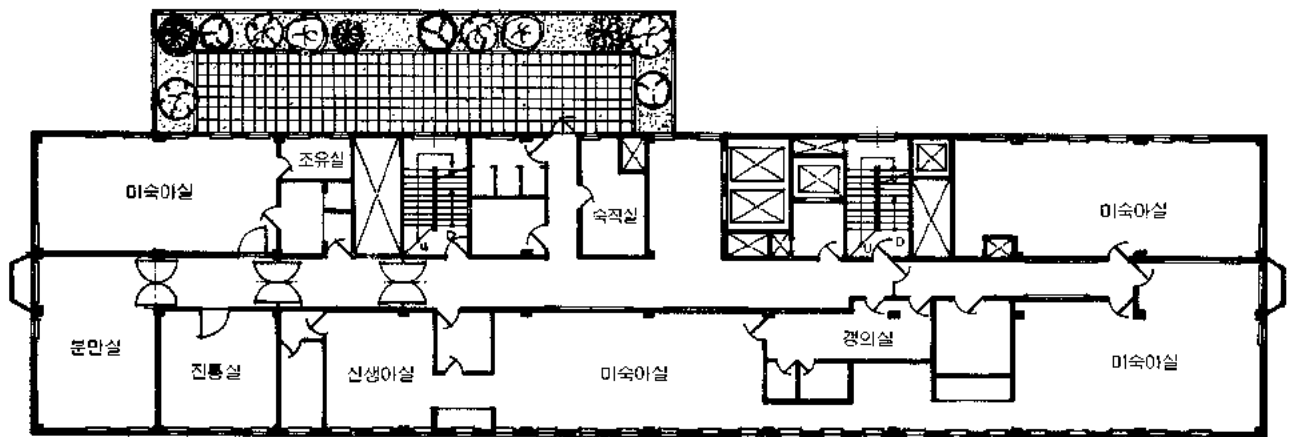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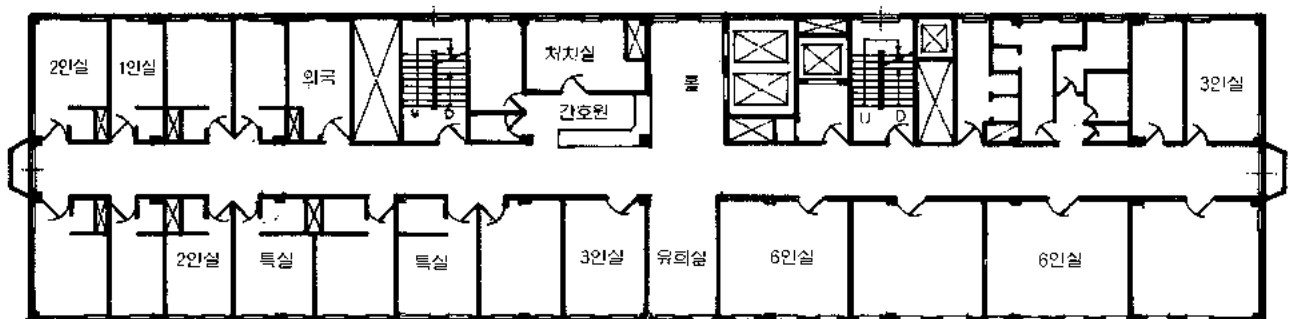
3층 평면도



1층 로비



4층 평면도



5층 평면도

제3회 諮問委員會 개최

본협회 歷代 會長으로 구성된 諮問委員會가 7월16일 오전 11시부터 吳雄錫 회장의 주재하에 회장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諮問委員會에서는 協會運營 全般의인 事項과 특히 福祉會의 운영상 문제점과 회원의 老後對策, 비위회원에 대한 善導方案, 諮問委員會의 효과적 인 운영방안 등이 약 2시간에 걸쳐 진지 하게 논의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張起仁, 姜明求, 李圭福, 金斗燮, 金萬盛, 具玠會, 金枝泰 前會長들과 金基壽 副會長이 참석하였다.

朴英秀 住宅公社 社長 本協會 訪問

朴英秀 住宅公社 社長이 8월 1일 오후 李和永 同社 副社長의 영식과 李春相 서울支部長의 愛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다가 本協會를 방문, 吳雄錫 會長과 잠시 談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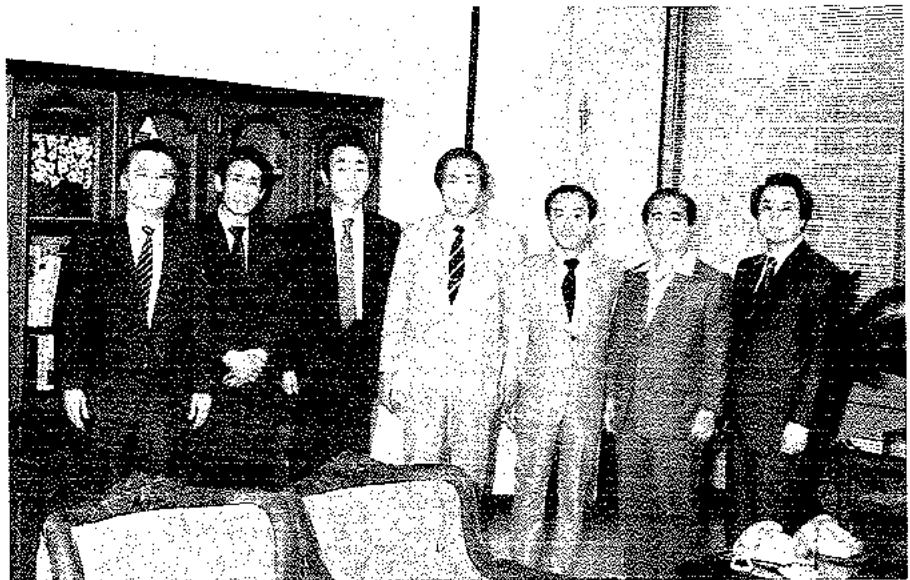
이 자리에는 住公의 李和永 부사장과 辛在成 감사, 그리고 本協會의 金基壽 부회장과 李春相 서울지부장 등이 席하였다.

日本建築界視察團 出國

本協會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日本建築界 視察團 제1진 18명과 제2진 17명이 日本建築士會聯合會의 초청을 받아 8월10일과 11일 KAL 기편으로 각각 金浦공항발, 出國하였다.



자문위원회의



좌측에서 세번째분이 本協會 吳雄錫 會長, 네번째분이 朴英秀 住宅公社 社長

이들 視察團 일행은 6박7일간 일본에 머무르면서 도쿄, 하코네, 아타미, 교토, 나라, 오사카 등지의 建築界를 査한다.

의 입장을 개진하고 또한 건축사 행정처분에 따른 건축사의 보호조치에 대하여 강력히 건의함과 아울러 各廳廳 建築審議委員會에 建築士가 많이 與할 수 있도록 하여 줄것을 건의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지부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서울시 조례를 개정할 때도 서울시 支部와 사전 의견교환 및 證을 하겠다는 答을 하였다.

서울시에서는 또한 IBRD, IMF 총회에 대비하여 범시민 論議가 운동에 能단체로서 서울시 지부도 極 與하여 줄것을 證하였다.

支部消息

서울特別市支部

서울特別市와 建築 전반에 及한 懇談會 7월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廳 회의실에서 李春相 서울특별시 지부장을

비롯한 支部 幹事들과 서울시 關係官이 與한 가운데 서울시 建築行政 全般에 及한 談會가 개최되었다. 이 談會에서는 특히 건축사 대행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분리 시행에 따른 支部



기념촬영 (仁川支部)



本協會 대강당에서 거행된 이흥화 군과 이수경 양의 결혼식

李春相 서울支部長 令愛 華燭

大韓住宅公社 李和永 副社長의 영식 흥화군과 李春相 서울特別市支部長의 영애 수경양이 화혼을 맺었다.

8월1일 오후2시, 본협회 대강당에서 백재문화원원장 李崇寧 박사의 주례하에 성대하게 거행된 이날 예식에는 6백여명의 賀客이 운집, 이들의 華婚을 축하했다.

仁川直轄市支部

日本・中華民國 建築界 視察

仁川直轄市支部 (지부장 高昌永)의 회원 16명이 제1차로 6월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日本과 中華民國 建築界를 시찰하고 돌아온데 이어 제2차로 7월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 19명의 회원이 日本과 中華民國 建築界를 시찰하고 돌아왔다. (p. 24 참조)

부조리건축 척결 教育

支部 회원 전원인 仁川市 건축직 공무원과 7월4일 오후 2시부터 인천시청

제1회의실에서 실시된 건축분야 부조리 척결대책 및 건축행정에 관한 교육에 참석하였다.

이날의 교육과목은 건축분야 부조리 척결대책, 건축허가시 에너지 절약계획, 국민편의를 돕는 1백가지 시책추진 등의 내용으로 짜여졌으며 이강은 인천시 건설국장과 건축과장, 주택과장 등이 강사로 교육을 맡았다.

仁川消防署와 연석간담회

7월26일 오후 2시부터 인천소방서 강당에서 전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 부조리 요인및 개선책, 애로사항 상호협의 등을 의제로한 인천소방서 공무원과의 연석간담회를 가졌다.

木看板 부착

7월25일, 지부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부가 제작 배부한 전국 통일 규격 木看板을 부착하였다.

全羅北道支部

거리질서 계도 캠페인

全羅北道支部 (지부장 金炯直) 임직원 일동은 7월22일 오전 8시30분부터 支部 건물에 서있는 西老松洞 일대에서 약 1시간에 걸쳐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啓導 캠페인을 벌였다.

'85夏季 精神教育

7월2일, 7월9일, 7월12일 등 3회에 걸쳐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화실천을 위한 교육을 반복 실시하였다.

7월1일과 7월18일에는 전형직 지부장과 양태순 사무국장이 공중도덕,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내용으로 임직원에게 각각 정신교육을 실시하였다.

全羅南道支部

'85夏季 道支部任員 經濟教育

全羅南道支部 (지부장 趙春元)는 7월9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반동안 支部會議室에서 支部任員에 대한 경제교

육을 실시하였다.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 건전휴가 보내기, 건축사법 시행규칙 설명 등을 교과목으로 趙春元 지부장이 강의를 맡은 이 교육에는 임원 6명, 본소장 3명, 정화위원 2명, 역대지부장 6명 등 모두 17명이 참석하였다.

'85夏季 建築士補 교육

7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지부회의실에서 建築士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夏季 公職者 정신교육 쇄신기간설정·추진계획에 외거 실시한 이날 교육에는 회원 사무소에서 建築士補 1명씩 총 88명이 참석, 교육을 이수하였다.

이날의 교육은 건축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신뢰받는 建築士像을 확립하고 아울러 건전한 建築風土를 조성·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반공영화 관람, 안보의식 고취

7월 9일 오후 6시 30분부터 직원 전원이 무등극장에서 상영중인 영화 「죽음의 들판」(Killing Fields)을 관람하였다.

「죽음의 들판」은 공산치하의 캄보디아 국민의 참혹상을 그린 것으로 文化公報部가 <6.25> 35주년을 계기로 국민의 반공의식 고취와 확고한 국가관 정립을 위해 긴급 입수한 기록영화적 성격의 반공 영화이다.

慶尙北道支部

직원 精神教育 실시

慶尙北道支部(지부장 金永吉)는 7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지부 사무실에서 이재화 사무국장을 강사로 지부직원에게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민원업무의 친절·신속처리, 건전휴가 보내기, '85 하곡 수매가 결정배경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支部長, 道知事감사패 수상

金永吉 지부장이 지방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쌓아온 업적과 道民體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



2척의 「통통선」에 분승, 낚시터로 떠나고 있는 회원들(제주도지부)

어 慶尙北道 知事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7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慶尙北道는 도청 대강당에서 8개市·24개郡의 건축관련 공무원 1백50여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市郡常設點檢班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 자리에 招請 받은 金永吉 지부장이 교육에 앞서 道知事를 대리한 道建設局長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은 것.

뒤이어 진행된 교육은 道住宅課長에 의해 주재되었으며 각市郡 建築係長이 차례로 나와 각종 건축부조리 事例發表를 하는 順으로 이어졌는데 이에 대한 金永吉 지부장의 의견발표의 順도 마련 되어 있었다.

金永吉 지부장은 이날 교육에 전성팔 간사와 이재화 사무국장을 대동하였다.

濟州道支部

「都市와 色彩」 講演會 개최

濟州道支部(지부장 梁昌完)는 7월 1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제주 도청 대강당에서 「都市와 色彩」를 주제로 한 講演會를 개최하였다.

서울대학교 유근준 교수(서울시 건축심의위원)를 演士로 초빙 실시한 이 講演會에서는 선진 외국 건축물의 色彩와 국내 건축물의 色彩에 대한 비교분석을 곁들인 슬라이드 상영도 있었으며 지부 회원과 회원사무소 보조원 85명을 비롯, 도시군 건축행정 공무원 20명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3시간 50분동안의 講演이 끝난 다음 6시부터 1시간 30분동안 같은 장소에서 淨化 차원에서의 회원에 대한 精神教育을 겸한 건축행정 공무원과 지부회원의 연석간담회도 실시하였는데 행정절차상 회원의 애로사항 건의 등 격의없는 의사교환이 이루어져 對官廳과의 친선도 모에도 한 몫을 하였다.

'85夏季 公職者 경제교육 실시

7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임원실에서 '85 하계 공직자경제교육을 실시하였다. 문자원 간사 임회하에 홍진호 사무국장이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강의내용은 우리 경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인구문제 등이었다.

직원 精神教育 실시

7월 9일 오전 9시부터 약 30분동안 직원실에서 소비절약과 저축, 거리질서 확립, 오늘의 북한, 하절기 기강확립 등 職員精神教育을 실시하였다.

會員親睦 낚시대회 실시

7월 27일, 회원과 직원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원한 바다에서 회원친목 낚시대회를 실시하였다. 북제주군 한림읍 협재리 소재 비양도 근해에서 펼친 이날 낚시대회에서는 대어상을 김영식 회원이, 중량상을 고정식 회원이, 수량상을 김평남 회원이 각각 차지하였다.

仁川支部會員, 日本・中華民國建築士와 懇談

1. 日本建築士와 懇談

문 1) 일본 건축사의 인원현황은?

日建聯: 85년 현재 1급회원이 150,000명, 2급 회원이 350,000명으로서 전체의 약 29%정도가 설계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약 10만 여개의 설계사무소가 있다. 1년에 건축사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수의 약 12%정도가 면허를 취득하고 있으므로 매년 많은 건축사가 배출되고 있다.

문 2) 건축사사무소의 규모 및 직원구성 현황은?

日建聯: 직원없이 건축사 혼자서 운영하는 사무실로부터 직원이 천여명에 이르는 대형사무실에 이르기까지 천태만상이다. 일률적으로 구분하여 이야기하기 곤란하다.

문 3) 건축사사무소의 수탁업무별 전문화의 정도는? 수탁업무의 종류에 대한 법적규제 같은 것은 없는지?

日建聯: 한국의 1, 2급 건축사에 대한 업무구분과 같은 법적규모 이외에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법적규제는 없으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전문적인 건축물만을 취급하는 사무소들도 있다.

문 4) 일본에서도 토지거래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가?

日建聯: 그러한 법률은 없다.

문 5) 건설자재전시장이 있는곳은?

日建聯: 하루미에 있는 건축센터에 상설전시장이 있다.

문 6) 현재 일본의 주택 보급현황은?

日建聯: 주택의 보급률은 1.08/세대당으로서 공급이 초과되는 상태이며 호수의 증가보다는 세대당 면적의 증대요구가 높고 있는 추세이다.

문 7) 임대주택의 건설현황은?

日建聯: 분양주택은 젊은층의 구입자가 평생을 두고 융자금을 갚아야 되는 부담으로 임대주택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문 8) 임대주택의 건설주체는?

日建聯: 매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민간업체의 건설이 곤란해져 공공건설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 9) 주택건설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日建聯: 도시 주택건설은 민간개인주택이 주거 생활이라는 차원보다는 재산이라는 관념이 강해지고 있으므로 해서 주택이 단지 취침만을 위한 공간과 재산으로서의 가치만을 위해서 25평 미만의 대지로 분할되어 20평 미만의 주택들이 건설되는 실정이라서 이것이 문제이다.

문 10) 그렇다면 대지의 최소한도 같은 규정은 없는지?

日建聯: 전폐율 60%라는 규정외에는 없으므로 인접대지의 사용승락을 득한후 건설완료하여 되돌려주고 또 그 인접대지는 그 옆의 대지를 사용 승락받고 또 되돌려주고 하는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문 11) 모범적인 주거단지가 있다면 돌아보고 싶은데 한곳 추천바란다.

日建聯: 동경에는 추천할 만한 주거단지가 없고 지방도시에 간혹 있으나 대부분 먼곳이다.

문 12) 주택건설의 가격정도는?

日建聯: 주택지의 가격은 100-200만엔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곤란하고 건축비는 통상 160만엔/평 정도하고 있다.

2. 中華民國建築士와 懇談

문 1) 貴 건축사협회는 언제 설립이 되었는가?

中建士: 지금으로부터 약 5년전에 설립이 되었다.

문 2) 지부가 몇군데이며 전국 회원수는 몇명 정도인가?

中建士: 현재 지부는 3개소가 있으며 회원수는 1,600명정도이다.

문 3) 이곳의 현재 건축경기는 어떠한가?

中建士: 건축경기는 별로 좋지 못하다.

문 4) 건축사 자격취득은 어떤가?

中建士: 대학을 졸업한후 2년 경력을 쌓은 후 응시자격이 있으며 면허를 취득한후 다시 2년의 경력이 있어야만 사무소 개설을 할수 있다. (단, 고졸은 자격이 없다)

문 5) 군복무 관계는?

中建士: 의무제이며 2년제와 3년제가 있으며 복무연수는 재비뿔기를 하여 2년과 3년을 결정짓는다.

문 6) 연간 설계면적 설계비 일인당 소득액은?

中建士: 1년간 설계면적은 540,000㎡

1년간 설계비 300만 \$

1년간 1인당 소득액은 5만 \$

문 7) 여자건축사는 몇명인가?

中建士: 약 40명 정도다.

* 앞으로 우리 建築士에 대한 초청이나 건축물 탐방을 위한 여행이라면 中華民國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주선할것을 약속하였음.

중화민국 건축사협회 전국연합회 회장에게 기념패를 전달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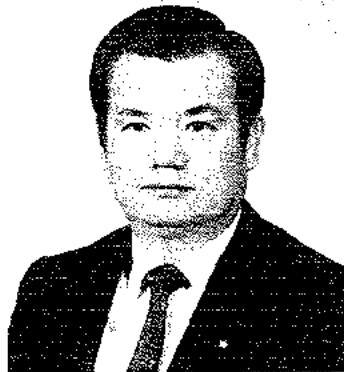
忠清南道支部篇

支部巡禮欄을 통하여 전국 회원과 지부 회원께 인사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며 현재와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20년동안 숱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꺾끗하게 지탱하여 왔을뿐 아니라,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國運과 함께 많은 발전을 하여왔고, 量 보다는 質을 논하는 현금에 온것은 선배님들의 무수한 희생의 대가로 여겨집니다.

특히, 忠南支部는 언어와 행동은 느리다고 표현되어 오지만 建築士 社會에서는 어느 지부보다 민첩하고 앞서가는 선진지로 조금도 손색없는 支部, 리드하는 支部로 발전하였다고 자부하며 이는 모두가 선배임원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화합의 결실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支部長 인사



閔榮基支部長

그러나 자람은 드렸지만 우리지부의 회원들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더러는 회생과 봉사과 사랑과 양보가 무엇인지 모르는 건축사도 있습니다. 나 밖에 모르는 에고이스트도 더러는 있습니다.

다. 사회는 공동체입니다. 사랑, 희생, 봉사없는 사회를 잠시 상상하여 봅시다. 몸서리쳐지는 戰後時代를 생각해 됩니다. 우리 모두 상호 행복의 조건을 찾는데 노력하여야 될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고 여겨집니다.

회원 개인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구 노력하는 자세, 안일과 무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우리들의 都市空間의 책임을 통감하고 다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21세기를 치달는 한국의 발전에 임익을 담당함을 자람으로 여기면서 성실하고 유능한 건축사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합니다.

끝으로 회원여러분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성공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심을 하느님께 기원합니다.

*現況

1965년 회원 22명이란 단출한 출발이 법률 제 1536호로 제정 공포된 建築士 法에 의거, 大田遞信庁 회의실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지부장에 양세환 회원과 간사 3명, 감사 2명을 선출하였다. 대전시 중구 대흥동 480 번지에 지부 사무실을 설치하고, 첫 출발을 한 이래 세번 지부사무실을 이전 하였으며 다시 1974년 7월31일자 대전시 중구 대흥동 487의 1번지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121 명의 회원이 대전을 비롯한 16개 市郡에 분포되어 지부 및 천안, 홍성, 부여 分所에서 圖書中告業務를 처리하고 있다.

*成長過程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創立會員 22명이 初代 양세환 지부장님을 주축으

로 일치 단결하여 우리 지부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 지역 건설의 일익을 담당하고 지부와 궁지로써 어느 단체보다 모범이 되는 길을 연구하던차 회원상호간 무모한 경쟁으로 세인의 지탄을 받고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1967년 大田建築士 共濟會로 발족하여 오늘날의 福祉會로서 발돋움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오늘의 복지회가 성장되어오기까지의 과정에는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회고하여 볼때 이는 회원 모두가 역대 支部長 및

任員을 주축으로 따라와준 결실이며 大田을 필두로 지방 회원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아니었던들 오늘이 있거란 실로 어려웠을 것이다.

더욱이 4·5대 지부장이었던 김종민 회원께서는 회관을 건립할 것을 결심하고 대전건축사공제회 재산조성금을 조성하여 공사를 착수한지 1년만인 1974년 7월 3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회관 준공식을 당시 韓昌鎭회장님과 각 시·도 지부장을 모시고 개관식을 성대하고 자랑스럽게 가졌다.

역대지부장

대 수	지 부 장
1 - 3	양 세 환
4 - 5	김 종 민
6 - 7	박 홍 우
8 - 9	류 근 열
10	민 영 기

임원현황

직 위	성 명	사 무 소 명	전 화	비 고
지 부 장	민 영 기	협창건축사사무소	253-3355 253-3356	당 진
간 사	박 장 용	박장용건축사사무소	22-4974	
간 사	원 유 택	원유택건축사사무소	22-0058 23-6307	
간 사	이 총 휘	이총휘건축사사무소	23-0419	
감 사	임 근 수	조형건축사사무소	23-7258	
감 사	류 성 회	류성회건축사사무소	22-8753	
감 사	육 이 창	육이창건축사사무소	2-2173 2-2553	
천안분소장	허 정 욱	미림건축사사무소		
홍성분소장	이 제 영	대흥건축사사무소		
부여분소장	권 백 순	권백순건축사사무소		

분소별 회원현황

분 소 별	전 속 사	2 급건축사	관 할 구 역
지 부 직 할	65	20	대전, 대덕, 금산
천 안 분 소	6	4	천안, 천원, 연기
홍 성 분 소	5	11	서산, 예산, 아산, 당진
부 여 분 소	5	5	홍성, 보령
계	81	40	부여, 서천, 청양, 공주, 논산

연도별 회원수 및 도서신고 현황

연 도 별	회 원 수	도서신고실적(제곱미터)
1971	52	446,632
1972	63	405,606
1973	72	767,517
1974	77	753,929
1975	85	818,871
1976	90	1,104,812
1977	95	1,417,435
1978	99	1,804,832
1979	101	2,090,457
1980	104	1,714,284
1981	107	1,641,572
1982	109	1,506,341
1983	109	2,025,864
1984	116	2,353,065

당시 韓昌鎭회장님의 격려사 가운데 하신 말씀이 기억이나 여기에 쓰고자 한다.

“建築士의 힘으로 전국에서 첫번째로 건립된 건축사회관 준공식을 맞이함에 이 건물이 우리 건축사의 힘과 맘으로 모래 한알 한알로 이루어졌음을 상기하니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롭다.”라는 말씀이 지금도 귓전에 맴돌고 있다. 이제 우리 忠南支部가 발족한지도 20년—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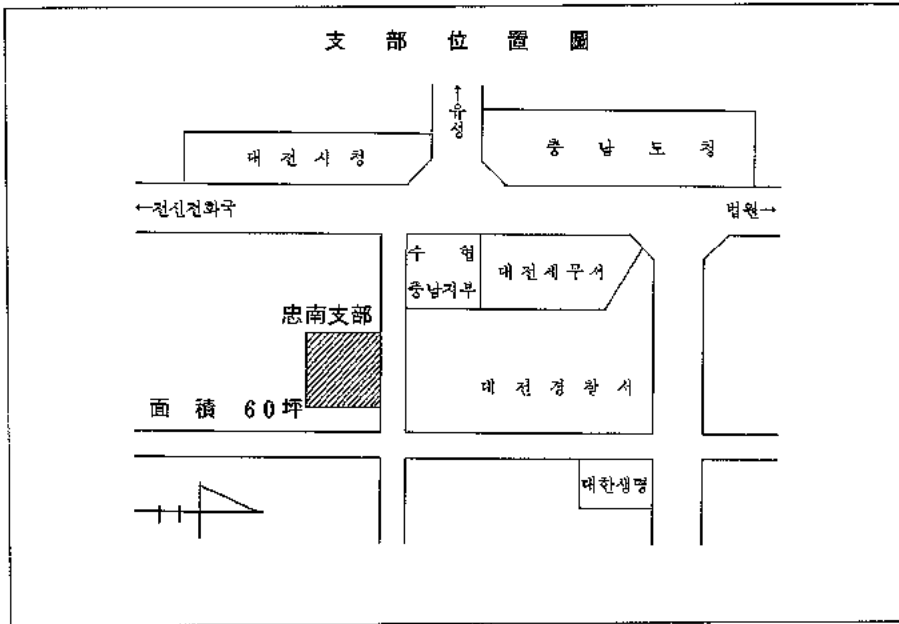
명의 회원이 121명이란 대가족으로 성년을 맞이하였다. 成年이란 어린시절을 다보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년다운 면모로 일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좀더 자중하고 협동하여 건축사만이 가질 수 있는 藝術人으로서의 자부와 긍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우리 충남지부의 성장 과정을 생각하니 창립 당시 어려웠던 여건하에서 중추

역할을 하시었던 회원중 유명을 달리하신 선배 회원님들의 존안이 떠오름을 금할길 없어 삼가 명복을 빈다.

* 운영방침 및 진로

지금까지 역대 지부장님을 비롯한 회원들의 협조로써 忠南支部는 계속 발전하여왔고, 앞으로 보다 나은 지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몇가지를 중점적



'85년도 始務式광경



'85농촌일손돕기 모내기광경



으로 시행코자 한다.

첫째, 회원들의 知合 團結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사업계획에 의한 고적답사, 연말 송년회 등을 통하여 과거를 되돌아 보고 내일의 설계를 위한 단합된 힘을 집약하도록 추구하여 나아간다.

둘째, 복지회 마을금고 운영을 통하여 老後對策基金을 축적, 회원들의 생활 안정을 갖도록 노력한다.

셋째, 회원들의 權益伸張과 地位向上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항상 회원들과 대화를 통하여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한다.

네째, 8월중 일본 시스오까겐 건축사회 하마마시 지부와 자매 결연을 체결, 본 지부회원의 외국과의 건축 정보및 기술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다섯째, '86, '88 올림픽의 보다 좋은 성적을 위하여 본 지부에서는 충남역도 연맹을 맡아 좋은 선수를 육성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 기타 主要業務 및 事業実績

1. 시민을 대상으로한 건축행정 민원 상담실 운영
2. 도시의 질적향상을 위한 설계도서 검토제 실시
3. 건축설계와 공사감리 업무 분리 시행
4. 회원복지증진을 위한 복지회 운영의 활성화
5. 회원 상호 우호 증진과 친목을 위한 단합대회 개최
6. 회원사무소 실태조사를 통한 업무지도 및 운영실태 파악
7. 선진외국의 건축정보 및 기술교류 추진
8. 보조원 관리를 위한 기록카드 작성 관리
9. 농번기 농촌일손돕기운동 전개
10. 새마을 사업지원 및 불우이웃 돕기 운동 전개
11. 체육진흥 육성지원사업으로 충남역도 연맹을 본 지부가 운영관리하고 연간 5,000,000원 지원

불황의 터널에서



정 구 은
삼에종합건축사사무소

최근들어 경기가 최악의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는 소리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하반기는 물론 내년의 경기마저도 불투명하며 험사리 회복 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안정화 시책으로 경제지표상 물가안정은 이루었지만 생산 기술투자 부진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와 긴축경제로 인한 소비억제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불황의 늪은 깊어만 가고 있다.

그동안 건축활동은 86, 88올림픽 유치를 위한 준비시설 및 도심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경기의 심각성을 느끼면서도 그런대로 지탱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인 시설투자도 한계에 이르렀으며 경제난국 타개의 초점은 도심 재개발사업에 브레이크를 걸고 생산력 증강과 기술투자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에 따른 민간기업 투자의욕 상실은 겨울잠에서 깨어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우리 건축사들의 업무수주 활동의 급격한 저하는 사무실 유지 존폐의 심각성으로 확대 되어 오고 있다. 건축사 업무 수주의 80% 이상이 민간 투자에 기대고 있는 만큼 그들의 투자 의욕 상실에 따른 경기의 심각성은 우리에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격이 되고 말았다. 건축사 업무란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아닌 관계로, 수주활동은 어느 직업 보다도 어려운 것이며, 언제나 새로운 고객을 상대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황을 예측 할 수가 없는 직업이다. 항상 새로운 일이 우리들의 활력이며 생활이고, 그러한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나지 않으면

우리들은 그저 암담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에 민감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동안 경기의 굴곡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었다. 투자의욕도 왕성했으며 88년도 까지는 그저 부난한 경기를 유지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호황의 여파는 불황의 근원을 몰고 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경기의 순환과정에서 우리가 안고있는 구조적인 경제문제는 덮어둔채, 우는 아이에게 사탕주는 식의 경기 부양책은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현상을 더욱 심화 시키게 하였으며 소수의 부유층이 주무르는 경제가 되고 말았다. 우리들은 그들의 시너노릇도 많이 하였다. 그들의 손에 의해 도시는 점점 침식되어 가고 계층간의 불균형, 도·농간의 불균형,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해소할 수 없는 국면으로 되고 말았다.

흔히들 요즘의 경기상황을 어떤 돌과 구마저 없이 꼭 막혀버린 막다른 상태까지 왔다고들 이야기 한다. 어떠한 대안 없이 기다리는 것처럼 불안한 상황도 없다. 경기가 회복되자면 소비와 투자, 수출, 정부예산 자출이 늘어야하며 정부 재정투자의 우선순위가 조절되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책의 운영의 묘를 최대한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좌절만 할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가면 길은 열릴것이다.

하나하나 눈여겨 보면 우리가 알면서도 그냥 지나쳤던 사소한 법적규제가 융통성있는 조정으로 커다란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예를 들자면 주거지역에서 용도규제의 완화라든지, 복합건물의 허용은 주거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활기찬 도시건축문화의 요소로 등장될 수도 있고 투자의욕도 자극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세대주택 허용이라는 명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와 같은 현상은 지금 우리사회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데서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규제 일변도의 법규제에서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허용으로 규제를 풀어야 경기는 회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주택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상의 문제를 부동산 경기의 침체 탓으로 돌리고 보고만 있기엔 우리의 주택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돌아켜 보면 서민들의 주택보급율은 목표보다 훨씬 못미치는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나 있다.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서민용 주택을 짓는데 자금을 더 늘려야 하며, 민간의 주택건설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통제가 풀려져야 할 것이다. 보다 싼 값으로 서민에게 택지를 공급하고 임대주택의 보급을 늘려 재산증식의 투기로서의 주택이 아닌 안락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주거로 국민의식이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불황의 터널을 뚫고 어려운 역경을 견디기란 참으로 힘들고 험난할 것이다. 각자 사무실 나름대로 정비절약과 기구축소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과당경쟁을 피하고 화합을 통해서 건축사의 사회적 품위와 경제적 지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국제방송센터 현상설계경기

The design competition of International Broadcasting Center

KBS방송센터건설단은 외국용역업체와 합작을 전제조건으로 국제방송센터 설계경기를 응모한 결과 총 12점이 응모되었으며 지난 6월 16일 공모작품의 심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 가운데 우수작(2점)으로 김종업(주.김종업종합건축), 김자호(간삼건축), 입선작으로 김수근(공간), 장종률(건우사), 이상수(선진 엔지니어링) 작품을 선정했다.

본지에서는 회원작품특집으로 응모작(12점) 전 작품을 게재하면서 지면의 부족으로 방대한 내용의 일부만을 게재하게 될을 안타깝게 생각한다(편집자주)

● 우수작(2점)

김종업(안)/(주)김종업종합건축사사무소

김자호(안)/(간삼건축사사무소)

● 입선작(3점)

김수근(안)/(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장종률(안)/(주)건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수(안)/(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응모작(7점)

유명하(안)/창종합건축사사무소

전상백·김선양(안)/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이각표·김인철·정덕훈/(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엄·이건축

이규창(안)/(주)우일종합건축사사무소

윤승중·변용(안)/(주)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건축

정림건축(안)/(주)종합건축사사무소 정림건축

서울건축(안)/(주)종합건축사 서울건축

설계지침요약

1. 설계기본사항

(1) 기본목표

'88올림픽 및 2000년대 KBS 종합방송센터로서 조형미와 기능을 완비한 창조적 공간으로 인상적인 홍보시설 및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부지내 기존 건물들과의 조화와 연계를 도모한다. 또한 설계 및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공방식 및 운영에의 제안도 요구되는 바이다.

(2) 단지계획

도시미관의 주도적인 센터로서 5.16광장과 강변도로쪽의 동선과 기능배치에 유의하고 동선의 유기적 연결과 운영의 합리화 그리고 보안의 관점을 중시하며, 입체적 조건을 이룩한다.

(3) 건축계획

경제적·능률적인 신공법, 신기술의 도입과 모든 설비의 컴퓨터 자동관리화와 에너지 절약형의 설계를 마련한다.

스튜디오와 전기, 기계시설등은 지하에 위치토록하여 연계성 있는 기능의 인접배치를 피하고 Span의 억제와 재활용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의한 합리적 기능과 조화(Match)에 주력하는 한편 전기, 공조, 방재는 양자의 기능과 용량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검토, 설계되어야 한다.

(4) 방송시설 특수지침

— 스튜디오는 자연광을 피하고 평행평면을 지양하며 좋은 경관을 배경으로 하고, 뉴스센터는 G.L에서 가깝게 배치하여 중형비는 3:4, 4:5, 5:7로 구성한다.

— TV 조정실은 스튜디오 바닥보다 1개 층 상위층, R조정실은 스튜디오와 같은 평면에 위치하며 TV 스튜디오에는 부면전실, 조명 전원제어실 등을 준비하고 조정실은 스튜디오 중앙에 설치한다.

— 세트에 관련된 시설은 약 5m이상 천정고를 유지하되 스튜디오 소음 방지에 유의한다.

— 다용도 공개홀은 수용인원 약 4,000명으로 각종 공연장으로서의 효율성

을 도모함과 아울러 완전 분리 독립된 기능으로 구상하며 필요한 제반 부대시설을 완비한다.

- 약 4,000명의 TV공개홀은 이동좌석으로 하여 약 500~600명 수용의 자유로운 공간이 형성되도록 구상한다.
- 라디오 공개홀의 방청석은 약 1,000석으로 TV제작기능도 고려한 자유로운 공간형성이 가능토록 한다.
- 사무실은 현대식 스타일의 Mobil Rack 방식을 활용하며 150평급 대형 회의실에는 국제회의가 가능토록 계획된다.

2. 진행방식

(1) 설계자는 KBS 방송센터 건설단이 작성한 기본 프로그램에 의거, 계획설계안을 제출한다.

(2) 응모작품은 기술제휴한 외국설계사무소와 공동명의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제휴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첨부해야 한다.

(3) 본 공모에 응모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된 건축가에게 본건축물의 설계권을 부여한다.

(4) 응모한 설계작품 중 심사를 거쳐 우수작으로 선정된 건축가에게는 1,500만 원을 지불한다.

(5)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국내설계자는 합작한 외국설계자와 Design Development까지 공동으로 설계를 해야하며

실시설계과정에서도 쌍방간에 충분한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3. 설계응모 규정

(1) 일정

- 현장설명...1985년 3월 7일 14:00
- 응모신청등록...1985년 3월 8일 18:00 수급관리국
- 질의·응답...1985년 3월 31일까지.
- 제출마감...1985년 5월 8일 17:00 수급관리국
- 심사발표...1985년 6월 18일 서울신문.

(2) 질의요령: 질의는 85년 3월 8일 응모신청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응모신청한 설계자가 검토하여 질의할 수 있으며, 그밖에는 3월 31일까지 서면으로만 질의가 가능하다.

4. 심사 및 선정

(1) KBS직원 및 국내 저명 건축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응모작에 대한 심사를 실시, 우수작을 선정 공포하며 응모자는 심사위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입선된 작품은 반환치 않으며 일정기간의 전세를 지친 후 KBS에 보관된다.

(3) 당선된 설계의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한다.

[도시의 구분]

구분	축적	작성방법	비고
배치도	1/500	건축배치, 도로, 하수, 조경, 주차	파넬1부 청/록사진(5부)
평면도	1/200	각층배치도	"
일면도	1/200	4면(전후좌우)	"
주단면도	1/200	종횡단면 각 2면씩	"
기능도	임의	동선기능도	"
투시도	임의	채색	"
실내투시도	임의	로비 / 스튜디오 / 회의실	"
설계설명서	B4	설계개요, 동선개요, 건축계획, 구조계획, 설비개요(전기 냉난방 위생 방재), 주요자재 및 주요마감표면적, 조서및 공종별 개략 공사비 계산서	투시도 및 실내투시도 5"×7" 사진첨부

설계개요

대지면적: 약 40,000 m²

건물면적: 63,822 m²

대지조건: 집단 미관1 종지구 및 업무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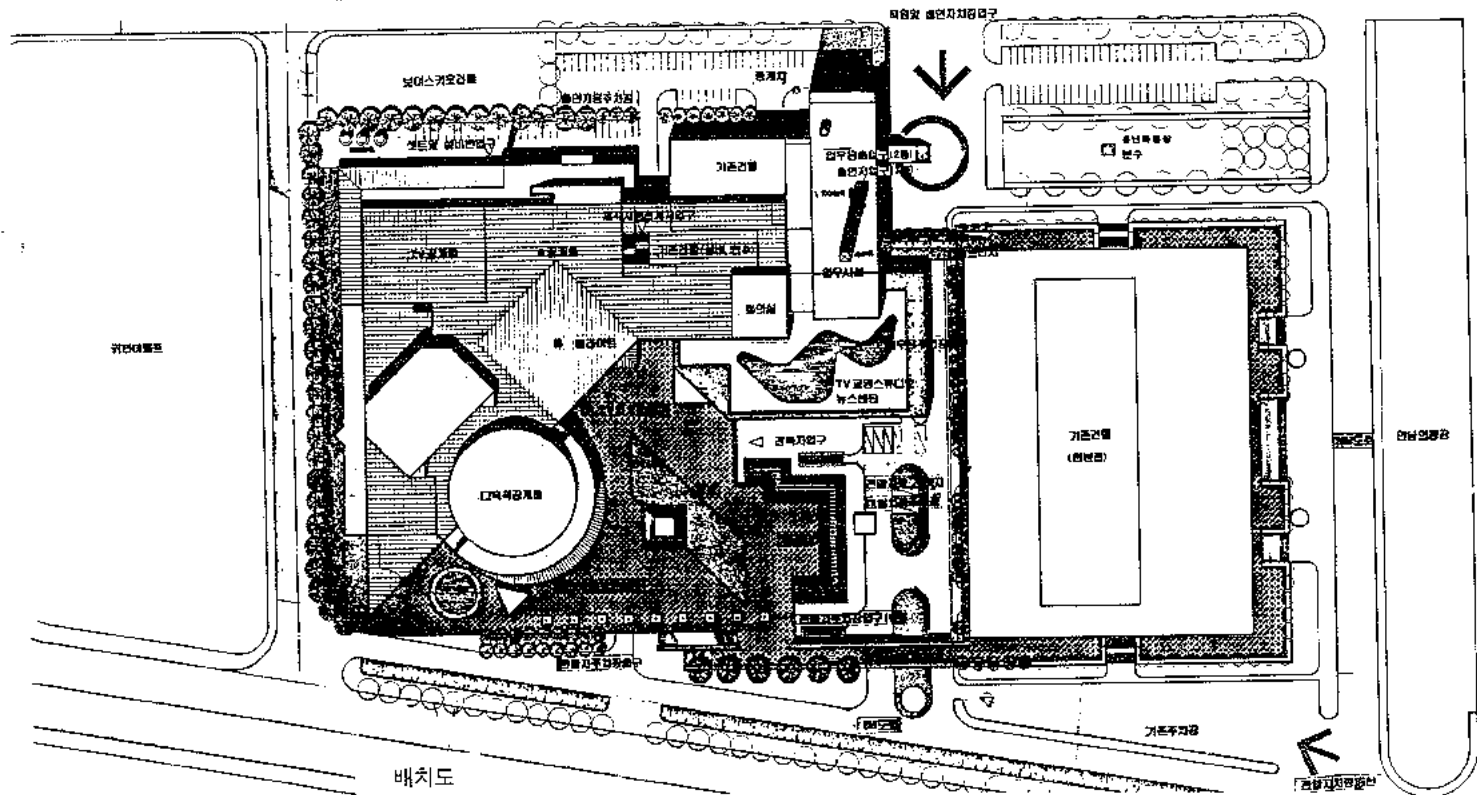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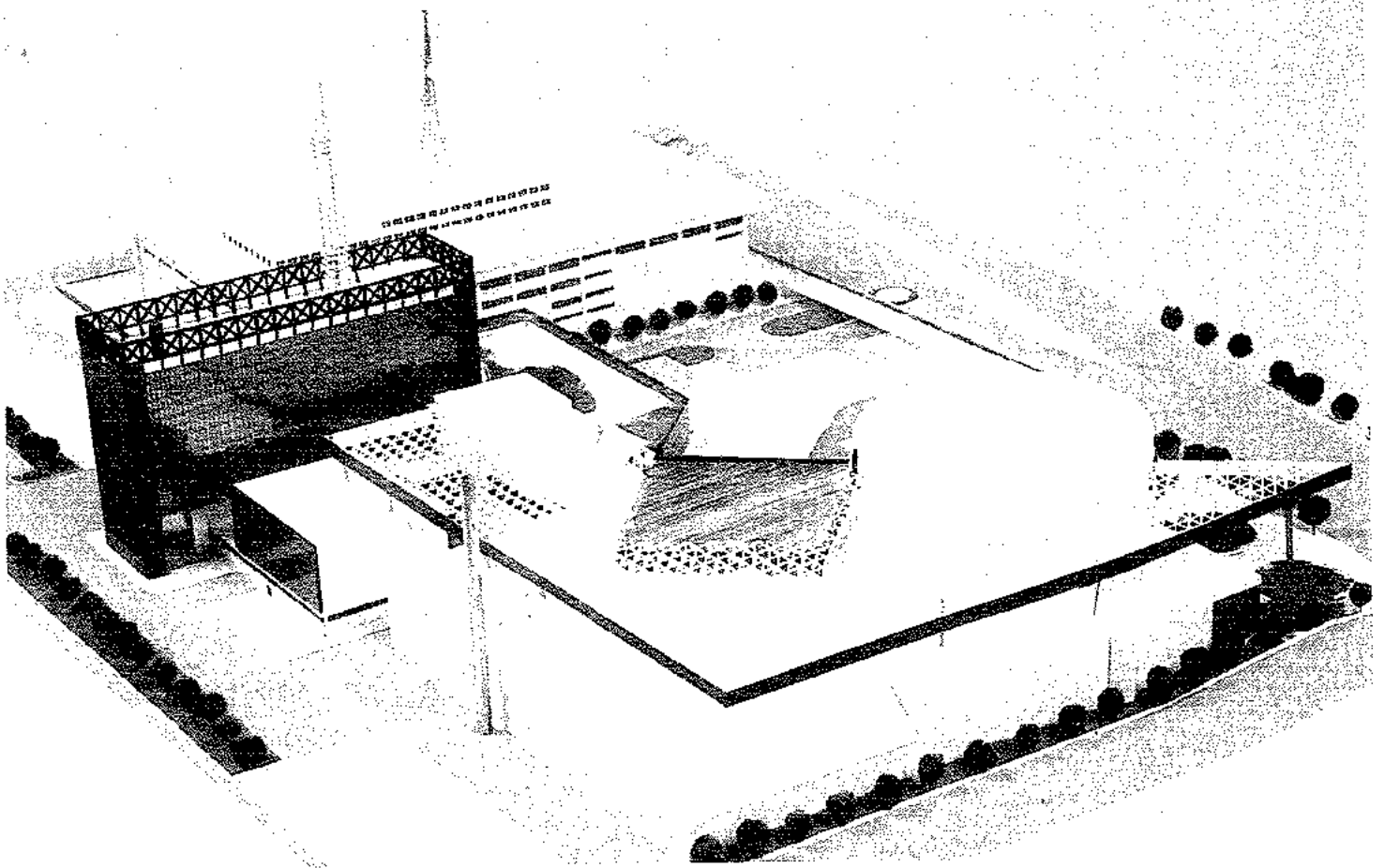
(고도제한 400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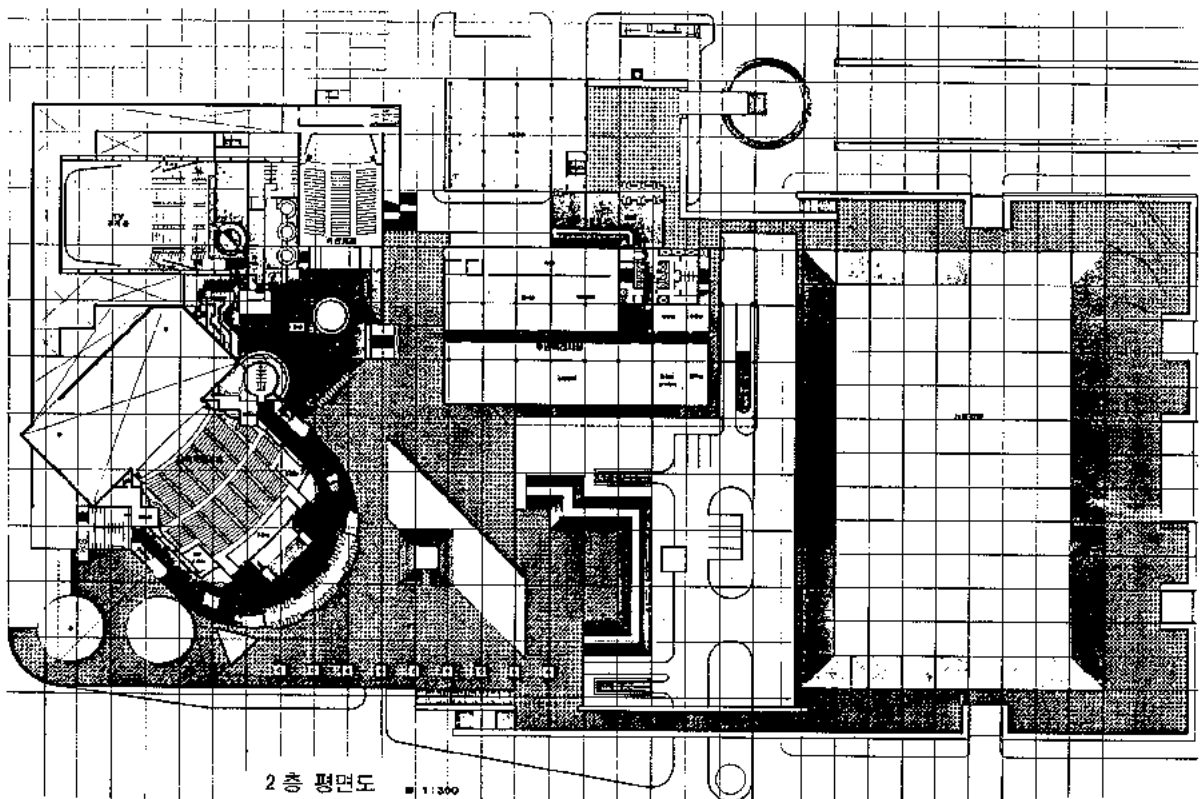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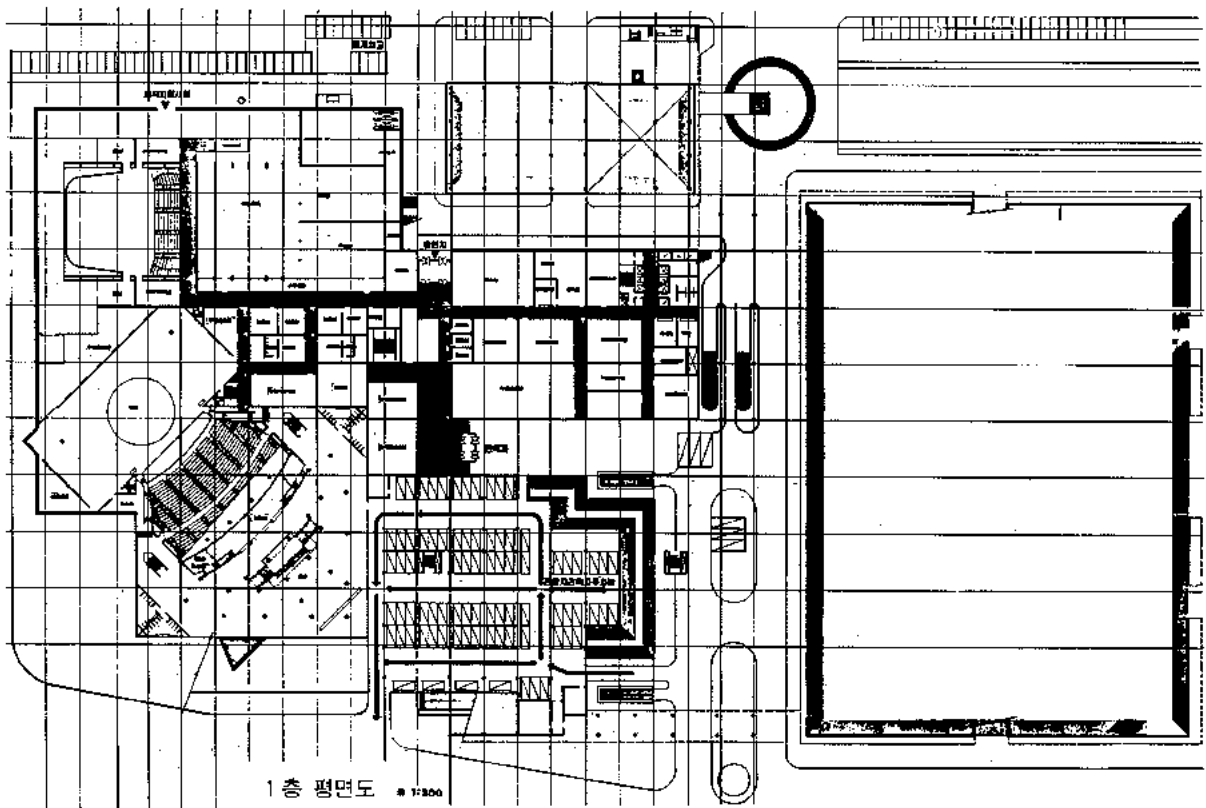
건폐율 45%, 용적율 6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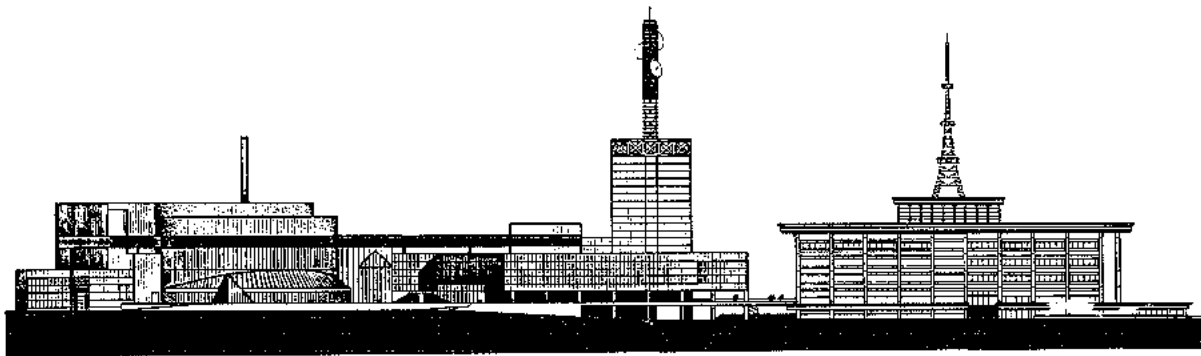
김중업案

김중업 / 김중업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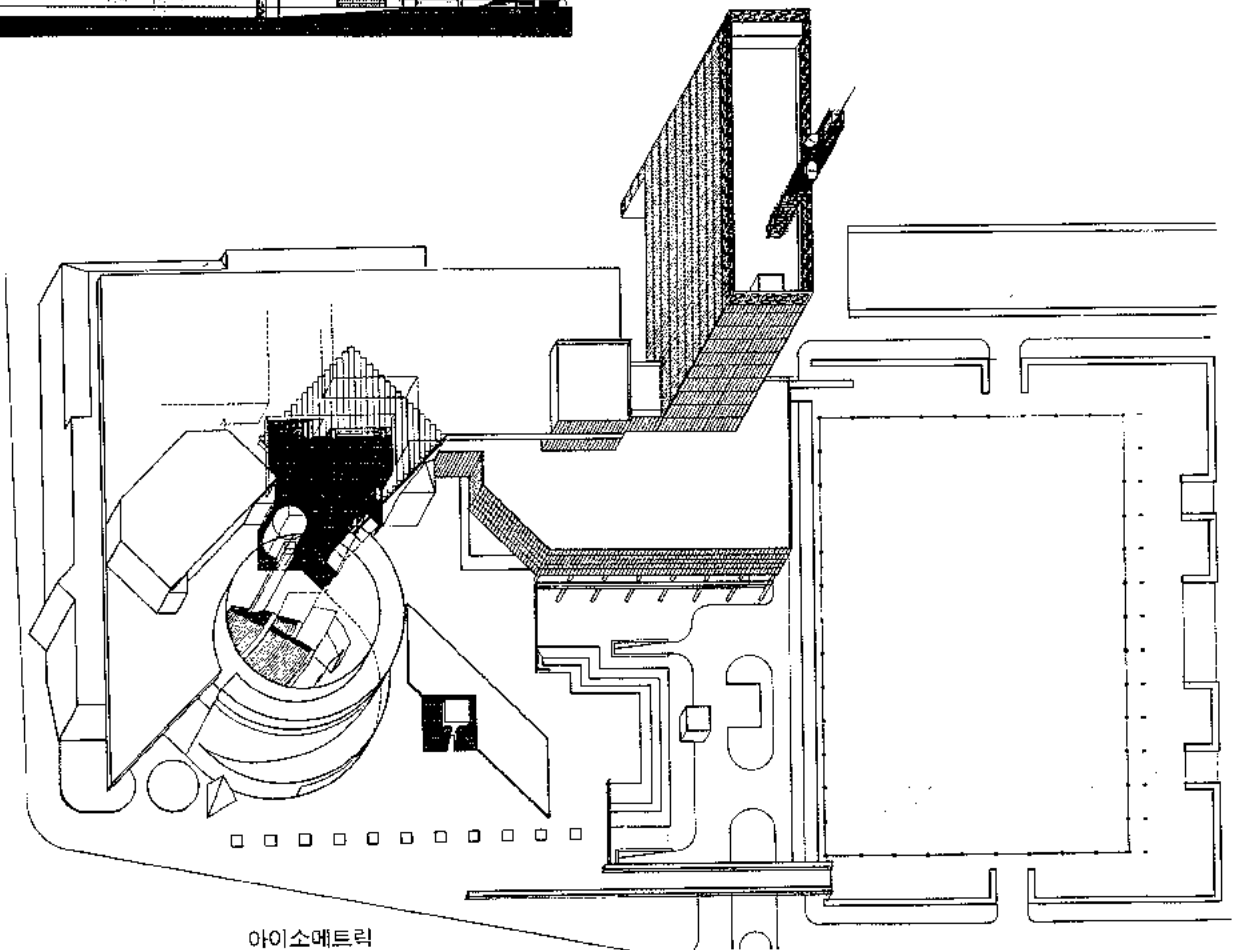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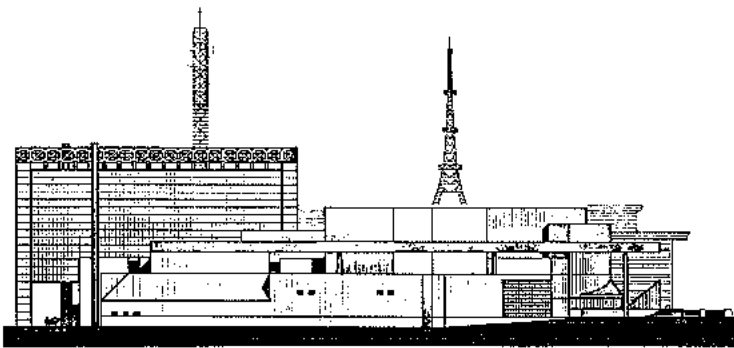
- 내지 면적 : 73,530㎡ (약 22,281평) 중 기존 건물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 약 40,000㎡
- 건물 면적 : 63,822㎡ (약 19,340평) (IBC : 15,800평, 다용도공개홀 및 기타 3,540평)
- 건 폐 율 : 45%
- 용 적 율 : 670%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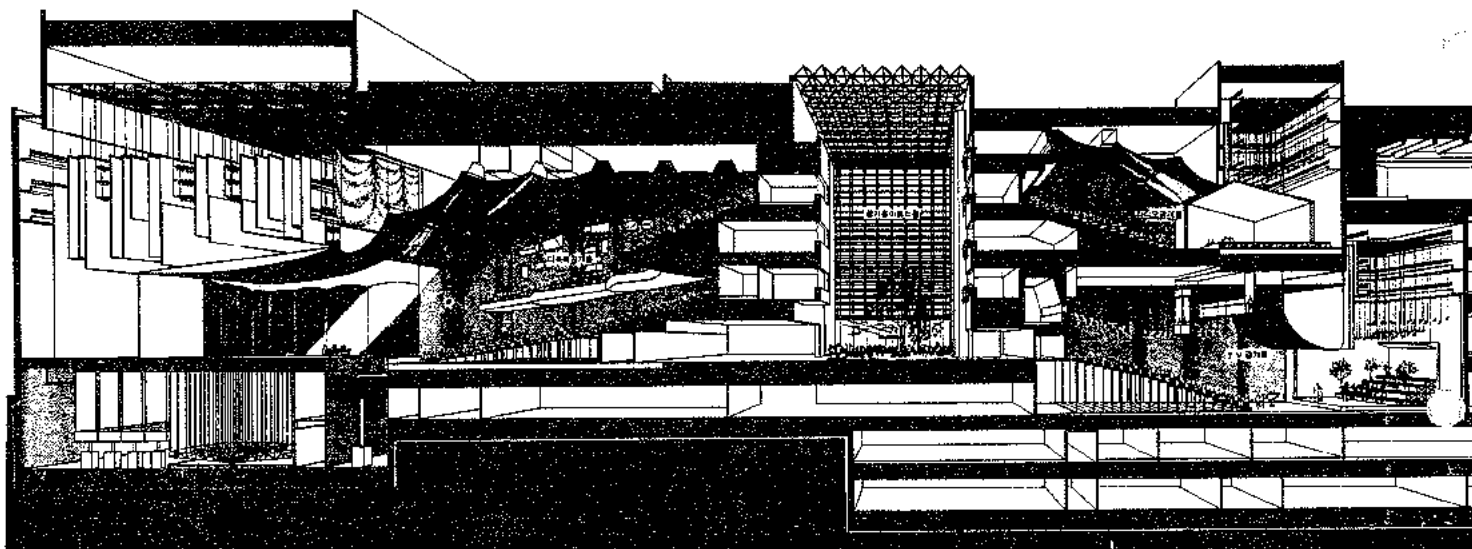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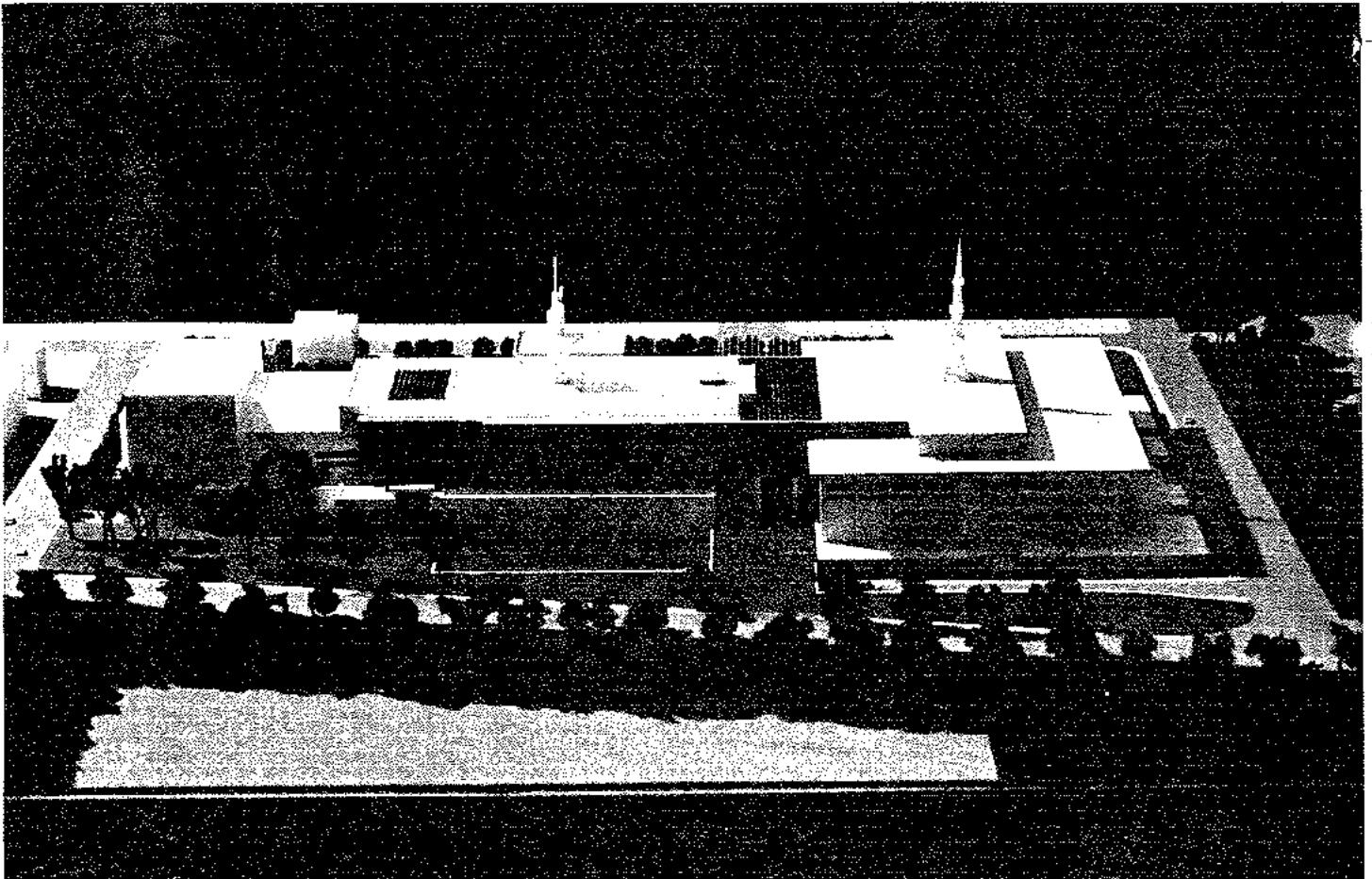


아이소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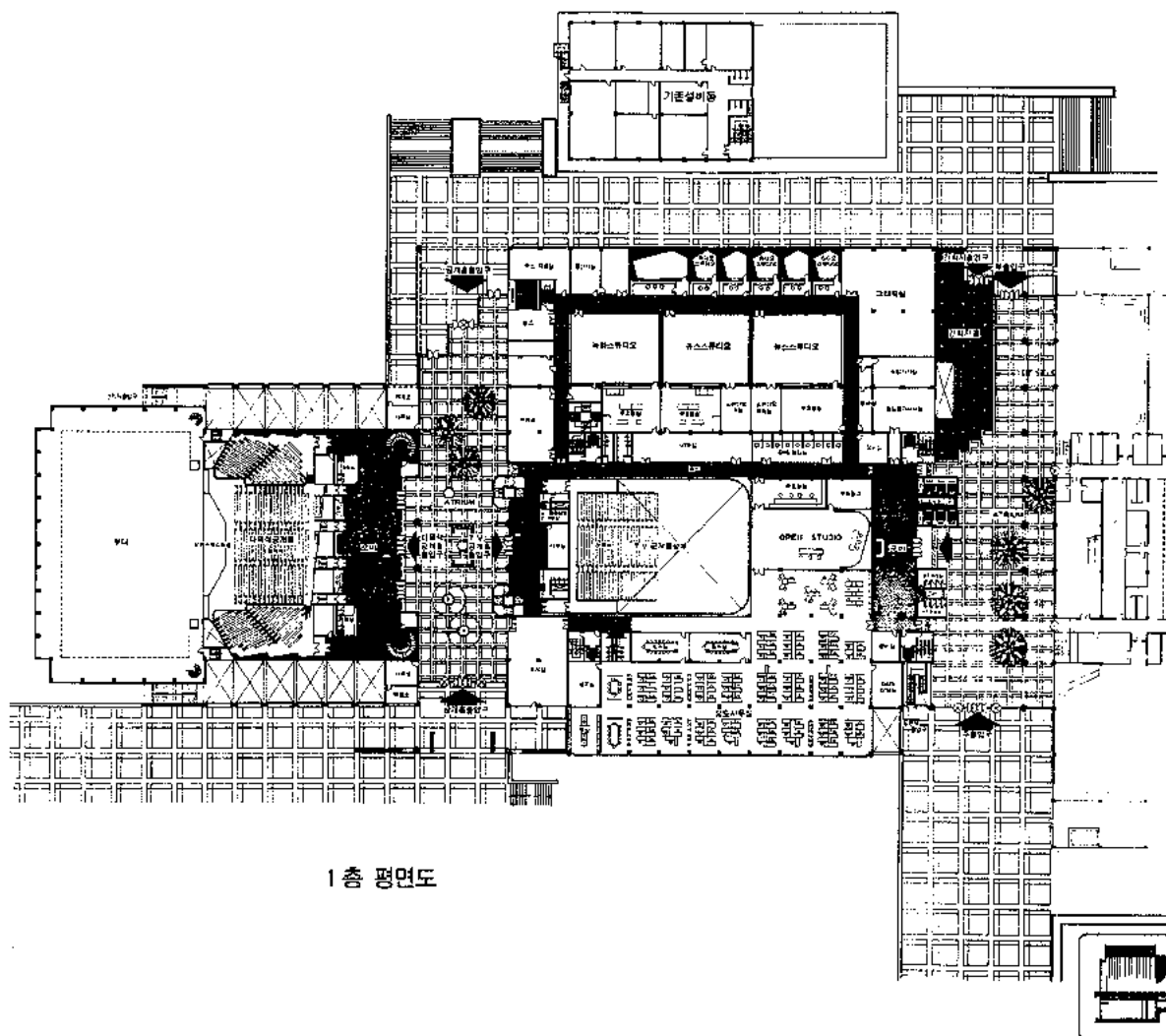
김자호案

김자호 / 간삼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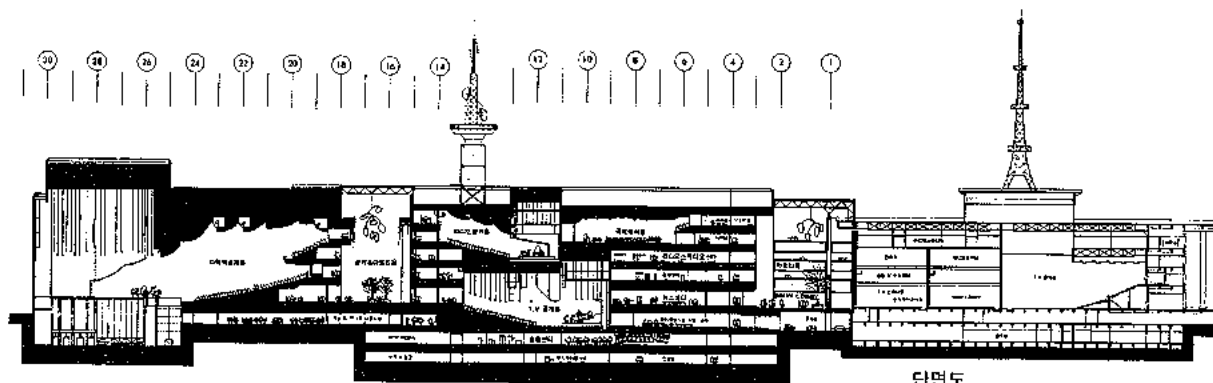
- 건축면적 : 15,199M²
- 건폐율 : 40.16%
- 연면적 : 70,135M²
- 용적율 : 134%
- 건물구조 : 철골 CONC기둥+철골 합성보
와 RIGID FRAME
- 건물고 : 39M
- 층수 : 지하 2층, 지상 6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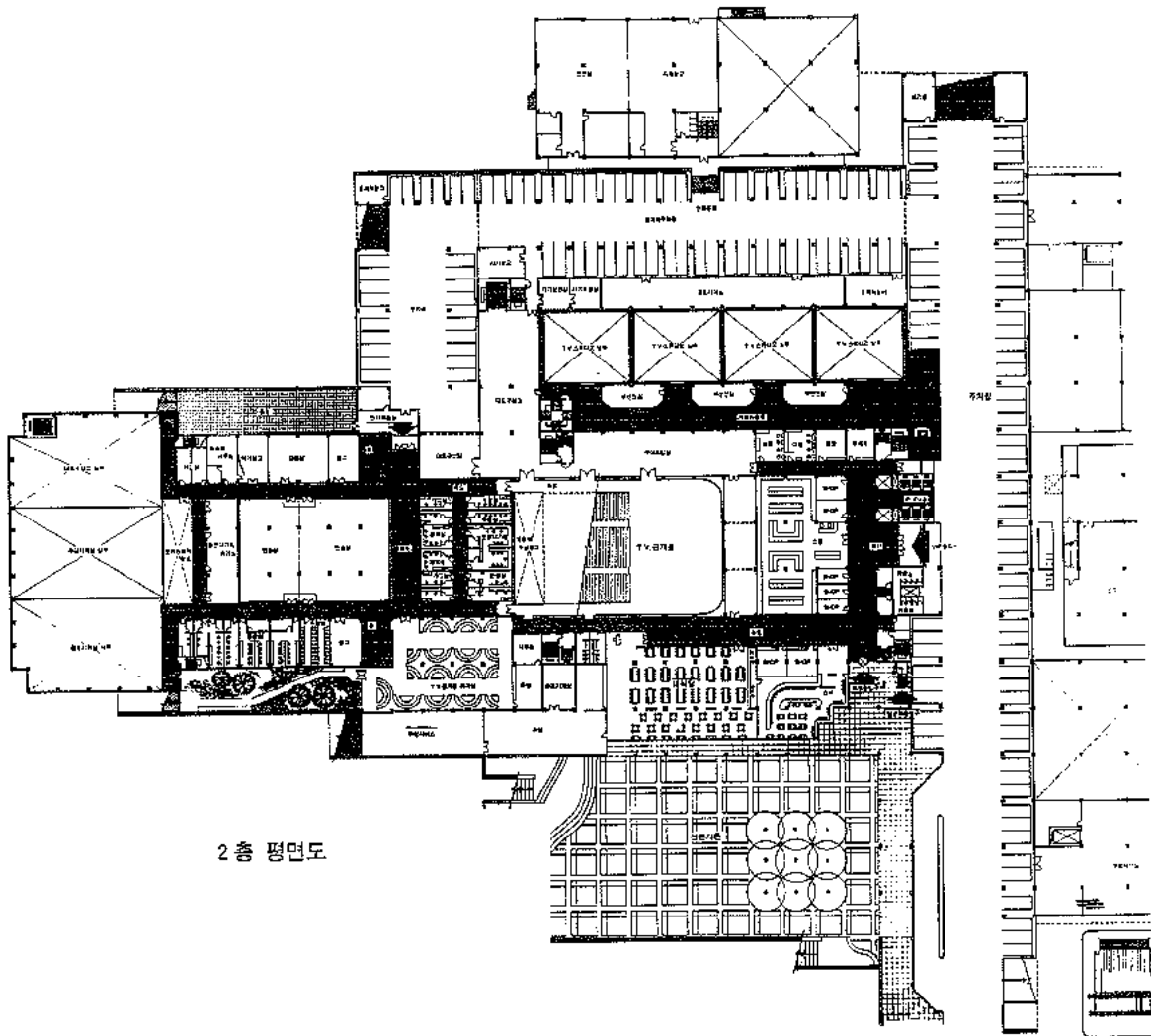
다목적 공개홀 실내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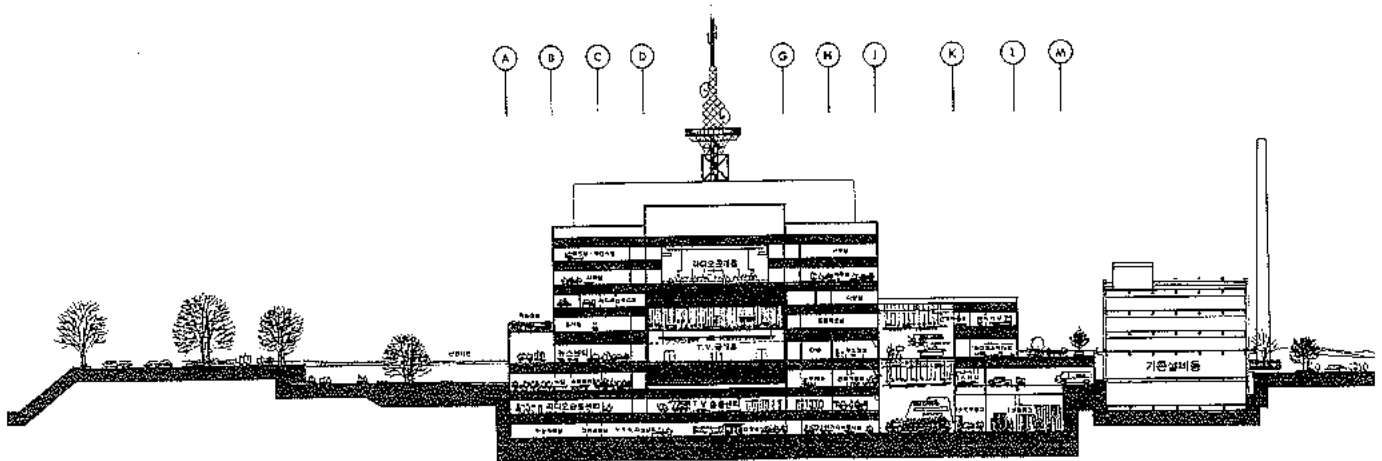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단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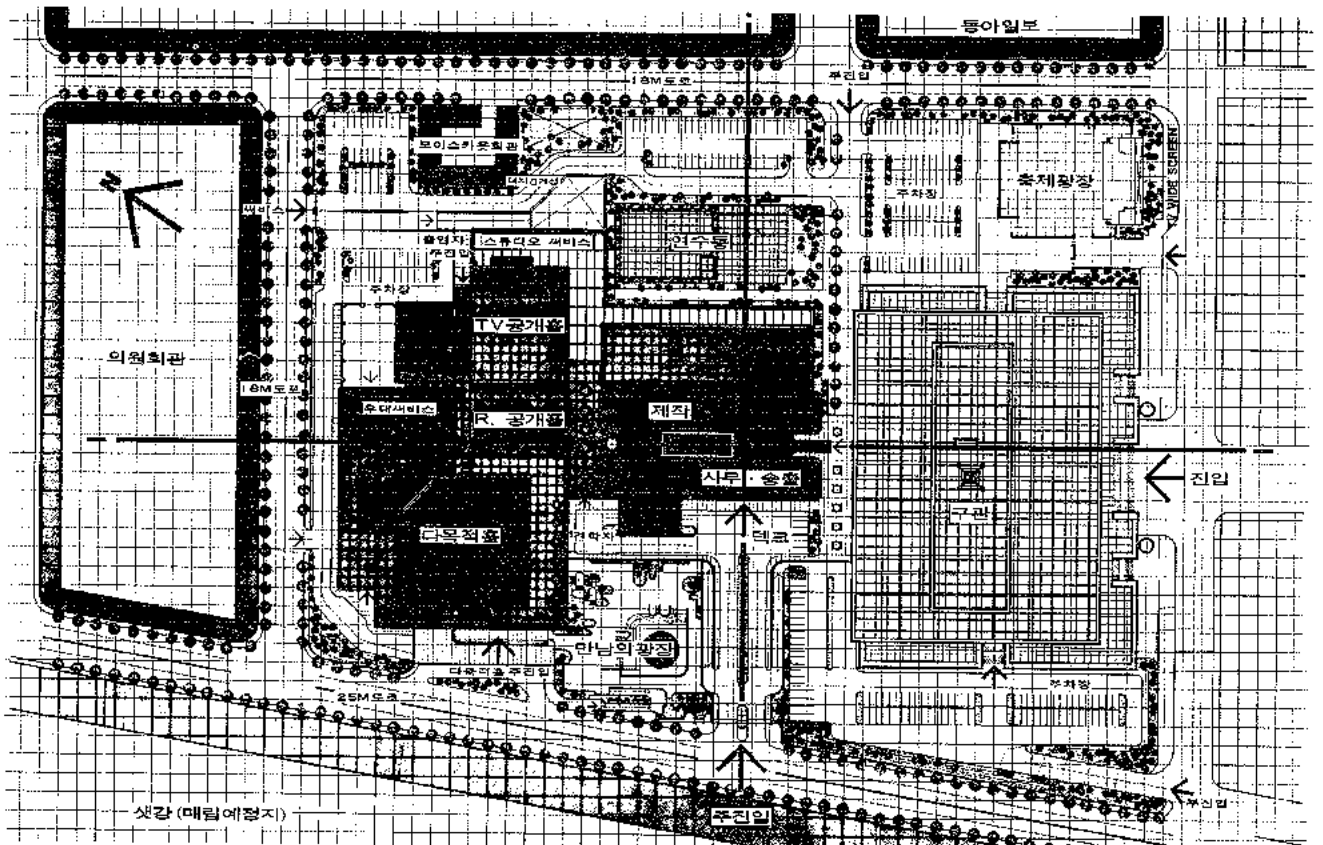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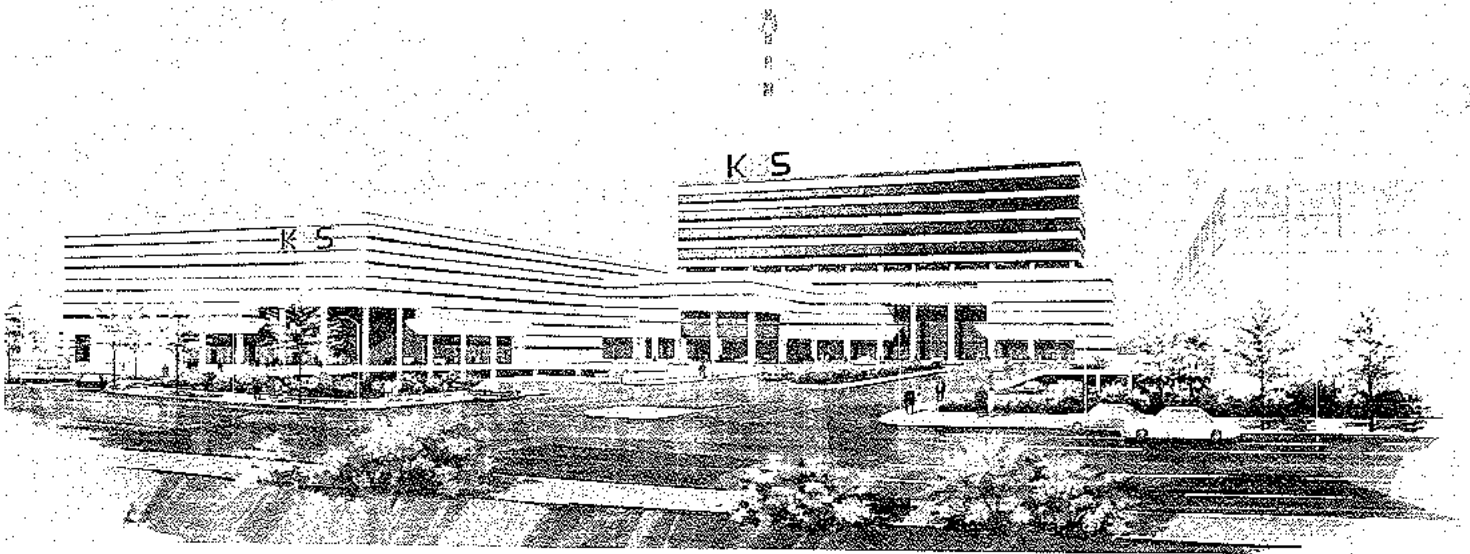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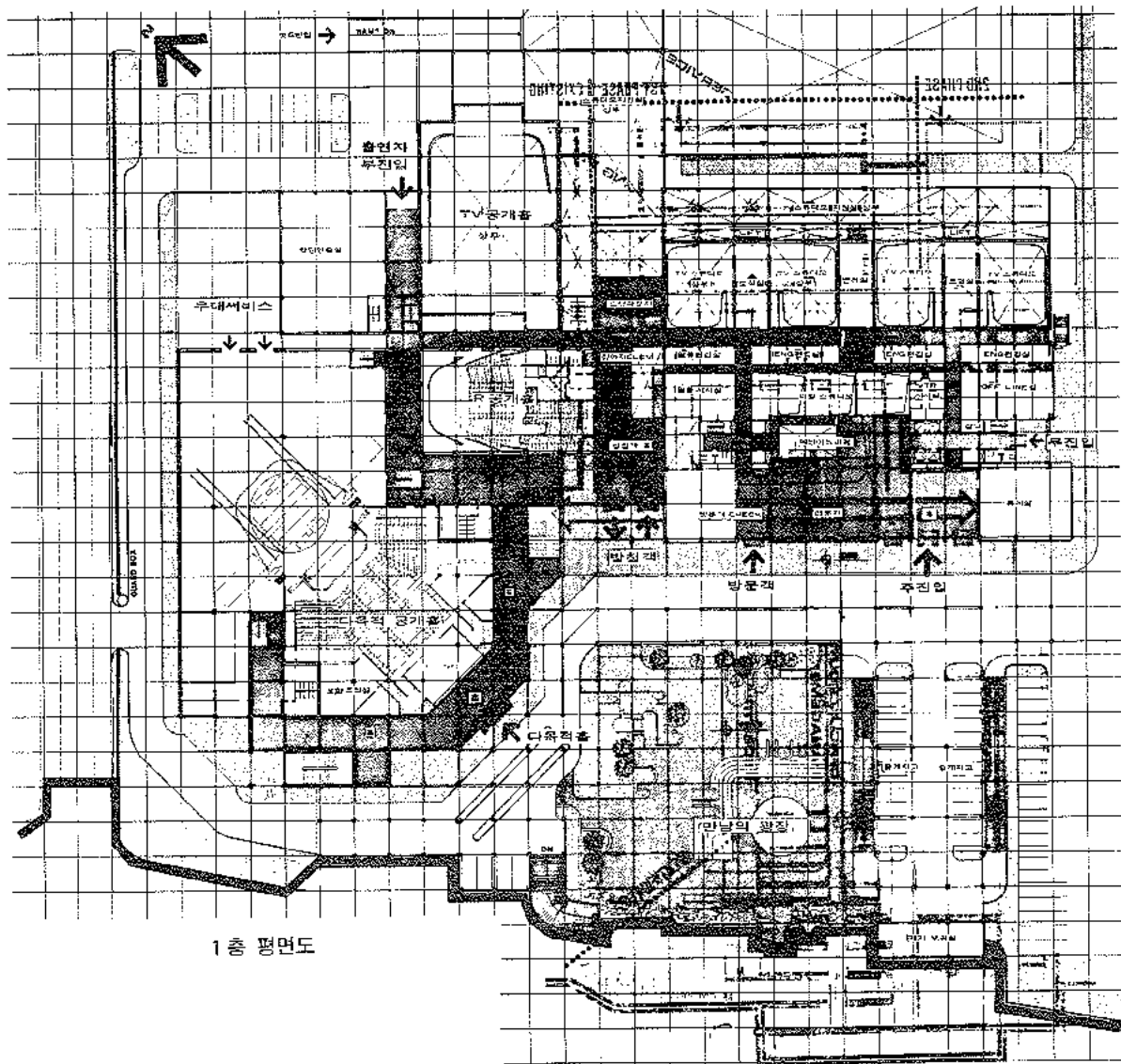
단면도

김수근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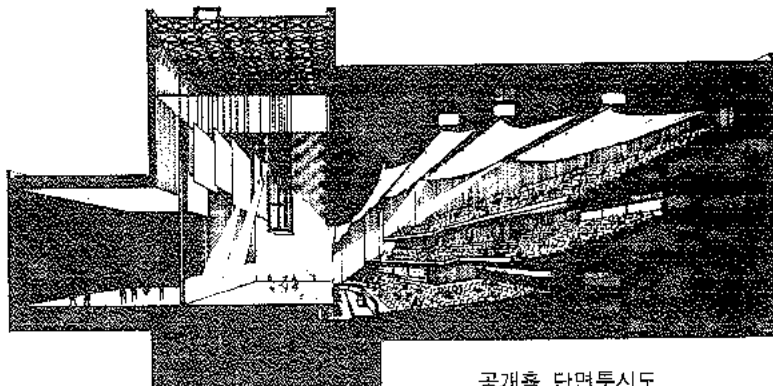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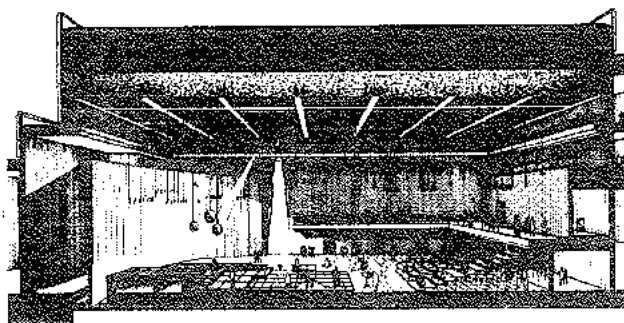
김수근 / (주)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축면적 : 30,100㎡
- 건폐율 : 41%
- 건축연면적 : 67,920㎡
- 용적율 : 122.3%
- 건축규모 : 지하 2층, 지상 9층
- 건축최고부 : 39.8m (옥상난간높이)
- 주차대수 : 지상 216대 (소형, 대형, 중계차량), 지하 192대 (소형, 중계차량)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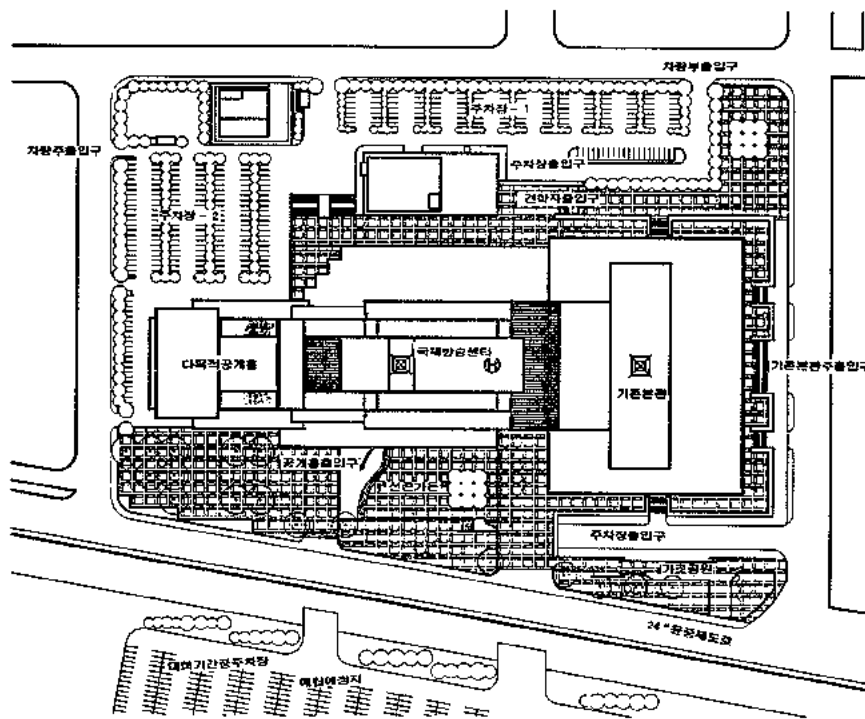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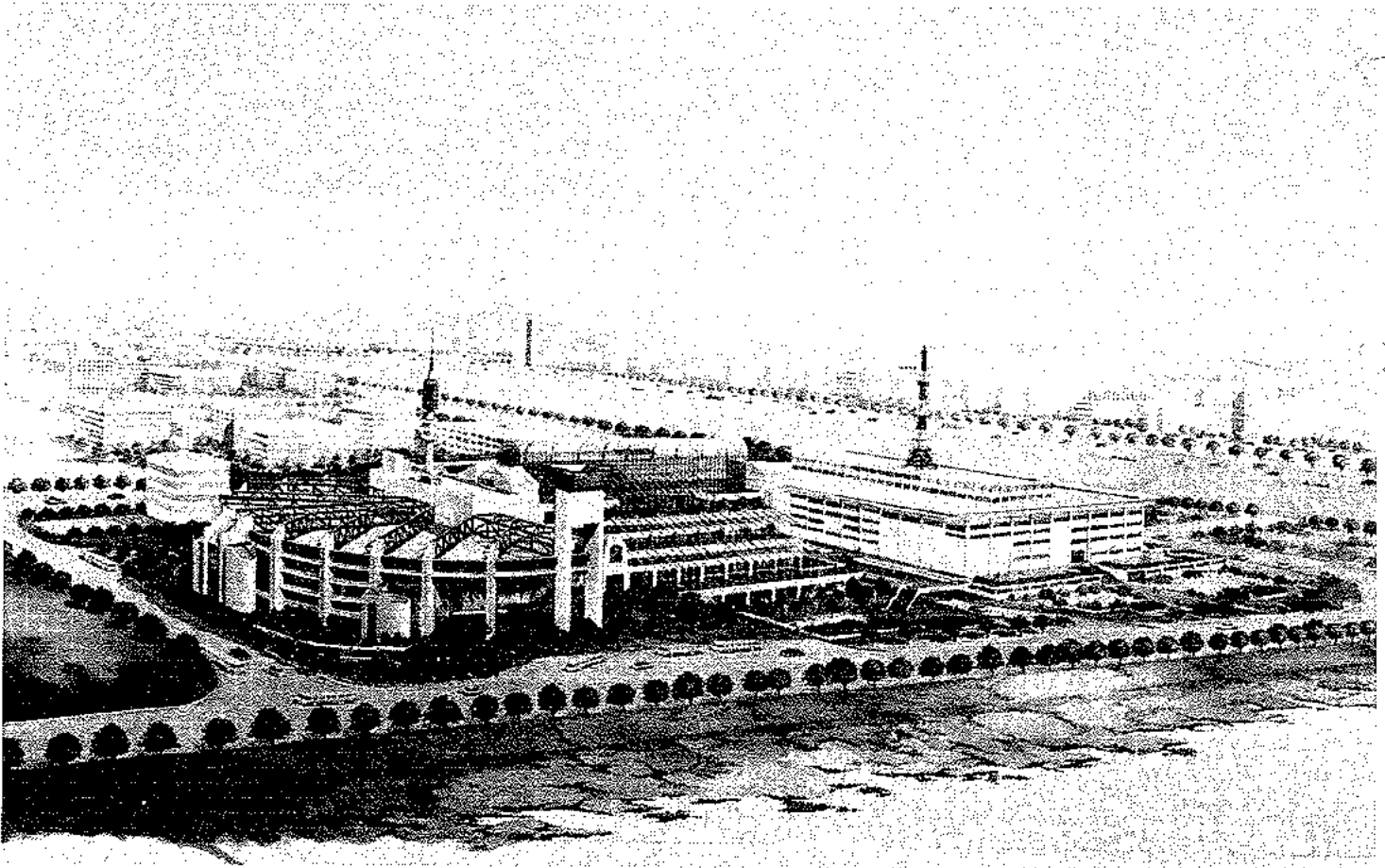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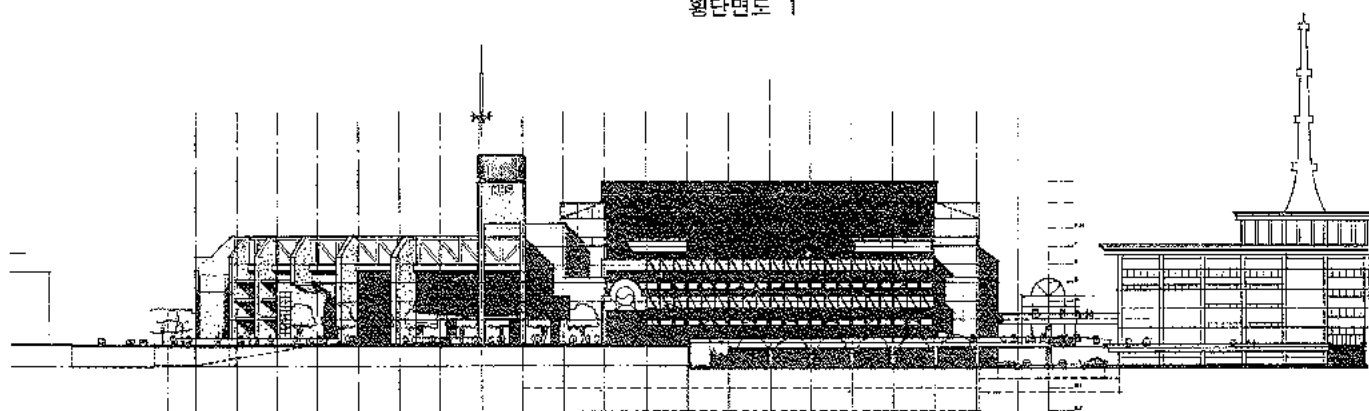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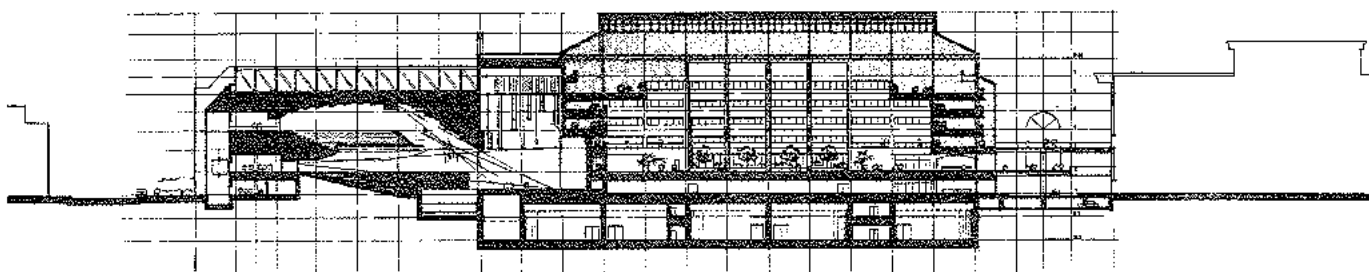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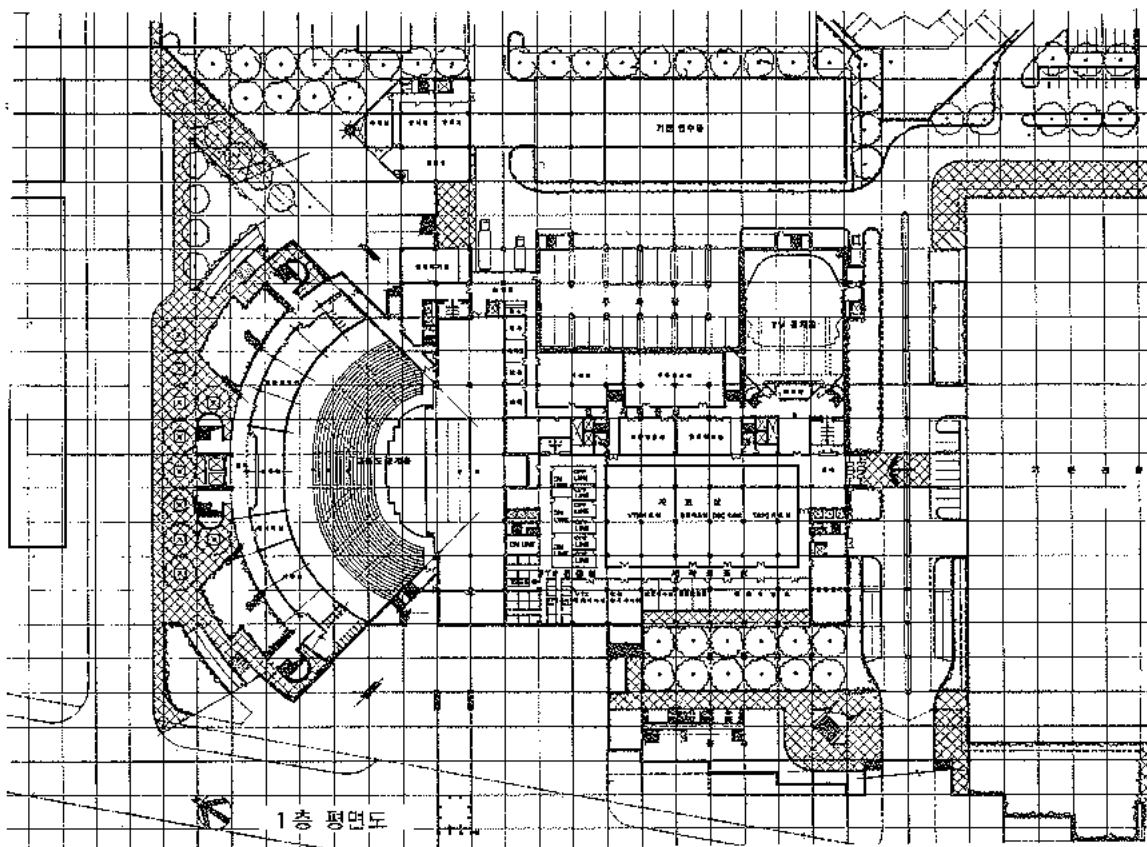
공개홀 단면투시도

장종률·김학경·김종식案

장종률·김학경·김종식 / (주) 전우사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축면적 : 28,430㎡ (기존포함)
- 연면적 : 128,023㎡ (기존포함)
- 건폐율 : 38.67% • 용적율 : 450%
- 구조
기 초 : SPREAD FOUNDATION
지 하 층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지 상 층 :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
다용도홀 : 철골트러스 HANGING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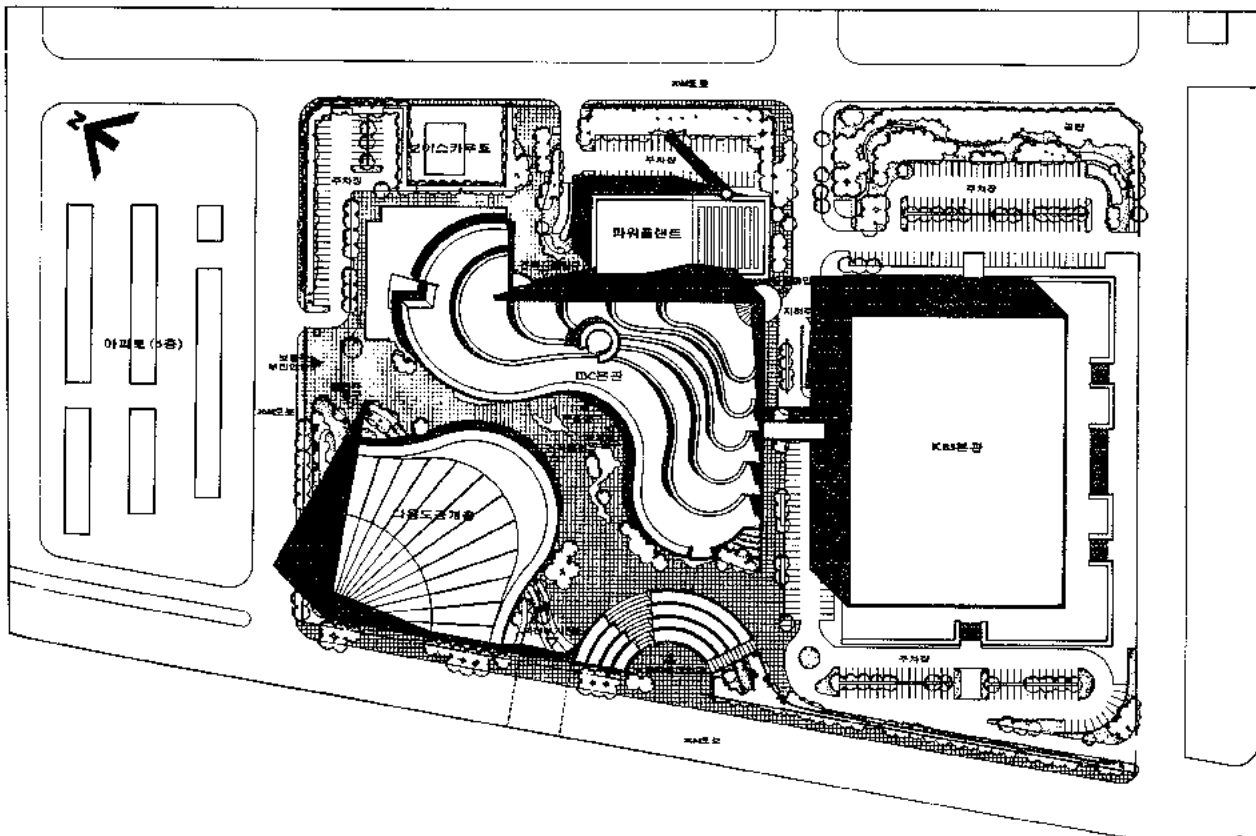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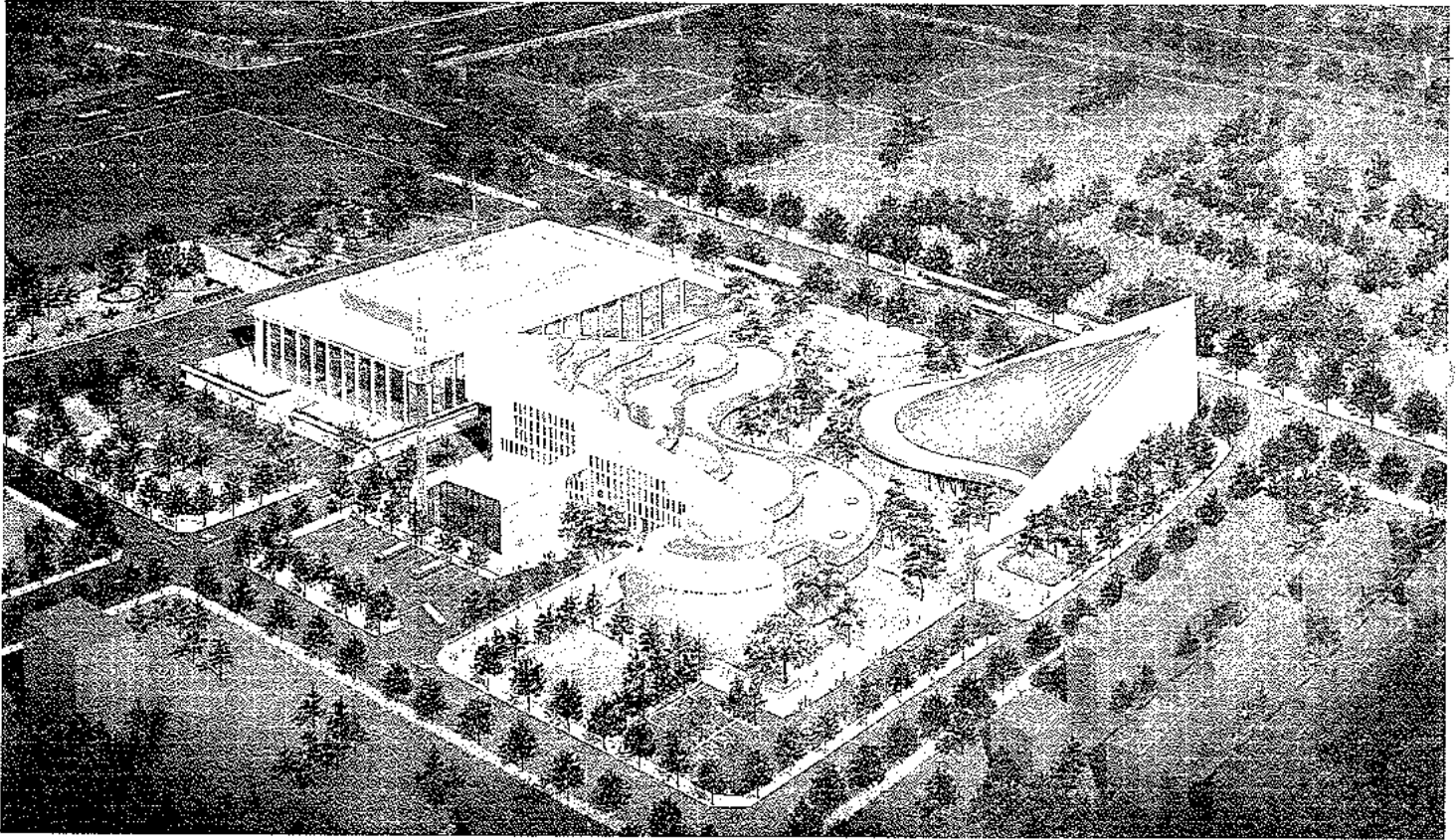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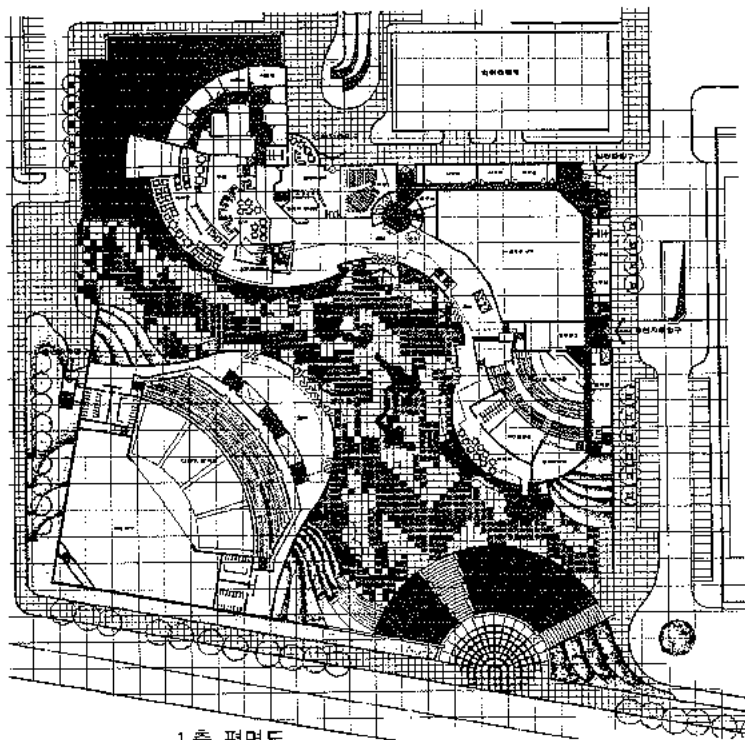
이상수案

이상수 / (주)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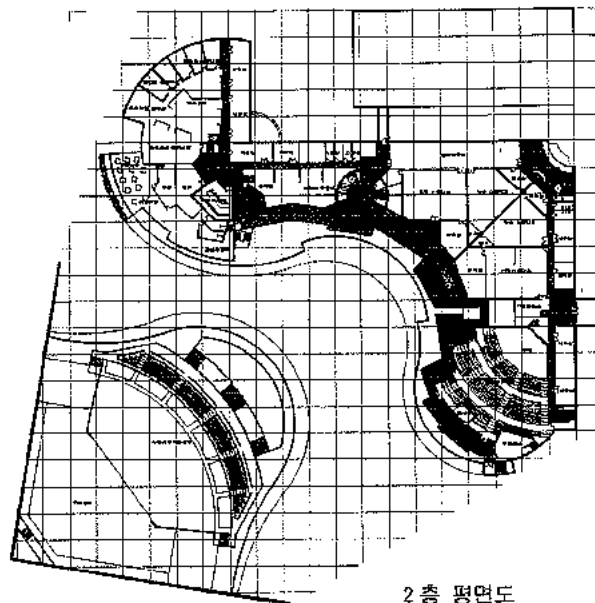
- 건축면적 : 10,295M² (3,119평)
- 연면적 : 69,873M² (20,962평)
- 건폐율 : 25.6% (법정 45%)
- 용적율 : 175% (법정 670%)
- 층수 : 지하 3층 / 지상 7층
- 건물높이 : 최고 38.5M
- 주요구조 : 철근콘크리트+철골+트러스
- 모듈 : 8M × 8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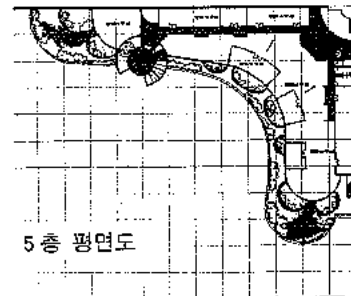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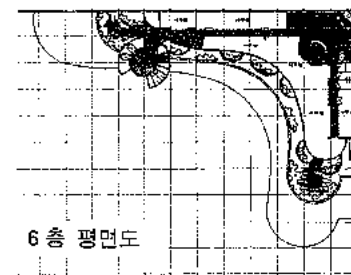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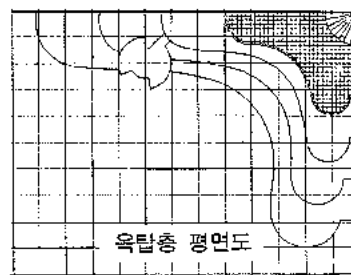
2층 평면도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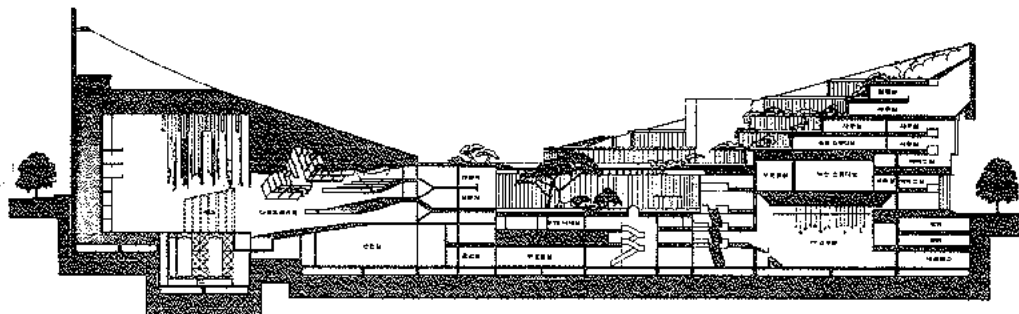
6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복측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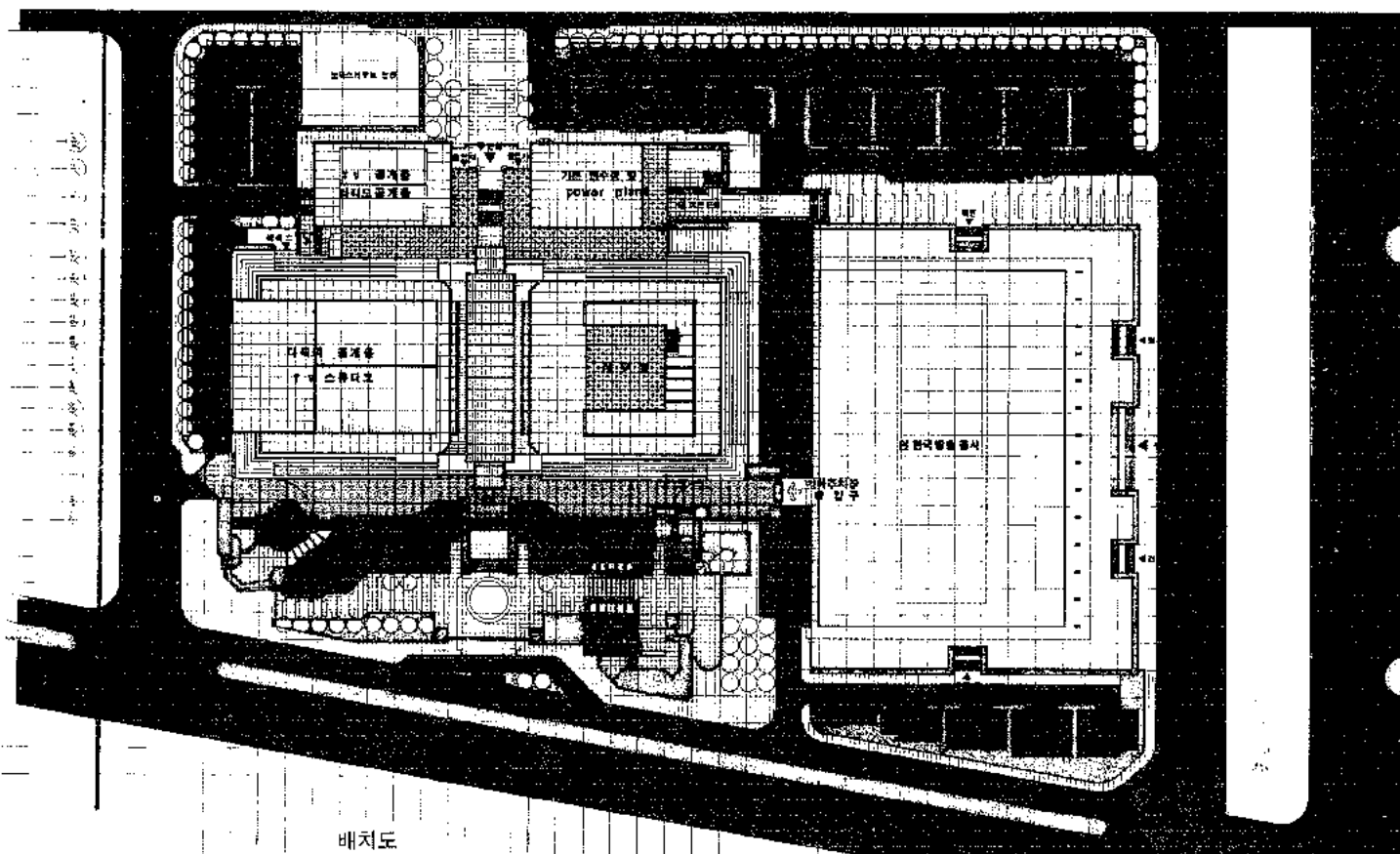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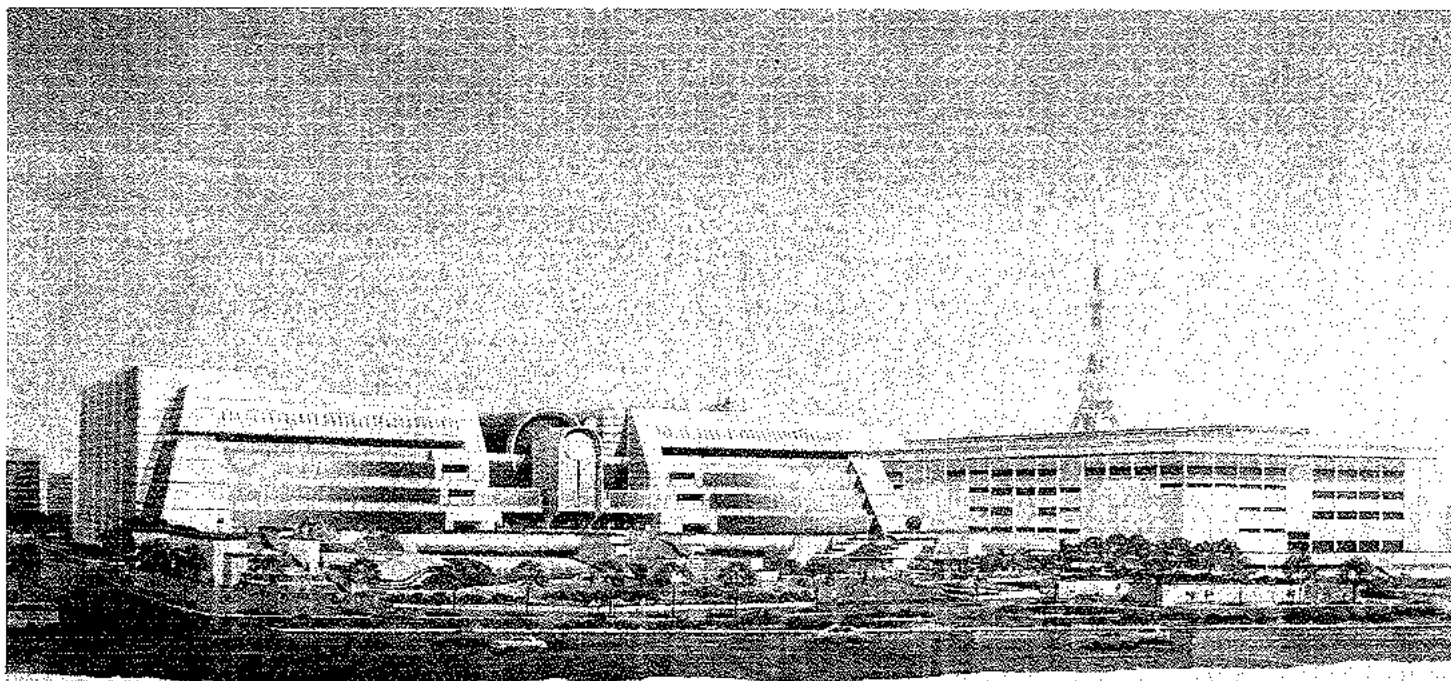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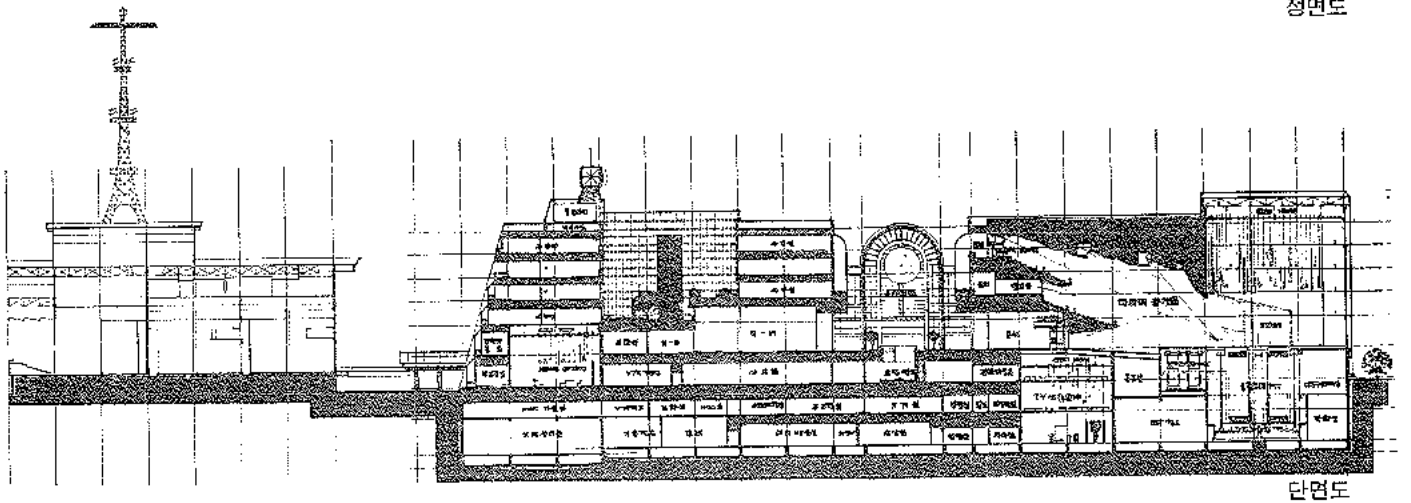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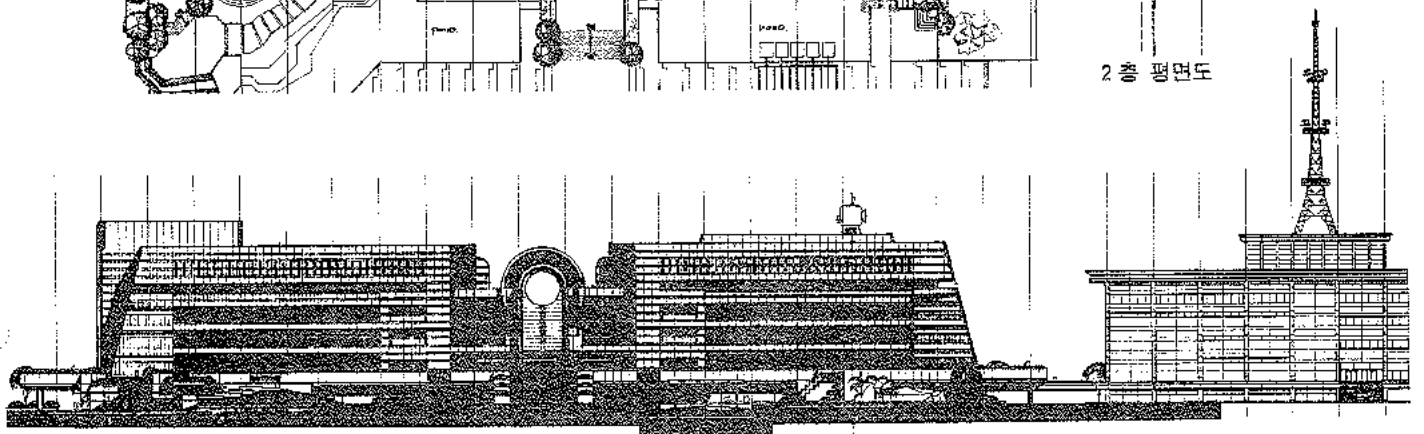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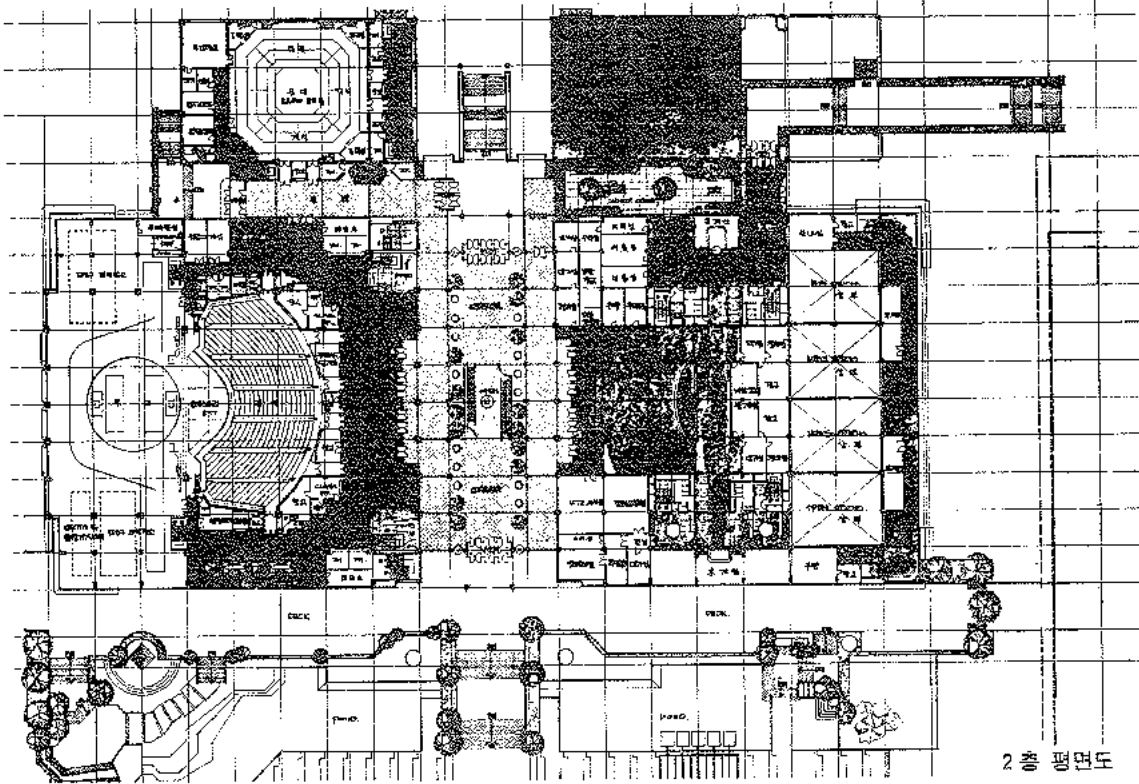
단면도

이각표·김인철·정덕훈 案

이각표·김인철·정덕훈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엄·이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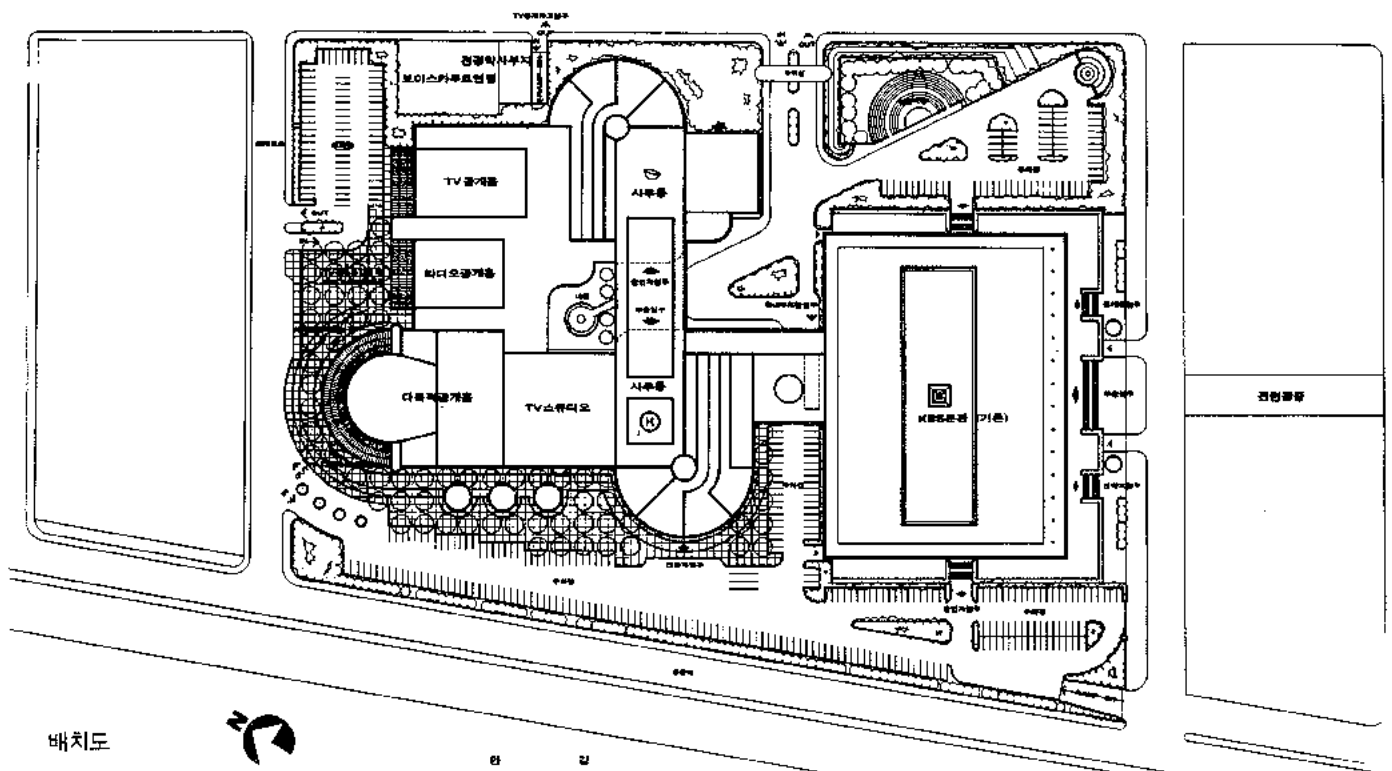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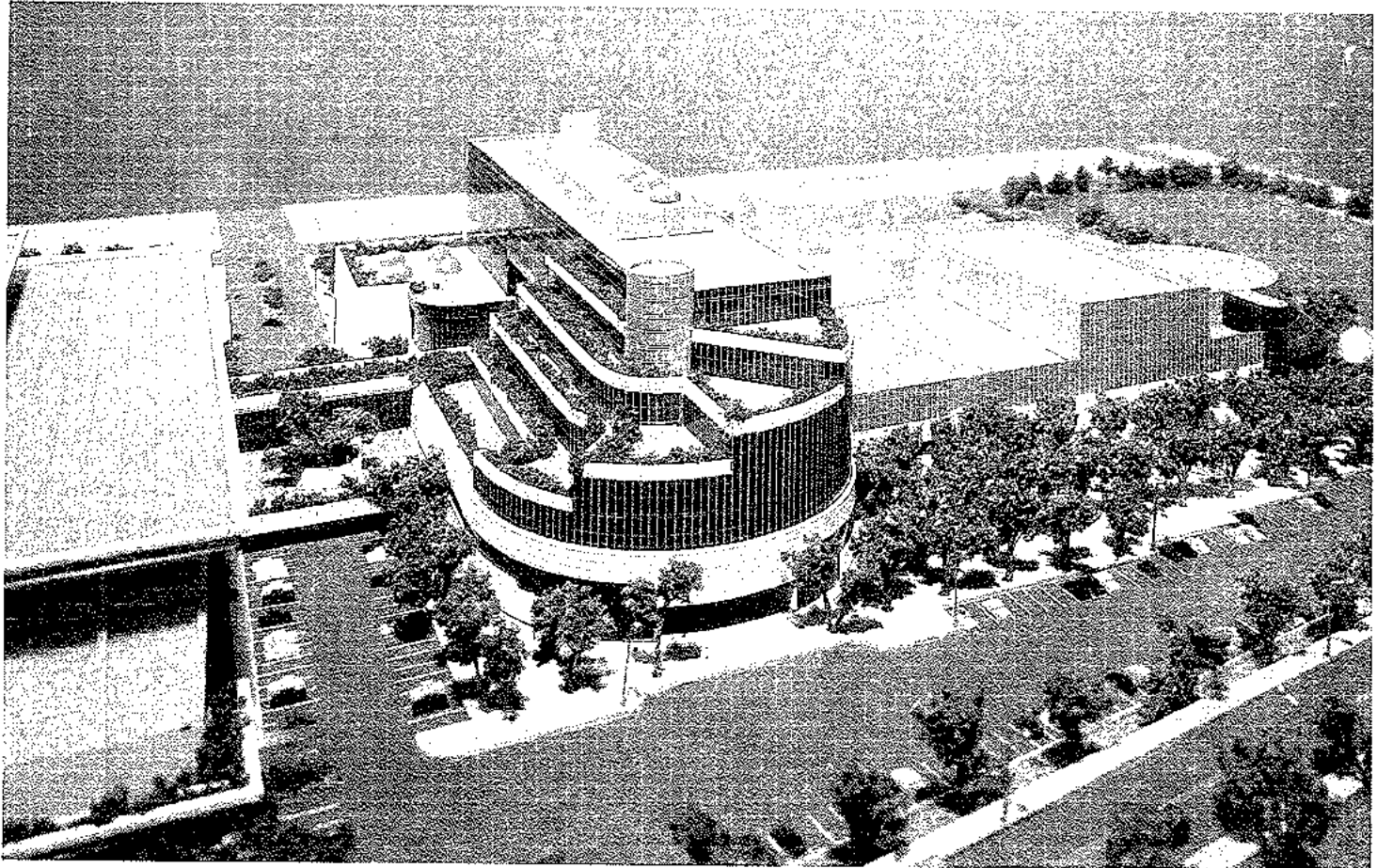
- 규모 : 지하 2층, 지상 6층
- 건축면적 : 14,479.56㎡ (4,380평)
- 연면적 : 69,213.3㎡ (20,942평)
- 건폐율 : 39.19%
- 용적율 : 130.1%
- 최고높이 : 31.95
- 기준층고 : 4.5
- 구조 : R.C조 일부 S.R.C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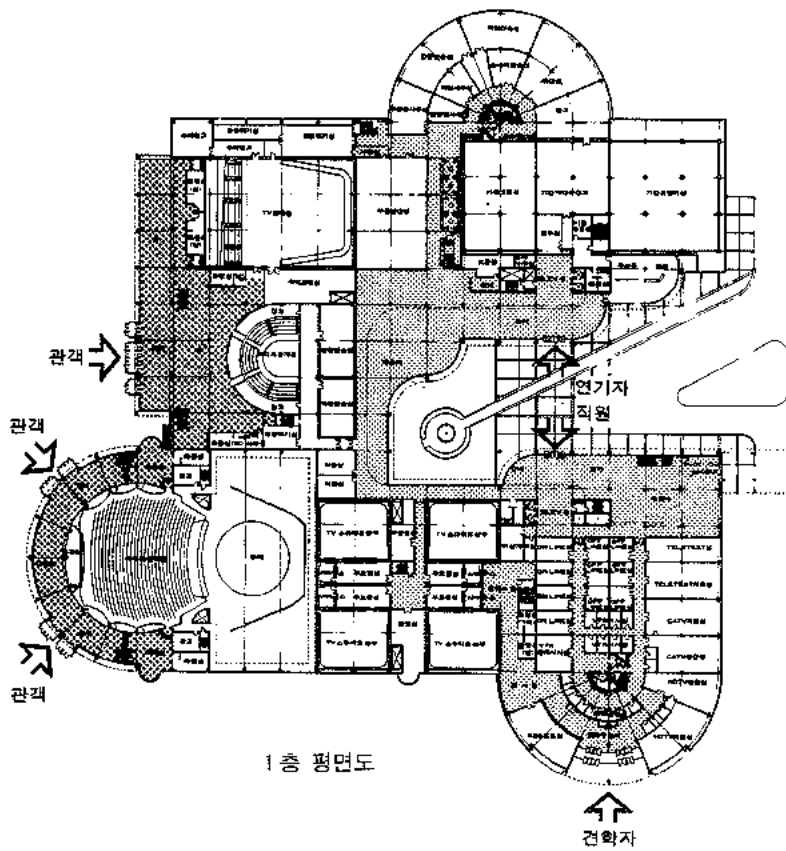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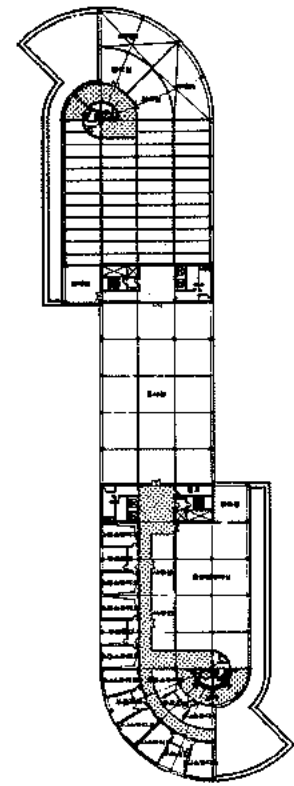
정림건축案

- 건 립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8번지
- 지 역 · 지 구 : 상업지역, 집단미관1종지구, 고도제한지구(최고 40M), 업무지구, 주차장정비지구
- 건 배 율 : 45%
- 용 격 율 : 6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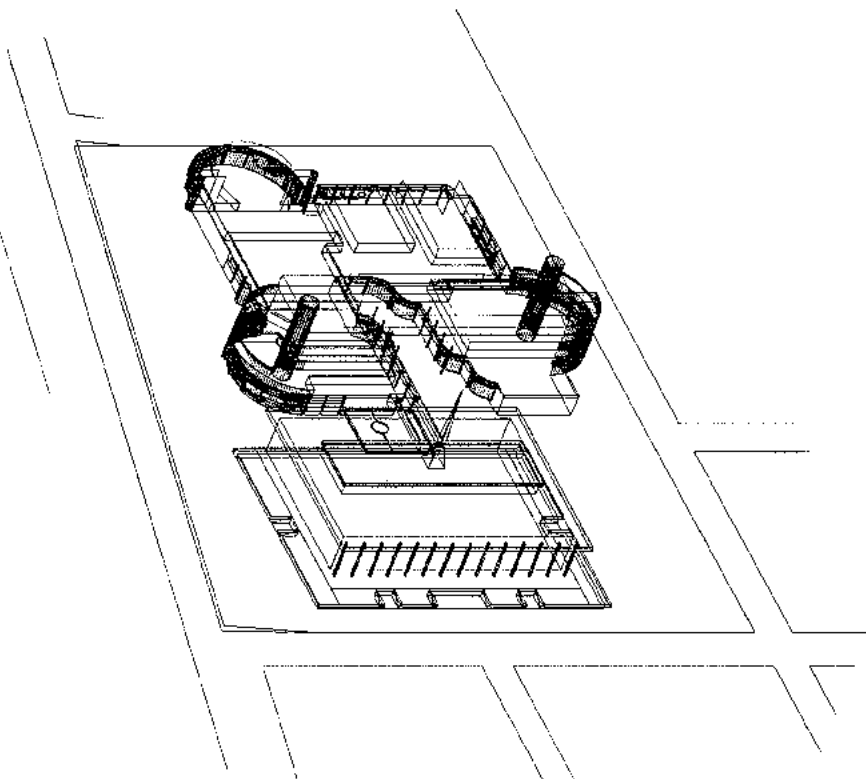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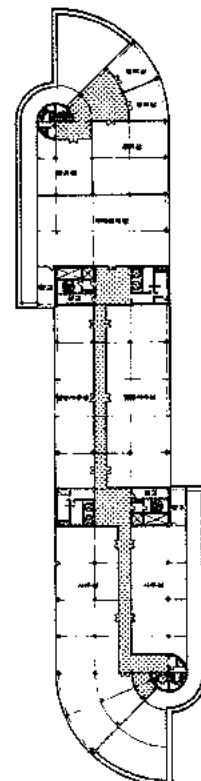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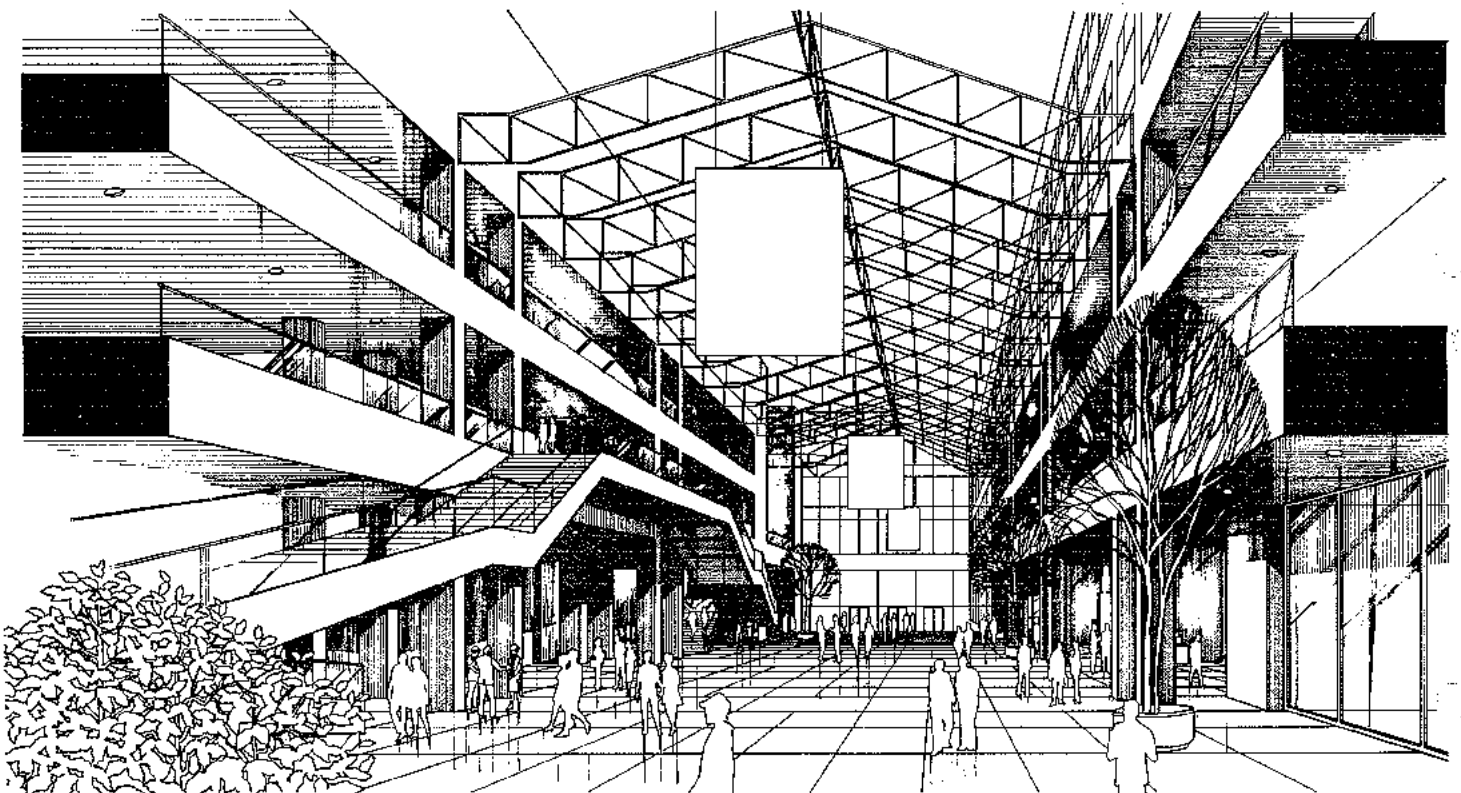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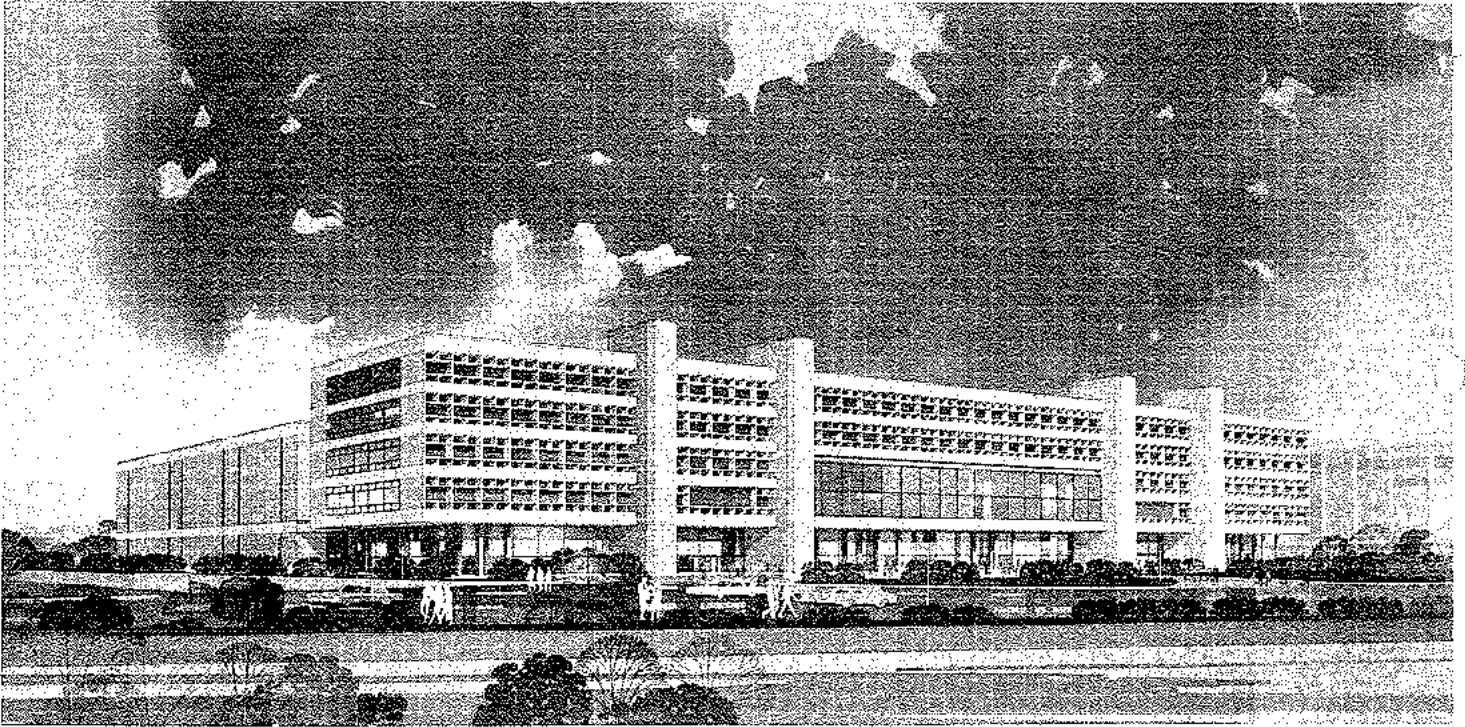
Computer Graph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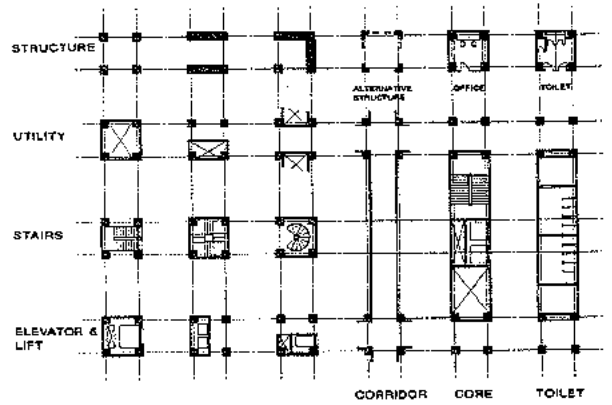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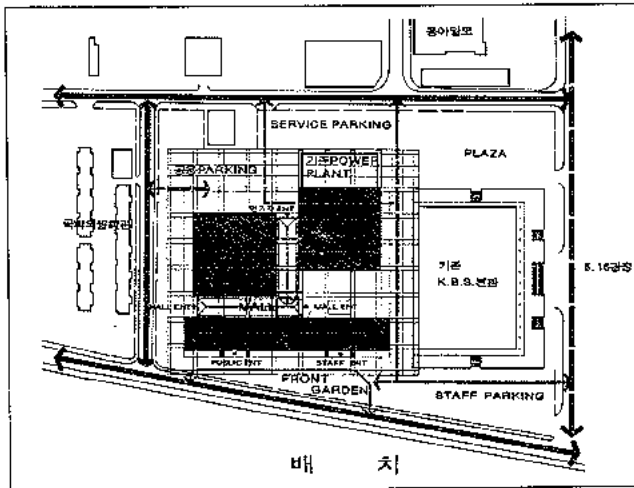
6층 평면도

서울건축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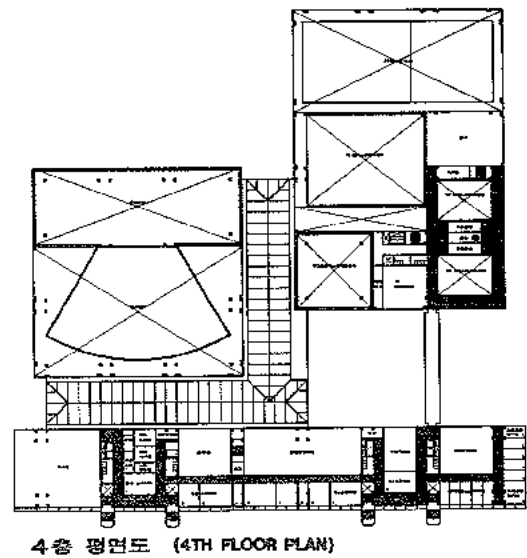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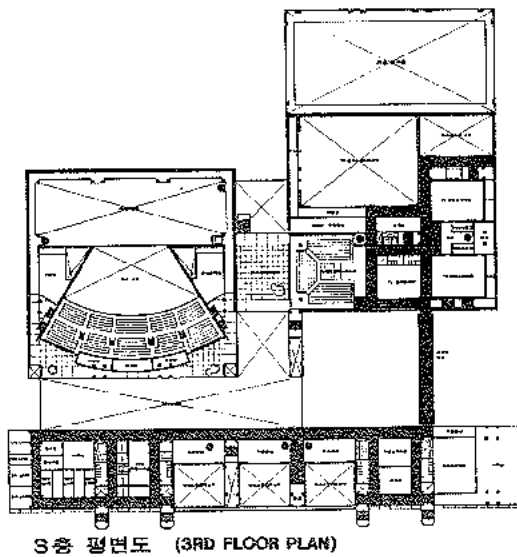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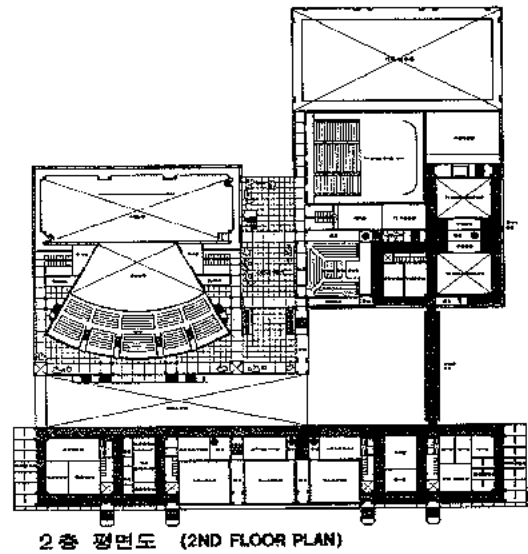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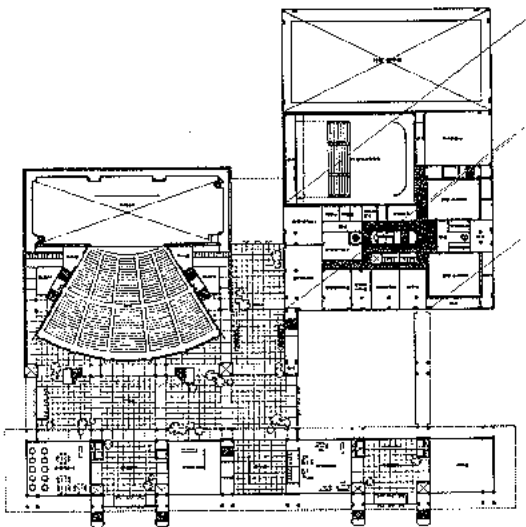
- 건축면적 : 14,930㎡
- 건폐율 : 44%
- 연면적 : 72,062㎡
- 용적율 : 173%
- 건물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건물고 : 34.2m
- 층수 : 지하2층, 지상5층



MALL (KBS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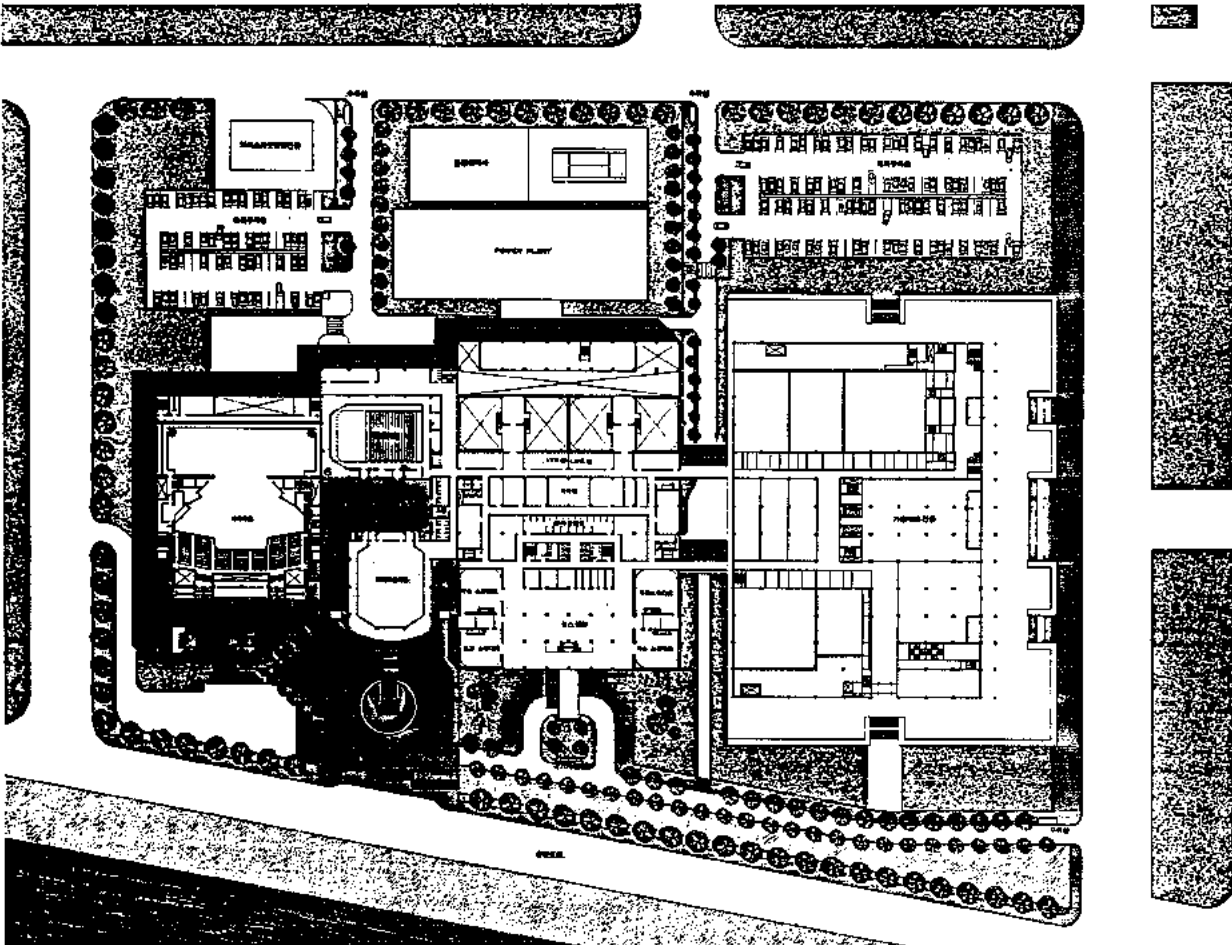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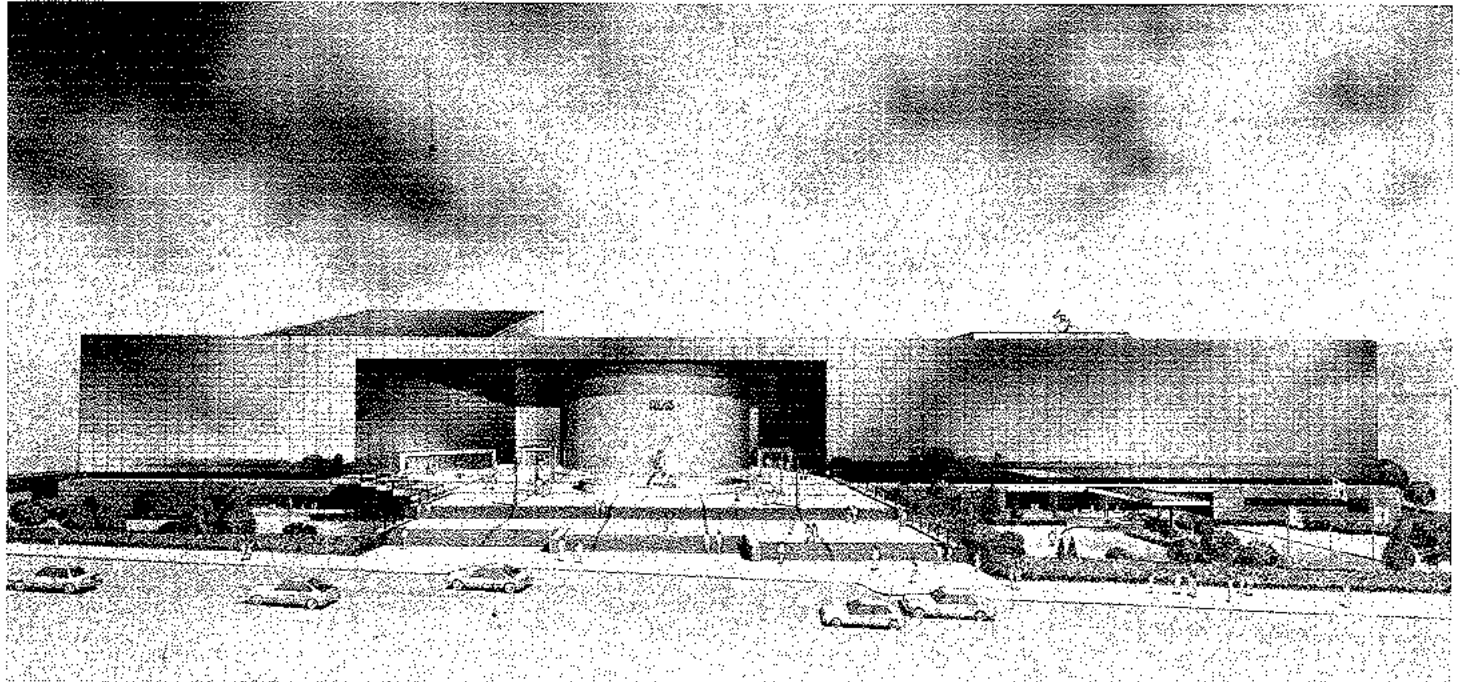
개념도



전상백·김선양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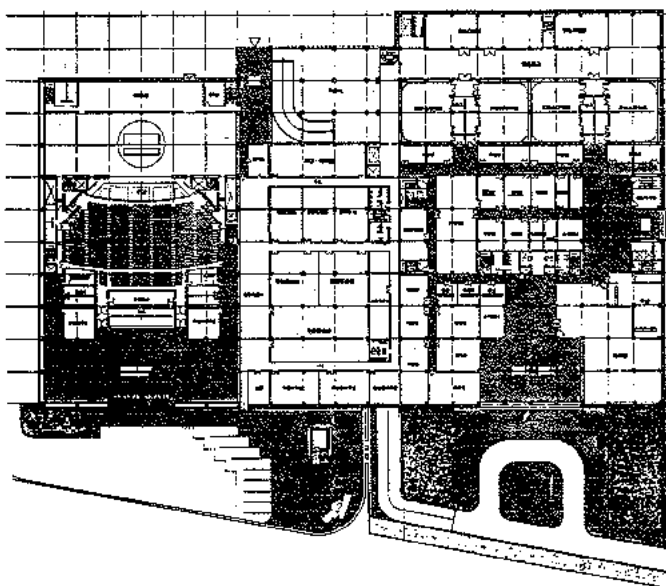
전상백·김선양 /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축면적 : 18,233㎡ (5,818평)
 건폐율 44.3% (기존포함)
- 연면적 : 70,497 (21,325평)
 용적율 137% (기존포함)
- 건물높이 : GL부터 +23m
- 지하층높이 : GL부터 -13.5m
- 주차장 : 옥내 135대, 옥외 22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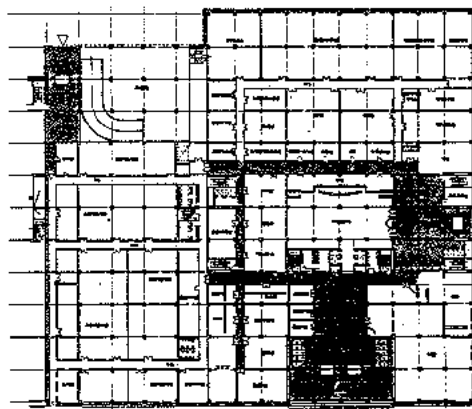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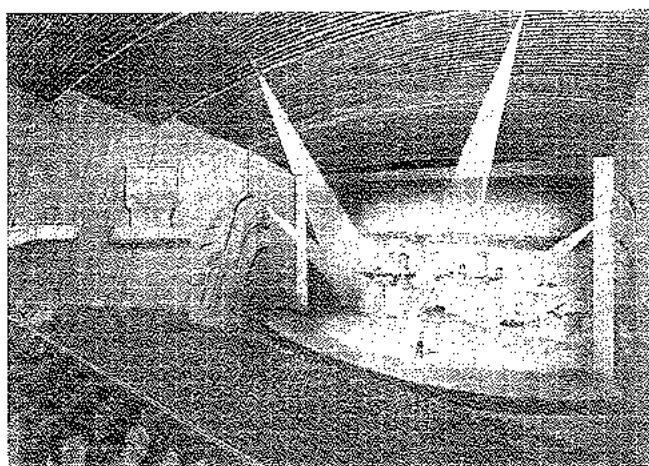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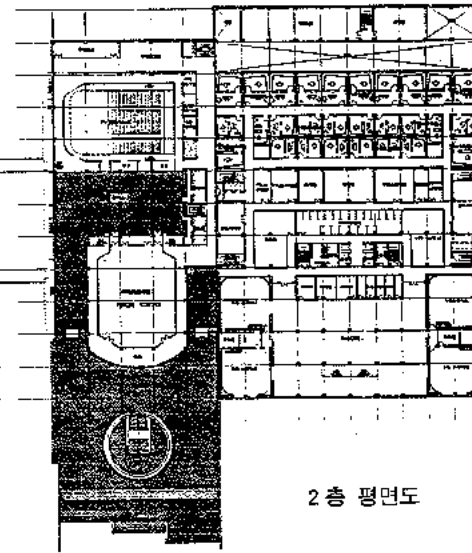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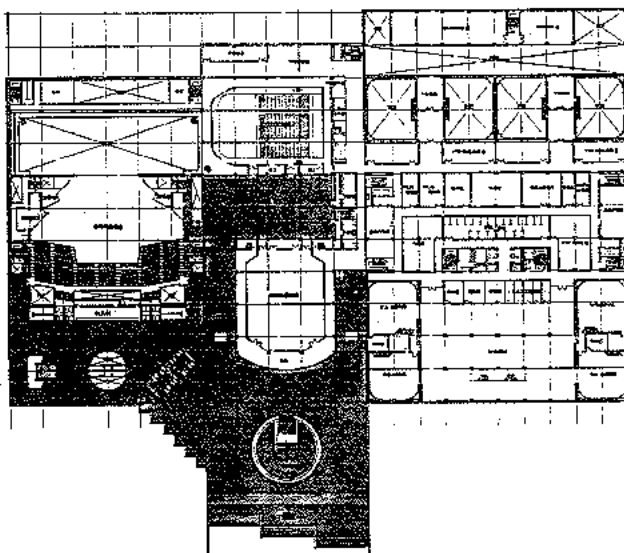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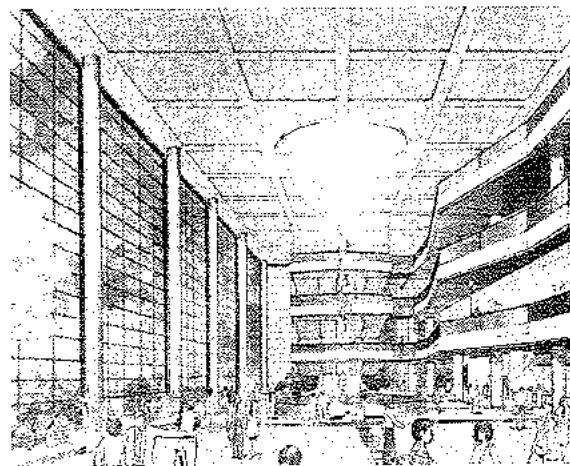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다웅도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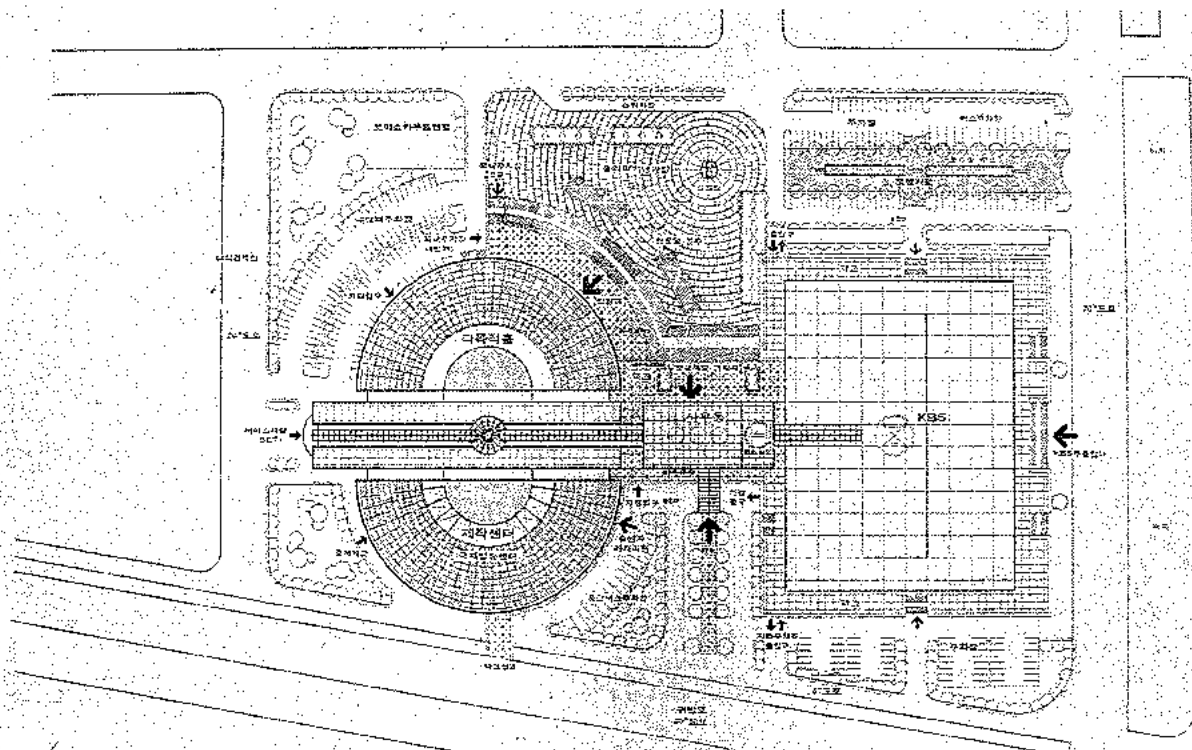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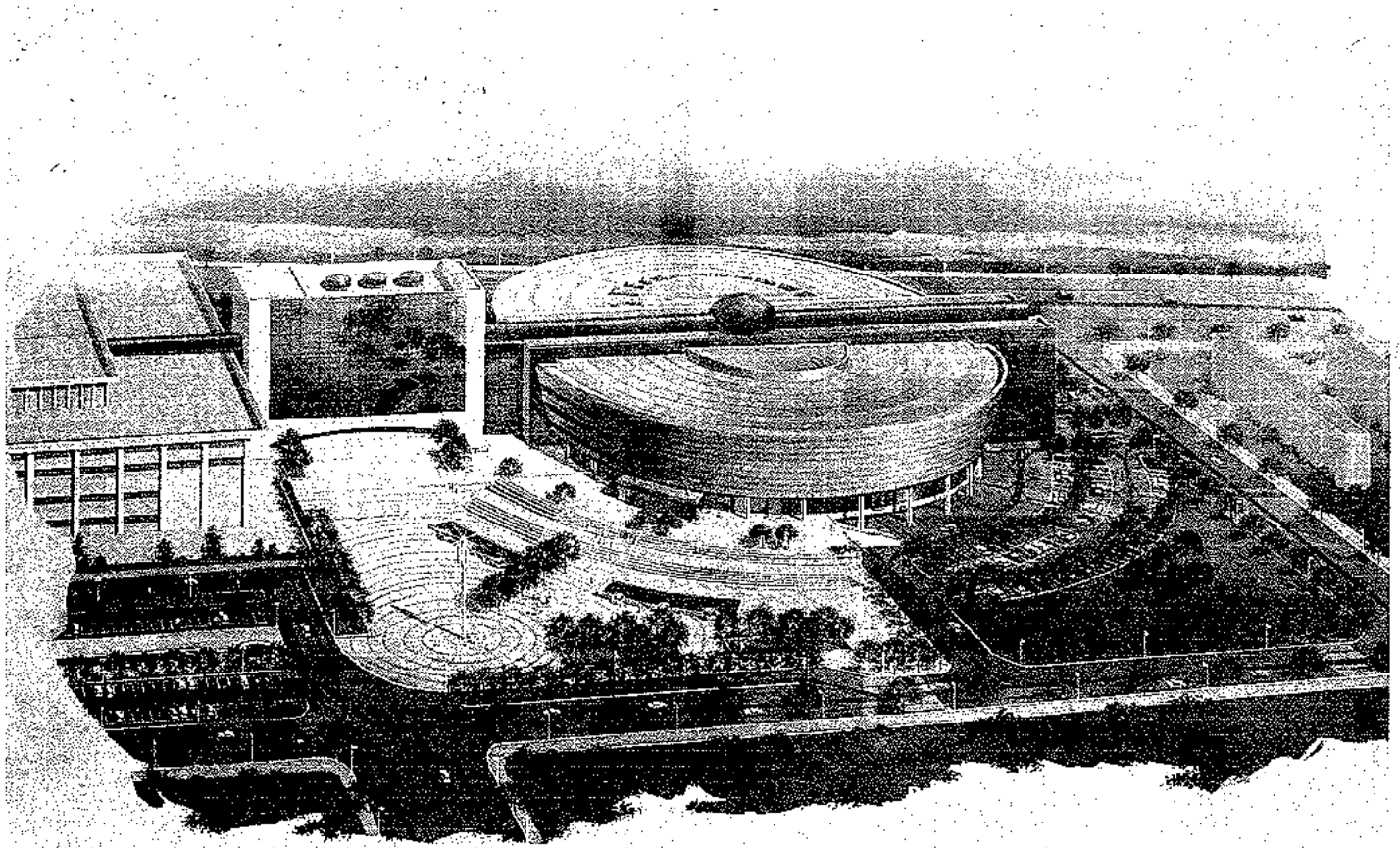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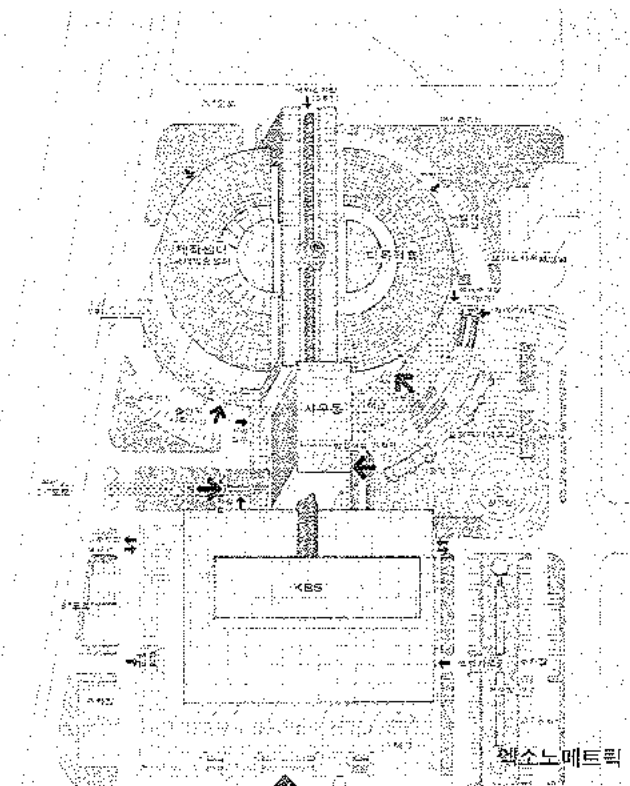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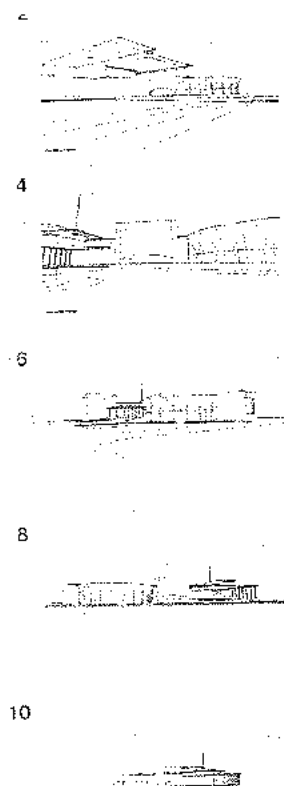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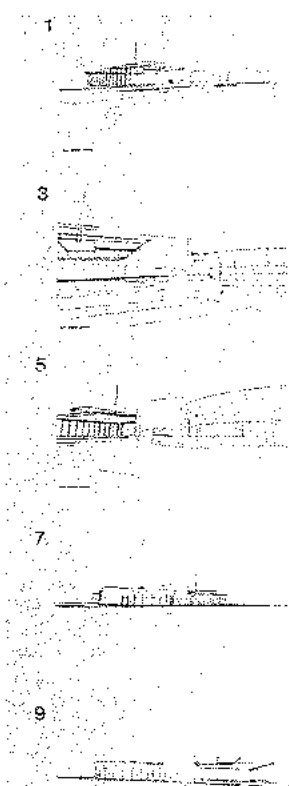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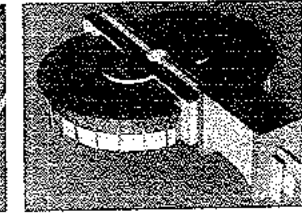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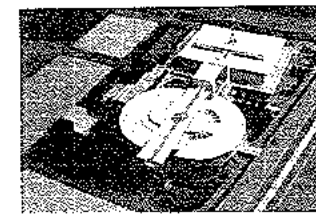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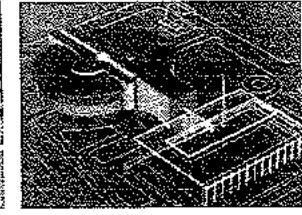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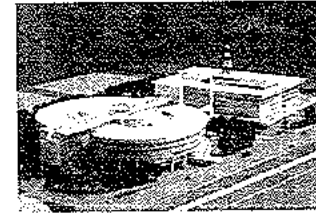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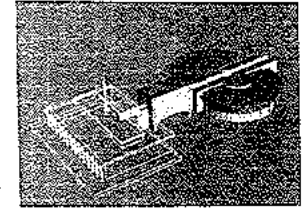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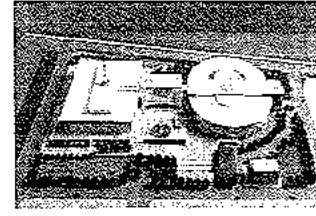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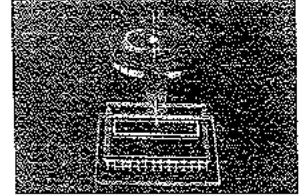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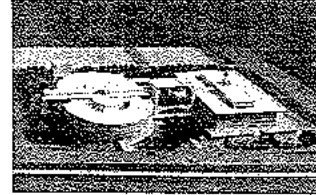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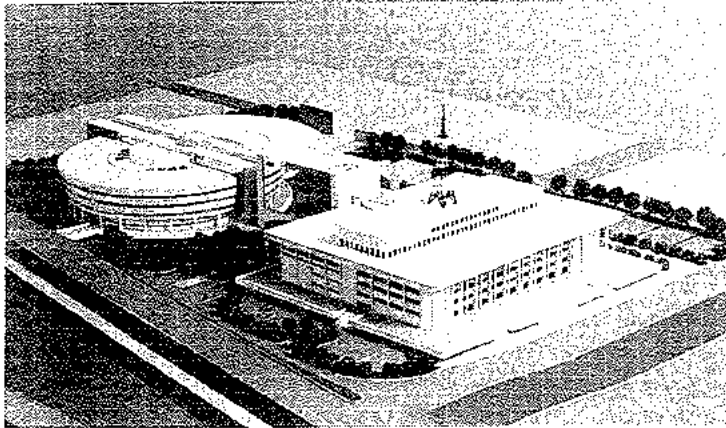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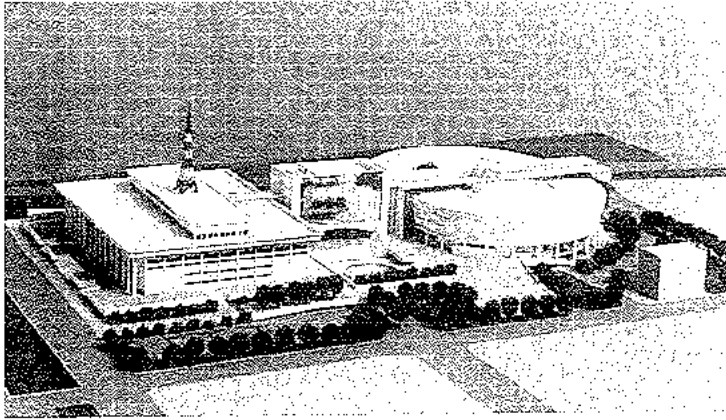
다웅도홀 로비

윤승중·변용 案

윤승중·변용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건축

- 대 지 면 적 : 73,530㎡
- 건 폐 율 : 45% (33,088㎡)
- 용 적 율 : 67% (492,651㎡)
- 현 건축면적 : 본 관 12,317㎡
연수동 2,019㎡
-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규 모 : 지하 2층, 지상 8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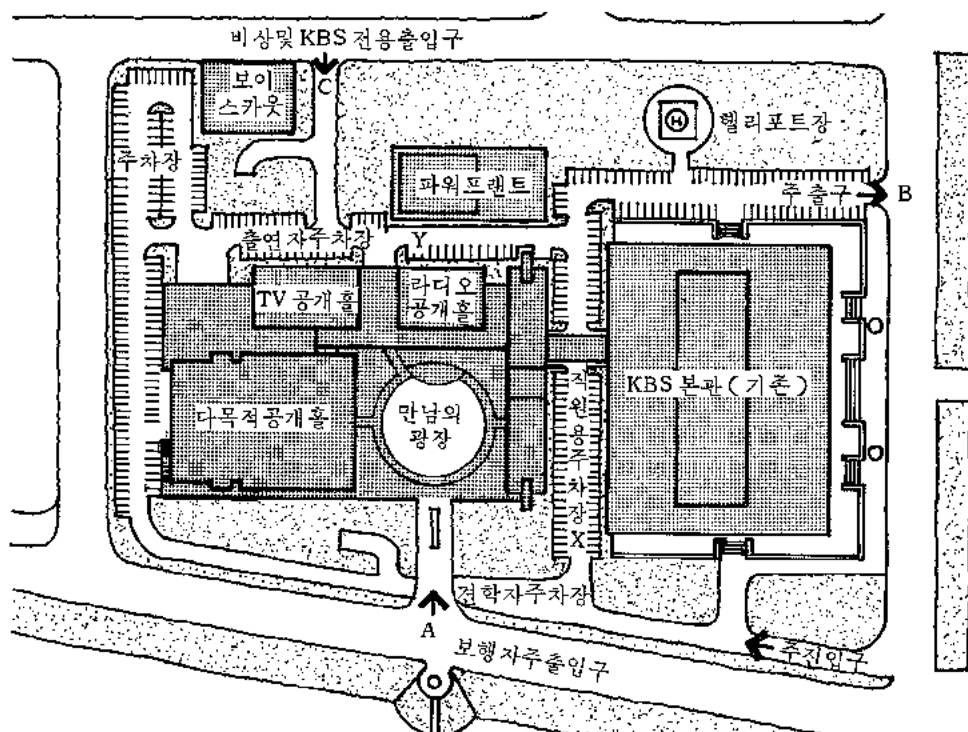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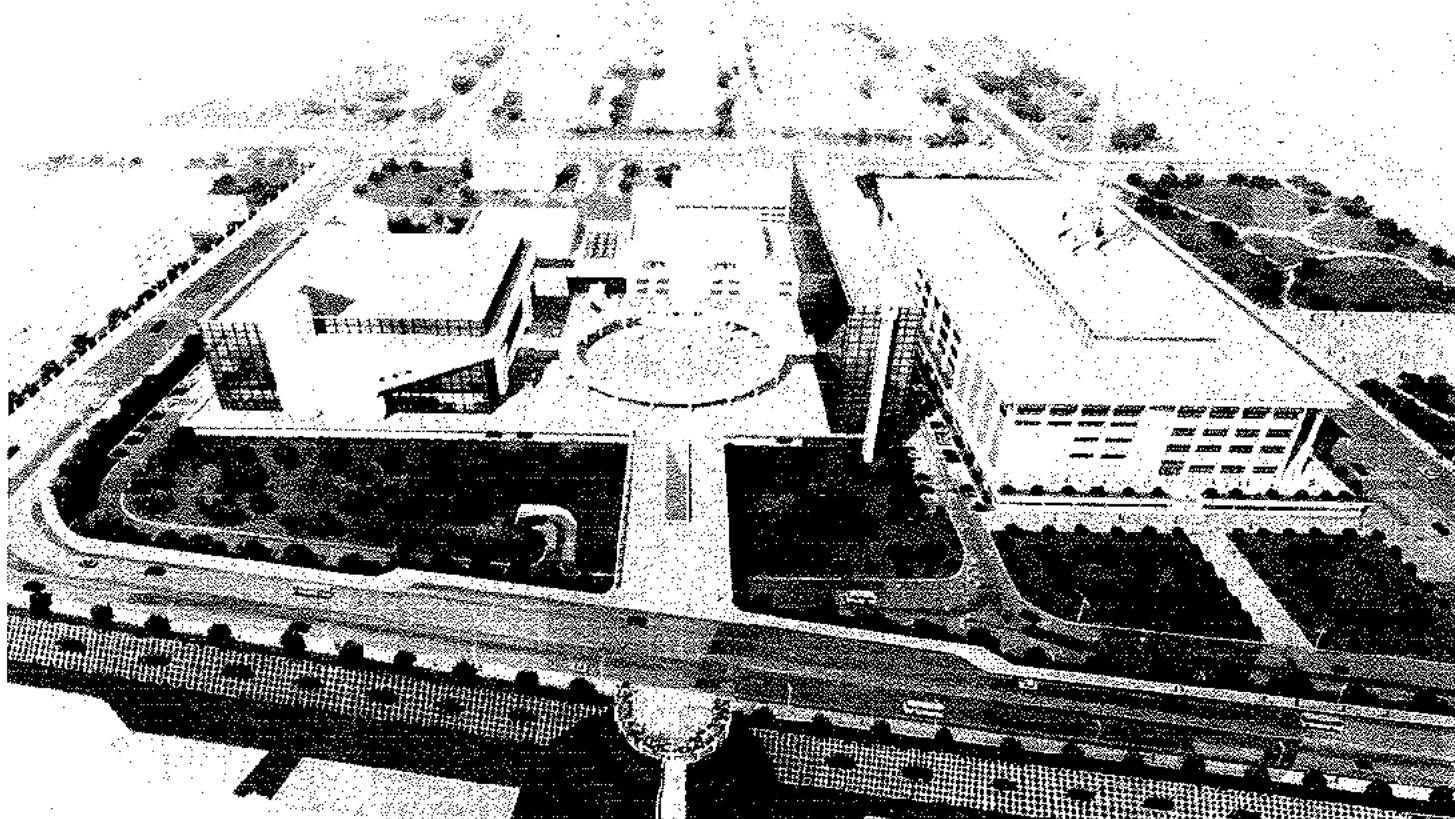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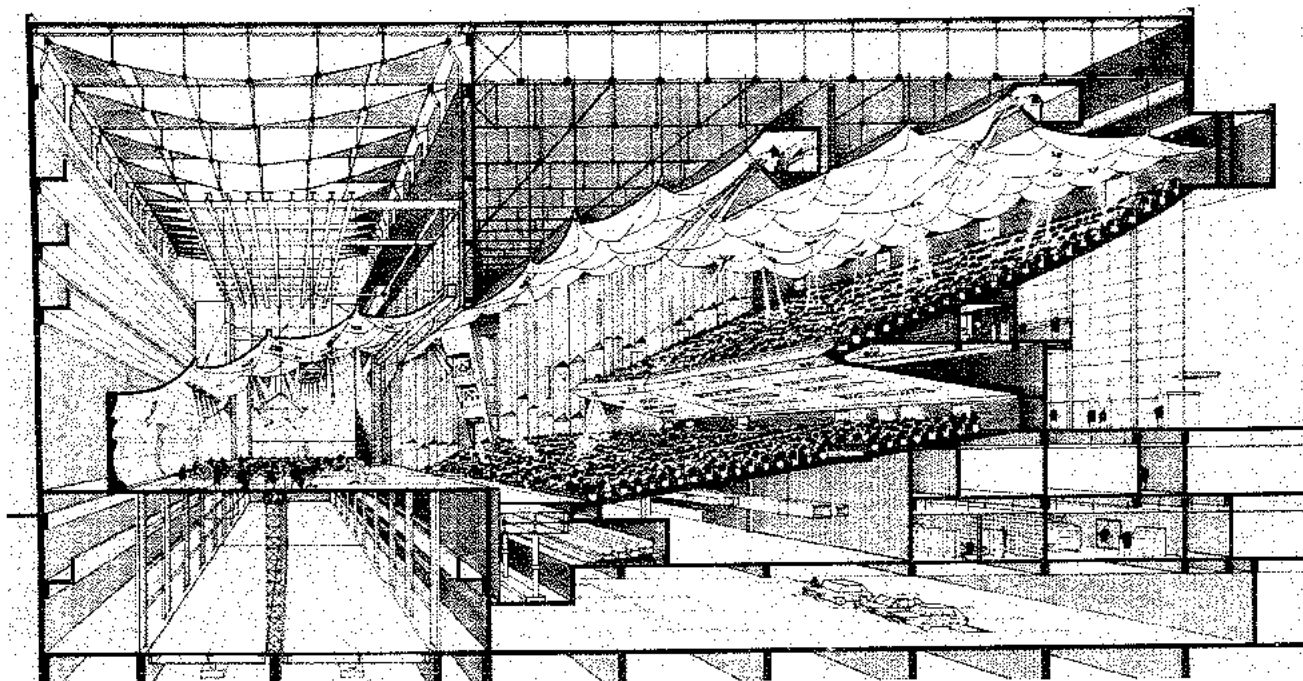


이규창 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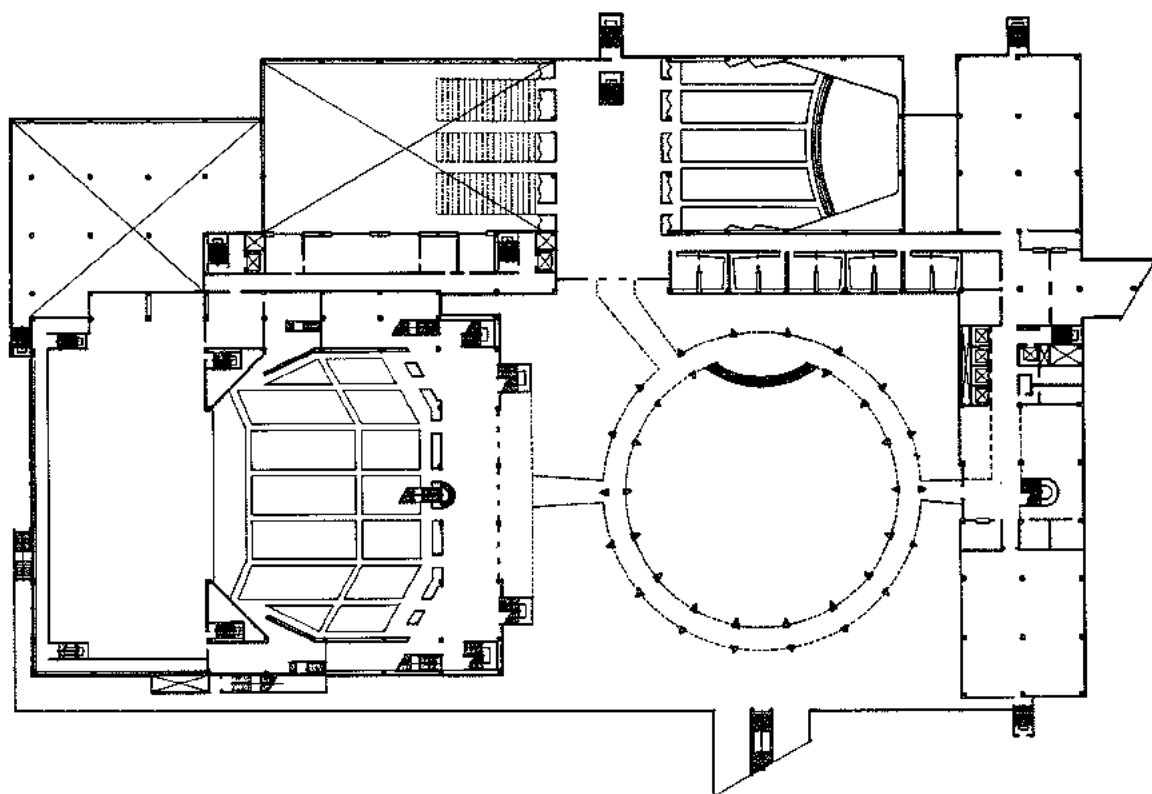
이규창 / (주) 우일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축면적 : 32,660㎡ (22,243평)
- 연
- 건축면적 : 32,660㎡ (22,243평)
- 연면적 : 123,545㎡ (37,372평)
- 건폐율 : 44.4% (법정 45% 이하)
- 주차대수 : 763대 (육내 417대, 육외 346대)
- 높이 : 36.3m





다용도 공개홀 단면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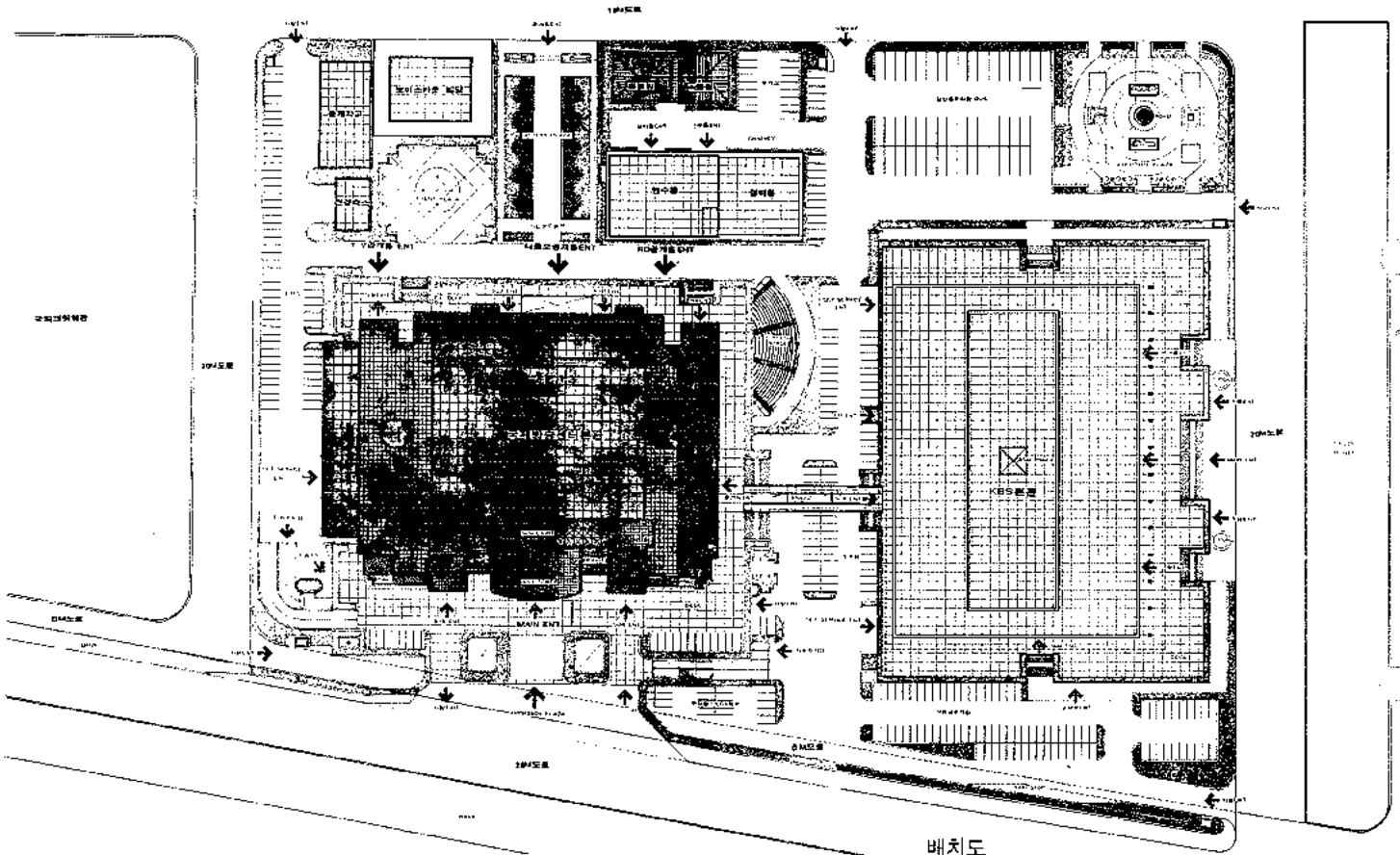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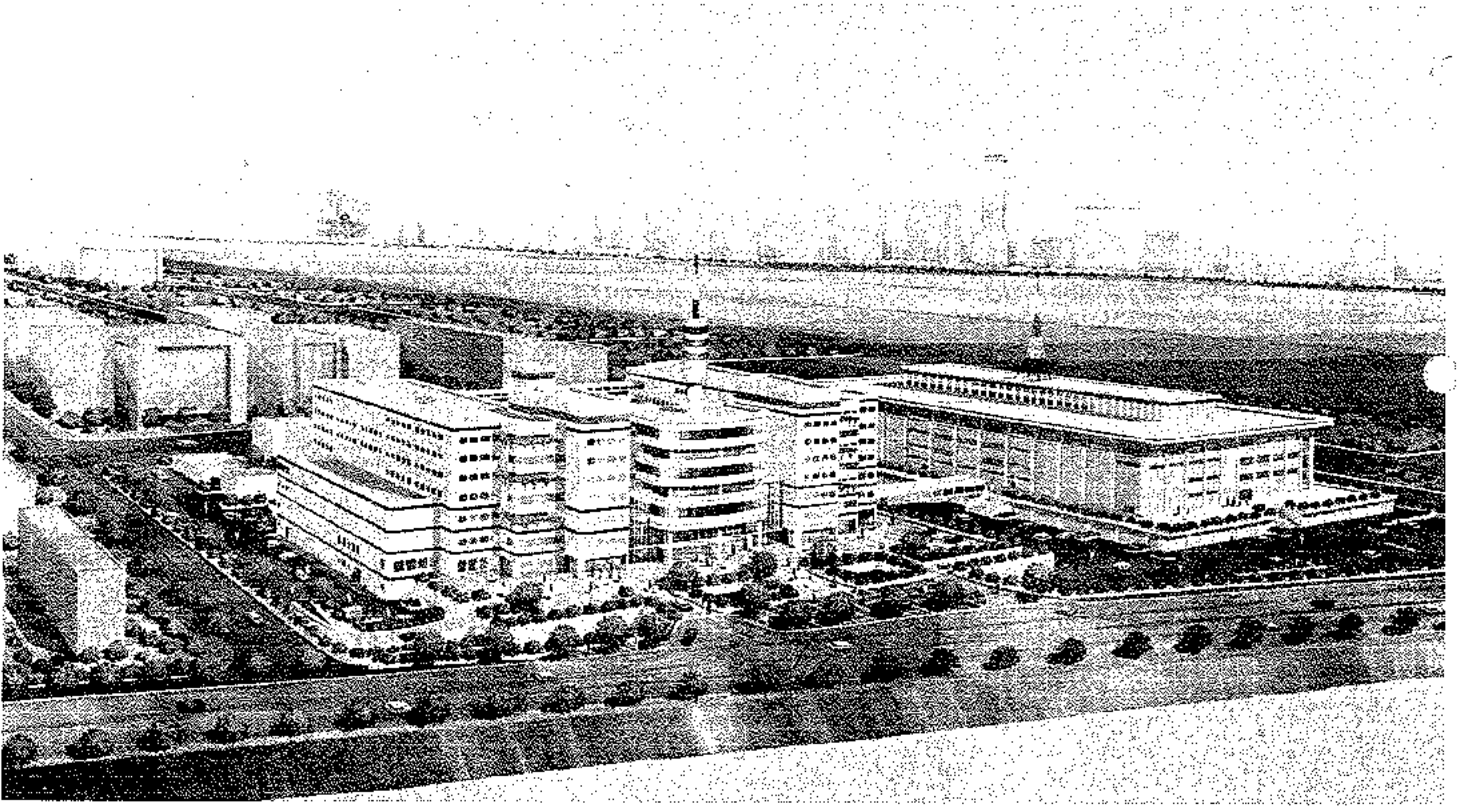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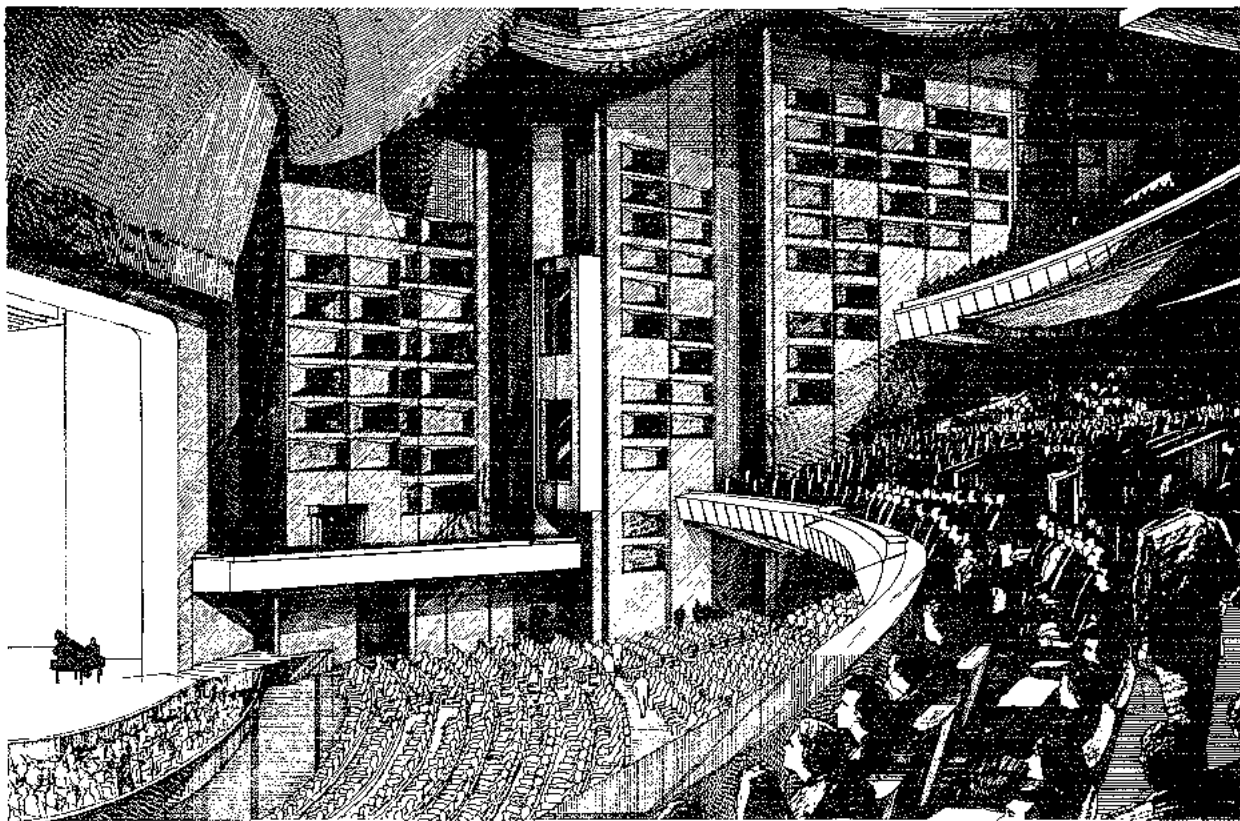
유명하案

유명하 / 창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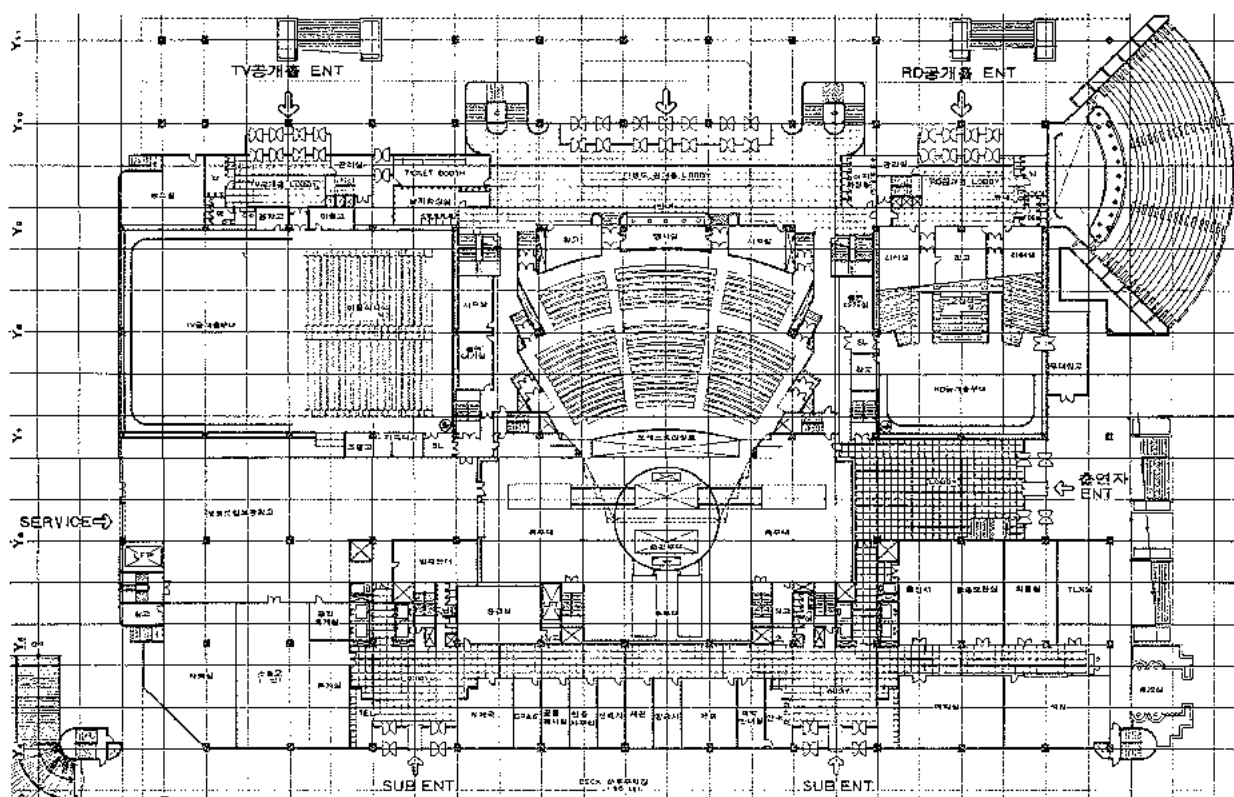
- 건축면적 : 15,648㎡ (4,733.5py) Deck 포함
- 연면적 : 69,701㎡ (21,084py)
- 건폐율 : 40.7% • 용적율 : 135.5%
- 건물구조 :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조
(Post tension 구조)
- 건물규모 : 지하 3층, 지상 8층, 옥탑 1층
- 외장재 : 발색 알루미늄 메탈 판넬
발색 알루미늄 FRAME+페어그래스



배치도



다목적 공개홀 단면투시도



1층 평면도

사 회 : 일기도 모르지 못하는데 이렇게 바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좌담회는 건축사협회 편찬위원회가 주관하였으며, 「건축사」지 8월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는 「현상공모」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리만큼 수없이 많은 大小 Project들을 통하여, 설계경기의 참된 목적을 이해 못하는 시행자측의 안이한 방편에 휘말려 현업 건축인들은 무참하게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때마침 온 국민의 관심사이고, 건축계의 대행사중의 하나였던 '88 올림픽 선수·기자촌 및 IBC 등 국제현상설계경기를 치른 시점을 즈음하여, 본 좌담회를 계획한 것은 관계 건축인들끼리 부담없는 의견 교환을 통해 포괄적으로 설계경기의 현실적 문제점을 재조명해봄으로써, 이땅에 설계 경기의 올바른 풍토가 정착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보자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럼 먼저 이 교수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이영희 : 우리는 지금 건축계 3단체가 UIA. 기준을 기초로 하여 공동으로 제정, 운용하고 있는 「한국건축설계 경기기준」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홍보와 권장으로만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기준의 주요 골자는,

첫째, 주최자의 의무사항으로 설계경기의 조건과 명확한 프로그램 제시

둘째, 심사위원의 사전 구성 및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성비

세째, 반드시 당선작 혹은 최우수작 선정, 공고 저작권 부여

네째, 타당성 있는 상금 책정 등인데 근래에 수없이 시행되었던 각종 설계 경기의 결과가 이 기준에 얼마만큼 부합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근래 모지방 시청사 현상설계 공모에 있어 지방 일간지 한모퉁이에 조그만하게 광고를 내고, 설계 지침서 하나 제시하지 않고, 알아서 좋은 작품을 내라는 주최자의 횡포가 있었습니다. 실지 설계를 할 사람과 현상공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이겠지요.

안영배 : 설계경기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 와서는 점차로 향상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루어진 올림픽 선수촌과 IBC의 경우는 과거의 현상설계보다 발전된 형태의 공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것을 시행하는 주최자측이 공정을 기하려고 크게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 심사에 참여해 보고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었던 점은 심사위원의 수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심사위원이 많으면 공정을 기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사의 공정여부는 심사위원 각자의 태도에 달린 것이니 심사위원의 수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심사위원의 수가 많아지면 의견교환을 충분히 할 수 없고 또한 심사결과에 대한 책임감도 희박해져서 좋은 작품을 선정하기에는 적은 경우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선수촌의 경우, 작품수가 39점이었고 심사위원이 15명이었는데 일주일간을 두고 심사했는데도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座談

韓國建築設計競技의發展方向

님께서 시간이 없으실텐데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광노 : 현상공모의 심사라든지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똑같은 입장인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현상공모에 응모하여 당선도 돼보고 낙선도 되어 보았습니다만 심사위원의 입장에 서보니 당선되신 분에게는 축하를 보냈지만 낙선하신 분께는 무어라 위로의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작품을 만드는데 많은 물심양면의 노력이 드는데 앞으로는 무계획한 응모보다는 사전에 정보를 잘 수집해 응모해야 할지 안할지를 결정, 선별해야 할 것입니다. 심사위원은 절대적이 아닙니다. 심사위원에게 영합하는 현상설계가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요사이 현상설계를 보면 아이디어보다 사진을 찍는다가나 모형에 투자하여 아이디어가 모호한 경우를 흔히 보게 되는데 이런 모임을 통해 우리나라 건축계의

일 시 : 1985. 7. 19.

장 소 : 본협회 회의실

참 석 :

안영배 (서울시립대 교수)

이광노 (서울대 공대 교수)

송중석 (연세대 공대 교수)

곽홍길 (건축사사무소 건원 대표)

송기덕 (주·정일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대표)

한중언 (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 대표)

김 린 (건축사사무소 기전 대표)
(본지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사 회 :

이영희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본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안영배



이영희

IBC의 경우는 작품수가 12점이었고
심사위원이 11명이었습니다. 그 중 4명
이 주최자측에서 나왔지만 심사진행은
주로 건축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
기 때문에 훨씬 용이했습니다.

심사위원의 수는 7명이하가 적당하다
고 봅니다.

이영희 : 송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
까?

송중석 : 과거 현상설계에 당선과 낙
선의 경험이 있어 응모작가의 심정과 입
장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
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을 땐 괴로운 심정
이 되고, 심사에 임할 땐 공정하고 완벽
하게 처리 보답해야겠다는 각오를 해왔
습니다.

작품심사는 하나의 작품을 絶對評價하
는 것이 아니고 여러작품을 상호 비교하
는 相對評價이므로 심사위원의 전문지식
의 수준과 판단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
용한다고 봅니다.

곽홍길 : 현상설계란 좋은작품을 찾는
것 외에도 뜻있는 신인들의 등용문이라
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
든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의 것이고,
그렇지 못할땐 도리어 건축작품에 대한
의욕을 꺾기도 한다고 하겠습니다.

현상설계는 많은 것을 희생하고 그 일
에 미치지 않고는 도저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인데 그에 대한 충분한
보답이 될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 모두
가 현상설계를 작품활동의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습니다.

송기덕 : 현상설계에 응모를 하면서
기슴아팠던것은 출품된 작품을 올바르게
평가를 안하고 특정작품의 둘러리 격이
되고 누가 봐도 졸작을 당선시킨다든가,
그리고 심사에 있어서 심사위원 구성이
전문가 수가 비전문가 수보다 적어서 전
문가의 판정이 비전문가의 판정에 밀려
특정인 졸작을 밀어 당선시킨 예가 허다
하니 막대한 비용을 출혈하면서 좋은 작
품을 응모할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한 어떤 현상설계는 현상설계비를
따로 책정하지 않고 해당설계비의 제
설계비를 떼어서 그 금액에서 지명된 응
모자에게 계획비를 나누어주는 현상방
법을 택하니 자동적으로 설계비가 줄어드
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현상은 지양되
어야 할 것입니다.

한중언 : 저도 최근 현상설계에 10여
차례 참여한바 있습니다. 조금전 사회자
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수가 설계자들
지정해 놓고 현상을 하지 않아도 될 작
품을 현상공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많은
응모자들이 현상을 위해 둘러리를 서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읍니다.

물론 응모자들의 자세도 문제가 될 것
입니다. 응모자들의 자세도 심사위원의
심사자세에 못지않게 고쳐야 할 점이 많
다고 봅니다.

김 린 : 근래에 들어서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한 국내 「프로젝트」들이 많아
짐에 따라 대형건축물의 국제적인 설계
경기시대에 돌입한듯 합니다. 국제현상
의 경우에는 국제건축가연맹(UIA)의 설

계경기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심사위원의 구성은 설계
경기의 공고시에 미리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수
의 2/3이상을 반드시 건축전문가로 구
성하도록 하고, 심사위원의 숫자는 3인
이상 7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
니다.

저는 심사위원의 사전공개가 꼭 지켜
져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심사과정에서 대부분 심사위원의
명단은 알려지게 마련이고 뒷날 또한 남
게 마련입니다. 오히려 사전에 공개하게
되면 심사위원 자신이 여론의 압력을 의
식하지 않을수 없게 되며, 결과에 대한
책임감 같은것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
니다.

한중언 : UIA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을 미리 공개함이 좋을것입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도 긍지를 가지고 임할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현상때마다 느끼는것은
심사위원 구성에 의아심을 갖게되는데
그런점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김 린 : 현상설계의 당선안은 어차피
1개안이 되며 낙선안에 참여한 비용과
정력의 지나친 출혈을 감안할때 응모대
용이 지금보다 더 간결해 졌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본계획만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설계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
다.

형식상으로는 몇차례 있었던것 같습니
다만, 1차단계에서는 「아이디어」 공모
를 하고 2차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계



송종석

회설제안을 선별해 내는 방안을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2단계 현상에는 최소한 실질경비를 보상해주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송기덕 : 공정한 심사와 훌륭한 작품의 발굴을 위해서는 전문가만의 참여, 공정한 심사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제화 시대에 역행하는 누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송종석 : 지명을 포함한 일반공개 현상설계는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공공의 성격과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우선 이러한 현상설계가 있다는 것을 모든 작가들에게 알려주는 적극적인 홍보체제가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명단, 심사경률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평이 유관 지면에 반드시 공개되어 기록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송기덕 : 어떠하든지 현상에 응모할 경우 현상내용이 곧 협회에 알려져 협회 차원에서 심사위원의 구성이든가 심사절차등을 발주처에 권장시켜 훌륭한 결과가 되도록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가, 전문가인 교수 등이 참여하면 범 건축계가 발전하는 현상설계응모에 적극 동참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곽홍길 : 요즈음의 현상설계는 예전과는 달리 주로 시행을 전제로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다시 검토된 바 있는 설계경기규약 등을 통해서



이광노

사협회가 그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해야할 역할같은 것을 찾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김 린 : UIA 규정에 심사위원의 숫자를 3인에서 7인 이내의 기수로 제한하고 있는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것 같습니다. 심사위원의 숫자가 많을수록 책임감은 반비례한다고 생각되며,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심사위원이 너무 많아도 오히려 문제가 있을것입니다.

안영배 : 공정을 기하기 위한 노력은 심사위원의 경우 당연하겠지만 응모자들의 자세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건축계는 바닥이 좁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이래저래 응모자들과 다 통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개심사가 심사위원들을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서 심사 때마다 공개냐 비공개냐가 문제 되곤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심사를 겪어 보고 알게된 것은 응모자들이 의외로 설계기준이나 법규를 지키지 않은 예가 많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올림픽 선수촌의 경우, 아이디어는 대단히 좋은데 이러한 기준위반으로 심사초기에 탈락된 것이 5~6점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참으로 괴로운 일이였습니다. 저는 콤플렉스에서는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소한 기준위반은 묵과하자고 주장했지만 만약 기준위반된 작품이 당선되었을 경우 낙선자들이 이것을 항의하면 주최자측에서 어떻게 답변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선수촌의 경우 이러한 기준위



송기덕

반문제에 관한 것은 심사위원 각자의 판단에 일임하기로 되었었지만 결국 중간에 모두 탈락되고 만것은 이것을 중요시하는 심사위원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종언 : 송교수님께서 법원현상응모했을때 심사도 해주셨고 해서 아시겠지만 여러현상설계결과와는 달리 올림픽선수촌, 기사촌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계에서 당선작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하면 과연 당선작대로 건물이 지어지겠는가 하는데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건축을 하신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림픽은 단 일주일간인데 일주일 뒤 수십년간을 주거공간으로 쓸 아파트단지가 그런 Lay-Out을 가지고 지어질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송종석 : '88서울올림픽선수촌 현상설계 당선작은 근래에 보기드문 특이한 작품입니다. 독특한 기능해석으로 독특한 상징적 표현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도면상에서 보고 느끼는 것과 그것이 세워진 후 느끼는 것에 대한 격차의 폭을 예측할 수 없는 미정험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과 모험을 안고 있는 실험대에 놓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당선작을 두고 항간에서는 "고쳐야 될 것이다" 또는 "고치면 현상설계당선작의 의미가 상실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심사는 끝난 것이고 이제는 당선작가의 소신과 시장국의 판단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을



한중언



김 린



곽홍길

기대해봅니다.

한중언 :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걱정이 돼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현상설계의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한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안교수님이나 송교수님은 제가 건축을 할때 건축작품활동을 하시다 교직에 계셔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근간에 와서 현상설계의 심사위원들이나 市·建設部 심의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작품을 한번도 해보지 않은 교수들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심의위원에도 몇분이 재신결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도적인 잘못으로 학교에 계신 분들이 작품활동을 못하게 되어 그런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품을 한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 남이 애써 만든 작품을 심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가급적이면 작품이나 작품을 지도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또한 교수님만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지 말고 작품을 출품하지 않은 현역에 있는 건축사들도 몇분 참가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송증식 :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시여 동참합니다.

대학교수들이 각종설계 심사위원으로 많이 위촉을 받는 것은 학식이 높고 경험이 많고 공정한 입장에 설수 있는 사

회적 위치를 기대한 개연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학교수들중에는 더러 실무경험이 부족한 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처럼 실무에 전념하시는 분들도 설계심사에 같이 참여하여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은 과도기적으로도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한편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계 대학교육이 이론과 말에 끝나지 않는 실질적교육이 되도록 대학교수들로 하여금 설계실무에 참여 할수 있는 제도적 완화조치에 협력·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교수들이 소속대학을 설계할수 있고, 재한된 범위에서 독자적으로 대의 설계를 맡게 한다든가 또는 설계사무소와 공동으로 협동할수 있게끔 하는것입니다.

한편 실무에 오랫동안 종사한 분은 특수대학원에 오셔서 새로운 이론과 학문을 익히고 자기의 실무경험을 정리하면서 교수와의 대화를 통한 자기발전을 기한다면 이와같이 어려운 작품심사나 평가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건축계가 보다 높은 차원에서 서로 협력하고 크게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영배 : IBC의 경우 주최자측에서 비전문가들이 참여하였지만 그들은 대체로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지만 했고 최종적인 의견도 전문가의 의견과 합치되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전문가의 참여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음은 설비나 구조분야의 전문가 참

여문제 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설비나 구조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로 듣는것은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종합판단은 역시 건축 전문가들이 해야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건축가란 계획이나 구조, 설비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것을 다루는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면에서 볼때 젊은교수들이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작품활동이 막혀있지만 완화해서 자기집이나 학교등 작품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은 건축사협회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관청에서 심사위원으로 대학교수를 자주 지명하는 것도 일반 개연성으로 봐서 대학교수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나본대 과도기적 입장에서 경험도 없는 대학교수를 자주 지명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처럼 실무경험자가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며 한편으로는 경험없는 대학교수에게 조금이나마 실무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 좋은 교육자가 되게하는 것도 강구해 봐야겠습니다.

김 린 : 안교수님 말씀중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고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중에 이번 올림픽선수촌의 경우에 표현기법이나 방법에서 규정을 여겨서 야깝게 낙선된 작품이 5~6점 있다고 하셨는데, 항간에도 낙선된 작품에 좋은작품이 많았다는 여론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현상설계를 통해서 문제

작가도 나오고 현상을 계기로 건축문화가 발전되는 「이벤트」가 되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현상설계의 흐름이 그런 획기적인 작품이나 문제작가를 발굴하기보다 안이한 쪽으로 가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무난한 작품중에서 우선 결격사유가 없고 실현성이 강한 작품을 고르다 보니까 본래의 현상 목적에서 빗나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안영배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옹호하는 사람은 규정을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겠고 반면에 심사하는 사람은 아이디어 위주로 선정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 심사결과에 대해서 항간에 말들이 좀 있는것 같은데 이번 심사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 한마디 안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이번 심사는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이 기준위반으로 초기에 탈락된 것이 개인적으로 크게 괴로웠을 뿐 대체로 공정하게 심사가 잘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초기단계에서는 작품의 우열을 가리기가 용이했지만 최종단계에서는 작품마다 특성이 달라서 어느것을 선정해야할 지 결정하기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최종단계에 오른 세개의 작품중 나는 사실 김병현씨 작품에 가장 호감이 갔습니다. 이 작품은 건물의 구성이나 오픈스페이스의 전개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기념성과 통일성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결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중 하나는 단지내를 가로지르는 활모양의 중앙도로가 단지를 둘로 분리시키고 있다는 점과 또 다른 하나는 30층이나 되는 고층 아파트의 수가 비교적 많았고 또한 이 건물의 피난계단이 하나밖에 없다고하는 점이었습니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최종단계까지 오른 우수한 작품임에는 틀림없으나 부채꼴의 획일적인 오픈스페이스가 준공되고 난다음 과연 어떻게 느껴질 지 의문이 크게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블록형태가 단지 외곽에 갈수록 높아지는 변화가 있으며 건물의 외관도 일반적인 우리나라 아파트에 비해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의외로 재미있는 주택단지가 되지 않을까 크게 기대도 됩니다.

그 밖에 여러작품들은 일반적인 단지

계획으로서는 모두 우수하고 큰결함이 없는 무난한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선수촌의 경우, 기념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현상설계에서는 아이디어가 뚜렷한 것보다는 평범하고 무난한 것이 당선되기 쉬운데 이번 심사에서는 특성이 강한 작품이 당선되었다고 하는것은 획기적인 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 입선작 전시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고 있을때 동료 건축가들과 함께 구경하였습니다. 그때 그 중 어느작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나의 질문에 의견들이 제각기 달랐습니다. 여러작품들이 제각기 특성과 함께 큰 결함들이 있어서 어느것을 더 중요시 해야되느냐에 대해서는 모두 의견이 갈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현상설계든 모든 사람에게 만족될 수있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지극히 힘든 일로 생각합니다.

현상설계가 있을때마다 다소의 물의는 있지만 그때마다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영희 : 많은 참고가 될 좋은 말씀입니다. 심사하셨던 교수님들의 심사평을 우리 건축사지 8월호에 실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번 '88의 경우, 전문가의 깊은 연구가 수렴된 설계 프로그램은 좋은 표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집행과정에 있어서 심사위원회구성, 공고 및 심사발표일정이 제시된 계획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외국건축가가 다수 참여한 국제설계경기관 측면에서, 가볍게 넘겨 버릴수 없는 착오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어느 현상설계에 있어서든, 당선작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따르기 마련이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 궁극적인 발전이 있다고 보겠지요. 오늘 이자리에 당선작가를 위시하여 참석키로 약속된 더많은 관계 건축인들이 자리를 같이 해주셨더라면 건설적인 衆知가 수렴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유감입니다. 최우수작이라 해서 100% 충족되었다기보다 상대적 우위의 강점을 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다행히 서울市長께서, 과거 여타 다른 설계에 있어서 시행착오의 지나친 간섭으로 당선작가의 설계의도가 변질되어버린 시행착오를 인지하고 이번 '88의

경우는 작가의 의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설계작업환경을 보장한다고 공언하셨으니, 앞으로 기본설계(design develop) 과정에서 훌륭한 결실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좋은 작품을 내주신 박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곽홍길 : 올림픽현상설계 결과는 심사위원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셔서 결정되었으리라 생각되므로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 다만 심사과정이나 심사평이 충분히 설명되어 오해를 만드는 일 없이 정말 멋이 있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당선작가는 자랑스럽게 당선안을 동료작가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좋은 작품내용에 대하여 축하도 받고, 어려웠던 점을 서로 얘기도 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도 하여 다음 단계의 설계에 반영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송기덕 : 오늘 이자리에서 나누었던 모든 의견들을 수렴하여 공식문서화하여 모든 건축가들이 이해하도록 노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과거 3단계의 설계경기규약이 큰 성과는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기를 통해 정립해 놓으면 앞으로 10년걸려서 해야 될 것이 2, 3년 정도로 단축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영희 : 우리가 처해있는 건축설계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건축사협회가 어느 단체보다도 앞장서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차제,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종 자문위원이나, 심사위원에 임할 때, 작가의 고심을 함께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대학에 계신분들이 수가를 받는 설계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현업 건축사의 입장으로 볼때, 의당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단순논리가 성립되지만, 한편 장기안목으로 곰곰히 생각해보면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육이란 측면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좌담회는 이것으로 끝맺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휴가는 알뜰하게 행락은 조용하게

수도물 두 방울, 석유 한 방울

쓰레기 더미 속에 빈병들이 버려지고 있다. 맥주병, 소주병, 사이다병, 콜라병…….

그 흔하던 엿장수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서 안보이게 되더니 강냉이 튀김장수도 드물어졌고 고물수집원의 모습도 드물어졌다.

빈병이 나면 좋아라 차지하고 모아, 강냉이 튀김장수의 가위질 소리를 기다리던 아이들의 풍속도도 어느덧 변하였다. 이제는 빈병이 나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빈병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결국엔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만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 생활 주변에는 이런 조그만 변화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빈병이 쓰레기 더미에 섞이는 변화는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수도栓에 호스를 끼고 거침없이 수도 물을 뿜어대며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아까운 생각이 든다.

「수도 물 두 방울, 석유 한 방울」

이것은 수도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의 50%가 석유 값이며 이 석유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소중한 달러를 외국에다 주고 사들여 와야만 한다고 어느 전문가가 분석하며 도출해 낸 공식이다.

시원스레 물을 뿜어대며 콘크리트 마당을 씻어내고 집 앞 거리까지 쓸어내는 이른 아침 광경은 신선하고 또 경이롭기까지 한게 사실이다. 온 국민이 새벽마다 모두 이렇게 부지런히 정성을 다 해 청소 한다면 우리 주위는 구태여 환경미화원의 도움 없이도 깨끗하게 잘 정돈될 것이다. 새벽부터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로 책정되는 市政豫算 중의 일부를 절감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는 청소가 습관화 되고 일반화 되려면 市民意識이 먼저 高揚되어야 한다.

청소하는 모습은 그래서 아름답고 믿음직 하다. 성숙한 시민이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광경의 裏面에 야누스(Janus)의 다른 모습과 같이〈낭비〉가 동반되어서는 문제이다.

어느 이웃 나라 국민들은 집집마다 빗물통을 준비해 두고, 물을 써야 하는 허드렛 일에 이 빗물을 쓴다고 한다. 이렇게 지혜 넘치는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었으면 한다.

7월26일자 모 일간지는 不要不急한 각종 단체 해외여행으로 아까운 外貨가 낭비되고 있다고 전한다.

7월25일 交通部가 집계한 바에 의하면 올들어 5월까지의 出國者數는 19만 4천여명으로 작년 同期의 19만 5천여명에 비해 1천명 정도 줄었지만, 쓰인 外貨는 2억 4천 8백만달러로 작년 同期의 2억 1천 6백여만 달러보다 무려 3천 2백만 달러(韓貨 2백81억여원)나 늘었다는 것이다.

출국자 수가 큰 변동 없는데도 달러가 많이 나간 것에 대해 어느 관계자는 「해외에서 경제적으로 돈을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 하는가 하면 어느 관계자는 「1백명 안팎의 단체 해외여행 신청이 많아졌는데 대부분 본래 해외여행목적에 부합하는 여행일정보다 2~3배 되는 관광일정을 부가하여 여비를 쓰기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다 맞는 얘기일 것이다. 어느 한 원인만이 아니고 복합적인 원인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째 안가는 債務國이다. 4천만 온 국민이 1인당 평균 60여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라고 한다. 3인 가족이면 최소한 1백80만원, 5인 가족이면 최소한 3백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부

동반하여 성지순례를 하고 친목단체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보통 15일, 길게는 한 달까지 해외여행을 하면서 外貨를 쓴다니 아연할 수 밖에 없다.

오늘 우리의 번영은 온 겨레의 땀과 노력 위에 세워진 것이지만 따지고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더미 위에 세워진 것이기도 하다.

오늘의 이 번영은 우리가 아직 구가할 번영이 아니요 아직 누려야 할 富가 아니라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 할부로 구입한 고가의 냉장고나 컬러 텔레비전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의 번영이나 富는 外債를 갚고 나야 엄밀한 뜻에서 우리의 소유가 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등 국민이나 된 듯이 벌써부터 해외여행에 다투어 앞장 서서 외화 쓰기를 꺼리지 않고, 거리낌없이 빈병을 버리고 수도물을 낭비하고, 얼마 전 같았으면 꽤메어 충분히 신었을 구두도 헌 신작 버리듯 미련없이 버리고, 보지도 않으면서 컬러TV를 습관적으로 전체 전기를 낭비하고, 苾만 갈아끼우면 얼마든지 더 쓸 볼펜도 다 썼다고 송두리째 버린다.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 생활 곳곳에는 이처럼 浪費가 활개치고 춤을 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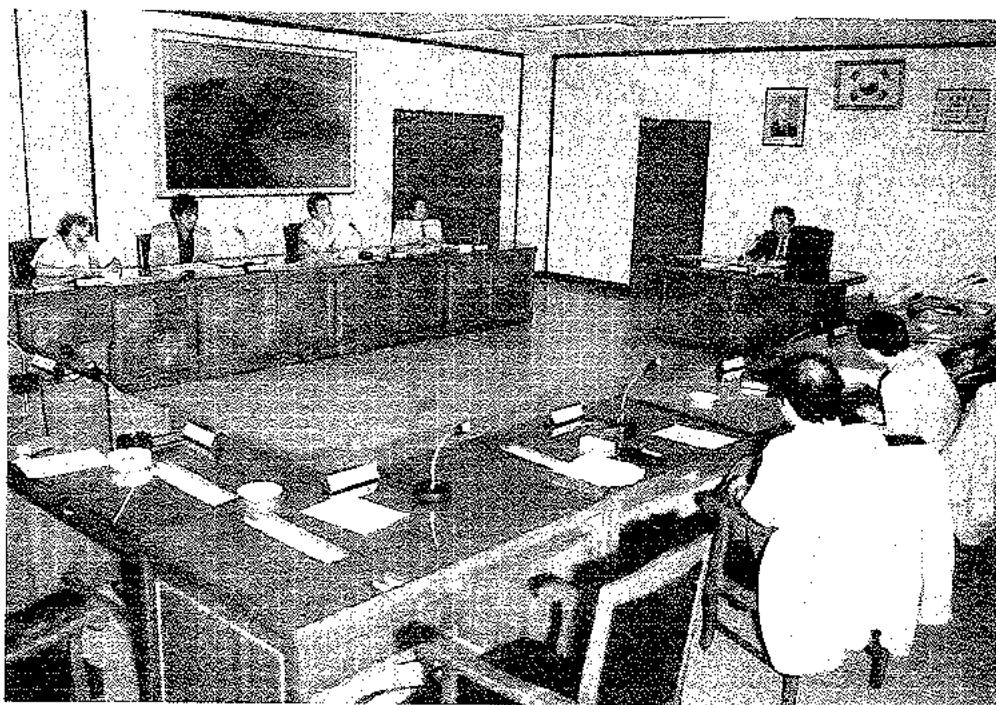
外債 갚는 일은 정부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다. 온 국민이 舍心하고 協力해야 하는 일이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른도 어린이도, 무엇이랴도 아끼고 절약하면서 政府의 대외 채무 상환능력이 향상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外債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번영을 번영으로 구가 할 수 있고 富를 富대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 때까지는 더욱 땀 흘리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

(出版事業部長 趙哲源)

建築設計에 있어서의 室内디자인



일시 : 85년 7월 18일 (목) 오후 4시

장소 : 본협회 회의실

참석 :

- 본협회 실내디자인분과위원
曹龜鉉, 金鳳錫, 劉圭成
- 본협회 이사
俞景哲
- 본협회 회원
尹承重, 金正湜
- 실내디자인학회
文信珪, 孫錫辰, 趙聖烈
- 흥익대 공대 교수
金成國
- 안화대 교수
元正洙

사회 : 曹龜鉉 (본협회 실내디자인
분과위원장)

司 會 - 인사말씀 (생략)

실내 디자인에 대한 좌담회를 통해 실내 디자인의 방향 설정을 하고 금년 가을 안으로 실내 디자인 공사 진행에 필요한 일체 도면과 구상 스케치를 넣어 작품집을 만들고 86년 3월에 좌담회와 작품집을 토대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실내 디자인에 관한 관심을 새로이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선 오늘의 좌담회를 위한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吳雄錫 - 오늘 바쁘신 중에도 본협회 회관을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내 디자인 분야가 전문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 의해 상당한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건축물을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크게 보면 건축의 일부분으로서 건축사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할 분야이기에는 하나 역시 그 전문성을 고려해 볼때 깊이있는 단독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본협회에서는 종합적인 하나의 건축물을 설계해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문제를 안고 있는 이상 실내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U.I.A. 기구를 살펴 볼때에도 실내디자인 위원회를 두

고 연구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실내디자인 분야를 소홀히 다뤘지만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협회에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건축물을 완성해 나가기 위한 공동 목적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같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좌담회가 실내디자인의 발전적 계기가 되도록 기탄없는 의견 있으시길 바랍니다.

司 會 - 오늘 좌담회의 주제는 "건축 설계에 있어서 실내 디자인분야"에 대한 것인데 먼저 그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趙聖烈 - 저의 한국 인테리어 협회가 설립 된지 6년정도 됐는데 과학기술자에 등록이라든지 협회 명칭을 쓰는 문제에 있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1950-1960년대까지는 실내장식, 실내장치라는 말을 많이 썼고 저희가 학생때는 실내외장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 가장 가깝게 쓰여진다고 하는 말이 실내건축입니다. 그 근원이 미국과 유럽 쪽이 또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 (Design)" 또는 "인테리어 데코레이션 (Decoration)"이라 칭하고 유럽에서는

“인테리어 아키텍처(Architecture)” 또는 “랜즈케이프 아키텍처(Landscape Architecture)” 라고 많이 쓰이는데 유럽쪽에서 쓰고있는 “인테리어 아키텍처”란 말이 인테리어 디자인의 업무영역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말이 아니냐고 보고 앞으로는 “실내건축”이라고 쓰여질 것 같습니다. 실내건축이라 함은 건축의 실내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인간 생활을 보다 쾌적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 과거 유명 건축가를 보더라도, 실내 디자인은 건축이 포괄적으로 모두 소화해 왔습니다. 단지 건축의 양상이 달라졌고, 건축의 요구 조건이 보다 복잡해 졌으며, 건축의 업무량이 확대되어 건축의 복합적인 요소로 볼때 전문분야가 점차 세분화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의 제요 구조건을 잘 충족시키려면 세분화된 전문분야가 각기 발달하고 통합되고 협동하여야 보다 좋은 건축물이 나올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개인 의견으로는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의 업무 한계가 좀더 앞으로 연구되어서 협동하고 합리적인 업무관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그 길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갖는 것이 좀 더 유익한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司 會 - 사실은 본협회 실내디자인 분과 위원회에서도 회의 당시에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아키텍트와의 작업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대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인테리어 디자인의 정의와 개념 뿐만 아니라 아키텍트와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작업범위에 관한 것

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正湜 - 설계를 하다보니 아무래도 인테리어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각도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과의 업무한계 구분은 매우 애매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지만 상호 협동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자인하는 설계과정을 보면 건축가들이 안을 만들어 그것에 대한 기둥이나 보간격등 대략 간단한 구조적인 것까지 모두 계산해 놓고 구조 계산하는 분한테 계산만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테리어 디자인도 이와 비슷한 사항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건축사들이 건축물에 대한 실내디자인을 우선 대략 다해놓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필요하다는 경향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디자인인지 데코레이션인지 한계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업무가 넘어오는 것이죠. 인테리어도 건축가들과 더불어 공동 작업이 처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인테리어 디자인과 건축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협조를 서로 요청해야 하는 것인지 부터도 서로 모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뒤따르는 문제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금전문제가 야기됩니다. 설계자가 인테리어에게 업무를 나눠줘야 하는데 어디까지 업무를 분리할 것이며, 금전은 얼마나 지급을 해야 할 것인지 둘째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부탁할때, 가령 오피스 건축물인 경우 어디에다 부탁을 해야 하는 것인지등 여러 어려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司 會 - 저회분과 위원회에서도 언급된 사항이지만 만약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를 완전히 독립적인 분야로 취급한다고 가정할때 건축가의 디자인 의도와 작품에 대한 열성 문제가 결여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건축사 사무실 자체로서 인테리어를 확보했을 경우 현실정을 볼때 경제적인 문제가 야기되어 결론 짓기에는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김성국 교수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金成國 - 미국의 경우 건축은 어느 일정 자격을 갖춘자만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실내디자인인 경우에는 등록만하면 행위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조성렬씨가 말씀하셨듯이 “인테리어 데코레이션” 혹은 “인테리어 디자인”이라 칭하는데 벽자의 색깔이나 카펫 등으로 끝내는 것을 통칭해서 데코레이터(Decorator)라 하고 건물전체 기본성격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를 디자이너(Designer)라 합니다. 일단 건축물의 용도가 정해지면 건축가가 모든 것을 하길 원하죠. 아무래도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건축가와의 설계에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결국 미국의 경우를 보면 건축과 인테리어는 사무실이나 일반 건축물외에는 뚜렷한 구분없이 추진해나가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司 會 -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손석진 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정수...건축이나 인테리어 디자인이란 개념은 다 원화 되어서 존재하기 마련이지 한계를 두고 업무를 소관한다는 것은 좀...



조성렬...유럽쪽에서 쓰고있는 '인테리어 아키텍처'
란 말이 인테리어 디자인의 업무영역을 포괄적으
로 수용하는 말이 아니냐...

孫錫辰 - 20여년동안 인테리어 일을 하
고 있습니다만 책을 통해서도 아직 인테
리이 디자인과 건축과의 범위를 뚜렷하
게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단지 건
축과 인테리어 디자인의 업무범위를 쉽
게 얘기한다면 구조를 만들고 그 위에
벽지를 바르는 것이 아니냐 봅니다. 제
가 생각하기에는 인테리어 디자인 영역
이 전문영역화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司 會 - 과거 학교에 몸을 담고 계셨고
작품도 많이 하셨던 원정수 교수님께서
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
지요?

元正洙 - 지구상에서 인간이 활동하면서
존재하는 이상은 건축이나 인테리어 디
자인이란 개념은 다원화되어서 존재하기
마련이지 한계를 두고 업무를 소관 한다
는 것은 지역적이나 문화적인 배경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 좀 무모한 착상이 아
닌가 생각합니다. 현대물결에서 새로이
탄생한 기적적인 작품인 미국도 항상 새
로운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뒤떨힐줄 알
았는데 역시 변화하는데 있어서는 당장
중요한 풍토와 흐름이 저변에 있고 서서
히 시간에 맞추어 밀어내면서하는 신진
대사의 역할이지 우리같이 문제를 역조
시키면서까지 무대를 뒤바꾸는 그런 시
대적인 양상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尹承重 -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은 서
로 구분할 필요가 없고 구분도 잘 안되
지만 서로 전문화되는 것이 바람직하
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테리어 디자인

너가 독립된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입주자의 요구조건에 의해 생겨
난 일이기 때문에 실내공간에 구체적인
이용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
고, 두번째로 그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됐
을때 디자인으로서의 역할과 건축가가
모집한 공간을 재창조 할 수 있는 능력
이 있어야 할 것이며, 세번째는 인테리
어로서 중요한 부분이 실제로 쓰이는 도
구이기 때문에 건축에서 손을 못쓰는 부
분을 더 세분화하고 편리하고 이름답게
만들어내는, 이러한 일까지 종합해서 할
수 있을때 인테리어가 독립된 직무를 담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文信珪 -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을 분
리한다는 것은 어렵고 분리한다해도 이
것은 직업상의 분리라 볼까할 뿐입니다.
사실 건축사가 실내디자인까지는 너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분리해야 할 필요
는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론 어렵고 현재
작업이 서로 많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
에 한사람이 건축을 완성하기는 어려우
므로 여러분야의 전문가가 팀웍을 이루
어 작업을 할때 이 팀웍속의 한 분야가
인테리어가 아니냐고 판단되고 이것은
직업조건 밖에 안되므로 직업상으로 분
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됩니
다.

司 會 - 지금까지 실내디자인에 대한
정의, 업무한계 등에 대한 말씀을 해주
셨는데 실내디자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인테리어 디
자인의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쉽게 풀릴것 같은데...

趙聖烈 - 여러 의견을 들어 보면 건축이
인테리어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지
금 현재 건축이 갖고 있는 과제는 건축의
질향상에 있다고 전제 했을때 건축의 질
향상은 단적으로 2가지로 요약해서 생
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지면의 해결, 또
하나는 감상적 요구의 충족 이렇게 2 가
지로 놓고 보았을때 사실 인테리어 디자
인이 그러한 측면에서 건축보다 훨씬 앞
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당장 건
축의 마스터 플랜에서 공간계획(Space
Program)을 과연 인테리어 디자이너
들이 한만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쇼핑 센터를
놓고 보았을때, 각 부분의 면적배분, 적
정면적의 산정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느
냐하는 겁니다. 고층건물이 세워지면 건
축주의 요구가 지하층에는 상가를 두어
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업건축에서
도 첫째 요건이 판매증대, 투자효율로
연결되는 설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
축에서 그러한 디테일한 프로그램과 설
계과정에서 그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느
냐? 사실 인테리어들이 이러한 면에서
앞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
의 질향상을 위해서는 인테리어 디자인
은 하나의 독립된 전문 영역으로서 역할
을 잘할수 있도록 건축가와 인테리어 디
자이너가 협력을 해야 하는 시대라고 생
각합니다. 건축물에 대하여 실제로 사례
연구를 해보면 인테리어 디자인 업무를
수용할 건축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적어
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프로그램과
정서부터 연구용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볼 때 인테리어 디자인



유경철...건축분야의 건축사보다는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야에도 있어서 실무
경력을 일정기간 쌓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정식...인테리어도 건축가들과 더불어 공동작업
이 처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
리나라는 이 양자가 분리되어...



의 역할은 건축물의 질향상을 위해 필수
적이라 생각합니다.

司 肅 - 그러면 다음으로 실내디자인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사
실상 한국의 실내디자인 교육은, 부재하
다고 말씀드려도 크게 어긋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실내디자인을 이끌
어 가시다시피 한 분들이 대개 여기에
와계십니다만 건축과를 나오셔서 실내디
자인 쪽으로 방향을 바꾸신 이런 분들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앞으로의 실내디자인 교육은 도대체 어
떻게 해야되는 것이며 또 외국에선 어떻
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 부탁 합니
다.

金成國 - 우리나라도 있긴 있습니다. 홍
익대의 산업대학원이나 환경대학원에서
디자인이란 별도의 과는 없지만 수업과
정 중에 한과목으로 삼일이 되는데 외국
의 예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건축과 인터
리어 디자인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건
축은 건축대학에 독립되어 있고 학부과
정이 나중에 자격시험 관계 영향이 없
는건 아니지만 의과나 법과 과정처럼 5-
6년정도 됩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디자
인은 대부분의 경우 4년제 일반 대학교
과정에서 미술의 기본적인 요소로부터
시작해서 실내설계 과제를 다루면 과정
이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이 요즘들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공부하는 과정이 공간 개념
이 다양화 됐고 현지를 반영한다는 점입
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꼭 학교에
서 정규과정을 배웠다가 보다는 그 분야

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기초교육 과정을
배운 다음에 실무를하면서 인테리어 방
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司 肅 - 윤승중 소장님께서 인테리어
교육에 대해서 대학 강의를 통해 실감하
고 계신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
나가야 인테리어들이 건축가들과의 문제
를 원활하게 해결이 될런지요?

尹承重 - 제가 인테리어 디자인 교육은
학교에서 따로 가르쳐 본적이 없었습니
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상당히 광범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통해서 이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현
상 가운데서 이해하고 실내가 어떻게 쓰
일 것인가에 대한 훈련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
문에 관련되는 여러가지 분야 즉 건축이
라든가, 응용미술분야라든지 이런 분야
에서 기초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적
성에 맞추어 선의적인 활동을하는 과정
에서 전문화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
다. 결과적으로 그랬을 때 어떤학부가
아니고 대학원 과정에서 분할시킬수 있
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趙聖烈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인터리
어 디자인 교육의 문제는 2가지 측면에
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디자이너를 양성
하고 배치해야겠다는 교육의 목표가 우
선이나, 학교 장사가 우선이나 하는 겁
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3개
대학의 대학원과정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이 있고 2개 대학이 디자인 전공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의 목표를 이상적으
로 달성하려면 학생의 선발과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하고 커리큘럼 그 자체가 그것
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적인 것은 건축과 4년 과정을 마침으로
해서 기초과정을 깨우치고 대학원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과정을 이수하면 소기의
달성을 이룰수 있다고 봅니다.

俞景哲 - 대학의 교육과정인 4년이 좀
짧은 느낌이 드는데 과연 이러한 교육을
이수하고 건축사 사무실에 입사해서 열
마만큼 소화를 시킬지는 좀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건축분야는 건축사
보라는 제도에 의하여 실무 경력을 쌓아
그나마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는 있는데
인테리어 디자이너도 마찬가지로 그런과
정이 있었으면합니다. 모든 디자이너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단지 디자인에 관한
감각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낮다고해서 기
초도 없이 나름대로 사무실을 개설하는
행위는 곤란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孫錫辰 - 일본의 경우 재작년부터 인터
리어 디자인 분야에 자격제도가 생겼는
데 예전에는 일본도 국내현실과 같은 과
정을 거쳤답니다. 우리도 이러한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司 肅 - 실내 디자인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성의있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
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속에 디자인에 대
한 연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오
늘 좋은 말씀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성국...미국의 경우를 보면 건축과 인테리어는
사무실이나 일반 건축물 외에는 뚜렷한 구분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外部環境設計

— 가로 시설물 —

崔 杞 秀

서울市立大學 造景學科 教授

都市가 점차 非人間化되어가고 있다 고들 말한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풍부한 환경장치를 마련하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면 도시는 활기를 찾을 수 있으며 인간화된 도시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街路施設物의 필요성

都市가 복잡하여 감에 따라 도시를 이해시키고, 편리하게 도시민의 활동을 영위시키고,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어떤 장치와 시설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도시는 자연적인 환경, 공지(open space)와 구조물로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에코보」는 도시의 경관적 요소를 추상적 요소와 구상적 요소로 나누어 차원(dimension), 시간, 에너지, 광선, 토지, 도로 및 편의시설과 건물로 분류하였다. 즉 都市環境은 이러한 요소들이 통일·질서·조화·균형을 이루어 구성되었을 때 도시라는 조직체 내에서 個體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집합적으로 도시의 형태를 이루어 경관을 표현해 주는 매체가 되는 것이다.

都市景觀을 표현해 주는, 즉 도시의 아름다움이란 개개의 건물이 아름답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도로의 개설로 시작해서 그것에 맞추어 얹혀지는 건물로서 도시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그런데 도시의 건축이란 도시공간을 할애하여 그것을 內面化 시키며, 건축물 그 자체가 다른 건축물 또는 주위 환경과 배타적이며 독자적으로 스스로를 조절하여 강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관을 표현하는 건축물이 상호관련성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시경관의 質의 문제가 인간의 쾌적성의 면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다.

도시의 경관이란 都市民이 가로에서 움직이며 보는 가운데서 視覺적으로나 體驗적으로 경험하여 얻어지는 느낌을 정리하고 표현할 때 구체화되는 것이다. 도시의 경관은 主가 되는 建築物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적인 위요 속에서 이루어지고, 인간의 시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호 어떻게 조화되며, 이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표현된 경관을 어떠한 수단으로 표정을 갖추고 밝게 해주는

나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街路 시설물인 것이다.

가로시설물은 생활의 편리 수단인 자동차와 보행인들의 충돌을 배제시키며, 움직이면서 보는 도시의 표현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고, 거부감이 없는 表情이 있는 환경을 만든다. 도시공간의 주체자는 道步者들이고, 이 보행인들이 도시생활을 즐길 수 있고, 도시공간에서 행위를 하는데 안전하고 편리하고 풍요로운 創造的인 環境을 만드는 것도 가로시설물이다. 가로시설물은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이용되고 유용하게 해주며, 藝術的 감흥을 일으켜 주기도 하고 활동을 유도하는 조정장치로서 都市空間의 거주를 용이하게 하여 주는 구조물이기도하다.

2. 街路空間의 構成方向

街路는 도시의 道路空間으로 기본적인 도시의 생활 양식으로서 도시화의 基幹構造가 된다. 가로는 형태적으로는 도시의 골격과 틀을 형성하여, 새로운 장소의 영역으로 도시 자체의 존재 양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가로는 이러한 단순한 기능 공간으로서의 의미와 결정된 주체와 영역에 의한 작위의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면에서도 도시 주민의 의식과 행동의 동맥으로서 또 도시 자체가 지니는 그 사회구조의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인 반영을 의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로는 사회장치의 기능을 지니고 있어 그 장치에 의한 표정의 변화 즉 가로경관의 변화에 따르는 혹은 이러한 변화를 낳는 새로운 근원적인 사회적 차원으로서 도시 그 자체의 존속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道路空間으로서의 가로는 규범 체계에 의한 제약을 받는 곳으로부터 좀 더 都市住民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사

회계제와 관련되어지는 장소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대 도시의 체제는 제어를 잃으면 혼란과 무질서로 전락되기 쉬우므로 都市가 生活空間으로서 보장되기 위하여 제어를 잃지 않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절한 요소의 도입과 미래를 내다보는 정확한 판단과 실행이 수반되어야 한다.

街路空間은 장소적인 의미에서 이동수단으로서의 수송하는 역할과 일상생활을 위시하여 도시활동을 위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적인 특성을 갖는다. 이 기능상호간의 관계와 인간 관계를 매개시켜 주는 정보의 전달이나 인식으로 장소의 의미를 주거나 독특한 시설물이나 구조물로서 상징적인 특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街路空間은 시각적으로 건물을 비롯하여 가로시설물들이 상호연관성있게 連續性을 지니고 經驗되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체험에 조화되도록 가로경관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 가로경관은 建築物이 도시공간 속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建築物에 의하여 창조된 공간은 기능적이며 상징적인 의미와 독자성을 가진 공간 조성에 통일적인 요소를 첨가함으로써 창조된다(그림-1).

3. 街路環境設計의 指針

都市란 都市民의 생활의 장소이며 접주공간이므로 기능적임과 동시에 정서적이고 미적인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미적인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필요성 및 美的 시각 대상물이 인간의 주위환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視覺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시각요소들간에 질서를 찾고, 의미와 멋을 부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에게 쾌감을 느끼게 하는 감각대상은 모양(shape), 크기(size), 경도성(hardness)과 색(colour) 등을 갖게



그림-1 보행도로로 통일적인 가로를 조성한 미국의 「니콜렛 몰(nicollet mall)」

되며, 대조·연속·집중시키고, 軸과 같은 시각적인 可變因子들에 따라 효과나 영향이 변화한다. 이러한 대상 요소들이 전달하는 느낌은 공간의 형태는 모양에 따라 안락감·긴장감·기대감과 유쾌감이나 해방감을 준다. 같은 형태라고 해도 크기의 차이에 따라 느낌의 감정은 틀리게 되나 인간적인 척도로 되어 있으면 안정된 느낌을 주지만 규모가 크거나 높으면 압도 당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경고성의 정도는 표면이 갖는 질감과 情度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게 된다. 표면이 매끈한 경우 정도가 높고 균일한 질감을 가졌다고 하며, 표면이 거칠은 경우 그 공간은 정도가 낮고 불균일한 질감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색깔은 여러가지 聯想을 일으키고 상징적인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감정은 색이 인간에게 미치는 기본적인 효과는 개인적인 차이가 별로 없지만, 연상이나 상징은 생활양식이나 문화적 배경, 지역과 풍토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가 심한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색은 原色에 가까와질수록 행동감과 두려운 감정을 주게 되고, 여러 색이 혼합될수록 또 색의 강도가 낮아질수록 휴식과 안정감을 주게 된다. 黃色계통의 색은 희망과 따뜻한 느낌을 주며, 赤色계통의 색은 활력적인 행동감을 준다.

시각적인 경험은 질서가 깃들어진 조화이며, 조화란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적인 상호간에 통일 관계가 이루어져서 쾌감을 낳게 한다. 경험은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요소들의 리듬·균형·대칭과 강조가 될 때 감흥이 나타나는 것이며 빛에 의한 그림자나 질감등이 환경설계 요소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4. 街路施設物의 造成

도시공간을 구성함에 있어 建築物과 마찬가지로 가로의 施設物도 인공구조물로서 실내를 가구가 장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간을 장식한다. 가로시설물은 형태, 위치와 재료등이 다양하여 도시공

간에 표정을 주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도시내에서 서로 통일감 없는 색과 형태로 주위 건축물과 환경에 부적격한 디자인, 소규모 축척의 많은 수량을 필요로 하여 눈에 거슬리는 요소로 흘러서는 안된다.

가로시설물들을 이곳에서는 機能에 따른 분류보다 가로에 차지하고 있는 形態 별로 분류하여 고찰해 본다.

A. 面으로 이루어진 要素

도로의 행선지, 거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沿道邊에 표시하는 안내표지와 교통차량에 대하여 도로의 위험한 상태 혹은 주의를 요하는 사항을 예고하고, 운전자에게 감속과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해당장소로부터 30M에서 100~120M 지점의 도로 우측노단에 설치하는 주의 표지나 지시 혹은 규제표지와 같은 板으로 이루어진 시설물이다.

이 面的인 요소는 형태, 색과 크기 및 표시가 주는 표현은 전문인이나 관련이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표시이지만, 청경물로서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설치하며 시설의 이용 목적이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이 표지판의 문제는 板의 형태, 부착위치 및 방법, 크기,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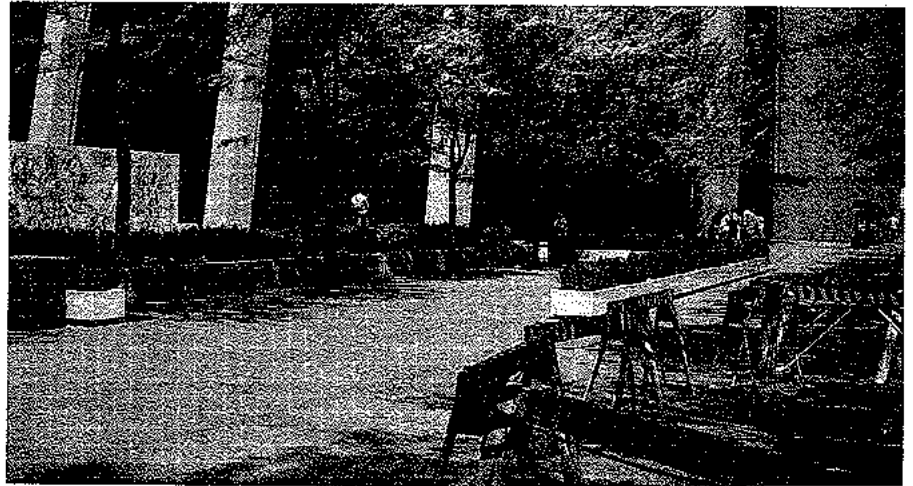


그림-2 가로변의 모자이크한 조각물과 식수분에 화훼류를 심어 특성있는 가로를 형성한 미국의 First National Bank 주변.



그림-3 서울의 대학로에 노면차이를 이용한 벤치높이의 식수대와 도행등.

表-조명화회 규격에 의한 기준

	상업가로	주요교통가로	주택가로
조명 (평균수평면조명도)	5-20룩스	3-10룩스	0.3-3.0룩스
광원높이	4.5~5.0m	5.0~6.0m	3.0~4.0m
등주간격	광원높이의 5~8배 20~40m	광원높이의 5~10배 50~100m	광원높이의 5~20배 30~50m
등주의배치	대칭병렬식 또는 교호식	교호식	교호식또는한쪽측면
조도 (평균노면조도)	2-10룩스	1-3룩스	0.2~1.0룩스

(資料: 조명설계기준, 전설부, 1976)

료, 표기상태, 색 및 色度 등으로 가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종합표시를 한다든가 설치물의 재료나 구조가 조형적인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한다.

B. 點으로 이루어진 要素

설치장소가 평면에서 점으로 표현되는 것은 가로등과 각 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기둥을 말한다. 이 요소의 문제점은 각 가로시설물마다 설치 기관이 틀림으로 필요할 때마다 기둥을 사용하여 좁은 보도 면적이 난잡한 상태이며, 지표면과 접하는 부분의 시공방법이 말끔하게 마감함을 하지 못해 보행인에게 위험 요소로 남게 되는 일이 많다.

① 가로등

인간은 빛을 매개체로 하여 주위의 환경을 지각하고 체험한다. 가로등은 야간에 보행환경에 있어 치안유지와 범죄방지를 위해서 도시의 이미지적인 면에서도 중요하다.

빛의 質은 정적이 아니고 부단하게 변화하고 있다. 계절의 변화, 시간 혹은 기후의 변화에 의하여 여러가지 현상을 초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환경도 照明의 방법에 따라 경관의 변화와 풍부한 質의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가로조명의 燈柱는 조명등과 그 외 가로시설물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장치와 柱身(shaft), 브래킷(bracket)의 조합이며, 일반적으로 등주는 효과를 주는 방식에 따라 상향식 조명, 하향식 조명, 산포식 조명(diffused lighting), 그림자와 질감을 나타내기 위한 조명(shadow and texture lighting), 실루엣을 위한 조명, 간접적인 조명으로 나누어지며, 그 유형과 광원의 종류에 따라 사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원높이와 간격은 照度 기준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고 도심에서 평균수평면 조도는 주요한 가로에서는 20룩스, 집문 산도로에서는 12룩스, 지구의 細路에서는 9룩스 정도이다.

② 短柱(bollards)

가로의 흐름이나 교통수단의 이용이 틀릴 때 통행을 자연스럽게 가로내의 공간을 한정시키는 데 사용한다. 시각적으로는 연속적으로 수평의 경계를 형성할 필요가 없으며, 1m의 높이를 초과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통과교통을 위해 이동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C. 面積으로 이루어진 要素

대부분의 가로시설물은 보도의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步行空間을 한정시킨다. 이 시설물들은 보행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신체장애자를 고려하여, 街區의 통일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하든

가 그 지역에 첨경적인 요소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구성있는 재료와 기능을 살리며 지역적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크기와 형태를 택하도록 해야한다.

① 벤치(bench)

도시의 벤치는 행위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 있다. 형태에 따라 경쾌한 기분으로 정적인 장소를 조성하도록 등을 기대 수 있는 것과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도록 평평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가로변에 경계석, 화단 등을 벤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으며, 공간을 조성하여 배치하기도 한다.

② 식수분(planter)

포장된 가로나 지하구조물이 있는 광장에 위치시키므로 도시화된 장소에 자연적인 분위기를 창출하며, 계절에 따른 화훼류를 심을 수 있어 변화있는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이동의 편리로 전시방법에 다양성이 있으며, 용기 디자인으로 조각적인 요소를 가로환경에 제공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植生 재료가 생육할 수 있도록 토양층과 폭을 충분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배수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③ 휴지통

가로변에 가장 많이 설치되는 시설물 중 하나이다. 이용하기 쉽고, 튼튼한 구조로, 재떨이를 겸해 사용하도록 하며, 수

거작업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60~75cm의 높이에 투입구가 있도록 하며, 색채는 청결함을 주며, 시각적으로 멀리서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키오스크(kiosk)

가로내 키오스크는 광고용보다는 토론판매, 신문가판대등 공동 사회생활용의 판매기능을 가진 것이 독립하여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에 설치되므로 보행로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도록 해야하며, 가로경관상 街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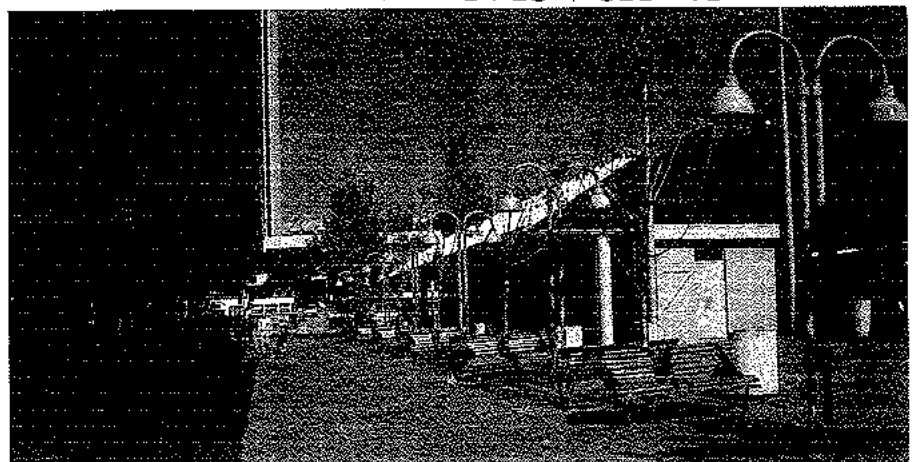
⑤ 공중전화 부스(booth)

가로에서 私의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소음의 방해를 막도록 시설되어야 함은 물론 어린이나 노약자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가로시설물이므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주위에 조화되는 색채와 형태를 갖도록 해야 한다.

⑥ 기타

면적을 차지하는 시설물은 우체통, 吟水栓과 수목보호 그레이트(grate) 등이 있다. 모든 가로시설물은 가로의 통일적인 것과 독자성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색·형태와 크기를 고려하여 미적이고 기능적인 설계를 해야 한다.

그림-4 보행자 전용 가로공간을 조성한 호주의 「시드니」시.



타일의 接着強度 改善方案 (上)

— 타일의 施工法과 그 問題点 —

李 在 玉

건설부 기술관리실 건축기좌

1. 서설

최근 건축물의 대형화와 고급화추세에 따라 건축물의 外裝을 각종의 타일로 마감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타일의 시공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단순히 외부의 치장이라는 관점에만 역점을 둘뿐 이의 탈락에 의한 불의의 인명 및 재산의 피해에 대해서는 간과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음은 건축계의 장래를 위해서도 극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타일의 제조와 시공의 역사 자체를 이태리등 서구의 것에 견줄 수는 없지만,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타일의 제조기법과 시공기법이 능히 그들의 것과 견줄 수 있게 되었음은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사람은 물론 완성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건축주에게도 크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985년 4월에 조달청에서 발표한 “施設工事單位当 價格管理資料”에 의하면 타일공사비는 전체 건축공사비의 2.92%

로서 약 3%에 다다르고 있으며 특히 건축공사에 대한 총 36개의 主要工種중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11위에 해당하는 주요공종이 되고 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 발행한 價格管理資料에 의한 주요공종의 공사비 점유비율을 요약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에서 骨組工事を 제외하고 보면 타일 공사비가 점유하는 비율은 수장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와 토공사다음으로 높은 공사비의 점유비율을 보이

고 있으나 일부 현장시공등에 있어서는 타일의 시공을 마감공종의 단지 일부로 취급하여 품질관리를 소홀히 해버리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자재와 공법의 개발에 있어서도 공사비의 점유비율면에서 거의 대동소이한 토공사등과 같은 공종만큼 그리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부에서는 차제에 타일의 접착강도개선을 통한 타일의 탈락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타일사고에 의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막고 나아가 타일 시공기법의 현대화를 위해서 현행 건설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신개발 타일接着工法을 신설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중에 있으며 또한 동 시공법의 적용을 촉진시키기위해 표준품셈(건축부문)에도 이에 대한 품을 신설하여 86년 시행공사부터 이를 적용토록 하고자 지난 4월 1일부터 관계기관에서 이에대한 査査를 진행중에 있다.

2. 타일의 탈락요인

1970년 日本建築学会가 일본의 건축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타일에 관한 앙케이트조사에 의하면 도자기질타일이 건축재료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87.7%를 점유하고 있으며 동 타일의 사용을 희망하는 건축사가 92.6%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71년과 1972년에 일본 建設省에서 조사한 타일의 박리원인 조사 결

표 1-1, 주요공정별 공사비 점유비율

공 종	비 율(%)	공 종	비 율(%)
콘크리트공사	15.82	철 골 공 사	3.73
거꾸집공사	11.10	미 장 공 사(벽)	3.32
철근공사	9.18	특수창호공사	3.25
금속공사	6.12	토 공 사	3.03
시멘트벽돌공사	4.70	타 일 공 사	2.92
수 장 공 사	4.08		

과에 따르면 총 445개 건물중에서 115개의 건물인 약 26%가 박리사고를 일으켰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를 유형별로 보면 剝離가 67건이고, 들떠오름이 48건으로 되고 있음을 볼때 타일의 선풍은 도자기질타일이 높지만 타일의 박리사고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기한 조사보고서는 이같은 타일의 박리사고의 원인을 표 1-2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표 1-2에 의하면 타일의 탈락에 대한 주된 원인은 타일 시공상의 결함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시공 기법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표 1-2. 타일의 박리원인

원 인	점유비율
타일시공상의 결함에 의한것	50%
설계상의 문제에 의한것	30%
타일의 품질상의 결함에 의한것	20%

가. 施工上の 결함에 의한 脱落

圧着工法이 보편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 실정에 있어서 이에 따른 시공상의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일의 붙임작업이 적정한 시간내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일의 탈락방지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될 일 중의 하나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타일붙임용 바탕모르터를 바른 때로부터 20분 이내에 타일을 붙이면 대략 4kg/cm²의 접착강도는 확보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외기의 온도나 습도 및 풍속등의 환경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타일의 바탕모르터 바름 후부터 타일을 바르기 직전까지의 방치시간에 따른 강도저하의 현상에 대해서 (주) 삼호특수전재에서 발표한 "타일공사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자료에는 표 1-3과 같은 강도저하현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3에서 시료로 사용한 타일은 小口型으로서 바탕모르터는 1:3 모르

표 1-3. 방치시간에 따른 강도저하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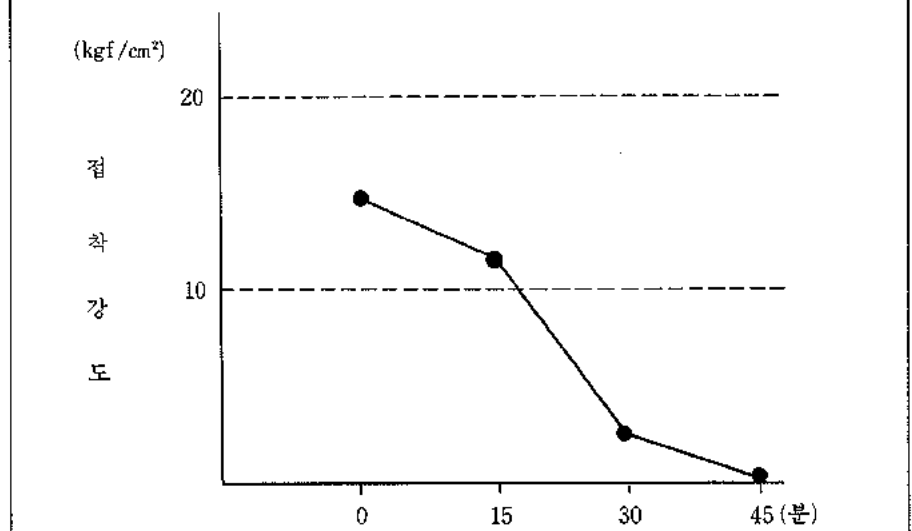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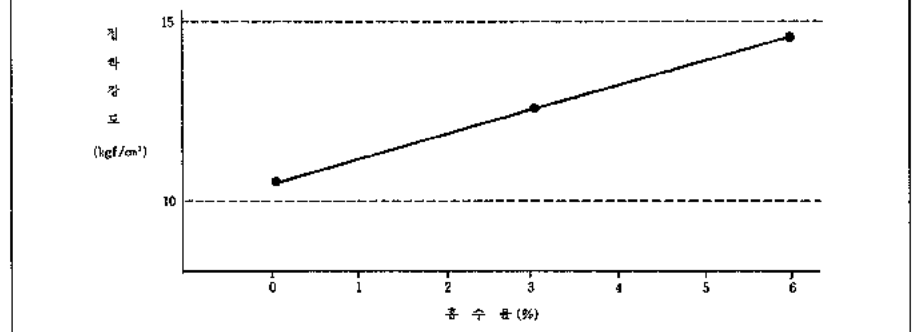


그림 1-4. 흡수율에 따른 접착강도의 변화



를 사용한 경우의 접착강도시험결과에 의한 것이다.

이같은 방치시간은 또한 타일윗면의 형태와 흡수율에 따라서도 조정되어야 하며 바탕의 溫潤度와 붙임모르터의 配合比 및 바탕모르터의 바름두께등에 의해서도 달라하여야 한다.

이들 요인들에 의한 접착강도의 변화에 대한 예를 일본에서의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타일의 吸水率에 따른 接着強度 變化

타일의 흡수율은 자기질타일이 1%이내이고 석기질타일이 1~10% 정도이며 도기질타일은 10%이상이 되지만, 특히 자기질타일은 흡수성이 적기 때문에 바탕모르터를 바른 후 부터 타일붙임의 직전까지의 시간 즉 방치시간 (Oden Tim-

e)의 관리에 가장 주의를 하여야 한다.

타일 중에서도 특히 도기질타일은 붙이기 전에 물을 뿌려서 가급적 바탕모르터의 結晶水를 빼앗아가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그림 1-4는 흡수율에 따른 접착강도의 변화현상이다.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흡수율이 클수록 타일의 접착강도는 증대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흡수율이 큰 타일은 동결융해에 의한 내구성의 저하가 일어나기 쉬우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한서의 차이가 -25°C에서 +35°C까지의 심한 기복을 보이는 환경조건하에서는 특히 동결융해에 대한 내구성의 저하에 충분한 대처를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흡수율이 4%이하인 경우에는 동결융해에 대해서는 안전권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2) 타일의 形狀에 따른 接着強度變化

(가) 타일의 뒷발모양과 접착강도변화

타일의 뒷발모양은 역삼각형의 돌니모양을 한 압출형과, 뒷발이 평평하고 뒷발의 표면이 매끄러운 프레스형 및 뒷발이 거의 없거나 있다고 해도 그 접착면적이 아주 작은 플랫트형으로 구분되며 그 형상에 따른 장단점은 그림 1-5와 같다.

또한 타일의 뒷발모양과 그에 따른 접착강도의 변화는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6에서 압출형이 프레스형이나 플랫트형보다 접착강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타일의 뒷발이 불임용 모르터와

그림 1-5. 타일 뒷발의 형상과 장단점

압출형		뒷발이 역삼각형, 90°형이므로 접착 면적이 넓고 같고리 역할로 부착 상태가 좋다.
프레스형		뒷발이 평평하고 표면이 매끄러워 접착이 불량 (특히 벽시공시)
플랫트형		뒷발이 완전히 없거나 빈약하여 접착면적이 작아 접착이 극히 불량

표 1-6. 타일의 뒷발 모양과 접착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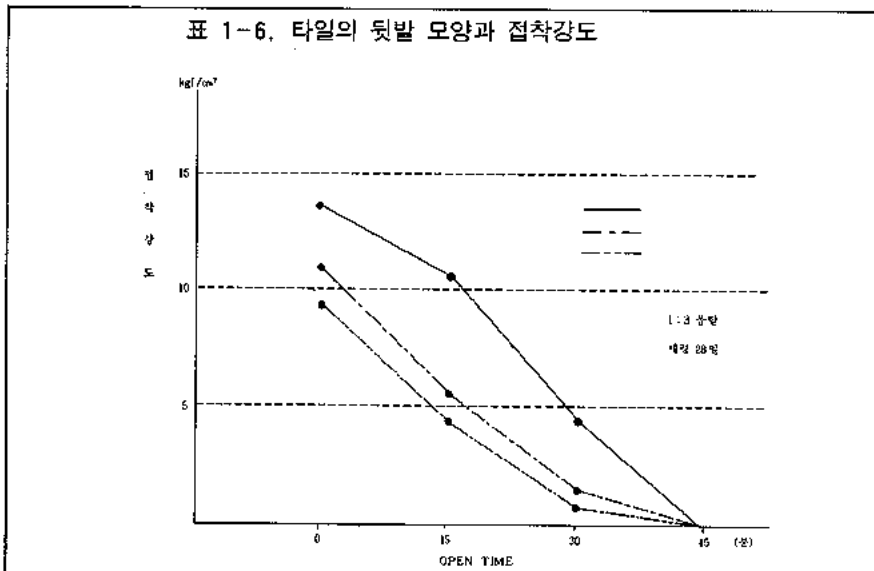


표 1-7. 타일의 뒷발높이에 따른 강도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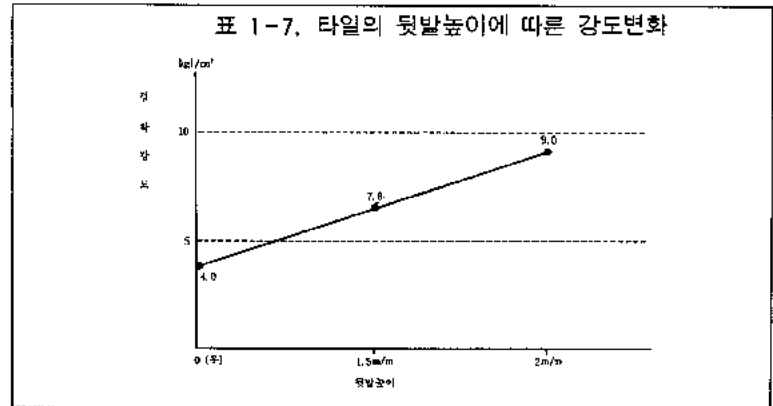


표 1-8. 타일의 크기와 탈락사고율

	모자이크	소형	중형	대형	기타
규격	25×25	87×57	108×60	190×90	
사고율	19.9%	40.7%	20%	17%	2.4%

의 상대적인 접착면적을 크게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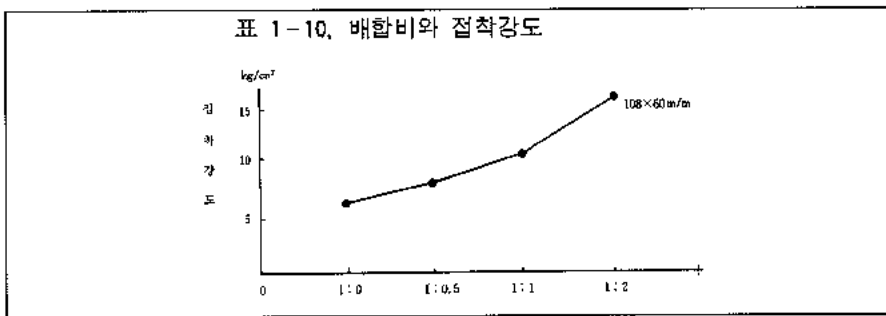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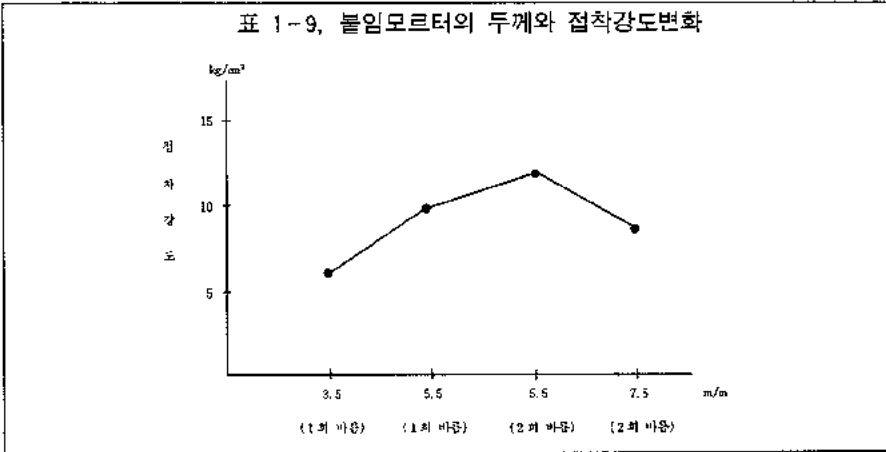
따라서 타일의 뒷발높이가 크면 클수록 또한 뒷발의 접착면적이 크면 클수록 타일의 접착강도는 상대적으로 증대되는 것이며 뒷발의 높이에 따른 접착강도의 변화현상을 도표화 하면 표 1-7과 같다.

(나) 타일의 크기에 따른 접착강도변화
일반적으로 타일은 평면형장이 큰 것이 단위당의 접착강도는 저하하게 된다. 그러나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일의脱落事故는 소형에 가까울 수록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대형타일의 시공시에는 타일의自重등을 감안하여 타일공이 접착용모르터를 소형때보다도 두껍게 바를 뿐만 아니라 두들김도 소형때보다 강하게 하는 때문으로 보인다.

(다) 불임모르터의 두께에 따른 접착강도변화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압착공법에 의해 타일을 붙이는 경우에는 보통 불임 모르터의 두께를 5-6mm 정도로 하면 적정하지만 재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3-4mm 정도로 모르터를 바를 경우에는 불임 모르터자체의 건조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오픈타임을 단축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5.5



mm까지는 불임모르터의 두께와 접착강도는 비례증가하기 때문에, 타일의 바름두께는 가급적 5mm 이상으로 되도록 함으로써 접착강도를 일정한 정도 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함은 물론 불임모르터 자체의 급격한 건조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불임모르터의 配合比에 따른 接着強度의 變化

타일불임모르터의 배합비는 현행 표준 품셈(건축부문)에서는 1:3을 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줄눈용 모르터의 배합비는 1:1을 표준하고 있다.

표 1~10은 모르터의 배합비가 접착강도에 주는 영향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모르터용으로 사용되는 잔골재의 粒度 또한 접착강도에 영향을 줌으로 細骨材의 粒度分布를 모자이크타일인 경우에는 1.2mm이하의 적당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자기질과 도기질타일은 각각 2.5mm 및 1.2mm이하의 적당율을 粒度의 표준으로 하는 것이 접착강도의 개선을 위해 효과적일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나. 바탕의 舉動에 의한 脱落

타일의 바탕면은 대부분 습식시공에 의하는 콘크리트 구조체이거나 조적체이기때문에, 타일에 바탕이 되는 콘크리트나 조적체의 물리적인 舉動 또한 타일의 발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특히 타일의 바탕이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후 콘크리트의 팽창이나 수축에 의해서 타일에 들뜸이 일어나거나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물에 있어서 콘크리트타설후의 수축율은 25×10^{-5} 정도이고 최상층인 경우에는 30×10^{-5} 에 다다르게 되지만 콘크리트자체가 不均質性의 재료인점 까지를 감안한다면 실체는 상기한 수치보다도 훨씬 더 큰 수축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1~11은 철근콘크리트 보의 스패 길이에 따른 수축률이 타일의 들떠오름 높이에 주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타일의 들떠오름의 방지를 위해서는 또한 콘크리트구조체의 크릴프현상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특히 크릴프의 應力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므로 타일의 들떠오름에 큰 영향을 주고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콘크리트바탕에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가급적 콘크리트의 경화에 따른 팽창이나 수축이 어느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적절한 불임모르터를 바르고 타일을 접착하여야 하며 가급적 재령이 28일이 경과된 후에 타일을 접착하는 것이 들뜸의 방지에 효과적이다.

이밖에도 타일의 들뜸의 원인이 되는 것은 전물이 받게되는 진동이나 보행에 의한 충격, 온도차에 따른 應力, 철근의 부식에 따르는 팽창등 여러가지가 있다

표 1~11, 수축율이 들떠오름높이에 주는 영향

스패 길이	수축율	수축길이	들떠오름높이
1 m	0.1%	1 $\frac{m}{m}$	22 $\frac{m}{m}$
2 m	0.1%	2 $\frac{m}{m}$	45 $\frac{m}{m}$
5 m	0.1%	5 $\frac{m}{m}$	112 $\frac{m}{m}$
10m	0.1%	10 $\frac{m}{m}$	224 $\frac{m}{m}$
2 m	0.05%	1 $\frac{m}{m}$	32 $\frac{m}{m}$
5 m	0.02%	1 $\frac{m}{m}$	50 $\frac{m}{m}$
10m	0.01%	1 $\frac{m}{m}$	71 $\frac{m}{m}$

표 1~12, 타일발락시의 높이별 낙하속도

1 층 3.2m 경우	28km/hr	참 조
5 층 15.2m 경우	62km/hr	태풍의 경우
10층 30.2m 경우	88km/hr	1 호 태풍
15층 45.2m 경우	107km/hr	2 호 태풍
20층 60.2m 경우	124km/hr	

므로 타일공법의 선택시에 이들에 의해 예상되는 영향을 예측한 신중한 공법선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타일의 脱落事故 및 그 現況

타일의 탈락사고는 상기한 재료 및 시공상의 결함에 의한 탈락사고와 동결융해에 따른 내구성저하에 따른 타일탈락사고의 발생 및 타일바탕의 거동에 의한 타일의 탈락등으로 크게 구별될 수 있으나 실제로 있어서 타일의 탈락은 이들 3가지의 요인들이 대부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기때문에 타일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주된 요인을 어떤 하나의 요인때문인 것으로 규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가. 타일의 脱落에 의한 위해범위

타일은 일단 건물에서 탈락이 되면, 지상에 떨어질 때는 중력가속도의 영향으로 대단한 낙하충격을 갖게되어 건물주위의 인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

전술한 “타일공사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10층높이의 건축물에서 탈락할 때의 타일의 낙하속도는 제 1호의 태풍에 해당하는 88km/hr의 낙하속도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같은 타일의 낙하속도는 능히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속도이며 층별 낙하속도의 예를 보면 표 1~12와 같다.

고층건물의 외벽타일은 또한 탈락시에 연직방향으로 탈락하지 않고 건물의 주위나 차도 및 보도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비산하면서 낙하하기 때문에 이에 의한 인명이나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도 고층건물은 물론 저층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외벽타일에 대해서는 일정강도 이상의 接着強度確保基準의 示方化등이 시급한 실정인 것이다.

표 1~13은 타일탈락시의 타일에 의한 사고 범위를 도시한 것으로서, 10층 바닥에서 타일이 탈락하는 경우에 타일의 탈락범위가 외벽면에서 15m의 수평

거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붙인 타일의 재령과 脱落事故

표 1~14는 일본에서 1867년부터 1974년 사이에 접착시공한 타일의 재령에 따른 사고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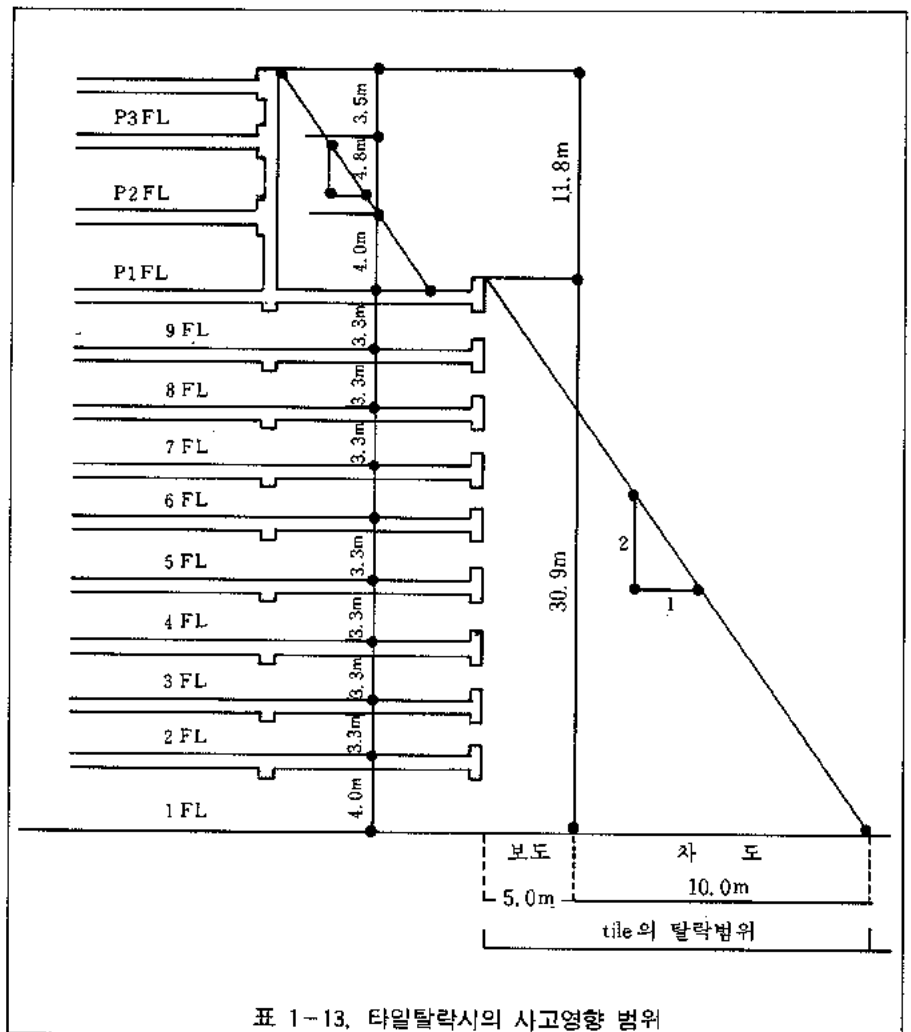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67년부터 1934년 사이에 접착시공한 타일의 사고율이 최근들어 접착시공한 타일의 사고율보다도 훨씬 낮음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로서는 최근의 壓着工法이 시공상의 결함을 많이 유발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壓着工法을 적용시에는 종전의 떠붙임공법보다는 보다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종전의 떠붙임공법이 타일의 사

고율이 적은 이유는 떠붙임공법으로 접착시공을 할때는 붙임모르터의 두께를 충분히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 1~14와는 달리 실제에 있어서 타일붙임을 동일한 공법으로 시공한 경우에는 타일의 접착강도는 건물의 재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연적 및 물리적인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대략 표 1~15와 같이 접착강도는 저하하게 된다.

타일의 탈락사고는 또한 건축물의 층고에 따라 그 빈도가 달라지고 있음이 최근 밝혀졌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에대한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타일의 탈락사고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층수는 3~4층으로 밝혀졌으며 10층의 건물에 있어서 3~4층에서 타일이 탈락되는 비율은 무려 전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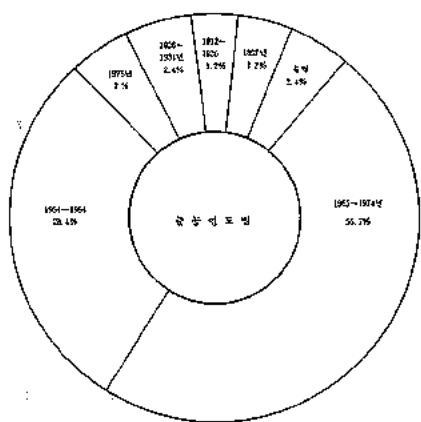


표 1-14, 준공년도별 사고율

닥에 있어서 타 부위와 교차하는 지역과 난간 또는 파라펫트등에서도 높은 탈락율을 보여주고 있다.

타일의 탈락율을 외벽의 방위별로 구분조사한 결과는 표 1~17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 1~17, 외벽타일의 방위별사고율

방위별	동	서	남	북
사고율	19.3	18.5	26.8	12.7
순 위	(2)	(3)	(1)	(4)

표 1~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위별로는 남향이 26.8%로서 가장 높은 탈락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선 남향의 외벽에서는 다른 방위보다도 日射量을 가장 많이 받아 콘크리트의 팽창수축이 심하게 일어나는 때문으로 보이며, 또한 冬節期에 있어서의 남향의 외벽은 다른 방위의 외벽보다도 동결과 융해의 반복 즉 동결융해의 사이클이 훨씬 많은 빈도를 가지고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4. 타일의 白萃現象

타일의 뒷면에 물이 침투되면 물은 바

탕모르터속에 들어있는 석회를 용해시켜서 수산화석회($\text{Ca}(\text{OH})_2$)를 생성하는데, 이와같이 생성된 수산화석회가 벽의 외부로 표출되면서 공기중의 탄산가스등과 반응하여 석회석으로 변하여 타일의 표면을 오염시키게 되는 데 이와같은 현상을 타일의 白萃現象이라 한다.

그림 1~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일과 건물사이에 물이 침입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白萃의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타일과 건물사이에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타일과 건물사이에 공극이 발생치않도록 모르터를 충분히 타일뒷면에 채워서 접착되 불임모르터의 두께는 균등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떠붙임공법에의해서 타일접착시 공을 할때 시멘트 페이스트를 줄눈에 뿌리는 것은 白萃現象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된다.

타일의 백화현상을 촉진시키는 요인중에는 또한 低温多湿한 지역과 웅덩이지역 또는 적당한 정도의 통풍이 있으므로 이에대한 고려를 하여야 하며, 특히 현재까지는 타일의 백화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이 개발되지않고 있기때문에 우선은 정밀한 시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다음호에 계속)

62.5%를 점유하고 있다.

표 1~16은 건물의 층별에 대한 타일의 탈락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표 1~16, 층별 탈락율 비교

층수	구분	조 사 대 상 수 (구성비)
3~4층		7,727(62.5%)
5~7층		3,287(26.6%)
8~9층		764(6.2%)
10층		580(4.7%)
계		12,358(100%)

이와같이 타일의 탈락율이 3~4층에서 집중적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대략 3~4층에 있는 외벽이 진동이나 충격등에 의한 영향 즉 구조물의 거동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타일의 탈락은 또한 건물의 각종 부위별에 따라서도 그 탈락율을 달리하고 있는데 특히 탈락율이 높은 부위를 보면, 주로 개구부의 주위에서 가장 많은 탈락이 일어나고 있으며 기타 벽이나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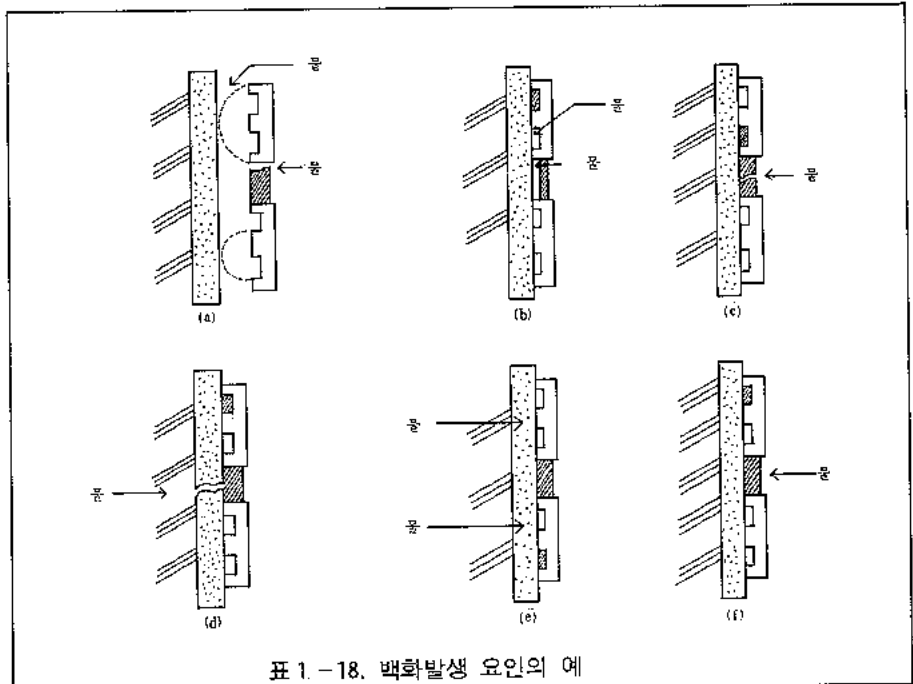


표 1-18, 백화발생 요인의 예



雨花樓

花巖寺建造物實測報告

(2)

雨花樓

李 應 默

새한건축문화연구소

4. 雨 花 樓

1) 平 面

花巖寺의 初入에 위치한 正面3間 側面3間形의 層樓로서 앞에서 보면 2層이지만 內庭에서 보면 단층이다. 건물의 규모는 93.79㎡ (28.42坪)이다.

雨花樓의 평면은 상하로 구분된다. 樓下部는 전면쪽에 높게 列柱한 5개의 기둥이 樓를 받치고 있고 안쪽으로는 낮은 石築段위의 낮은 공간에 마루를 받는 낮은 등바리 기둥들이 서 있을 뿐 별다른 설비가 없다. 上層은 우물마루를 깔고 前面3間に 매칸마다 板門을 달고 좌우 양측면은 灰벽으로 막았고 背面쪽은 완

전히 터어 놓아 개방하였다.

外形9間の 구성이나 내부에는 전면쪽으로만 內陣高柱를 두었을뿐 간막이 없이 되어 있는 단일공간이다.

柱間의 實測에서 御間은 4.68m (15.44曲尺) 兩夾間 3.105m (10.25曲尺) 이고 측면의 중앙간이 3.708m (12.23曲尺) 양쪽 퇴칸이 2.477m (8.17曲尺)이다. 이로서 正面長은 10.89m (35.94曲尺) 側面 8.663m (28.59曲尺)이 되고 正面對側面의 길이비는 약 1.25對1이 되어 정방형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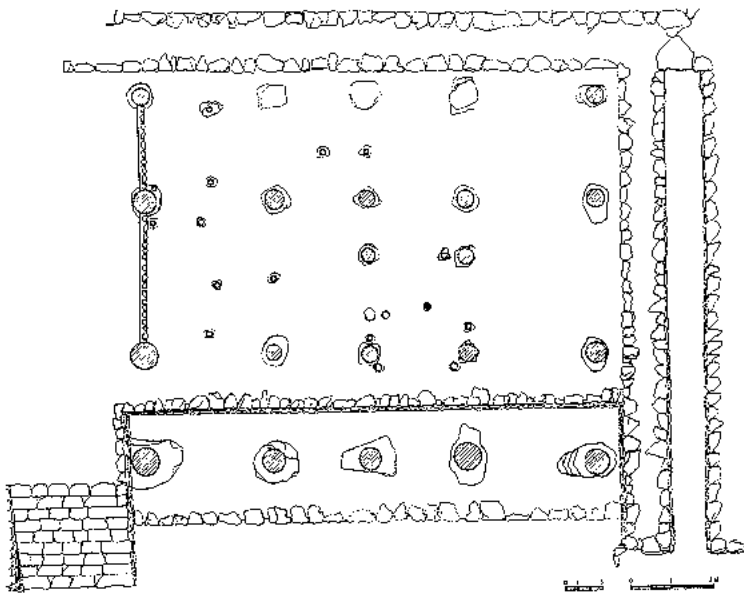
樓下層 부분의 前面基壇과 內庭쪽의 後面基壇과의 높이 차이가 2.94m 가량되는 근한 층의 높이인 까닭에 前面列柱에

서 1.6m 가량 들인곳에 2.1m 高의 石築을 쌓아 地盤差異를 조절하였다. 양 측면은 경사진 기단으로 처리하였다. 柱礎石은 큰 자연석을 놓아 덩벙주초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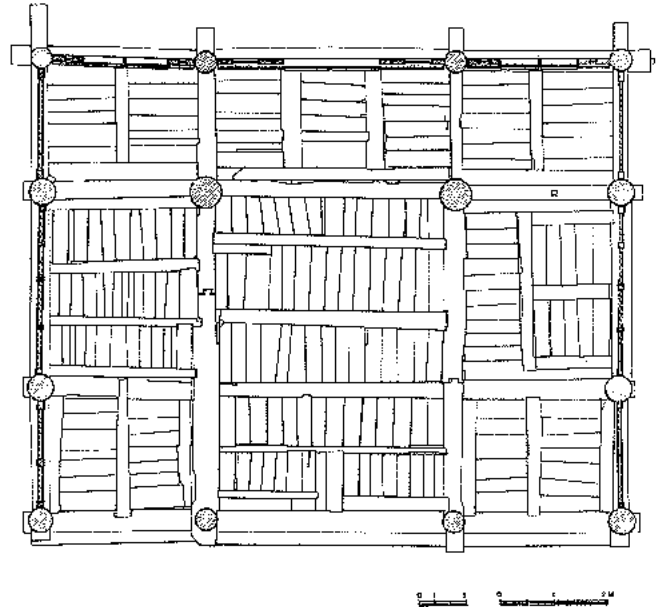
2) 軸 部

기둥은 모두 圓柱이며 대체로 민흘림형상이다. 平柱는 모두 비슷한 굵기로 四隅柱와 高柱(양측면 및 內陣)가 굵고 귀기둥에 솟음을 주었다. 대개의 기둥이 直立하여 있고 樓下前面기둥은 크게 휘인 자연목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下層 東南隅의 귀기둥은 上層柱心에서 밖으로 크게 벗어나 있어 심한 片心荷重을 받고

雨花樓 下層平面圖



雨花樓 上層平面圖



있는 것으로 보인다.

昌枋은 맞배집인 까닭에 전후면 기둥 머리에만 짜 돌렸다. 창방의 크기는 柱間이 넓은 御間이 兩夾間보다 크다.

창방의 운두와 폭의 비례는 御間에서 1.5:1, 夾間에서 1.1:1 가량된다. 창방의 단면형은 전면에서 上下의 兩面를 약간 죽인 항아리형 단면인데 반하여 후면은 斷面의 네귀를 모죽임하듯 둥글린 단면형이다. 창방은 間包와 그위의 荷重을 받아 중앙부분이 크게 휘어 내렸고 壁體와 門이 없이 터놓은 背面御間이 가장 심하게 휘어졌다. 兩夾間의 창방은 隅柱쪽으로 가면서 그운두가 약간 높아져 있어 귀솟음치를 분산하려는 의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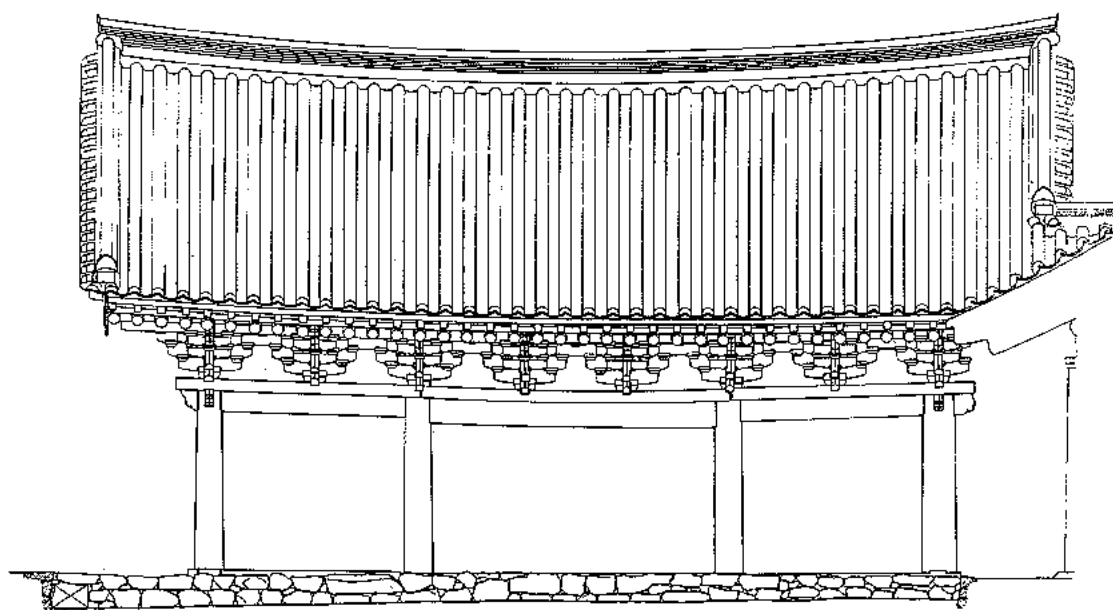
보이기도 한다.

平枋은 長方形 矩形단면으로 창방머리에 밀착되어 있다. 평방운두 17~18cm, 폭 31~34cm로 기둥上徑보다도 좁다. 平枋의 幅과 운두의 比는 1:0.54로 비교적 운두가 높은 편이다.

雨花樓의 上層 東西壁은 灰壁으로 쳐져 있다. 柱植과 上下引枋사이에 중깃을 세우고 외를 엮어 맞벽을 치고 内外面을 灰砂壁으로 마감한 벽으로 벽의 두께는 壁植이나 引枋材두께보다 얇다. 종보위와 전후퇴간 上壁은 터놓았고 棋包間에 包壁, 內目장혀밑에 上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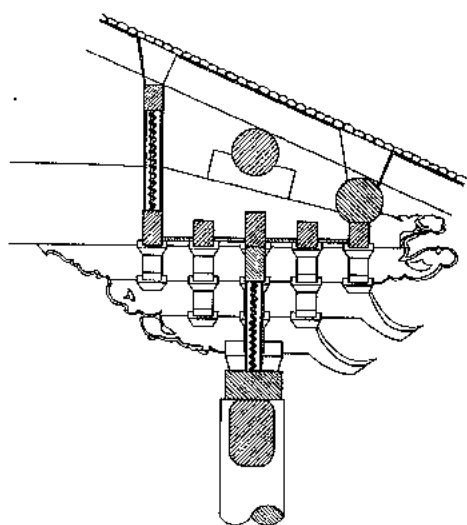
樓上 前面3間에는 문끝을 내고 門을 달았다. 현재는 내부미닫이門이나 본래

는 밖으로 여닫는 당판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門植과 上下枋材에 雙絲대패로 양면치장을 하고 모접기 변탕한 문열골재들이 새로 보충된 문꼴재와 함께 있다. 御間에서는 창방아래 긴 上枋과 下枋이 바로 門楣과 門止枋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나 兩夾間의 문열골은 창방말에 얼마간의 간격을 두고 그 사이에 널을 끼어넣어 極樂殿에서 귀솟음을 門楣材로 조절하였던 것과는 다르다. 협간문에서는 문열골의 중간에 풍소란대를 세워 문이 닫힐때 遠山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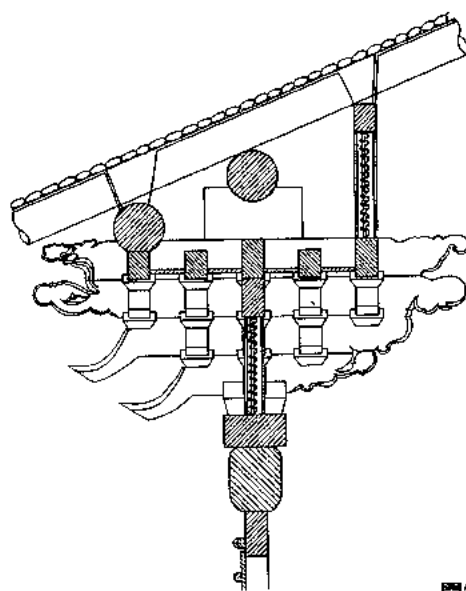


雨花樓 背面圖

0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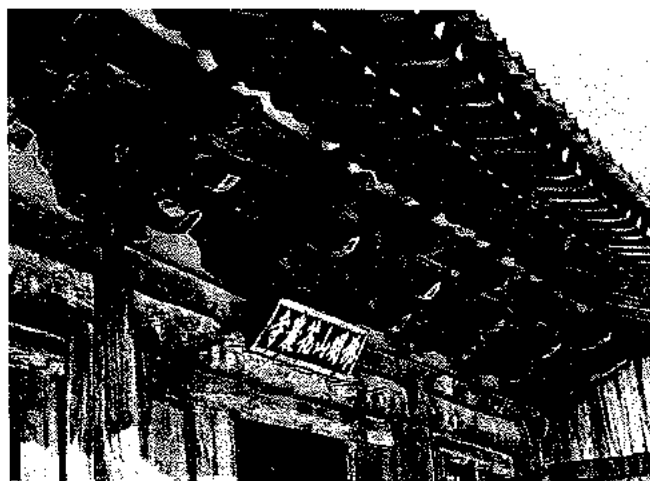


柱心拱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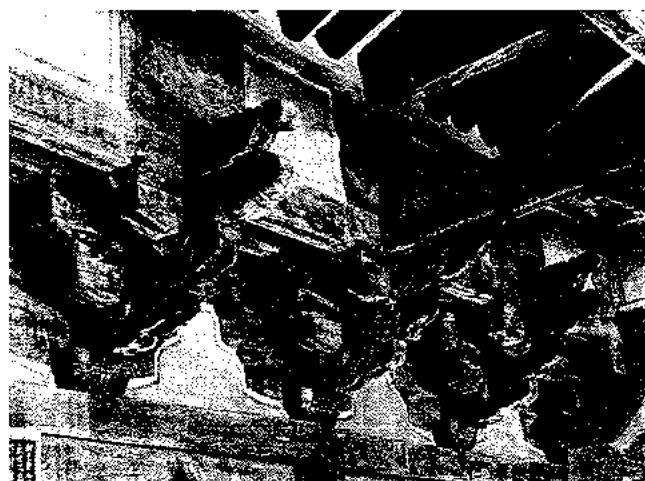


雨花樓 拱包

間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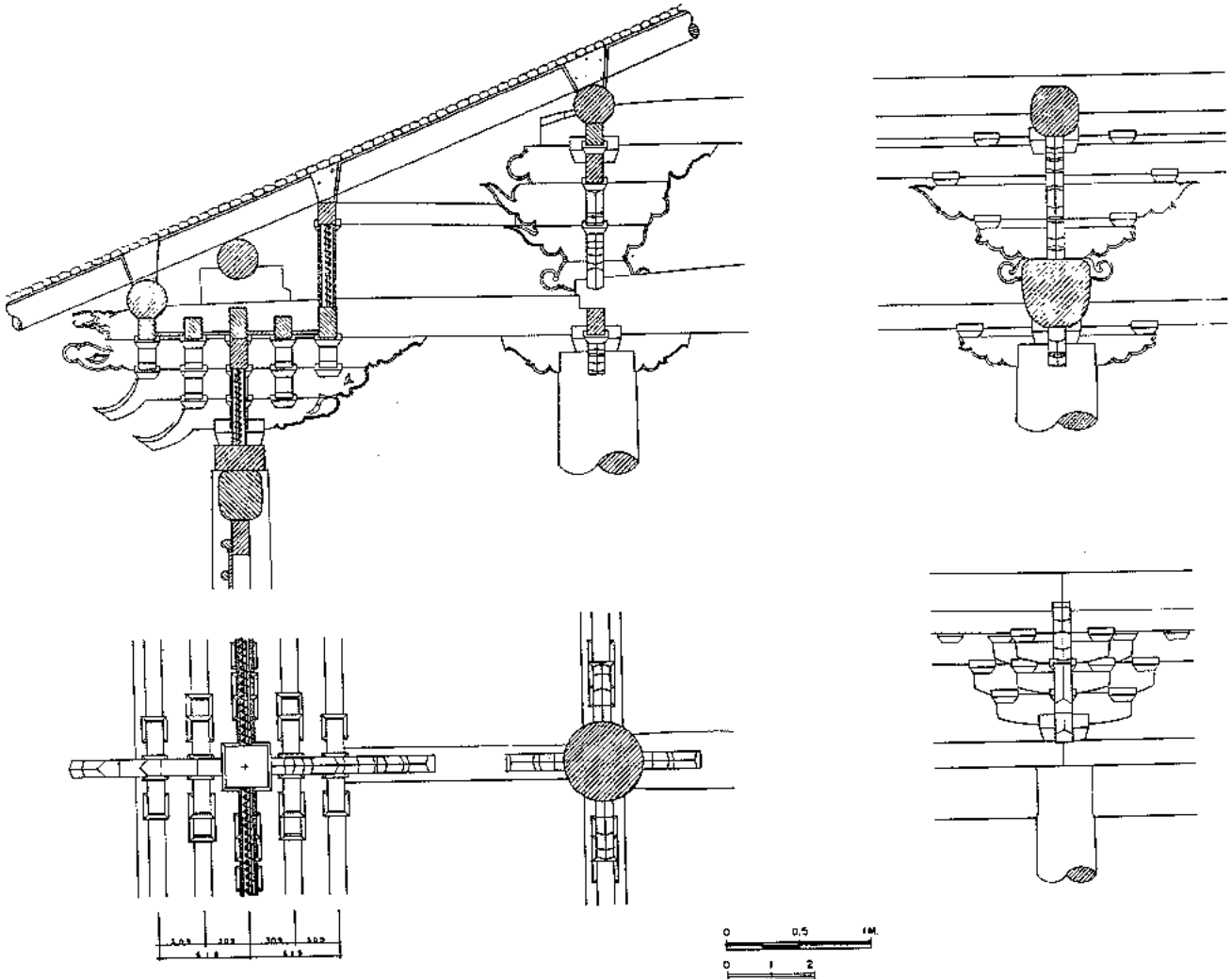


前面外部拱包



内部拱包

雨花樓 이간 주심공포 및 내고주상부 가구상세도



3) 拱 包

雨花樓도 맞배집이면서 多包系 拱包형 성하여 前後面 처마에만 拱包帶를 가졌다. 内外部에 공히 2出目으로된 5包로 짰다. 諸工과 한대에 살미와 대·소침을 엮을장하고 그위로 장혀를 건너 질렀다. 外2出目째에서 外目도리를 받고 内2出目에서 内目도리를 받았으며 그 사이에 主道里가 하나 더 있다.

出目간격은 310mm내외로 전립당시의 영조척 1尺(1.025曲尺)으로 잡은듯 하다.

외부로 뻗은 제1,2제공은 양서형 쇠서로 多包系 초기와 같은 짧고 경직한

맛은 없으나 쇠서길이가 좀 길어지며 간결하게 처리 유연한 맛을 풍긴다.

그 위의 제3제공은 草刻한 雲拱形으로 되고 내부로는 蓮花草刻한 3단의 살미가 雲宮形으로 보아지(樑奉)가 되어 대들보와 퇴보를 받았다. 3제공위 한대의 머리는 닭머리 모양의 鳳頭刻 하였고 귀포의 한대는 내부에서 側面高柱에까지 연장되어 壁枋(인방 등과 같이 壁體의 뼈대가 됨)이 되었다.

柱頭와 소로(小累)는 平斜切된 굽을 가졌고 幅과 높이의 比는 모두 2:1 이다.

굽은 높이의 중간부근에서 시작되어 운두와 굽의 比는 대략 1/2가량된다.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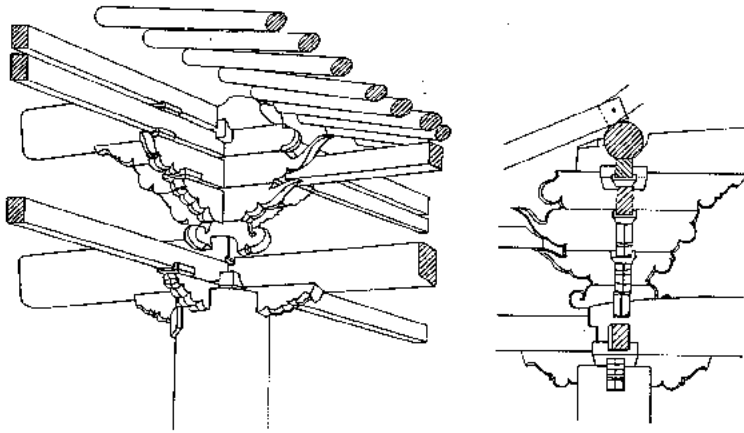
로폭은 주두폭의 절반가량되며 정면폭이 측면보다 약간 길다.

첨차는 兩端部를 약간 경사지게 直切하고 그 끝에서 첨차밀면으로 이어지는 圓弧를 이루었다. 일부 첨차에는 배바닥에 一段접기한 형태도 있으나 拱眼은 두지 않았다. 주심첨차에는 兩端上面에 小累앉치는 홈을 파 내었다.

4) 架 構

雨花樓의 架構는 이간 종단면을 기준하여 볼 때 二重보를 갖는 一高柱 五檁, 四架緣 構造이다. 兩側面에서는 두개의 高柱위에 종보를 걸어 마루도리(宗道里)를 받게 하였으나 내부에서는 內陣高柱

包臺工의 형상



와 後面平柱 사이에 가로지른 대들보와 內陣高柱에서 前面쪽 平柱上 공포에 結構된 퇴보로서 2間通의 樑間을 형성하였다.

大樑위에 거의 四分變作(四分之一 위치에서 중도리 배치)하여 包臺工을 배치, 중보와 중도리를 받았다. 宗樑위에 4관 대공을 두어 중도리를 받게한것 외에 대량과 종량사이에도 波蓮刻한 대공을 끼워 2重臺工을 형성한것이 특이하다.

宗樑의 兩端을 받치는 包臺工이 內陣高柱위와 대량위 2具씩 있으며 그 構成과 草刻手法에 매우 古格의 모습을 보인다. 그 구성은 보방향으로 三重의 살미를 놓고 도리방향으로 소첨과 대첨 및 뜯장치를 直交하여 十字로 짰다.

보방향의 살미는 대량위에 草工을 놓고 양서형 초가지로 제1,2 재공을 하고 그 위에 윤궁형의 제3 재공을 얹었다. 중

도리의 내측으로는 蓮瓣草刻하여 樑奉으로 宗樑을 받게 하였다.

도리방향의 첨차는 대량윗면과 上端이 一致하는 草工을 놓은다음 소첨과 대첨을 2段으로 짜 그위에 장혀를 건너 질렀다. 따라서 뜯장혀와 보 방향의 제3 재공이 十字로 결구되면서 그위에 주두형 접시받침이 놓여 중도리장혀와 종량을 받도록 구성되었다.

도리방향의 대첨치는 兩端을 쇠서형으로 처리하여 일반적 첨차끝과 다르다. 이 살미·첨차의 草刻技法이 柱心包系 架構를 연상시킨다. 또 한가지 독특한 것은 東西 兩側面 종량위에 세워진 童子柱形 臺工이다. 건물내부 대량위에 있는 板臺工에서와 같이 草刻된 첨차를 대공 상부에 直交시켜 중도리와 장혀를 받았다. 이 동자대공 상단은 上部에 실린 荷重을 견디지 못하여 균열가고 벌어져 있으나 당

초에는 이런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솟을 합장을 대었던 흔적이 동자기둥 양면과 종량 위에 남아 있다.

이러한 솟을합장과 包臺工을 이룬 제공과 첨차, 살미의 草刻手法, 연동天障으로 架構를 들어내 보이는것, 등이 多包系 拱包와 架構骨格에다 細部技法에서는 柱心包系 양식을 加味한 절충식 架構라고 말하고 싶다.

5) 처마와 지붕

전후면이 겹처마 구조로 서까래와 부연으로 구성되고 맞배지붕인 까닭에 추녀와 사래 없이 큰 박공이 합각머리에 설치되고 방풍판이 달려 있다.

처마의 깊이는 柱心에서 처마끝까지 前面에선 약 2.4m, 後面에는 2.3m이다. 그래서 後面 外邊柱心 礎石上面에서 연함外緣까지의 처마깊이가 이루는 角度는 後面이 24도이고 層樓를 이룬 前面 下層 柱礎上에서 이루어진 처마각도는 18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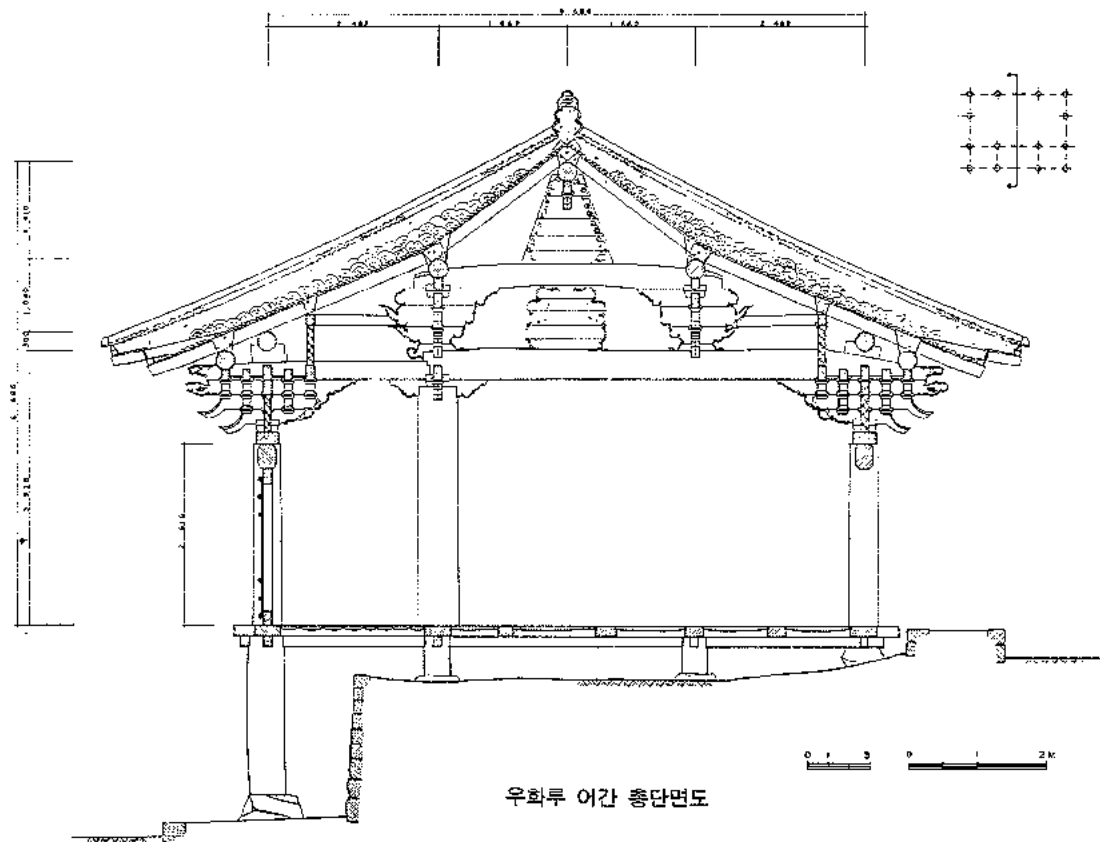
처마 좌우끝을 들어 올리기 위한 갈모산방은 전후면의 외목도리뿐 아니라 주심도리, 중도리 위에도 배치되었다. 위치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나 대체로 前面이 16cm 내외로 後面 14cm 내외보다 크다. 연목은 둥근나무로 쓴 長椽과 短椽이 중도리 위에서 교차되며 長椽 椽端부 지름은 180cm 내외로 끝을 걷어올려 안쪽으로 가면서 매우 굽어진다. 또한 椽端(末門)은 바른 圓形이고 材長에서 直角으로 直絶되지 않고 안쪽으로 2.5cm 가량 경사지도록 斜絶되었다.

부연端部 모습도 배바닥을 끝에서 걷어 올리고 양면볼을 下部로 빗작은 조선시대 中期이후의 治木技法을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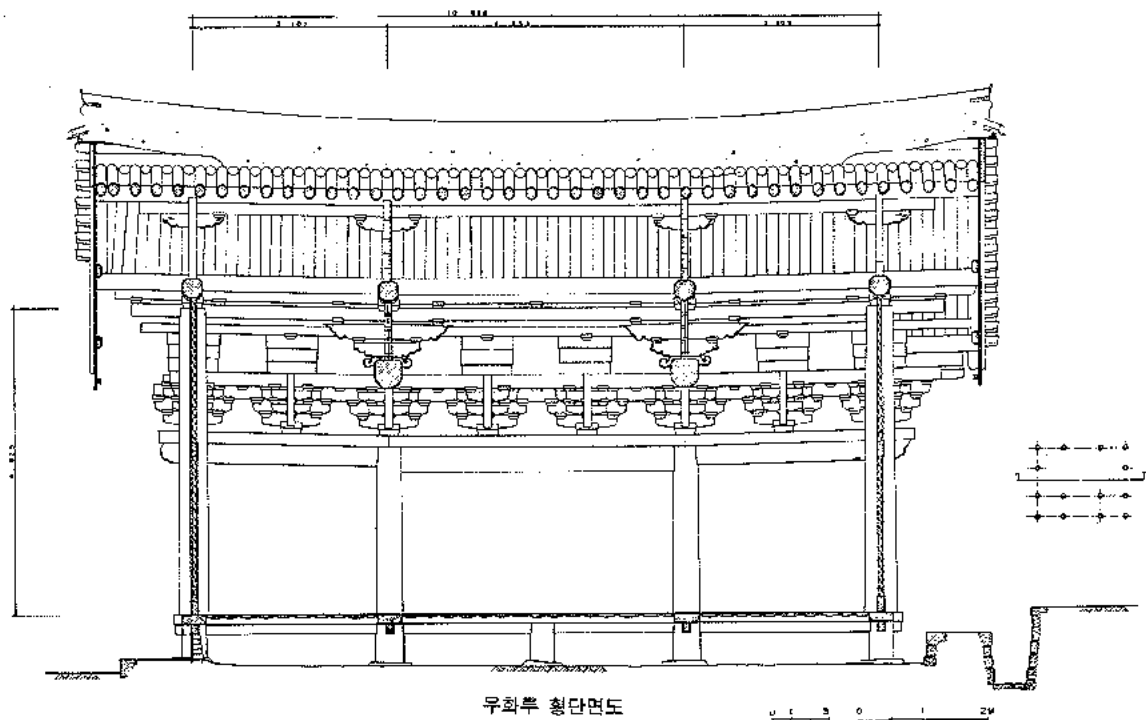
처마안허리曲은 御間中心을 기준하여 兩側端部를 측정한바 前面東端은 18cm 내외, 西端은 3cm 정도로 미미한 曲이다. 後面에서는 東西端의 안허리 크기가 5cm 내외로 비슷한 크기의 曲을 가졌다.

처마양곡도 御間中心을 기준하여 전후면 東西端의 휘어 올라간 높이를 측정한바 前面에서는 東西端이 거의 비슷한 17cm 내외이고 後面에서는 東端보다 西端部가 15cm 가량 낮아 西便으로 쳐진 느낌이다. 前後面 처마끝 높이도 後面쪽이 前面보다 약 15cm 가량 낮다.

지붕은 맞배지붕에 흑색 燒成韓瓦를 얹었고 지붕면은 안으로 육은 內反曲線



우화루 이연 종단면도



우화루 횡단면도

이 비교적 완만하다.

前後面の 바닥기와 길이 7.25m에 최대처짐은 87mm이다. 용마루는 작고 부고 위에 마루적새를 5점으로 쌓고 숫마루장 1장 올렸는데 용마루길이 14.31m에 중간 최대처짐은 54.3cm로 완만한 곡이다.

참 고 문 헌

- 韓國古建築斷章 下卷 金東賢 著
- 韓國의 木造建築 金正基 著
- 韓國建築大系 「窓戶」 「丹青」 張起仁 著
- 「寺院建築」 藝耕産業 「國寶9卷」 申榮勲 編著
- 「花巖寺 極樂殿」 張慶浩의 글 「文化財

誌 12卷」

- 「서울東大門外 實測報告」 姜奉辰 「建築學會誌」
- 無爲寺極樂殿 修理工事報告, 국립박물관
- 韓國建築用語集 建築家協會 編
- 完州花巖寺 實測調査報告書, 文化財管理局 刊.

初·中學校 教育施設의 多目的· 共用的 機能에 關한 研究 (完)

劉 香 山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學科 教授

V. 要約 및 結論

1. 要約

본연구는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 교육시설의 다목적·공용적 기능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고, 법규적으로 분석해서 우리나라의 각급학교 시설이 어느정도로 다목적·공용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동시에 施設을 共用하는 방법과 施設을 다목적·공용적으로 活用하는 영역에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실태조사를 통해서 발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A 教育施設 概念의 變化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전통적 교육시설과 다목적·공용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현대교육시설의 개념을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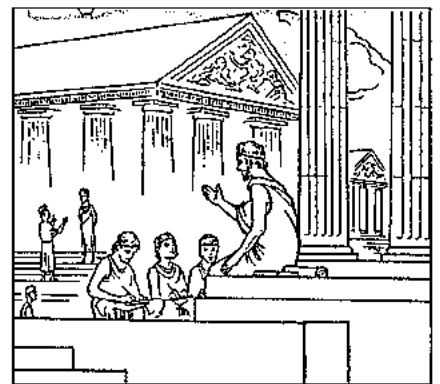
첫째, 전통적 교육시설은 學習空間 또는 敎授空間으로서의 기능보다 교사와 학생이 단순히 만나는 장소로 출발해서 17세기에 이르러 유럽이나 미국의 학교건물이 건축되기까지는 극히 허술

하고 보잘것없는 하나의 收容空間으로 발전하는데 불과하였다. 그러나 19세기 후에 와서는 비록 비기능적이기는 하지만 건축계의 건축사업이 활발해지면서 線을 강조하는 고딕식이라든가 자연미를 강조하는 트네상스식과 복잡한 장식을 즐기는 바로크식 등이 복합된 건축양식을 학교건축에 도입하였으나 이것은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비교육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전통적 교육시설은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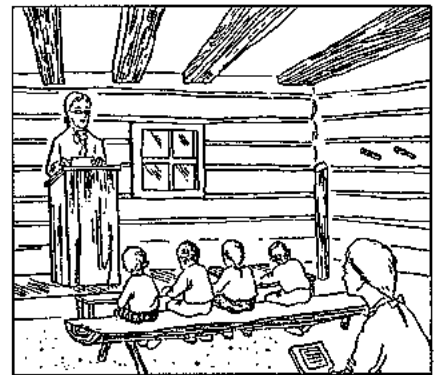
-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단순한 곳 <도 1>.
- 자연의 피해를 막는 住居空間 <도 2>.
- 건축예술품으로 존재하는 非教育的 건축구조의 공간 <도 3>.

둘째, 미국을 중심으로 19세기 중반에 와서 호레이스 만(Horace Mann)과 헨리 바이나드(Henry Barnaid)의 自由公立學校 건축을 계기로 학교건물은 그면모를 갖추어 갔으나 이당시는 아직도 전통적 개념을 지닌 교실들이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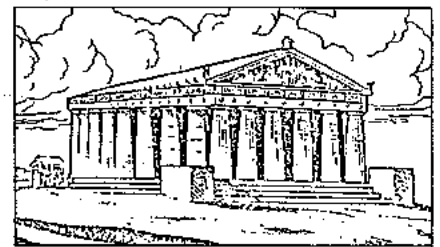
교실과 함께 공존하였다. 19세기 후반에서부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현대교육의 통합적·개방적 개념을 토대로 여러나라들은 기존학교건물을 재정비하자는 탄원서 등에 의해서 地方教育行政 당국과 市行政 당국의 행정권으로 각급학교의 시설이 통합되어갔고 지역사회시설과 통합이 되어있는 지역사회센터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기존학교의 담은 없어졌고, 년중무휴의 학교로서 지역사회와 다목적·공용적으로 활용하는



<도 1> 야외교실(모델: 500 B.C.)¹⁰⁴⁾



<도 2> 17세기 미국학교교실¹⁰⁵⁾



<도 3> 건축예술품으로 존재하는 비교육적 건축 구조공간¹⁰⁶⁾

주 104) Basil Castadi. op. cit.,

105) Ibid., p. 12.

106) Ibid., p. 10.

현대교육시설의 개념을 낳게 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현대교육시설의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 a. 單一敎室化하는 학교건물
- b. 단위학교들이 하나의 校地안에 통합된 학교건물
- c. 地域社會施設化한 학교건물
- d. 학교시설과 지역사회시설이 통합되고 개방되어 다목적·공용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교육시설

B. 教育施設과 統合的·開放的 教育理論

전통적 교육시설의 개념에서부터 현대 개념으로 변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것은 바로 현대교육원리의 통합성·개방성이다.

現代學習理論에서 보는 「학생」이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별적·다양적인 통합체로 보며, 교육과정에서 볼때는 잠재적사회성을 개발하는 미성숙자이며, 교수운영방법에서 볼때는 소집단이 단기에 학습하는 개별학습집단이다. 교육목표에서 볼때는 국민의 민도를 결정하는 기초 교육대상자이며, 이러한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는 물적환경 곧 교육시설은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직접 실험·실습·실기를 통해서 통찰력·성취감을 주는 환경

둘째, 통합적인 경험, 개방적인 경험을 하는 학생의 성숙도를 점차로 높여주는 통합적·개방적 환경

세째, 학습효과를 기대하는 교수준비물

네째, 학생이 평생 생활하는 다양한 생활현장

C. 教育施設의 多目的·共用的 機能

첫째, 교육시설의 다목적 기능이란 학교시설과 지역사회시설이 통합되고 개방됨으로써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다양한 환경으로서의 집합체를 제공하는 기능을 말한다.

- a. 학습환경
- b. 집단생활환경
- c. 개인생활환경
- d. 가정환경

위와같은 다양한 환경은 건축구조면에서 개방적이며, 건축구조에 의해서 건축규모가 결정될 수 있도록 통합적이어서 다양한 교과영역 뿐만 아니라 특별활동영역, 학교생활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건축설비, 교구, 기기, 자료 등을 설치할 경우 학습과정상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게되며,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동시에 활용을 위해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다목적 기능을 발휘하는 환경이다.

둘째, 교육시설의 공용적 기능이란 학교시설과 지역사회시설이 통합되고 개방됨으로써 서로 다른 敎科領域과 특별활동영역 및 생활영역에서 서로 동일한 시설을 활용하게 될때 시설이 갖추게되는 공통성의 기능을 말한다. 이러한 공통성을 발휘하는 시설은 건축구조상 이동이 가능한 벽을 가져야 하고 쉽게 재구조화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을 공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D. 建築理論과 施設基準令

첫째, 교육시설의 다목적·공용적 기능을 결정하는 건축이론은 건축구조의 통합성·개방성은 건축규모 뿐만 아니라 건축재료 건축설계 건축색채 등을 결정한다.

a. 建築構造가 統合的이라면 교실과 교실을 구분하는 벽체가 대단히 이동적이어야하며, 이와같이 벽체를 이동하려면 자연히 건축재료는 가볍고 사람의 손이 자주 접촉되는 벽체이므로 안정성을 갖는 재료로서 결정하게 된다. 건축규모는 벽체가 이동됨으로써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b. 建築設備은 그종류와 설치여부에 따라서 공간의 기능인 위생성을 발휘하느냐가 결정되고 동시에 학습환경으로서의 능률성을 발휘하느냐가 결정된다.

이때에 두개의 기존교실을 통합했고 개방했을 경우에 設備의 動力은 배가되기 때문에 이들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중복되는 기능을 제거하면 건축설비 자체는 대단히 다목적·공용적인 기능을 갖게된다.

c. 교육시설은 생산지에 설치하는 실습자, 자연원 등이 있는가 하면 입지에 설치하는 학교건물이 있으며, 그건물내부는 다시 학교교실, 「실험, 실습, 실기」실 또는 도서실, 교사중심의 지원시설인 교무실, 서무실, 학생중심의 지원시설인 학생실, 학교중심의 지원시설인 식당, 양호실, 화장실 등이 있다. 그리고 공간(교실, 운동장 등)에 설치하는 시설인 敎具機器, 자료 등이 있다. 이를 편의상 공간시설 이라고 부른다. 공간시설은 건축설비의 경우와같이 공간이 통합적이고 개방적일때 기능상 중복되는 시설을 제거함으로써 대단히 다목적·공용적 기능을 발휘한다.

d. 교육시설의 다목적·공용적 기능은 공용방법과 공용영역에 따라서 발휘 정도가 결정된다.

공용방법이란 한 학교를 중심으로 다른 학교들을 주변에 건설하느냐 아니면 지역사회시설을 중심으로 학교들이 주변에 건설되느냐에 따라서 다목적·공용적 기능은 다르게 발휘된다. 이론적으로 볼때 사회의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은 학교이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때 사회변화의 속도에 따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학교의 현실이다. 따라서 교육시설의 경우에도 지역사회시설의 발전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에 학교들이 설치되어야 한다. 공용영역의 경우에도 학교를 중심으로 볼때 서로 다른 교과영역, 특별활동영역 또는 학교생활영역에서 공용되고 있으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볼때는 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의 다양한 생활시설로서의 광범위한 영역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OECD 각국의 「지역사회센

타」들이다.

결국 건축이론상으로 보면 모든 교육 시설은 어떠한 공용방법이나 공용영역을 통해서라도 다목적·공용적 기능을 찾을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현행 「學校施設·設備基準令」에서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보유 기준, 건축기준, 건축설비의 설치기준,

教具·기기·자료 등의 설치기준, 시설 관리기준, 공용방법, 공용영역 기준 등을 이론과 비추어서 분석하였다. (표34 참조)

a. 보유기준은 실습지, 운동장, 학급 교실, 도서실, 양호실, 화장실 등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험, 실습, 실기」실은 학교당 학급수가 증가하

는데 따라서 설치하고 학급수가 12학급 이하의 경우에는 학급교실을 겸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 건축기준은 운동장의 면적만 제시하고 있을뿐 모든 시설은 위와같이 保有基準에 한하고 있다.

c. 건축설비의 설치기준 및 교구, 기기, 자료 등의 설치기준은 1984년 8월

(표 1) (본연구에서 설정한 교육시설내용에 기준한) 교육시설건축의 통합성, 개방성

② 표시는 기준령에서 보여주고 있는것.

다목적·공용적 통합성·개방성			방 법			영 역												다목적·공용적 활용영역수
			인근 학교	지역 사회	학교 내부	사회 계열	자연 계열	실업 계열	예능 계열	요리 계열	언어 계열	학생회 활동	학교 행사	클럽 활동	취미 생활	정서 생활	근로 생활	
각 종 교 육 용 지	① 농업실습지	통개	●	●	◎		○	◎		○		○	○	○	○	○	○	9
	② 양 어 장	통개	●	●	○		○	○		○		○	○	○	○	○	○	9
	③ 동 물 원	통개	●	●	○	○	○	○	○	○	○	○	○	○	○	○	○	12
	④ 식 물 원	통개	●	●	○	○	○	○	○	○	○	○	○	○	○	○	○	12
	⑤ 운 동 장	통개	◎	◎	◎	○	○	○	◎	○	○	○	○	○	○	○	○	10
	⑥ 수 영 장	통개	●	●	○	○	○	○	○	○	○	○	○	○	○	○	○	10
각 종 교 실	⑦ 학급 교실	통개			◎	◎	◎	◎	◎	◎	◎	○	○	○	○	○	○	12
	⑧ 어학실험실	통개	○	○	○	○					○	○	○	○	○	○	○	8
	⑨ 과학실험실	통개	○	◎	◎		◎	◎		○		○	○	○	○	○	○	8
	⑩ 실 습 실	통개	○	○	◎	○	◎	◎		○		○	○	○	○	○	○	10
	⑪ 음악실기실	통개	○	○	◎		○		◎	○	○	○	○	○	○	○	○	10
	⑫ 미술실기실	통개	○	○	◎		○		◎	○	○	○	○	○	○	○	○	10
	⑬ 체육실기실	통개	○	○	◎	○	○	○	◎	○	○	○	○	○	○	○	○	12
각 종 서 비 스 시 설	⑭ 도 서 실	통개	●	●	◎	◎	◎	◎	◎	◎	○	○	○	○	○	○	○	12
	⑮ 교 무 실	통개			○	○	○	○	○	○	○	○	○	○	○	○	○	12
	⑯ 시 무 실	통개			○	○	○	○	○	○	○	○	○	○	○	○	○	12
	⑰ 학 생 실	통개	●	●	○	○	○	○	○	○	○	○	○	○	○	○	○	12
	⑱ 양 호 실	통개	●	●	◎	○	◎	○	○	○	○	○	○	○	○	○	○	12
	⑲ 식 당	통개	●	●	○	○	○	○	○	○	○	○	○	○	○	○	○	12
	⑳ 화 장 실	통개	●	●	◎	○	○					○	○	○			○	6

2일자로 규정을 개정했고, 이들의 기준은 폐지하고 문교부 장관이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도록 고시하게 하고 있다.

d. 공용방법, 공용영역 기준은 앞에서 설명한 운동장을 인근학교나 지역사회가 공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실험·실습·실기실」이 없는 학교나 학교당 학급수가 12학급 이하인 경우에는 학급교실을 겸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共用領域 가운데 특별활동이나 생활영역에서 공용하는 규정은 없다. 전체적으로 볼때 기준령에서 본 시설의 공용성은 이론과 비교해 볼때 현실적으로 공용가능한 시설의 기능을 발휘시켜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지방교육행정부국을 중심으로 볼때 중복된 시설비를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용방법이나 공용영역은 법으로 기준을 설정하기 이전에 장기적, 연차적으로 공용기능에 대한 연구를 전제로 해야된다.

E. 實態調査 結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각급학교 시설의 다목적·공용적 기능의 정도와 문제점은 그 기능을 결정하는 건축조건과 설치상황을 요약함으로써 알 수 있다.

첫째, 시설보유현황에서 볼때 유치원 50%, 국민학교 60%, 중학교 도시 57.9%, 농촌 19.5%의 학교가 학급교실을 보유하고 있다. 운동장은 도시 유치원 54.8%를 제외하고 평균 76.4%의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다. 과학실은 62.3%의 학교가 보유하고 있으며, 실습실은 중학교에만 설치되어있고, 농촌은 43.5%, 도시는 61.4%의 학교가 가사실습실을 보유하고 있다. 도서실은 유치원 도시 48.4%, 농촌 42.9%, 국민학교 도시 50.7%, 농촌 54.6%, 중학교 도시 52.7%, 농촌 25%의 학교가 보유하고 있다. 특기할 사항은 학습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보다 교수준비공간(교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더욱 많다. 수영장은 전무상태이고 특별교실은 20%

에서 40% 이내의 학교들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20종의 시설을 조사한 결과 27.2%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각급학교의 생산지 시설(실습지·자연원) 및 입지시설(각종교실, 각종서비스시설)에 설치되는 건축설비와 교구, 기기, 자료(공간시설) 등이 얼마나 통합적이고 개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시설의 다목적·공용적 기능이 결정된다. 동시에 공간의 건축구조가 얼마나 개방적이냐에 따라서도 결정된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각급학교시설의 조건은 건축구조면에서는 비교적 개방적이지만 설치상황에서는 평균 10% 정도의 학교만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목적·공용적 기능은 불가능하다.

세째,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는 다목적·공용적 시설이 90%가 부족하다. 동시에 개방적 구조가 22.4%이기 때문에 77.6%가 구조상 활용이 불가능하다. 교실공간에 설치될 설비가 90%가 부족하여 다목적·공용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학교나 지역사회의 관련인들의 다목적·공용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F. 問題解決方向

첫째, 각급학교 사이와 지역사회 사이에서 서로 중복되는 시설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시설관계자 즉 교사, 교장, 교육행정가, 건축가 등이 시작하여야 하고 동시에 사회복지시설 기준령과 학교시설기준령과의 조정,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건축구조면에서 개방적·공용적인 활용이 가능한 기존시설 개선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신축시 지역사회시설을 공용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地를 선택한다.

세째, 중복되는 모든 설비를 학교간, 지역사회와 학교간에 점검하여 본다.

네째, 공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중복시설을 확인한 후에 지역사회,

인근학교, 학교내부에서 교과, 특활, 생활영역에서 공용하는 시범학교를 신설한다.

2. 結論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교육시설의 다목적·공용적 기능의 증진은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적 발전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제 본연구의 문헌적 고찰과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시설의 개념, 현실적인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관한 몇가지 매듭짓는 진술을 간추려 본다.

첫째, 교육시설의 개념은 교원중심적인 것으로부터 아동·학생중심적인 것으로 변천되어오고 있다. 오늘날 교육시설은 교원주도의 수업환경으로서 보다는 학습자 활동위주의 학습환경으로 생각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하나의 세계적 象論이 되어있다. 학습자의 능동적 자율적 협동적 활동을 충분히 가능하도록 교육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고정된 4角定型的 평면교실이 유일, 최선의 학습장은 아니다. 교육시설은 교육이론의 발전에 따라서 여러가지 유형으로 변천되어 왔다. 학습자의 학습형태는 靜的인 것에서 動的인 것으로 바뀌고 있으며, 학습장은 교실에서 야외·자연환경으로 또는 지역사회와 문화환경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교육시설은 앞으로 교수일학습활동을 더욱 다양하고 알차게 해주는 기본적인 조건으로서의 구실을 해야한다.

세째, 교육시설의 사회화 현상과 통합적·개방적 기능의 提高는 중요한 미래적 발전방향의 하나로 생각된다. 예컨대 신체적, 지적, 정서적으로 통합된 유기체인 어린이나 학생들은 모든 사회, 문화적 환경속에서 생활하며, 실제생활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하여 全人的으로 성장, 발달한다. 학습심리학적관점에서 성찰해보면 인간의 행동은 비공식적, 비제도적, 비계획적인 환

경과 생활과정 가운데에서도 변화될 수 있다. 이른바 우발적 계기에 의한 학습의 중요성은 현대교육이론에서 소홀히 다룰 수 없다. 사회·문화적 환경은 바로 교육환경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각급학교의 공식적 제도적 계획적인 교육시설은 지역사회의 가장 훌륭한 교육시설의 하나 이어야 한다.

네째,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의 교육시설이 학교내 여러 교육활동사이, 각급학교사이, 또는 학교와 지역사회 사이의 교육, 문화향상을 위하여 다목적·공용적으로 활용되는 정도를 점차로 증가시켜나감이 합리적이다. 각급학교시설이 지나치게 개별적 자기충족적 고립적인 현상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실태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각급학교시설의 다목적·공용적 기능발휘 정도는 매우 저조하다. 폐쇄적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부족하고 어려운 실정 가운데에서도 사장, 유희시설이 있다. 한마디로 학교내 다목적 활용 및 학교간 또는 학교와 지역사회간 공용정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다섯째, 교육공학적 관점에서 기존시설의 개선 및 신설학교의 건축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도서관의 개방적·공용적 구조개선이나 음악실, 미술실, 가사실습실 각종 과학실험실 기타 시설들의 다목적·공용적 설계가 교육공학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일반교과 교육교실의 구조나 배치도, 특히 신축의 경우 대폭 혁신시킬 수 있다. 게시판, 교실과 복도등의 벽공간을 시청각교육자료 부착에 활용하고 있고 교육공학적 원리

를 이용하여 제대로 다목적·공용적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학교간,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공용에 관한 배려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여섯째, 교육관계자, 정부관계자, 일반국민의 교육시설기능에 새로운 인식을 불어 넣어야 한다. 개혁작업의 추진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既成慣例에 젖어 안이한 자세로 일상적 학교운영 업무에 시달리는 가운데 시설개선을 위한 장기적 구상에 마음을 쓰는 學校長은 많지 않고 정부의 교육시설개혁 노력은 미비하며, 일반국민의 관심은 殆無狀態이다. 시설재원의 부족이 거의 절대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통합적, 개방적 교육이론에 상응하는 다목적·공용적 교육시설이 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투자자의 경제성(절감)을 약속하고 동시에 교육성과의 상승효과를 사회적으로 확보하는 것임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일곱째, 法規的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 법규가 모든 해결책은 못되지만 행정의 지침이기 때문에 현행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은 교육시설의 다목적·공용적 활용에 관련된 초보적인 몇가지 규정(예컨대 기준령 제3조 5항, 제12조 별표 1 등)을 가지고 있으나 매우 미흡하다. 앞으로 학교 교육시설 관계법규의 개정작업이 있을 때에는 사회교육 관계법규 및 복지관계법규와의 관련성에 대한 유의가 요구된다.

여덟째, 초·중학교의 교육시설은 의무교육연한의 연장과 평생교육체제의 발전 추세에 적합하도록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중학교 수준까지

의무교육화될때(1984년 8월 2일자, 법률 제3739호, 교육법중 개정법률안 참조) 예컨대 국민학교와 중학교가 동일지역내 또는 인접지역에 설치 운영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다. 또 우리나라 헌법 제29조는 교육을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양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은 동전의 양측면에 불과하며 兩者의 동시 관련성은 분명하다. 국민학교 취학연령의 하향조정, 유치원 교육의 의무화 또는 중등의무교육 연한의 연장등이 실시되고 사회, 문화적 변동에 따라 산업·경제체제와 운용방식이 바뀌게 될 미래사회에 있어서의 교육과 교육시설 정책이 오늘날의 그것일 수는 없을 것이다. 교육시설의 다목적·공용적 기능의 제고를 위한 국가정책의 추진이 촉구되는 것이다.

아홉째, 합리적 정책입안을 위한 협동연구체제의 수립과 발전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 및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된 기존교육시설·설비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교육전문가, 교육공학전문가, 건축전문가, 경영관리자들의 협동적 연구체제의 효율적 운용은 교육시설 개혁의 작업과정에 있어서 필수적 조건이 된다. 현실적으로 실용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적정한 교육적 상승효과를 보강할 수 있는 각종설계의 모형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협동연구체제가 감당해야 할 기본적 책무이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원을 기대하는 것이다. (끝)

알려드립니다

吳雄錫 會長의 訪美記事는 美國으로부터의 一部 資料의 未着으로 原稿作成이 未盡하여 부득이 다음 號에 紹介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니 會員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거리에서 생각나는 일들

도시가 단지 건물의
절합체가 아닌 이상
물리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시각적 측면에서도
고려될 때가
이제는 되었다고...



조 성 룡
우원종합건축사사무소

지난해 여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치뤄지고 있을 때였다. 그 곳의 선수촌 시설도 조사하고 현대건축도 둘러볼 겸 해서 한 열흘 머물게 되었다.

대회가 열리기 직전에 그 곳의 공해가 심하여 혹시 마라톤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호흡에 장애를 주지 않느냐는 등 걱정을 해대던 신문 보도를 끝이 듣고 (그래도 서울서는 비교적 공기가 신선하다는) 한강변 쯤의 상태려니 지레 짐작한 것은 착오였다. 공항에서 내려 프리웨이로 들어서자마자 창문을 열고 들어마신 공기가 우선 서울의 그것이 아니었을 뿐더러, 그 자욱하리라던 스모그도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도시 「공해」 운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이 새파랗지 않던가. 요즘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첫머리에 으레 들먹여지는 86, 88 숫자가 얼마나 이 국토를 정화시켜 갈른지는 두고 보아야 할 터이나 그때 쯤의 한강이 어떠한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나 유럽같은 선진국에 닿으면 공항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고속도로에서 우선 그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갈래 길 이 나타날 때 쯤이면 여김없이 몇 번이나 되풀이되는 커다란 안내판(도로 한가운데의 그것은 이곳에 전주어 얼마나 시원시원한가) 쯤 이제는 본 받을 때도 되었다. 며칠전 정부고속도로의 일부분에 이러한 안내판이 세워져 있음을 발견하고 그리 반가울수가. 그뿐인가. 어쩌다 못해 하는 수 없이 세워진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그것의 인색함이며, 같은 가로명에도 「길」, 「노」, 「로」 등으로 서로 달리 표기된 것은 한글, 한자, 거기다가 영어에 제2 외국어까지 달달 외워 댄 우리야 그런대로 아아 하면 그만이지만, 관광길에 한국까지 오게 되어 풍광수려하다는 금수강산 한번 둘러보려 렌트 카에 교통지도 펼쳐들고 떠날 외국 나그네에게는 예사일이 아니리라. 한글로 표기된 바로 그 아래 폭이 좁은 장채로 쓰여진 알파벳표기를 그들이 단번에 알아채고 이 생소한 거리에서 제 갈길을 찾아가기란 거의 불가능처럼 보여진다.

그 철저한 미국 고속도로의 간판도 깜박했다가는 인터체인지를 지나쳐 몇 십분씩 가다가 되돌아오기가 십상이다. 도로에서 느끼는 것은 비단 그 뿐이 아니다. 콘크리트로 포장된 로스앤젤레스의 차도는 길을 따라서 흙이 쭉 파져있고, 거기다가 중간 분리대에는 우툴두툴하게 스파이크 모양의 철물을 박아서 차선 이탈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전화공사 한다고 파헤치고 몇달 후에 다시 상수도 시설 보수한다고 또 들쳐내고, 일년내내 아스팔트 땀질을 그치지 않는 일이 도로공사의 전부가 할때는 이제 지났어야 할 것이다.

어찌 그 뿐이라. 이제는 장거리 자동전화도 생기고 우편번호도 생긴데다가 어느 나라에서건 지역번호만 돌리면 곧바로 전화가 연결되는 그런 시대에 아직도 거리에는 번지를 나타내는 표시판이 없다. 새로 준공하는 건물서부터라도 정초석과 함께 주소, 번지 쯤 넣어두게 하는 것도 생각해 봄 직하다.

낮선 외국의 어느 도시에서건 「무쉬랭」이나 「악세스」 같은 가이드북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단지 그 도시의 관광지 뿐 아니라 현대건축까지도 도판과 더불어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음에는 열굴이 붙어지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었는데 「서울의 건축」이라는 안내책이 출판되어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안내 책도 그 건물의 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을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 아니겠는가.

더 나아가 사인계획이나 색채계획 등 시환경에 대한 일반의 이해가 의외로 낮은 차원에 머물러 있음은 물론 그것이 유능한 그래픽 디자이너의 부족에도 기인하는 것은 사실이겠거니와 우리들 건축사의 인식부족에도 그 커다란 원인의 일단이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가 단지 건물의 절합체가 아닌 이상 물리적 측면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시각적 측면에서도 고려 될 때가 이제는 되었다고 생각한다.

建築法施行令中改正令

(대통령령 제11,740호 1985. 8. 16)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
한다.

1.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읍의 구역(당해 시 또는 읍에
속하는 인구 500인이하의 섬의 구역을
제외한다)

3.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중
심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중심선으
로부터 각각 양측 5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중심선
으로부터 양측 200미터이내의 구역

제5조 제1항중 “군수조달에관한특별
조치법에 의한 군수시설(이하 “군수시
설”이라 한다)”를 “방위산업에관한특별
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시설(이하 “방산
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동일한 대지안에 2
동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의 동
별공사의 완료를 포함한다)”를 삭제하
고, 동조제2항중 “군수시설”을 “방산시
설”로 한다.

제15조 제2항 제2호 본문중 “조경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
경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으
로 하고, 동호단서중 “조경면적과 동일
한 면적의 범위까지만”을 “조경면적의 2
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만”으로 한
다.

제24조 제1항 제2호 본문중 “열손
실방지조치”를 “열손실방지등을 위한
조치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
2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열손실방지를
위하여”를 법 제2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방지등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하여”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②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
축물에서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하고 그
구조 및 설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
에 정하는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에 대
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당해 건축

물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
야 하되, 그 건축허가의 신청이 증축 또
는 개축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증축 또
는 개축되는 부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할 때에는 증축 또는 개축되는 부분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1. 50세대이상으로서 중앙집중난방방
식인 공동주택
2.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
인 업무시설
3.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
인 숙박시설 또는 병원
4.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
인 일반목욕장·특수목욕장 또는 실내수
영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합
리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과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서식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같은 건축물안에서는 주택·기
숙사·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 시설”이라 한다) 중 하
나이상과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
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하
이 조에서 “숙박시설등”이라 한다) 중 하
나이상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등 시
설과 숙박시설등의 출입구를 각각 분리
하여 설치하고,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하며,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시설 및 건축설비등을 할 경우
에는 주택등 시설과 숙박시설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1. 기숙사와 공장이 같은 건축물안에
있게 되는 경우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구역(1983년 12
월 31일 현재 상업지역으로서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공연장중 하나 이상이 있
는 구역에 한한다)에 있어 그 사업의 시

행으로 주택등시설과 당해 재개발구역안
에 있는 기존의 숙박시설·위락시설 또
는 공연장이 같은 건축물안에 있게 되는
경우

제38조 제2항 본문후단중 “각직통
계단은”을 “각직통 계단의 출입구는”으
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하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제40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1.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300제곱미터상이거나 객석의 수
가 300석이상인 공연장 및 무도유흥음
식점

제45조중 “(당해통로의 길이가 35미
터이상인 경우에는 6미터)”를 “[법 제2
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주택(이
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2미터]”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당해 통로의 길이가 35미터이
상인 경우에는 6미터이상의 통로를 설
치하여야 한다.

제48조 본문중 “법 제22조의 3의 규
정에 의하여 설치하는”과 동조제1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
와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
곱미터이상인 층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② 법 제2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지
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지하층의 구조는 제1항에 적합하여
야 하는 외에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로 하여야 하며, 벽두께
는 20센티미터이상, 반자높이는 2.1미
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 제1항중 “지장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를 “지장이 없도록 하고, 당
해 설비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하

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을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기타와 유사한 건축설비”를 “기타와 유사한 건축설비(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로 하며, “건축설비기술사”를 “건축기계설비기술사”로 한다.

제 51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이상인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는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중 주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사무소의 경우 전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난방설비를 하는 때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53조에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4대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의료시설·공공업무시설·관광호텔·공연장 또는 관람장의 경우에는 그 승용승강기중 1대 이상은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당해 승강기에 이르는 통로는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 55조에제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500석 이상의 관람석을 설치하는 공연장 또는 관람장의 경우와 제 53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거나 10개 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공공업무시설·관광호텔 또는 공공변소의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지체부자유자용대변기를 지체부자유자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 55조의 2를 삭제한다.

제 5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6조의 2 (비상급수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건축물) 별 제 22조의 2 제 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할 경우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대지안에 있는 기존건축물(건축을 하는 당해 대지안에 있는 인접 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 등의 손괴방지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2.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3.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 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제 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0조 (국기게양대의 설치) ① 상업지역안에서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연하여 2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그 옥상의 전면중앙 또는 현관의 차양시설에 길이 7미터이상(3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길이 5미터이상)의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거나 그 건축물의 전면지상에 길이 10미터이상의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기게양대를 화제등 위급한 때에 인명구조용으로 쓰여질 수 있는 구조로 하게 할 수 있다.

제 2장제 7절에 제 6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1조의 2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관람공간등의 확보) 500석 이상의 관람석을 설치하는 공연장 또는 관람장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관람공간을 확보하고, 당해 관람공간에 이르는 통로는 경사로등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당해 공연장 또는 관람장에 설치하는 관람석의 수	당해 공연장 또는 관람장의 관람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지체부자유자의 수
500석이상 1천석미만	3인 이상
1천석이상 3천석미만	5인 이상
3천석이상 1만석 미만	10인 이상
1만석이상	15인 이상

제 63조제 2항 본문중 “5분의1 이상”을 “6분의1 이상”으로 한다.

제 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90조 (일조권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높이는 별 제 41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연면적 10 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제 101조제 1항 제 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거전용지역 또는 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도시공원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공원 및 군립공원을 제외한 공원이나 도로·철도·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높이 8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4배)·다만, 폭 2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 상호간의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가 당해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때에는 높이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상업지역안에서 높이 12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높이(건축물의 높이가 부분에따라 각기 다른 경우로서 높은 부분의 높이가 그 외벽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이하인 경우에는 낮은 부분의 높이를 말한다. 이 경우 낮은 부분의 높이는 12미터이상이어야 한다)는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서 0.5미터를 감한 거리의 40배에 12미터를 가산한 높이

3.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높이

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다세대주택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하여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나. 동일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다만, 서로 마주보는 당해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의 각외벽에 채광을 위

한 창 또는 개구부등이 없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6미터(마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인 경우와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로서 그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하나의 건축물에서 서로 마주보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다만, 서로 마주보는 각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2조제 1항중 각호를 제외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법 제 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제 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도로에 3면이상 접한 경우에는 당해 도로중 주된 출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외의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을 말하며, 제 3호의 경우에는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을 말한다)으로부터 피어야 할 거리(제 1호 및 제 3호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하고, 제 2호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부속건축물(다음 각호의 건축물이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인 경우와 기존건축물(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2조제 2항중 “피어야 할 거리는” 다음에 “관계 규정에 의하여 피어야 할 것외에”를 삽입하고, 동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97조제 4항제 7호를 제 8호로 하고, 동항에 제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 24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

제 98조제 1항제 3호 단서중 “다만,”을 “다만, 연면적 200 제곱미터이하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 22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 99조제 2항중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를 “연면적이 200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서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제곱미터이상인 때에는 그 용도변경행위에”로 하고, 동조 제 3항을 삭제한다.

제 101조제 1항제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상 1미터 이하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차양·부연이나 다세대주택 또는 연면적 330 제곱미터이하인 단독주택의 옥외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전설부령으로 정한다.

제 101조제 1항제 3호 라목중 “·배판핏트 및 닥트”를 삭제하고, 동목중 “쿨링타워”를 “냉각탑”으로 한다.

제 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02조 (적용의 특례) ① 시장·군수는 법 제 53조의 7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 22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지내력을 가지는 지반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2. 토지를 굴착할 경우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대지안에 있는 기존건축물(건축을 하는 당해 대지안에 있는 인접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 등의 손괴방지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3.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② 법 제 3장 내지 제 5장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하여 도시기능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법 제 53조의 7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당해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될 사

(단위 : 미터)

구 분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정북방향의 수평거리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주거전용지역안의 건축물	-	1.0이상	0.5이상
주거지역안의 건축물	-	0.5이상	0.2이상
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1.0이상	0.5이상	0.2이상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	2.0이상	1.0이상	0.5이상
공해공장·위험물 제조소·위험물저장소(당해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	4.0이상	3.0이상
공동주택(당해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인 경우 다세대주택이 아닌 경우	-	1.0이상 3.0이상(2층이하인 경우에는 2.0이상)
			0.5이상 2.0이상(2층이하인 경우에는 1.5이상)

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구조부·실·설비등의 증축 또는 개축은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 규모의 범위안에서 허용할 것.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증축 또는 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다음의 범위안에서 허용할 것. 다만,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체율: 10분의 9이하

나. 용적율: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이하

다. 대지면적의 기준: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라. 대지안의 공지: 폭 0.5미터이상으로서 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이상

③ 시장·군수는 법, 이 영 또는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점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법 제3장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로서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제14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을 제외한다) 및 대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접하게 되는 도로와의 도로에 대하여 제101조제1항제1호단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또는 그 대지안의 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고, 그 건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법 제2장 또는 이 영 제90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지역·지구안에서의 용도에 의한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점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준공점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기준시”라 한다)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하여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가. 기준시의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다만,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이나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으로서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한 공장을 증축함에 있어서는 기준시의 연면적의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나. 공장종업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시설물,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설비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위한 증축.

다. 기준시의 연면적의 2분의 1 이내의 개축 또는 재축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접하게 되는 도로와의 도로에 대하여 제101조제1항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는 그 기준시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개축·재축 또는 증축(당해 개축 또는 재축으로 인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의 10분의 7(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상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기준시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국가시책상 불가피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면적 33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종전의 부적합한 정도이 아닌 범위안에서 당해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1981년12월31일 이전에 준공점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에 한한다)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수행하는 국제회의 또는 운동경기등 국가적 행사를 위하여 환경정비가 불가피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85조·제86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건축물의 범위안에서 개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 10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03조 (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단독주택·다세대주택(3세대이하인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② 근린생활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으로서 부표 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것 및 동항 제6호중 부동산중개업소에 한한다)

[별표 2]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

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연구시설(시설강습소인 경우 기술계강습소, 공장에 부설되는 교육연구시설과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④ 공장·기숙사(공장종업원용에 한한다)

[별표 3] 제1항·제8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단독주택·다세대주택

⑧ 교육연구시설(시설강습소인 경우 관광·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계강습소에 한한다)

⑮ 농·수산물보관창고

[별표 4] 제11항 내지 제15항을 제14항 내지 제18항으로, 제7항 내지 제10항을 제9항 내지 제12항으로 하고, 제5항 및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동표에 제5항·제8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7항(중전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 제18항(중전 제15항)중“제14항”을 “제17항”으로 한다.

⑤ 노유자시설

⑦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광업 또는 관광에 관련된 교육연구시설

⑧ 청소년호텔

⑬ 자동차계강습소

[별표 5] 제1항 내지 제17항을 제2항 내지 제18항으로 하고, 동표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 제3항(중전 제2항)·제5항(중전 제4항)·제10항(중전 제9항) 및 제11항(중전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 제14항(중전 제13항)중“150평방미터”를 “150제곱미터”로 한다.

① 대중음식점(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③ 시설강습소(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이고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되, 대학입시제 시설강습소인 경우 폭 18미터이상인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⑤ 숙박시설(읍·면의 구역안에서 폭

12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여관과 교통부장관이 관광사업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다)

⑩ 공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업종중 제재업 및 연탄제조업 외의 공장으로서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과, 폭 8미터이상인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인쇄·봉제·필름현상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그 시설규모가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요하는 최소시설규모의 2개이하인 공장을 제외한다)

⑪ 창고시설(정부양곡보관창고 및 인구 20만미만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용의 창고와 동력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의 촉진 및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기자재보관창고로서 읍·면의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별표 6]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공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중 제재업 및 연탄제조업 외의 공장으로서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과 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에 건축하는 인쇄·봉제·필름현상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그 시설규모가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요하는 최소시설규모의 2배이하인 공장을 제외한다)

[별표 7]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장(자동차정비사업장,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중 제재업 및 연탄제조업 외의 공장으로서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과 인쇄·봉제·필름현상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그 시설규모가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요하는 최소시설규모의 3배이하인 공장을 제외한다)

[별표 8]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교육연구시설, 시설강습소인 경우 기술계강습소, 공장에 부설되는 교육연구시설,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와 직업

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제외한다)

[별표 9] 제5항중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을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공장”으로 한다.

[별표 10] 구분단 제1호의 품명란에 제66호 내지 제9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6. 일반배관용 강제맞대기용접식 관이음쇠 67. 특수배관용 강제맞대기용접식 관이음쇠 68. 청동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나사식글로우브밸브 69. 청동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나사식글로우브밸브 70. 청동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나사식앵글밸브 71. 청동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나사식게이트밸브 72.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73. 스위치박스 74. 암면단열재제품 75. 유리면보온재 76.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77. 누전차단기 78. 배선용차단기 79.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80.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81. 이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관 82. 주택용 분전반 83. 프러쉬플레이트 84. 노오말랜드(경질비닐전선관용) 85. 박스(경질비닐전선관용) 86. 카바나이프스위치 87.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88. 비닐코오트 89.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보울밸브 90. 수도용 제수밸브 91. 주철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글로우브밸브 92. 주철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앵글밸브 93. 주철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안나사 게이트밸브 94. 주철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밸브 95. 주강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글로우브밸브 96. 주강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밸브 97. 주강 2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글로우브밸브 98. 주강 2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밸브 99. 파이프행거

[부표] 제4항제6호중 “소개업소”를 “부동산중개업소등 소개업소”로 하고, 동부표 제7항제1호중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로, “유아원”을 “새마을

유아원"으로 하며, 동부표 제 13항제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상점: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제 4항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와, 동일 건축물안에서 제 4항제 1호의 용도(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와 동항 제 2호·제 3호 또는 제 9호의 용도가 복합되어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것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미 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主要骨子

가. 中央集中暖房方式으로 된 50世帯이상인 共同住宅이나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인 業務施設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節約計劃書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의 검토를 거친후 건축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기하도록 함(제 24조제 2항).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로서 여러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구조로 된 多世帯住宅은 공동주택의 일종이나 공동주택과는 별개의 유형으로 새로이 인정됨에 따라 종래 공동주택의 구조로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던 엄격한 요건내용을 다음과 같이緩和하여 규정함.

(1) 避難 및 消火에 대비하여 塹地안에 확보하여야 할 통로의 폭을 3미터에서 2미터로 함(제45조).

(2) 日照權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서 채광을 위하여 필요한 開口部가 향하는 방향에 따른 隣接塹地境界線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띄우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단독주택의 경우처럼 이를 띄우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함(제90조제 3호가목).

(3) 건축물의 주위에 植樹·防火·日照

·通風등에 필요한 공간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隣接塹地境界線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를 3미터이상 띄우도록 되어 있는 것을 多世帯住宅의 경우에는 1미터이상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처마끝으로부터 인근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를 2미터이상 띄우도록 되어 있는 것을 多世帯住宅의 경우에는 0.5미터이상 띄우도록 함(제92조제 2항).

(4) 종전에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서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미만 돌출부분인 처마·遮陽·附樓등을 인정하였으나 다세대주택의 개념을 인정하게 됨에 따라 그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돌출부분에 폭 1미터미만인 옥외계단을 새로이 포함시켜 이 부분도 건축면적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제101조제 1항제 2호).

(5)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전용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종래 多世帯住宅의 건축이 금지되었으나 이를 새로이 허용함(제66조제 1항·별표 1 및 별표 3).

다.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이며 6층이상인 건축물로서 4대이상의 乘用升降機를 설치하는 의료시설·공동업무시설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중 1대이상은 肢體不自由者用 승강기를 확보하고, 500석이상의 관람석을 설치하는 공연장·관람장의 경우에는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관람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당해 승강기 및 관람공간에 이르는 통로를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함(제53조제 2항 및 제61의 2).

라. 1985년 6월 30일 현재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양성화되어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도 현행법령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앞으로 増築 등을 허용하도록 함(제102조제 3항).

마. 행정관청이 행하는 過怠料의 부과·징수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제103조).

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각

지역별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추가함.

(1) 住居專用地域: 3세대이하의 다세대주택 및 부동산중개업소(별표 1)

(2) 專用工業地域: 시설강습소로서 기술계강습소와 공작중업원용기숙사(별표 2)

(3) 自然綠地地域: 다세대주택, 시설강습소로서 관광·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계강습소와 수산물보관창고(별표 3)

(4) 生産綠地地域: 老幼者시설,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 관광에 관련된 교육연구시설, 청소년호텔 및 시설강습소로서 자동차계강습소(별표 4)

(5) 住居地域: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이고 환경보전법상의 排出施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강습소(대학입시계강습소인 경우에는 폭 18미터이상인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및 읍·면의 구역안에서 폭 12미터이상인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여관(별표 5)

(6) 準住居地域: 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인쇄·봉제·필름현상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중 그 시설규모가 환경보전법에 의한 排出施設의 시설규모의 2배이하인 공장(별표 6)

(7) 商業地域: 인쇄·봉제·필름현상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그 시설규모가 환경보전법에 의한 排出施設의 시설규모의 3배이하인 공장(별표 7)

(8) 工業地域: 시설강습소로서 기술계강습소(별표 8)

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안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大衆飲食店을 추가함(별표 5)

아.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의 품질을 향상시켜 건축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일정한 建築材料는 韓國工業規格表示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건축재료로서 종래 65종을 열거하고 있었으나 이에 34종을 새로이 추가하여 규정함(별표 10).

되는데 시험과목은 建築計劃과 建築設計인데 건축설계과제는 80~150 병상규모의 綜合病院이다.

그리고 특별전형자 460명은 한양대학교에서 80~150 병상규모의 綜合病院建築設計를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10월중순경 발표할 예정이다.

△ 시험과목 및 시간

구 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건축사자격 2차시험 (일반전형)	○건축계획 (오전)	10:00-11:25 (85분)
	○건축설계 (오후)	13:00-18:00 (5시간) 연속시행
특별전형 실기시험	○건축설계 (오후)	13:00-18:00 (5시간) 연속시행

大都市에 大型빌딩新築 抑制

서울地域 再開發사업도 縮小조정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형 빌딩 신축을 크게 억제하기로했으며 政府廳舍등 공공기관의 건물신축 계획도 88년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經濟企劃院은 최근 서울의 경우 도심지 대형빌딩신축의 과잉으로 사무실이 많이 남아돌고 이부분에 대기업들의 투자가 몰리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빌딩신축을 가능한한 억제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目標爲主再開發事業推進을 지양, 올해안으로 실시하기로 했던 28개지역의 재개발계획도 대폭축소 이미 공사를 시작했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新規許可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올 서울의 재개발사업을 10여개 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계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들의 대형빌딩신축이 크게 늘어 도심지 신축빌딩의 30%이상이 입주자가 없어 비어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대형건물신축억제방침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각부처의 건물신축은 88년이후로 미룬다는 원칙을 고수, 청사신축에 필요한 예산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建築士자격 2차試驗 9월 1일實施

建設部, 弘益大 서울市立大 漢陽大서

建設部는 85건축사자격 제2차시험(특별전형포함)을 오는 9월 1일 홍익대학교의 서울시립대학, 한양대학교에서 실시한다.

이번 2차시험은 일반전형 1천16명이 홍익대학교의 서울시립대학에서 치르게

으로 舊會館이 철린이후 이곳저곳으로 사무실을 임대사용해왔다.

集團에너지供給体制 대폭擴大

再開發신축물·密集아파트團地 대상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대도시재개발지역과 대형 신축 건물지역에대해 빌딩구역 냉·난방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오는 87년부터는 大邱이북의 기존 밀집아파트지역과 새로 조성하는 아파트지역엔 지역난방시설을 시행토록 하는 등의 집단에너지공급체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動資部에 따르면 에너지 이용의 효율 증대를 위해 열효율이 높은 大邱이북의 건물밀집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확대는 우선 추진대상으로 서울의 강남구 開浦地區·강동구 蠶室地區·高德地區·押鵝亭地區등 4개지역과 경기도 인천의 朱安地區와 果川地區등 2개지역을 선정, 이지역의 인구과밀지역 및 빌딩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87년부터 집단에너지공급체제를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서울과·인천지역에 대한 지역난방시스템도입 타당성 조사를 내년 또는 내년 2월까지 각각 완료, 86년말엔 기본설계등을 끝낼 계획이다.

또 신규아파트지역은 내년 신규택지개발계획을 수립, 타당성을 검토한 뒤 대상지역을 확정, 단계적으로 지역냉·난방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형건물밀집지역에도 熱供給費用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월말까지 서울의 28개 재개발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 86년부터 서울시재개발사업및 건축허가시에 이를 반영, 서울을 중심으로 빌딩냉·난방사업을 추진, 점차 타도시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動資部는 여의도지역에 이어 앞으로 인근 화력발전소의 폐열을 이용한 地域暖房事業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建築審議 끝나면 「모델하우스」 建立 가능

아파트着工·분양時期 일원화위해

建設部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민간아

「藝總」獨立회관建物 연내미련

總22억들어 買入 增築거처 12월入住

4만여 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인 藝總의 獨立會館建物이 연내에 서울시내 중로구동승동의 옛 서울대학교 도서관자리에 새로 서게 되었다.

새 예총회관은 현재 한국자동차회관으로 사용되고있는 4층 건물을 매입, 증축·사용하게되는데 총예산은 22억원이다.

이 가운데 20억원은 건물매입비이고 2억원은 증축비인데 7월중에 매입을 끝내고 증축공사를 거쳐 12월중에 입주하게 된다.

새 藝總會館에는 본부와 10개 협회사 무실및 회의실 휴게실 대화공간등이 마련된다.

한편 文公部는 예총의 새회관 마련에 따라 文藝振興院이 주관해오던 전국 규모의 예술행사를 단계적으로 예총에 이관하고 지방문화예술의 예총지부 개회를 확대키로 했다.

文公部는 이를 위해 금년도 문예진흥기금 2억1천660만원외에 7천280만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예총은 지난 73년 世宗文化會館 건립

파트의 착공, 분양시기를 일원화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전이라도 建築審議가 끝난 경우에는 모델하우스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韓國住宅事業協會에 따르면 정부는 각 시·도마다 모델하우스의 건립시기가 상이, 대부분의 지방도시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후에 가건물허가를 내주는 등 분양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주택건설사업제정업계의 개선건의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建築審議만 끝나면 모델하우스건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각시·도에 이를 허용토록 했다는 것.

이에 따라 지방의 경우 민간아파트 분양시기를 종전에 비해 2~3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어 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정부는 모델하우스를 實住宅의 구조나 규모 및 소요자재의 질 등과 동일하게 건립, 입주예정자의 편의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불량자재를 사용했거나 호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과대광고 및 허위선전을 하는 업체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25개 都市계획 재정비

淸州 등 10개市 綠地 부락 住居地 전환

건설부는 광주 청주 춘천 등 전국 25개 도시의 도시계획을 재정비,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에서는 광주 춘천 강릉 청주 제천 고창 진안 무주 보은 수안보 등 10개 도시의 자연녹지 안에 있는 기존부락 1백44만4천2백70㎡ (43만3천여평)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으며, 7개 도시(광주 춘천 강릉 청주 포천 당진 청도)에서는 41개노선 4만6천3백97㎡의 도로계획선을 폐지, 도로계획부지에서 해제했다.

자연녹지 안에 있는 부락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지는 등 건축제한 행위가 크게 완화된다.

또 광주 춘천 청주 등 9개 도시에서 주거지역 안에 있는 상가시설 96만1천7백㎡ (28만8천여평)를 상업지역으로 현실화하고, 지역고시만 해놓은 채 실제

조성되지 않고 있는 6개 도시의 도시공원 37만3천7백40㎡ (11만2천여평)를 공원 지역에서 해제하거나 다른 공원으로 대체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심지에 위치,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포천 당진 등 2개 도시의 터미널 입지를 변경하고, 청주에는 1.3km의 도시 외각 순환도로를 지정, 도심부 교통 소동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로 건설부는 전국 2백19개 도시계획 재정비 대상도시 중 1백20개 시의 재정비 작업을 끝냈는데, 서울은 86년 말까지, 나머지 98개 도시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재정비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아파트造景기준 강화

높이 2m 이상 교목 50% 이상 식수

새로 조성되는 아파트 단지의 조경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서울시는 주거밀집인 아파트 단지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에는 나무높이 2m 이상의 교목을 50% 이상 심도록 하고 이중 3분의 1은 나무높이 5m 이상, 나무넓이(수관) 2.5m 이상의 대형목을 심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당 0.3본의 비율로 교목을 심고 낙엽 활엽수를 50% 이상 심도록 하는 등 나무 크기에는 제한이 없고 나무 종류로만 제한, 아파트 단지의 조경이 형식에 그쳐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아파트 배관대에 화분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급수시설도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시는 이밖에도 단지내 통행로를 꽃길로 조성하고 어린이 놀이터 주위는 사철 푸른 상록수를 심어 어린이들이 푸른 환경 속에서 뛰어 놀 수 있도록 했다.

庶民住宅 200만가구 건립

政府, 91년까지 小型위주로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91년까지 도시 서민용을 위주로 2백만 가구의 주택을 지어 주택난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주택난이 심한 도시 서민 계층이 살 수 있도록 소형 주택을 많이 지어 현재 66

%수준인 주택 보급률을 91년에는 75%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주택 규모를 현재의 25.7평에서 전용면적 20평 기준으로 낮추고 국민주택기금 지원주택은 20평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며 민간 건설업체에도 소형 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부과할 예정이다.

工場굴뚝 높이 制限

환경청, 蔚山·溫山 지구에 첫 적용

환경청 蔚山 지구 지도점검반은 17일 蔚山 및 溫山 공단의 공해배기가스 저감 대책으로 지금까지 규제를 해오지 않았던 공장 굴뚝에 대한 높이를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점검반은 앞으로 공장 굴뚝 높이를 최고 2백m에서 최하 20m로 정하고 공장 규모와 배출량에 따라 굴뚝의 높이를 정해 매연이 고공에서 분산되도록 했다.

서울市 「同居型」 더 안짓기로

1·2차분 分讓者도 設計변경 申請가능

서울시는 同居형이라는 새로운 아파트 구조가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木동1, 2차 아파트 분양 때 설계된 同居형 아파트는 오는 9월 착공 예정인 3차분에는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同居형 아파트가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이나 앞으로 분양 받을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는 경향이 높아 3차 분양 때 同居형 아파트의 미분양 사태가 일어 않을까 우려돼 취해진 것이다.

원로建築人

古稀紀念 論文集 헌정식

김형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古稀紀念 논문집 헌정식이 7월10일 많은 후학들의 축하속에 프레스센터 프레스 홀에서 거행되었다.

본협회 추대회원이며 서울대학교에서 후학 양성에 평생을 바친 김희훈 선생의 고회기념 논문집 헌정식도 7월15일 힐튼 호텔에서 하객들의 축하속에 성대히 거행되었다.

폐업

□ 서울지부=△김현식회원/벽송건축사사무소/강남구역삼동845-1/85. 7. 3

△임영의회원/대륙건축설계사무소/관악구봉천동1590-7/85. 6. 29

△유정수회원/유한건축설계사무소/강서구화곡동987-6/85. 7. 1

△이충선회원/남부종합건축/강남구삼성동34-21/85. 7. 2

△조영락회원/대흥건축합동연구소/강남구방배동874-1/85. 7. 9

△이근창회원/주·완종합건축/강남구서초동767-3/85. 7. 10

□ 경기지부=△박태선회원/명성건축설계사무소/의정부시의정부동 192-6/85. 6. 28

△원유성회원/원유성건축사사무소/고양군원당읍주교리114-3/85. 6. 22

□ 충북지부=△박용순회원/통합건축설계사무소/청주시북문로 2가116-150/85. 6. 29

□ 전남지부=△임종기회원/대우건축연구소/동구금남로 4가9/85. 7. 5

휴업 □ 경기지부=△박노선회원/신진건축설계사무소/부천시삼곡동164-15/85. 6. 28~12. 27(6개월)/62-5797

재입 □ 서울지부=△이봉욱회원/이봉욱건축사사무소/영등포구신길동110-5/846-2333

△이효식회원/삼신종합건축사사무소/용산구이태원동34-145/798-9087

□ 경기지부=△강지원회원/강지원건축사사무소/부천시원미동74-6/62-3361

전입 □ 서울지부=△곽덕수회원/서호건축사사무소/관악구봉천동1660-5/882-0723/전남

△장기택회원/대한종합건축사사무소/마포구대흥동 2-63/716-0758/경기

□ 경기지부=△정충조회원/정충조건축사사무소/부천시원미동72-3/653-5454/서울

△여찬수회원/여찬수건축사사무소/안양시안양동695-156/2-4539/서울

△유판열회원/유판열건축사사무소/부천시원미동90-8/62-3553/서울

□ 인천지부=△박병석회원/미주건축사사무소/인천남구주안동62-2/425-8855/서울

□ 충남지부=△안상범회원/안상범건축사사무소/연기군조치원읍교동 1-5/2-7267

□ 전남지부=△김기철회원/(주)시공건축사사무소/동구금남로 2가7-4/22-1710

전출 □ 서울지부=△여찬수회원/현대건축설계사무소/동작구사당동152-1/85. 6. 26/경기도안양 3 동695-156

△박병석회원/미도종합건축연구소/영등포구여의도동61-713/85. 6. 26/인천시남구주안 1 동62-2

會員動靜

△오수암회원/오승건축연구소/강서구화곡동1024/85. 7. 12/경기평택비전 6 리568

△유판열회원/유신건축사사무소/강서구화곡동987-7/85. 7. 18/경기부천시원미동90-8

△이관승회원/(주)고려종합건축사사무소/서울중구서소문동65/85. 7. 24/강원도강릉시

□ 인천지부=△조완익회원/삼익건축설계사무소/인천남구간석동214-28/85. 7. 1/서울지부

△박봉현회원/진명건축사사무소/인천남구주안동203-19/85. 7. 19/서울지부

□ 경기지부=△장기택회원/한미건축설계사무소/동두천시생연동668-1

/85. 7. 2/마포구대흥동 2-63

□ 전남지부=△박금식회원/금호건축설계사무소/동구금남로 5가143/85. 7. 11/서울

△곽덕수회원/삼화건축설계사무소/광주시동구금남로 3가99-1/85. 6. 26/서울

□ 전북지부=△김기철회원/현대건축사사무소/전주시서노송동563-11/85. 7. 6/전남

□ 충북지부=△안상범회원/목화건축연구소/충북단양군단양읍하망리 177-5/85. 7. 2/충남

△박재만회원/우성건축설계사무소/청주시북문로 2가116-24/85. 7. 10/경기

결혼 □ 서울지부=△박상기회원/본인결혼/85. 6. 16. 12:00/목화예식장

△박우하회원/장녀결혼/85. 6. 28/12:00/천도교대교당

□ 경기지부=△김동명회원/차남결혼/85. 6. 12/태극당예식장

□ 충남지부=△박민현회원/여혼결혼/85. 6. 1/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텐예식장

△박찬영회원/자혼/85. 6. 15/대전예식원

△정진경회원/여혼/유성관광호텔/85. 7. 7

회갑 □ 경기지부=△윤영호회원/모친회갑/85. 6. 8/서림원(여의도)

△정환철회원/85. 6. 29/부천신라부패

□ 경기지부=△박영목회원/부친회갑/85. 7. 17/자택

별세 □ 서울지부=△송옥호회원/모친별세/85. 6. 11/당상동자택

△강신관회원/모친별세/85. 6. 8/광명시자택

△박영식회원/부친별세/85. 6. 24/전주자택

△김정권회원/부친별세/85. 7. 9/화곡동자택

△구형주회원/모친별세/85. 7. 13/전남광주자택

△최성일회원/모친별세/85. 7. 17/방배동자택

□ 부산지부=△박태근회원/부친별세/85. 7. 6/자택

환영합니다 신입회원



□李海白 / 23. 3. 16 / 서울 /
서울공대 / 도양종합건축사사무
소 / 영등포구여의도동중앙빌딩
716호 / 783-6419



□全文煥 / 50. 7. 7 / 부산 /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 동방중
합건축사사무소 / 부산시동구초
량5동1158-9 / 44-2449



□鄭然文 / 35. 8. 20 / 서울 /
한양공대 / 건축사사무소경림 /
영등포구여의도동44대영빌딩13
61 / 784-8245~6



□李永澤 / 51. 7. 9 / 경기 /
성균관대 / 이영택건축사사무소
/ 안양시안양동511-8/2-5016



□劉漢雄 / 39. 3. 1 / 서울 /
서울공대 / 문일건축사사무소 /
서울성동구자양동219-35 / 452
-4816



□金成坤 / 53. 8. 27 / 부산 /
경남전문대 / 구성·모양·성종합
건축사사무소 / 부산시중구중앙
동4가8i-1 / 463-1313



□韓相默 / 46. 9. 10 / 서울 /
한양대 / (주)삼우종합건축사사
무소 / 영등포구여의도동45-1 /
783-6926



□朴贊榮 / 55. 2. 8 / 충남 /
대전실업고등전문학교 / 건축사
사무소아름 / 대전시중구대흥동
472 / 254-5318



□柳大鉉 / 47. 2. 23 / 충북 /
인하대 / 대호건축사사무소 / 청
주시북문로2가116-154 / 2-
4273



□金明璇 / 56. 4. 25 / 경북 /
한양대 / (주)세마종합건축사사
무소 / 포항시괴동동568/72-56
51



□黃明均 / 47. 7. 30 / 서울 /
연세대 / (주)삼주종합건축사사
무소 / 강남구반포동612-140 /
593-3193



□沈相正 / 48. 1. 30 / 충남 /
충남대 / 국방과학연구소 / 대전
우체국사서함 / 822-4271



□金仁洙 / 49. 12. 3 / 충남 /
대전공전 / 신화건축사사무소 /
충남대전시선화동10-1 / 254-
5620



□趙桂煥 / 46. 12. 17 / 경북 /
영남대 / 럭키개발(주) / 영등포
구여의도동35-13 / 783-0021

준회원

雨·汚水分類式 하수처리 시설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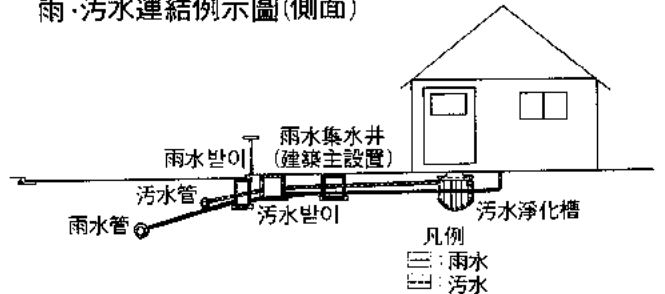
전국 도시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경 및 수질 오염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신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오수는 일반하수관 외의 별도 오수관을 시설하여 하수종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시설방법을 소개하니 건축물의 허가와 준공시 이를 확인하여 시설물이 제기능을 다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 : 한국토지개발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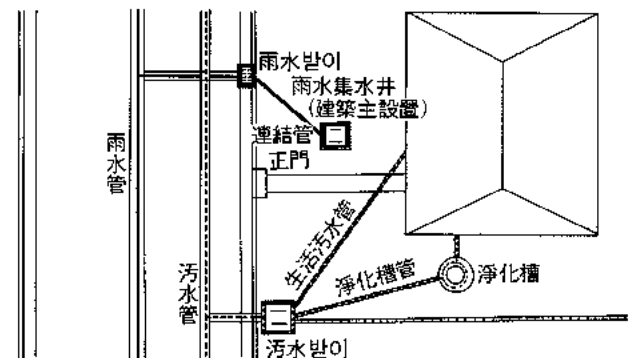
우·오수분류식 사업지구현황

도 시 명	지구명	사업기간	면적(천m ²)	비 고
서울특별시	개 포	'81-'84	1,693	조사설계중
	고 덕	'82-'85	3,355	
	중 계	'85-'88	1,460	
부산직할시	주 레	'84-'86	228	
	모 라	'84-'86	701	
	화 명	'84-'86	81	
대구직할시	월 배	'83-'85	873	
	안 심	'84-'86	483	
	불 노	'84-'86	117	
인천직할시	부 평	'85-'86	345	
	계 양	'85-'86	156	
의정부시	가 능	'83-'85	241	
안양시	석 수	'83-'85	376	
수원시	구 운	'84-'86	537	
	매 탄	'84-'87	1,764	
송탄시	서 정	'84-'86	509	
춘천시	후광(3)	'85-'87	119	조사설계중
청주시	봉 명	'83-'85	363	
	운 천	'84-'86	666	
충주시	충 의	'85-'87	438	조사설계중
제천시	창 전	'85-'87	286	조사설계중
대전시	종 촌	'84-'86	215	조사설계중
	중 리	'84-'86	793	
	내 동	'84-'86	50	
	가수원	'85-'87	325	
	둔 산	'85-'89	7,456	
이리시	영 동	'85-'86	307	조사설계중
광주시	우 산	'84-'86	231	조사설계중
	봉선·방림	'84-'86	456	
	하 남	'85-'87	1,814	
금성시	송 월	'83-'85	189	
남원시	도 동	'85-'86	100	조사설계중
안동시	안 기	'84-'85	114	
	옥 동	'84-'85	174	
울산시	북 산	'85-'87	307	조사설계중
	내 동	'83-'86	767	
김해시	삼 방	'84-'86	351	조사설계중
	어 방	'85-'87	596	
	명 곡	'81-'85	1,440	
창원시	이 도	'85-'87	283	조사설계중
달성군	천 내	'85-'87	167	조사설계중
여천군	쌍 봉	'81-'86	930	

雨·汚水連結例示圖(側面)



雨·汚水連結配置圖(平面圖)



※ 단, 雨水받이가 隣接해서 없을 경우 雨水는 道路部分으로 表面排水處理要(例: 正門)

施行者區分

土開公施行	建築主施行
• 汚水받이 • 雨水받이 • 雨水管 • 汚水管	• 淨化槽管 • 生活汚水管 • 雨水集水井 • 淨化槽 • 雨水集水井連結管